



2001年度

民 防 衛 計 劃

忠 淸 南 道

14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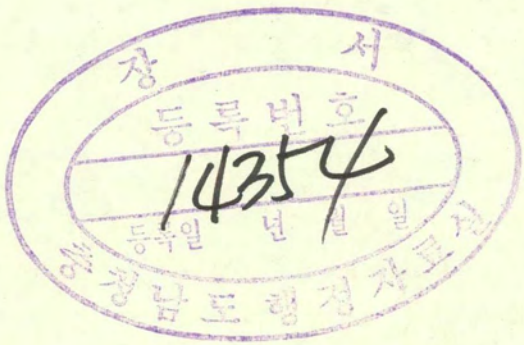



민 방 위 계 획

2001

충 청 남 도

목 차

Ⅰ. 2001년 민방위 여건과 과제 5

Ⅱ. 중점 추진사항 6

Ⅲ. 분야별 추진계획 7

1. 민방위운영계획 9
2. 화생방방호계획 95
3. 자연재해대책 109
4. 재난관리대책 203
5. 소방안전대책 229
6. 시설물안전관리대책 241
7. 대형교통사고방지대책 249
8. 전염병관리대책 269
9. 산업재해대책 277
10. 수질(식수)오염대책 295
11. 방사능자연대책 309
12. 산림재해대책 339
13. 해양오염대책 363
14. 수난구호대책 373

Ⅳ. 행정사항 381

Ⅰ. 2001년 민방위 환경과 과제

◀ 민방위 환경과 전망 ▶

□ 안보 측면

○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햇볕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남·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진전

○ 시대상황과 여건에 맞는 새로운 안보·통일관 정립 필요
⇒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우리의 튼튼한 안보가 바탕

□ 재해·재난관리 측면

○ 급격한 산업화와 지구온난화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각종 재난과 재해의 빈발과 대형화·다양화 추세

○ 국민의 안전 불감증과 재해위험요인은 증가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기대는 증대

◀ 민방위 주요과제 ▶

□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민방위 역할 정립

○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실효성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 안보대비 위주에서 주민자율 방재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

□ 각종 재난·재해요인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

○ 재난·재해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

○ 재난·재해의 예방·수습 및 복구를 위한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안보와 방재기능을 포괄하는 생활속의 민방위로 정착

Ⅱ. 중점 추진사항

□ 주민생활과 밀접한 실용성있는 생활민방위 체제로의 전환 정착

- ○ 남북화해와 협력시대에 맞는 올바른 안보·통일관 정립
- ○ 재난 대비위주의 생활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전환

□ 21세기에 걸맞는 방재 전산화·과학화 지속 추진

- ○ 수질오염, 해양오염, 산림재해, 소방 등

□ 재난위험시설의 예방위주 안전관리 강화

□ 국민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강화 및 제도정비

□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축 지속 추진

□ 각 분야별 계획간의 상호연계성과 실효성 확보 및 지역별 취약 재난유형에 따른 특성화된 대비시스템 구축

【推進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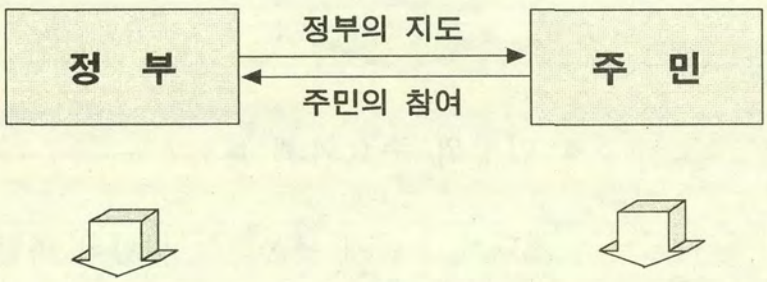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 적의 침공
- ○ 자연재해
- ○ 인위재난

각자의 임무수행

- ○ 방공, 응급적인 방재
- ○ 구조·구난 및 복구
- ○ 노력지원, 자위적 활동

Ⅲ. 분야별 추진계획

1. 민 방 위 운 영 계 획

[소 방 안 전 본 부]

- ○ 민방위대 편성운영
- ○ 주민자율신고체제 확립
- ○ 민방위교육 운영의 내실화
- ○ 민방위훈련의 적극적 운영
- ○ 민방위시설 · 장비의 확충 및 효율적 운영
- ○ 민방위 경보운영 및 현대화 추진

目　標

○ 범국민적 안보의식의 제고로 통일기반 조성

○ 민방위대를 안보 및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 육성·발전

○ 민방위 시설·장비의 지속적 확충과 활용의 제고

○ 민방위경보태세의 확립과 경보시설의 현대화

方　針

○ 민방위대의 편성운영의 효율화로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제고

○ 「생활민방위」 교육 운영 및 실효성 있는 훈련 실시

○ 주민신고의식 고취 및 주민신고망 개편 보강

○ 민방위 시설·장비의 지속적 확충 보강

○ 차질없는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추진

推進計劃

Ⅰ. 민방위대 편성·운영

1. 민방위대 현황

가. 민방위의 정의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나. 민방위대의 역할

- 유사시 : 인명구조,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지원 등
- 평상시 : 주민신고 및 재해·재난의 예방·수습 및 복구 등

다. 민방위대 편성현황

(2000. 7. 1 현재)

대 별	대 수	대 원 수		
		계	의 무 자	지 원 자
계	4,543대	222,064명	216,727명	5,337명
통 · 리 대	3,951	183,456	180,359	3,097
기술지원대	16	1,065	1,014	51
직 장 대	576	37,543	35,354	2,189

※ 편성제외자 :188,253명(총자원 398,107명중 47%)

2. 민방위대 편성

가. 편성원칙

- 지역민방위대는 거주지 통·리단위, 기술지원대는 시·군단위, 직장민방위대는 직장단위로 편성
- 통·리대원과 기술지원대원 및 직장대원은 상호 중복편성 불가
- 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 및 재해영향 권역별 연합민방위대 구성
- 지역별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에 적합한 조직으로 편제 운영
- 지역민방위대의 능동적인 사태수습을 위한 대장지휘능력 보강
- 일선 민방위대와 지역방재조직과의 통합적인 사태수습체계 운영

나. 편성대상자원 확정

1) 신규대상자 편입

가) 대 상

- ○ 2001년도에 20세(1981년생)가 되는 대한민국 남자
- ○ 2000 . 12 . 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5세까지 (1956. 1. 1이후 출생자)의 남자
- ○ 허약자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재심사 탈락자
- ○ 민방위대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 ○ 기타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민방위대편성에서 누락된 자

나) 절 차

- ○ 읍·면·동장과 직장민방위대장은 주민등록 및 기타서류 (인사기록카드 등)에 의거 직권으로 민방위대 편성
- ○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2000. 12. 31까지 편입 조치를 완료하고, 2001. 1. 10까지 통·리장에게 통보
- ○ 읍·면·동장은 새로 편입된 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 등을 명시한 통지서를 송부
- ○ 통·리장은 신규편성대상자명부에 의거 대상자를 개별방문하여 편성사실 확인

〈 편성제외대상자 〉

○ 당연제외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교육위원
- 경찰, 소방, 교정직, 소년보호직 공무원, 등대원
- 군인·군무원·향토예비군·현역병입영대상자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 청원 경찰·의용소방대원 및 주한외국군부대 근무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에 6월이상 승선하는 선원
- 도서벽지학교 근무 교원
- 고등학교, 대학교 및 주간석사과정의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원생
- 전상·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징병검사시 6급판정자, 등록장애인

○ 심사제외자
- 의사의 진단에 인해 전상·공상군경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일상적 정상근무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되는 만성허약자

※ 제외절차

○ 2001년도에 만46세가 되는 민방위대원은 민방위대원연명부에서 읍·면·동장, 직장의 장이 직권으로 제외 조치하고, 읍·면·동장은 통·리장에게, 직장의 장은 본인에게 통보

○ 민방위대 제외대상자는 편성제외신고를 받아 제외조치
단, 심사제외자는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읍·면·동장이 제외 결정하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원양어선·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이상 승선자,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등은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제외조치

다. 민방위대 편성

1) 통·리민방위대

○ 읍·면·동장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당연제외자, 직권제외자 및 심사제외자등을 제외하고, 지원자를 추가하여 편성하고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보

2) 직장민방위대

○ 직장민방위대장은 인사기록카드 등에 의하여 신고제외자 및 직권제외자 등을 제외하고 지원자를 추가하여 편성, 본인에게 통보

3) 기술지원대

○ 시장·군수가 읍·면·동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이 추천한 대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편성

라. 민방위대 기본편제

1) 제대편성

○ 민방위대원수에 따라 대장 아래에 1~2인의 부대장을 두고 하부제대를 설치

○ 산하제대는 대장 및 제대장의 지휘통솔이 용이한 규모로 편성

【편제기준】

규모별	분대급	소대급	중대급	대대급	연대급
대원수	29인이하	30~80인	81~300인	301~1000인	1001인이상
산하제대	반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제대별 인원	7~8인	10~15인	30~50인	100~200인	300~500인

2) 단위대장 등 지정

○ 부대장 및 산하제대장은 소속대원중에서 젊고 경험이 있는 유능한 대원을 지정 선발

마. 민방위대별 편성요령

1) 통·리민방위대

○ 조직단위 : 행정구역상의 통·리(2001. 1. 1 기준)

○ 편성대상

- 1956. 1. 1~1981. 12. 31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남자로
  -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이 아닌 자
  - 직장대·기술지원대 대원이 아닌 자
- 2001. 1. 1 현재 17세이상인 대한민국 남·여중 민방위대 지원자

○ 기준편제

- 본부, 기동반, 소·수방, 방호·복구, 의료·구호, 화생방 등

○ 제대의 명칭과 임무

- 소속된 자연부락의 이름이나 소규모지역을 나타내는 말을 제대명칭으로 쓰고 제대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예상재난 수습에 알맞는 임무 부여
- 적절한 지역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민방위대가 수행할 기능 위주로 한 명칭 사용

2) 민방위 기술지원대

○ 조직단위 : 시·군

○ 편성규모 : 60~100명선

○ 편성대상

- 수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토목, 건축, 수영, 보트 운전, 화생방분야 등 기술전문분야

○ 기준편제

- 본부, 인명구조, 의료·구호, 전기통신, 토목·건축, 수송·급식, 화생방, 기동반 등

○ 대원 선정기준

- 수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건축, 토목, 화생방분야 등의 전문기술소지자
- 인명 구조 유경험대원(보트운전, 수영숙달 등)
- 의용소방대원과 해병전우회원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자중 자원참여자

3) 직장민방위대

○ 조직단위 : 직장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단위

○ 편성대상 : 직장에 소속되어 상근하는 자

○ 설치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앙관서와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조물

·도, 시·군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

- 공공기관 및 업체

·각급 학교 및 그 부속기관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 한국은행 및 정부투자기관
·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
· 의무자 및 지원자가 15인이상인 공공조합,
-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사기업체
· 민방위의무자가 20인이상인 업체
· 의무자 및 지원자가 20인이상인 염제조업체, 건빵·라면 제조업체, 석유정제·수출입·판매 업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제조업체, 사립공공도서관
· 금융기관 본·지점, 상설극장, 방송국 및 송신소, 대규모 점포
· 지적측량대행법인, 지정문화재 보유(또는 보호구역내) 사찰
· 연합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동일구내에 위치하여 연합민방위대에 포함되는 것이 효율적인 업체
· 하나의 직장민방위대로 편성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동일구내 또는 건물내의 2개이상의 업체
· 기타 직장민방위대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편성기준
- 평소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대원은 같은 제대에 편성
- 공장건물, 작업장, 사무실 등 근무지 단위로 제대 편성

○ 제대의 명칭과 임무
- 구성원이 소속한 근무부서의 조직명칭이나 기능을 사용한 제대 명칭을 부여하고,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임무 부여
- 조직명칭 등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제대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명칭으로 사용
- 외국인이 직장의 장인 경우 차상급의 한국인을 대장으로 임명

○ 기준편제

- 본부, 의료·구호, 소·수방, 방호·복구, 화생방 등

○ 참모부서 설치 운용

- 설치대상 : 중대급(81인이상)이상 규모 직장민방위대
- 필요부서 : 지역여건과 직장기능에 따라 필요한 부서 설치

〈예시〉 기획부, 연락부, 복구부, 의료·구호지원부, 화생방부 등

- 참모부요원의 선정

· 관련부서에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이 있는 대원

· 부서별로 1~2명으로 구성하되, 다음기준을 고려하여 결정

규 모 별	인 원 수
· 연 대 규 모	20인 정도
· 대 대 규 모	15인 정도
· 중 대 규 모	6~10인 정도

- 기 능

· 민방위대 운영에 필요한 전문분야에 대하여 대장 보좌

· 부여된 임무에 대하여 대원 교육 및 훈련실시

· 중요사항은 각급 제대장과 참모부요원의 연석회의에서 심의결정

바. 민방위대장 지휘력 보강

1) 대장중심의 자율운영체제 확립

가) 지역대장에 대한 지휘력 제고 교육실시

○ 대 상 : 신규 위촉된 통·리대장, 여성대장, 대장이 결원중인 지역대의 부대장

○ 방 법 : 종합방재훈련 우선 참관조치 도(시·군)단위에서 분기별로 파악, 일괄 집합교육 및 우선참관조치

○ 교육내용 : 통·리대장의 임무와 역할, 사태유형별 실기실습 훈련 및 대원 지휘통솔방법

나) 마을단위 민방위계획 수립 및 자율적 운영권 부여

- 자체민방위(방재)계획에 의한 대원교육 및 훈련실시
- 민방위사태 예찰, 수습, 복구활동 등 자율적 운영

다) 통솔이 용이하도록 제대편성 운영

○ 통·리대의 규모에 따라 적정규모의 기능별 제대편성
○ 산하제대는 각 단위제대장의 지휘통솔이 용이하도록 편성
○ 부대장 등 간부 임명시 군하사관 출신자 등 임명

라) 통·리대장과 대원 및 제대장 등에 대한 임무통지

○ 시 기 : 신규편성 완료직후 (2001. 1월중)
○ 대 상 : 통·리민방위대장, 신규편성대원, 전입대원, 제대장 등 소속·임무가 변경된 대원
○ 주 관 : 읍·면·동장

2) 통·리장이 아닌 자의 민방위대장 임명

가) 대 상 : 통·리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허약 등의 사유로 민방위사태 발생시 현장지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선정기준

○ 지역내 유지로서 덕망 있고 주민의 신임을 받는 자
○ 지휘통솔력이 있는 군장교 또는 하사관 출신자
○ 사회봉사단체에서 활동중인 각급 지도자
○ 기타 지역대를 능률적으로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자

다) 임명방법 : 읍·면·동장이 해당지역 민방위대장과 협의하여 적임자를 지정

라) 통·리장이 아닌 민방위대장의 임무

○ 평 시 : 민방위대 운영 및 대원 교육 지원

○ 민방위사태발생시 : 지역민방위대 직접지휘

(사전예찰, 방재활동, 응급복구 등)

사. 소규모민방위대 통합

1) 대 상

○ 민방위대원이 20명 미만인 통·리민방위대 및 직장민방위대

○ 통·리대는 인근의 통·리대와 통합 편성

○ 직장대는 동일 시·군내에 있는 상위직장 또는 유사한 직종의 직장민방위대와 통합편성. 다만, 통합편성할 대상 직장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직장 소재지의 읍·면·동 직장민방위대와 통합편성 (4km이상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등)

〈예 시〉

· 보건소·농촌지도소 등 ⇒ 시·군 직장민방위대

· 보건지소·농촌지도소 등 ⇒ 읍·면·동 직장민방위대

· 학교 ⇒ 시·군 교육청 직장민방위대

○ 통합되는 소규모민방위대는 다음 요령으로 흡수 편성하되, 소규모대의 대장은 통합한 민방위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

· 대원 10명미만은 통합대의 분대에 흡수 편성

· 대원 10~20명미만인 직장민방위대는 별도 분대 편성

○ 통·리간이나 직장 상호간 통합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대와 직장대는 통합편성 불가

○ 오지·낙도 등의 소규모 민방위대로서 통합 편성할 대상 민방위대가 없을 때는 독립대로 편성 운영

2) 절 차

ㅇ 시장·군수는 소규모민방위대 통합편성요령을 읍·면·동장과 해당 직장민방위대장에 통보

ㅇ 소규모 직장민방위대장은 대원명부를 통합될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제출하여 통합편성 요구

ㅇ 통합직장민방위대장은 통합편성결과를 시장·군수와 소규모 직장민방위대장에게 통보

아. 연합민방위대의 구성

1) 지역연합민방위대

가) 구성대상

ㅇ 도시지역

- 하천 등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재난발생시 공동대처가 필요한 지역
- 도시의 블록, 가로망 등을 단위로 주택, 상가 등이 밀집되어 하나의 단지로 형성된 지역
- 아파트단지, 대규모상가, 집단촌 등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집단으로 재난대처가 필요한 지역
- 공단, 위락단지, 위험물인접지역 등 대형재난의 위험이 있는 지역과 업체를 중심으로 사태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지역,
- 동일공업단지, 구내 또는 건물내 2이상의 직장대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

ㅇ 농·어촌지역

- 하천, 저수지, 해안, 산골짜기 등 지형적으로 재난 발생시 동일 영향권안에 있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인 인접 마을

나) 대상지 조사 및 구성

- ○ 읍·면·동장은 관내의 주택배치상황, 도로망, 하천수계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 조사
- ○ 읍·면·동장은 대상지역의 민방위대장과 협의하여 연합민방위대 구성

다) 운 영

- ○ 연합민방위대장은 해당지역의 통·리민방위대장 중에서 호선을 거쳐 읍·면·동장이 임명
- ○ 읍·면·동장은 연합민방위대장을 지휘하고 연합민방위대장은 소속 통·리민방위대장을 지휘
- ○ 연합민방위대 단위로 자체민방위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소집훈련 등 교육·훈련 실시

2) 직장연합민방위대

가) 구성대상

- ○ 동일구역내 2개이상의 직장민방위대
- ○ 동일건물내 2개이상의 직장민방위대
- ○ 동일공업단지내의 인접한 직장민방위대

나) 구성운영 요령

- ○ 동일건물, 동일구내에 있는 모든 직장민방위대를 포함하여 연합민방위대 구성
- ○ 구내시설 또는 건물관리직장의 민방위대장을 연합민방위대장으로 지정
- ○ 연합민방위대장은 단위직장민방위대장을 겸임하거나 부대장을 임명하여 대장임무 수행 조치

다) 구성절차

○ 시설관리 직장민방위대장은 연합민방위대 구성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조직요건을 검토,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정여부 결정

○ 지정할 경우 연합민방위대조직승인대장에 명기하고 연합민방위대지정서에 의거 통보

자. 민방위 자원관리

1)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

○ 민방위자원관련 공부의 전산관리로 효율적인 자원관리

○ 편성대상자 명부를 지역·직장대별로 구분 작성하고 편성제외사유 등을 기록 관리

○ 연명부를 비치하고 교육훈련, 전·출입상황 등을 관리

○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민방위란 기록 관리 철저

○ 자원관리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직장대원의 자원변동상황 관리철저

2) 민방위자원 일제정비기간 운영

○ 2000. 12. 1~12. 31까지 신규편성자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중 다음 사항을 처리·정리

- 다음년도 신규편성대상자 편입조치
- 편성제외자 및 제외사유말소자 일제신고 처리
- 민방위의무해제자 정리

○ 2001. 3. 1~3. 31까지 한달동안 학생신분변동에 따른 민방위자원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민방위대 편입 또는 제외조치

차. 민방위대 동원 운영

1) 민방위사태가 발생하면 민방위대 동원권자는 다음 사항 등을 유의하여 민방위대 동원을 차질없이 집행

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지휘보고

○ 민방위대장→읍·면·동장→시장·군수→도지사→행정자치부장관

나) 각급 동원권자는 민방위사태 발생보고를 받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와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동원요청이 있을 때는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원여부를 결정하고, 긴급시는 동원권자가 판단 결정 하여 동원령을 하달

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 사태가 광역화 또는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 수습이 어려울 경우 동원되지 않은 인근 민방위대원에게 참여 권장

라) 동원권자는 동원지역, 대상, 사유 및 동원시의 행동요령 등을 명시하여 동원대상 민방위대장에게 동원명령을 발하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이를 공고

단, 국가안보상 특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공고를 생략

마) 동원명령을 받은 민방위대장은 상황에 적합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소속대원을 소정시간내에 동원

〈동원령 전파방법〉

- 지휘용싸이렌, 타종, 경적 및 신호기에 의한 전파
-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선 또는 구두전달
- 확성기에 의한 방송 및 광고
- 필요시 서면에 의한 개별통지

2) 관내 전지역에 수해발생시 효율적인 동원 및 재난예방·복구 활동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조치를 강구

가) 대원의 주·야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철저

나) 정전 및 교통 두절시 동원령 전달대책 강구

o 읍·면·동과 마을간 무선통신망 구축

다) 재해지역내 동원령의 효율적 집행

o 피해가 적은 지역부터 우선 동원

라) 인근 지역대와의 상호응원체제 확립

o 인근 시·군 또는 읍·면·동 상호 응원협조체제 유지

o 응원요청시 신속한 조치 강구

마) 야간재난대비 수방장비 확보

o 조명탄, 구명등 등 수해상습지역 우선확보

바) 수방 및 인명구조대 육성 보강

o 수해위험 및 상습지역 확대 구성

o 수방·인명구조장비 확보 및 실제훈련 반복실시

o 장비활용에 대한 개인별 임무 부여

o 대원 비상연락체계 정비

사) 동원대원(자발적참여 대원 포함) 사기진작방안 강구

○ 시·군 예산범위안에서 중식, 음료수 등 제공

○ 자연재해대비 방재활동비 각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조치

○ 유공대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 격려

3) 동원권자가 민방위대를 동원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였거나,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제시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동원을 해제

4) 동원된 대원 또는 민방위사태의 수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원에 대하여 실비지급

5) 동원민방위대의 행동요령

가) 임 무

○ 경보전파 및 대피유도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 시설물 응급복구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임무부여는 민방위사태 수습현장에서 구두(필요시 서면)로 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나)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중요시설물 : 공공시설물로서 주민전체의 편익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물

〈 예 시 〉

- 공공기관의 건물
- 도로·철도 및 교량
- 저수지, 하천 제방 및 사방시설
- 상·하수도 시설
- 발전시설 및 통신시설
- 방파제 및 선착장
- 기타 민방위를 위한 시설 등

○ 응급복구 : 파손된 부위에 대한 응급조치로 시설 본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회복

○ 민방위대의 응급복구대상 기준과 범위

- 중장비가 동원된 작업을 지원하거나 단순노무의 제공만으로 복구가 가능한 경우
-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시설로서 응급복구를 위하여 기술지원대의 기술장비와 통·리민방위대의 단순노동력의 제공만으로 응급복구가 가능한 경우

○ 사태발생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민방위대원중에 피해를 당한 대원은 자신의 피해부터 우선 복구토록 하고 공공시설물 등의 응급복구는 피해지역 인근 민방위대원을 동원하여 복구

○ 인근 민방위대의 지원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대원 자신의 피해가 막심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대원의 동원을 유예하고, 지역내의 피해가 없거나 적은 대원을 동원하여 사태 확대방지와 중요시설물 응급복구

○ 장시간 응급복구로 작업의 능률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원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임무수행

- 사전에 치밀한 응급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원을 정확히 판단
- 민방위대별, 소·분대별 및 개인별 윤번제 실시
- 응급복구대상이 방대하여 민방위대의 인력이 부족한 경우 예비군 등의 지원을 받아 응급복구 목표 조기 달성
- 개인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친 대원 참여 유도

다) 인명 및 재산보호

○ 경보전파 및 대피유도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면 경보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전달하고 공습시에는 주민을 가까운 대피소에 대피토록 유도하고 기타 재난시에는 위험지역외로 대피토록 조치

○ 주민통제 및 소산

- 민방위사태의 예방 및 수습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임의활동을 통제
- 민방위사태 발생지역이나 위험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피난 조치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민방위사태 발생지역에서 주민통행이나 차량운행 통제
- 공습시에는 도심권의 밀집된 차량을 외곽지로 소산시키고 외곽지 차량의 도심권 진입을 억제하며 특히 유조차나 위험물 적재차량은 외곽지로 대피시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시설물·건물 및 일반차량과 격리
- 옥내·외의 모든 전등 및 차량이나 선박의 조명장치에 대한 차광 또는 소등 지도

○ 소화활동

- 화재발생상황을 지역주민 및 소방관서에 신속히 전파하고 진화작업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민방위사태로 인하여 발생된 부상자를 병원에 운반하여 치료케 하고 위급시에는 응급처리를 실시토록 하며, 파괴된 건물 등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 구조
- 폭풍·폭우·폭설 등으로 인하여 고립된 지역의 주민과 표류 및 조난된 선박 등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구조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불발탄 등 위험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접근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라) 주민계도

○ 적의 침공 또는 침공이 예상될 경우 주민이 동요되므로 자기가족은 물론 이웃 주민들을 잘 설득하여 유언비어에 들뜨지 말고 절대 안정하도록 지도

○ 민방위대장과 분대장은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주민들이 집밖에 나오지 말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정부의 지도에 따르도록 조치

○ 전쟁발발은 무력으로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고 광분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알리고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뿐이라는 국민공감대 조성

마) 군사작전 노력지원

○ 군사작전을 위한 노력지원 요청으로 동원된 민방위대는 다음과 같은 임무 수행

- 군수물자 운반·하역지원

- 부상자의 후송지원

- 개인호 구축, 철조망 가설 등 전술공사에 따른 노력지원

- 보급로의 응급보수작업 지원 등

바) 기상경보별 대비

○ 주의보 발령시

【 행정관서 】

- 지방공무원 비상근무체제 유지

- 강우(설)량, 풍속 및 풍향 등 확인 및 전파

- 상황유지 : 근무자 이탈방지, 시장·군수,읍·면·동장 관외 출장금지

- 산하기관 상황실 유지관리 점검

- 통신선 점검 및 보수

- 재해대책요원 대기

【 민방위대 】

- 민방위대장 출타억제(관내행선지 예고)

- 복구자재·장비 점검

- 경보망 및 경보시설·장비 점검

- 위험지역 점검(인근 거주대원)

- 경보전파 및 신고(신고망 활용)

- 상습위험지역 주민 대피

- 등산객 조난방지

○ 경보발령시

【 행정관서 】

- 지방공무원 비상근무체제 유지
- 강우(설)량, 풍속 및 풍향 등 확인 전파
- 민방위재난상황실 비상근무대기
- 시장·군수 및 읍·면·동장 관내상황 파악 대기
-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장비·자재 확보 및 점검
- 비상생필품 준비(천막, 취사도구, 의류, 침구, 식량 등)

【 민방위대 】

- 민방위대장 정위치 근무
- 대원 및 유관기관 연락체제 점검
- 대원 및 주민 비상대기(비상연락망 활용)
- 대원 소집 임무부여(개인별·대별)
- 경계조 배치 및 위험개소 순찰점검
- 경보전파 및 신고(신고망 활용)
- 상습위험지역 주민대피
- 등산객 조난방지

Ⅱ. 주민자율신고체제 확립

1. 주민신고망 현황

가. 연 혁

○ '75. 10. 20 민방위대 창설과 함께 민방위대 임무로 국민 신고망 구성 운용

○ '82. 1. 22 군·경·예비군 등 다원적 운용의 신고망을 행정자치부로 통합 일원화

- 경찰대용, 예비군, 군부대, 민방위, 반공연맹신고망

나. 주민신고망 : 총 29,498망

(단위:망)

기본신고망	특별관리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19,511	1,776	3,142	5,069

다. 신고망 운영·관리

○ 매년 정기(2회) 및 수시(분기1회이상) 정비·보완

○ 신고자에 대한 표창, 보상금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설정 운영

○ 언론·방송사와 협조 홍보활동 지속적 전개

2. 주민신고망 보강 및 관리 강화

가. 주민신고망 정비·보강

○ 정비기간

· 정기정비 : 2월, 6월(집중홍보기간)

· 수시정비 : 분기 1회 정도(3, 6, 9, 12월)

※ 정비결과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도·군·경에 통보

○ 주　　관 : 시·군

○ 정비대상

·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신고망 정비·보완

· 임무에 부적절하거나 부적합한 신고원 교체

나. 지역특성에 맞는 신고망 구성 및 관리 강화

1) 도시(읍 이상) 지역

○ 반단위를 기본으로 조직하되

○ 아파트지역, 공단 등 특수지역은 생활권역단위로 구성

2) 농·어촌(면) 지역

○ 자연부락단위로 조직하되

○ 산간·오지·해안지역 등은 소규모 촌락단위로 구성

○ 농공단지 등 신규집단시설에 "신고망" 보강

3) 직　장

○ 직장민방위대 및 예비군이 편성된 직장과 신고망이 필요한 직장단위로 조직

4) 관리책임자

○ 통·반장 자연부락책임자, 직장장 등이 책임관리

○ 지역여건에 따라 적임자를 선정하여 관리

다. 특별관리망 운영

1) 대　상 : 군·경에서 대공취약지로 지정한 지역

2) 관리책임 : 시장·군수

3) 특별관리망 운영관리

○ 대공취약지 특별관리망 지정은 군·경과 협의하여 확정

○ 취약지관리카드 작성 비치 활용

○ 도, 시·군 단위로 정기지도·확인 실시

4) 관리감독 및 교육강화

○ 행정관서 업무기능별로 관리담당책임제 실시

〈 예 시 〉

- 경　　찰 : 호텔, 여관, 집단하숙촌, 여인숙
- 환경위생 : 음식점, 다방, 이·미용업소, 유흥업소, 전자오락실
- 수　　산 : 어촌, 해안지대
- 관　　광 : 관광지, 유원지, 역, 터미널
- 보　　건 : 약국
- 소방, 상공 : 시장, 상가, 백화점 등

○ 업소관련단체를 통한 교육·홍보

·분기 1회 업소 기회교육 활용 주민신고 교육·홍보

〈 예 시 〉

- 요식업협회 : 식당, 주점, 싸롱
- 다방업조합 : 다방
- 숙박업협회 : 호텔, 여관, 여인숙
- 농수산협회 : 농·어촌

5) 특별관리망의 유관기관 통보 확행(도·군·경)

ㅇ 주민신고망 정비후 신고요원 변경사항 통보 철저

ㅇ 군·경 등 유관기관의 반기별 주민신고 접수처리상황 파악관리

라. 이동·고정신고원의 정예화

1) 이동신고원

가) 구 성 : 읍·면·동단위로 10~20명이내로 구성

ㅇ 대 상 : 업무성질상 지역실정과 지리에 밝은 자 우선

- 집배원, 전기·수도검침원, 외판원
- 도로·하천·산림감시원, 환경미화원, 운수·철도·관광종사원, 택시운전기사, 각급기관 문서사송원, 선박종사자
- 민간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원, 청원경찰, 아마추어 무선사, 경비용역업체 종사자, 등산인, 낚시인, 어민

ㅇ 역 할 : 거동수상자, 각종 범죄, 민방위사태, 기초질서 저해사범 등의 신고 및 주민계도

ㅇ 위촉권자 : 시장·군수

나) 이동신고원의 관리·운용

ㅇ 기관장 표창, 격려금 지급 및 기념품 증정 등 인센티브 부여

ㅇ 년 1회 이상 간담회 개최 및 행사지원 격려

ㅇ 분기 1회 이상 소속기관·단체장 교육·홍보

ㅇ 주민신고 홍보물, 신고요령 책자, 전단 등 제작 배포

다) 관리 감독 및 교육 강화

ㅇ 읍·면·동장을 이동신고원 관리책임자로 지정

ㅇ 유관부서 및 실·과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

- 경 찰 : 자율방범대, 청원경찰, 경비용역업체 종사자
- 우체국 : 집배원
- 운 수 : 운전원

- 수　도 : 수도검침원　　- 청　소 : 환경미화원
- 상　공 : 외판원　　- 한　전 : 전기검침원
- 소　방 : 의용소방대원

2) 고정신고원

가) 구　성

○ 선정기준

- 교통관문지역의 대중이용업소 또는 이용장소중 지역실정에 맞게 선정
- 범인성 위해환경업소 종사원을 신고요원으로 위촉

○ 대　상

- 업소의 대표 또는 종사원(요식업소, 숙박업소, 이·미용 업소, 다방, 매점, 약국 등)

○ 역　　할 : 이동신고요원과 동일

○ 위촉권자 : 시·군 지역방위협의회의장

나) 고정신고원의 관리·운용 : 수혜 및 행정편의 제공

○ 주민의견 수렴 숙원사업 우선 해결

○ 사소한 법령위반사항 자율보완 강구 등

다) 관리감독 및 교육강화 : 특별관리망에 준함

○ 행정관서 업무기능별로 관리담당책임제 실시

○ 업소 및 관련단체를 통한 교육홍보 강화

3) 신고원 평소관리 강화

가) 신고원 위촉행사 개최

○ 시　기 : 매년 3월(추가 위촉시는 수시)

○ 수여자 : 시장·군수 위촉장 직접수여
(지역방위협의회의장 명의)

○ 행사내용 : 위촉장수여, 임무부여 및 활동요령교육 등

나) 교육·훈련 및 격려

o 정기교육(관련부서, 협회 및 단체 등과 협조)

- 시·군 주관 : 연 2회 소집교육
- 읍·면·동 주관 : 분기 1회 소집교육
- 통·리·반장 주관 : 월 1회 간담회

o 기관장 서한발송 : 집중홍보기간중

o 주민신고 모의훈련 : 집중홍보기간중

다) 활동실적 점검

o 망별 신고망도 및 신고원 명단 비치

- 시·군, 읍·면·동 사무실에 신고망도 비치(신고요원 표시)

o 개인별 활동실적 관리(추후 사진제작 참고자료 활용)

o 신고원 행사지원 :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

3. 주민신고체제 확립

가. 주민신고홍보 강화 및 신고의식 고취

o 전 국민의 신고 생활화로 의식제고

o 주민신고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

o 주민신고원의 홍보요원화 및 주민신고관련 홍보물 배포

o 반상회 등 주민모임시 신고대상 및 요령 등 홍보

o 지명수배자 등 긴급신고사항 수시 전파

o 각종 주민신고 홍보물 및 신고정보 우선 전파

o 신고망 관리책임자 집에 신고망도 및 신고원명단 비치 활용

나. 주민신고 대상범위의 확대

o 간첩, 거동수상자, 강·절도, 집단폭력 등 범죄신고

o 각종 재난발생 및 위험요소 신고

o 시민건전생활 위해요소 신고 등

<신고대상 예시>

○ 거동수상자 신고

- 아파트·주택가 주변을 이유없이 배회하는 자
- 일정한 직업없이 방(가정집, 여관 등)을 얻어 장기간 기거하는 자
- 이유없이 이웃집 등에 대해 이것 저것 물어보는 자

○ 범죄발생 징후사례

- 금융가, 상가, 주택가 등에 시동을 걸어 놓고 있거나, 엔진키를 꽂아 놓은 채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차나 오토바이
- 이유없는 전화가 자주 오는 경우
- 이상한 물품을 갖고 있거나 부자연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자
- 외판원, 검침원을 빙자하여 이상한 언행을 하며 방문하는 자
- 대문벨을 자주 누르고 질문하면 응답이 없는 경우
- 외부인이 까닭없이 자주 방문하는 경우

○ 각종 재난발생 및 위험요소

- 호우시 축대, 담장, 벽체, 제방 등에 균열이 가는 경우
- 제방침식 유실 등으로 붕괴 또는 제방이 넘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각종 조난사고 및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시민건전생활 위해요소

- 음란퇴폐영업, 부동산투기, 도박 등 퇴폐조장행위
- 교통위반, 자연훼손, 불법주·정차 등 무질서행위
- 본드흡입, 마약밀매, 부정식품 판매행위
- 부녀자 납치·희롱, 노약자에 대한 폭언 등 반윤리행위

다. 주민신고 접수·처리체계 확립

1) 주민신고대상 홍보

- ○ 각종 매스콤 및 홍보물 이용, 신고대상 및 요령 지속적 홍보
- ○ 반상회보 게재 및 반상회 날을 주민신고 홍보일로 지정 운영
- ○ 지역적 시기적으로 긴급히 신고가 요구되는 사항 긴급전파
- ○ 집중홍보기간 운영 및 각종 교육기회 이용 적극 홍보

2)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

- ○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 방문조사와 신고자의 비밀유지, 신변보호방안 강구
  - 범죄신고자 보호및보상에 관한 규칙 참조
- ○ 행정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의 신고사항 종합파악 관리
  - 민원실에 신고접수처리대장 비치 활용
- ○ 신고사항중 타기관에 이첩사항 처리결과 파악 관리
- ○ 신고사항 명확한 처리 및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처리결과 통보

3) 우수신고사례 적극홍보

- ○ 신고사례집 발간 및 정기 간행물 등에 게재 전파
- ○ 각종 교육시 주민신고 교육자료로 활용

4) 접수 및 처리사항 관리

- ○ 주민신고 추진태세 실적보고시 반영

4. 범국민적 신고의식 고취

가. 주민신고의식의 생활화

1) 대대적인 주민신고운동 전개

- ○ 흉포화·지능화되어 가는 범죄로부터 나와 가정을 보호하는 길은 오직 투철한 주민신고 뿐이라는 인식 확산

○ 신고요원, 사회봉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각급 지역·직장단위에서 신고의식 확산운동 전개

○ 방송·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 각급 사회교육, 학교교육 등을 통한 신고의식 고취

○ 주민간담회,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한 계도활동 전개

2) 주민신고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가) 홍보물 제작 대국민홍보 활용

○ 새로운 홍보물 제작

- 중 앙 : 생활드라마를 통한 TV 홍보물 제작
- 도 : 도(시·군)당 1홍보물 제작 원칙

○ 기존 VTR 적극 활용

- 사랑하는 억순이(KBS), 양촌리 112(MBC) :('95제작 방영분)
- 고향친구(KBS), 용감한 종기아버지(MBC) :('96제작 방영분)
- 좋은 일(MBC) : ('97제작 방영분)
- 신고합시다(MBC) : ('98제작 방영분)
- 잡초(KBS), 양촌리 전설(MBC) : (`99제작 방영분)
- 이상한 버릇(KBS) : (2000제작 방영분)

○ TV·유선방송 및 홍보책자 이용 적극 홍보

- 예비군, 민방위대원 및 각종 직능단체 교육시 활용
- 학교교육, 주민 기회교육시 VTR 상영
- 금융기관, 각급 민원실 등에 책자, 팜프렛, 만화 등 제작 비치
- 지역신문, 시·군정지, 사보 등에 게재, 각가정 배포

나) 매스컴 및 지역유선방송 활용

○ 매스컴을 통한 대국민 홍보

- 분기 1건이상 신고우수사례 현지취재 보도
- 주민신고의식 고취를 위한 기획물 제작 보도
- TV 등에 자막을 활용한 주민신고표어 등 홍보

ㅇ 대중이용시설 안내방송 및 계도문 부착 홍보

- 유관기관과 협조
- 열차, 버스 및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이용 홍보

ㅇ 지역유선방송 적극 활용

- 지방(시·군) 유선TV방송사와 협조
- 행정자치부제작 VTR 및 공익광고(CF) 등 방영

나. 체계적인 주민신고 교육실시

1) 기회교육

ㅇ 대 상 : 민방위, 예비군, 직장단체, 새마을교육 참여 주민

ㅇ 방 법

- 교육주관기관과 협조, 주민신고교육 필수과목 채택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보조자료 지원 및 강사초빙 협조

2) 소집교육

ㅇ 대 상 : 특수직종 종사자 및 고정신고원

ㅇ 주 관 : 시장·군수(경찰서장 협조)

ㅇ 시 기 : 반기 1회

ㅇ 방 법 : 업소별, 계층별로 실시되는 직업교육시 주민신고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채택

3) 순회교육

ㅇ 대 상 : 대공취약지 주민

ㅇ 주 관 : 시장·군수

ㅇ 시 기 : 반기

ㅇ 방 법 : 행정기관은 주민소집과 교재지원을 하고, 군·경찰은 위문공연, 대민진료, 농기구 및 가전제품수리, 장비전시, 반공 및 주민신고영화·VTR 상영 등

4) 학교교육

○ 대 상 : 초·중·고등학교

○ 시 기 : 도덕, 국민윤리, 사회 등 교육시간 및 조회시간

○ 방 법

- 교육자료는 시·군, 읍·면·동단위로 협조제공

- 시·군 교육청별로 "주민신고 시범학교" 지정

※ 귀순자의 북한실상 및 생활체험강연회와 병행실시

5) 민방위 핵심요원 교육

○ 대 상 : 통·리대장, 통·리기동분대·소대장, 직장대장, 기술지원대분대장, 민방위담당공무원 및 교관요원

○ 주 관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과(천안소재)

○ 방 법

- 교육과정별, 기별 필수교과목으로 주민신고교육 채택

다.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홍보시책 발굴(예시)

사 례 1

○ 평소 각급 기관 및 직장교환대에 주민신고 안내내용을 녹음, 전화대기 시간을 이용 홍보

○ 자동기상예보전화(131) 및 114 전화안내시 신고요령 홍보

사 례 2

○ 병따게, 책받침, 민원안내서, 각종고지서, 승선권 등에 주민신고 홍보용 각종표어 게재 배포

○ 의·약사협의회에서 약봉투에 홍보표어와 신고번호 게재 배포

○ 주민신고 안내전화 스티카 제작 배포

사 례 3

○ 주민신고VTR "이런것은 신고합시다" 유선방송 이용 방영
○ 극장에서 영화 상영전에 주민신고 안내방송 및 VTR 상영
○ 지역생활신문 활용 주민신고 홍보

라.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

1) 시 기 : 2001. 6월중(10일간)

2) 주 관 : 행정자치부, 지역방위협의회(도, 시·군, 읍·면·동)

※ 협조 : 국가정보원, 교육청, 군부대, 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3) 주요내용 : 주민신고생활화 분위기 조성

○ 대국민 집중홍보 및 교육실시

- 기관단체별로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전개
- TV, 라디오, 언론매체, 지역유선방송 활용
- 주민신고원에 대한 일제교육 실시

○ 주민신고망 일제 점검·정비

- 지역실정에 맞도록 신고망 정비 보완
- 신고망책임자 및 이동·고정신고원 적임자 교체 정비

○ 주민신고 모의훈련 실시

- 민·관·군·경 합동으로 추진
- 집중홍보기간이용 지역별로 연 1회 실시
- 신고자 포상으로 신고자 사기진작

○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한 각종행사 개최

- 초·중·고등학교 웅변, 글짓기, 포스타그리기대회
- 귀순용사 강연회 및 우수신고원 간담회 등

5. 주민자율신고 여건 조성

가. 신고자 포상확대 및 신변보호

1) 주민신고보상제 강구

가) 보상대상

○ 범인검거, 재난예방에 직접적인 공헌을 한 신고자

○ 주민신고활동에 현격한 공이 있는 업소 또는 개인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 준용

나) 보상방법

○ 신고보상금 지급(예시)

- 간첩신고보상금(근거 : 국가안보유공자보상금지급규정)

· 간첩선 최고 1억5천만원, 간첩 1억원 등

- 유흥업소 심야영업신고 보상금 : 신고 1건당 3만원

○ 직종별 혜택부여(예시)

- 택시기사가 3회이상 주요 범죄신고 또는 검거시 개인택시면허 우선권 부여

- 대중음식점 및 유흥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등

다) 필요조치

○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예산확보 및 자체근거규정 마련

○ 우수신고자 표창, 기관장초청 간담회, 단합행사 및 선진지견학지원 등 사기앙양책 강구

2) 신고에 따른 불편 및 불이익 제거(검·경찰청 협조)

가) 신고단계에서의 보호대책

ㅇ 신고자가 요청하는 장소에 경찰관 등이 현지출장하여 신고내용 조사

ㅇ 신고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대리청취하는 방안 강구

ㅇ 통·반에 신고용 엽서 배포 우편사서함(전국경찰서 112호)을 통하여 신고접수

나) 수사단계에서 보호대책

ㅇ 공익상 필요에 의해 신분 공개시 가명 사용

ㅇ 본인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 본인피해가 없도록 1차적으로 간접조사

- 소환조사시에도 가명 사용 및 신원 노출 방지

ㅇ 보호담당요원을 지정하여 신고자 보호방안 강구

다) 신고자에 대한 신변노출방지 및 안전조치

ㅇ 보도자료 작성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ㅇ 신고자에 대한 인터뷰 또는 상세한 인적사항 보도 자제

ㅇ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ㅇ 신고자가 생명·신체 등에 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 안전조치 강구(『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규칙』 준용)

Ⅲ. 민방위교육 운영의 내실화

1. 민방위교육 운영

가. 민방위교육 개요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입후 1~4년차 대원

○ 교육시간 : 연 8시간(상·하반기 각 4시간)

○ 교육내용 : 소양(통일·안보)교육, 재해·재난대비 실기교육

〈민방위교육의 변천〉

○ 교육대상

· '75~'82 : 20~50세 · '83~'88 : 20~45세

· '89~'93 : 20~40세 · '94이후 : 편입후 5년까지

※ '99년이후 : 편입후 4년까지

○ 교육시간

· '75창설당시 : 4시간 · '76 : 29시간

· '77년(최고) : 30시간 · '78 : 20시간

· '82~'87 : 연 10시간 ※ '88년이후 : 연 8시간

나. 중앙단위교육

1) 민방위핵심요원 전문교육 중점실시

○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

- 민방위담당공무원 : 행정 및 실기분야 전문과정(9개과정)
- 지역·직장 민방위요원 및 민간인 : 지휘·통솔, 안보, 일상 재난 대비분야 전문과정(9개과정)
- 생활민방위교육 및 화생방특별교육과정 신설(4개과정)

○ 교육기간 : 과정별 교육목표 및 대상을 고려 설정(1~5일)

○ 교과목편성

- 통일·안보교육과 직무전문교육 병행 실시
- 교육대상별 임무 및 역할에 적합한 전문교과목 편성

2) 실제활용 가능한 실용성있는 재난대비교육 실시

○ 실기·실습위주의 참여식·체험식 교육 중점실시

○ 지역·직장민방위대장의 실기전문과정 설치운영

○ 실기·실습 전문교재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

3) 민방위요원 교육이수자 사후관리 강화

○ 민방위지휘자과정 이수자 적극 활용

- 실기강사로 위촉 활용 또는 대원교육요원으로 활용
- 지역재난대비 핵심요원으로 활용

○ 민방위요원(수방기동대 등) 과정이수자 적극 활용

4) 교육주관 :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과

다. 지방단위교육

1) 교육시기 : 2~6월(상반기), 8~12월(하반기)

○ 혹한기, 혹서기, 농번기 및 성어기를 피하고, 각종 선거일정과 교육대상인원 등을 감안 지역별로 자체교육일정 수립

2) 교육시간운영 : 연간 8시간

○ 신편대원, 일반대원 : 상·하반기 각 4시간

○ 민방위대요원 : 1일 8시간 또는 상·하반기 각 4시간

3) 교과목 및 교육방법 : 소양교육 및 실기·실습교육 병행

○ 소양교육 : 강의 및 VTR 활용(상·하반기 각 2시간)

- 통일을 대비한 국가안보관 확립 및 일반소양중심의 안전의식 정착

o 실기교육 : 현장 실기·실습 및 VTR 방영(상·하반기 각 2시간)
-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방위」 교육 중점운영
- 지역특성에 맞는 재해·재난대비교육 실시
- 지역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민방위교육시 실제훈련을 병행 또는 대체하여 재해·재난발생시 효율적 대처능력 제고
〈예시〉 화생방 대피훈련, 방재훈련 등
- 실기교육시 VTR시연에 의한 대원별 실기·실습 및 전문요원 시범실습 등 운영

4) 교육주관 : 교육대상 및 성격에 따라 도, 시·군,읍·면·동 분담실시
o 통·리대원, 수방기동대원 : 시·군 또는 읍·면·동
o 직장대원, 직장민방위대 요원 : 시·군
o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 : 도 또는 시·군
o 직장대장 : 도, 통·리대장 : 도 또는 시·군

2. 실효성있는 민방위교육 운영

가. 평화와 화해·협력시대의 통일관·안보관 확립

1) 통일·안보교육의 내실 운영
o 통일·안보교육시간 : 2시간
o 교육내용 : 통일안보 전문가·귀순자 강의 및 VTR 방영
- 통일환경의 변화와 대북정책(통일환경의 변화, 대북포용정책 추진)
-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변화(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 등)
- 북한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과 이해를 강화하여 남북화해와 협력적 측면을 확대
-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대원들의 인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균형잡힌 대북관·통일관 정립

2) 『중앙 통일·안보교육단』 구성, 순회교육 실시

○ 강사구성 : 100명 정도(귀순자 30, 통일·안보전문가 70)

○ 운영방향

- 귀순자 강연은 희망 시·군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강사지원
- 통일·안보전문가는 강사명단을 도 및 시·군에 통보하여 중요 민방위 교육시 초빙활용

나. 「생활민방위」 위주 교육으로 재난대처능력 배양

1) 재난중심 교과목 편성으로 실제사태 수습능력 향상

○ 일상생활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과목중점 운영

- 가정에서의 응급처치법, 전기·가스사용요령, 화재예방 및 진화
- 풍수해 대처요령, 인명구조요령, 산불예방 등

○ 대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교과목을 지속적 발굴

2) 시청각교재 제작 활용으로 교육효과 제고

○ 대원의 이해증진과 실습효과 제고를 위하여 실기교과목에 대한 VTR 교재 제작

○ VTR교재를 복제하여 시·군에 보급, 대원교육자료로 활용

○ 공공기관 민원실, 직장 및 다중집합장소 등에 VTR교재를 제공하여 대국민교육·홍보

3) 민방위교육장 확보 및 실기교육여건 확충

○ 강의와 실습이 병행가능한 전용교육장 확보(자체사업)

- 확보기준 : 시·군별 교육대상인원 2만명당 1개소
- 수용인원 : 1회 300명정도
- 시　　설 : 강의실, 실기실습장, 기본시설 및 편의시설

○ 기 확보된 전용교육장은 실기교육여건 확보

- 실기실습장 확보, 민방위장비 및 실습기자재 전시 등

○ 전용교육장 미확보지역은 공공대피시설, 시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

- 기존시설, 옥외 및 지상공간을 실기실습에 적합토록 개·보수
- 공공청사·회관 등 신축시 민방위교육장 확보와 연계 추진

4) 실기·실습 기자재 확보 및 관리 철저

○ 실기교과목에 따라 소요되는 기자재는 시·군에서 확보

- 붕대, 삼각건, 구명환, 소화기 등을 시·군 교육장 단위로 확보

○ 기 확보한 기자재 평시 관리와 사용전·후 점검정비 철저

5) 실기교육의 내실운영

○ 전대원이 가정에서의 응급처치법,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숙달할 수 있도록 실기교육 내실있게 운영

○ 기존교육장의 실습여건과 교육대상인원 등을 감안 교과목별로 효과적인 교육운영방법 연구 개발

○ 교육개시전 위촉강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내용, 교육운영방법, 실습기자재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다. 교육장 과밀현상 해소로 교육분위기 쇄신

1) 300명이상 과밀반 우선 해소, 200명내외의 적정반 편성 운영

○ 교육대상이 많은 대도시 지역은 교육일정을 연장하여 조정

○ 교육자원 과소지역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통합운영

2) 보충교육시 교육반 편성 운영

○ 시지역은 동단위로 편성 또는 수개동을 통합 편성운영하되, 대상인원이 과다한 때에는 보충교육기간을 연장하여 과대 교육반 해소

○ 군 지역은 대상인원에 따라 읍·면단위로 편성 운영

라. 민방위강사의 정예화 및 사기앙양 강구

1) 자질과 능력을 갖춘 강사 지속 발굴 활용

- ㅇ 장기위촉자, 부적격자 교체 및 분야별로 다양하게 위촉
- ㅇ 교육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근권역의 강사 및 저명 인사를 초빙
- ㅇ 민방위교육관 지휘자과정을 이수한 통·리대장중 자질과 능력이 탁월한 자를 실기강사로 적극 활용

2) 위촉강사의 자질향상

- ㅇ 중앙단위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 ㅇ 관련분야 세미나, 토론회 등에 적극 참관 유도 및 지원

3) 위촉강사 사기앙양 등 관리철저

- ㅇ 간담회개최, 지역단위 각종행사 참여 조치 등 사기진작 강구
- ㅇ 중앙부처 발간 각종 교육자료, 국정 및 지방행정 현안 과제와 주요시책 등에 관한 교육자료를 수집하여 제공
- ㅇ 선진지 견학 및 우수강사 해외시찰 실시 등

마. 지역단위 자율교육운영체제 확립

- 직장 민방위대장에 대한 교육 위임 -

1) 자율적인 교육운영 여건을 갖춘 직장민방위대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대장에게 대원교육 위임

2) 위임시기 : 상반기 교육개시전(1월중)

3) 위임범위 : 기본교육의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 전반

4) 위임대상 직장대의 기준

- ○ 교육대상 30명이상인 직장대
- ○ 전년도 검열성적이 70점이상인 직장대
- ○ 민방위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담요원이 확보된 직장대

5) 교육운영 지도 감독

- ○ 시장·군수가 교육운영 전반 지도·감독
- ○ 교육운영 부실 직장대는 1차 경고, 2차 위임해제
- ○ 직장대에 대하여 자체특성에 맞는 교과목과 교육운영기법 등을 개발 활용토록 지도하고 우수사례 발굴 확산

바. 민방위요원 교육강화로 전문요원 양성

1) 교육주관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2) 교육대상 및 교육중점

- ○ 통·리대장 및 직장대장 : 민방위대 운영 및 지휘통솔능력의 배양과 각종 재난대처요령 등 실기교육
- ○ 기술지원대원 및 화생방분대원 : 실제사태 대응능력 제고, 의료·구호, 토목·건축, 전기·통신 및 화생방방호 등 실기교육
- ○ 수방기동대원 : 수해예방, 수방장비사용법, 인명구조요령 등 실기교육

3) 교육시간 : 연간 8시간(1일 8시간 또는 상·하반기 각 4시간)

4) 교육강사 : 해당분야 전문가, 실기교육강사 활용

사. 민방위대원 교육편의시책 운영

1) 민방위상설교실 운영

- ○ 시·군, 읍 및 기타 필요한 지역에 설치

○ 상설교실별로 운영기간을 설정하고 사전홍보

○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일자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상설교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 대원의 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원의 "희망일"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2) 순회교육 실시

○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이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도서·낙도·산간·오지 등)의 대원을 위하여 시·군에서 순회교육 실시

○ 교육대상인원이 과소한 경우 인근 수개마을 및 도서 등의 지역대 및 직장대를 통합하여 교육실시

3) 야간교실 및 일요교실 운영

○ 시·군 및 읍지역에서 상설교실과 연계 운영

○ 지역별로 운영일자를 선정하고 사전홍보

○ 주간 및 평일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하여 교육실시

4) 생활권단위 교육 실시

○ 주소지 교육장보다 인근교육장이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한 경우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인근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5) 현지교육제도운영

○ 장기출타 등 부득이 한 사정으로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6) 민방위취업은행 운영

○ 대상지역 : 인구 20만이상 시지역 및 국가·지방공단이 있는 지역

○ 취업창구설치 : 민방위교육장, 시·군 민방위담당과, 읍·면·동사무소

○ 취업정보 수집제공

- 구인정보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관내기업체 등에서 수집
- 구직신청 접수 및 취업알선은 취업창구에서 전담

7) 도서·낙도, 산간·오지대원 통신교육 운영

○ 대원의 시간·경제적 부담 완화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장 교육대신에 통신교재를 숙지한 후 내용을 요약 또는 단답형 문제중 선택하여 작성 제출하면 교육이수로 인정

8) 생활민원 접수처리

○ 민방위교육장에 교육기간중 민원창구 설치

○ 각종 증명서발급 등 대원의 생활민원을 접수하여 당일 교육 종료시까지 발급

9) 교육면제 및 유예사유 소멸자의 교육시간 단축

○ 대 상

- 교육면제자 : 형 집행중인자, 3월이상 외국여행 체류중인자 등
- 교육유예자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등
- 주 관 : 시장·군수

○ 운 영 : 기본교육과 동일하게 1시간을 축소하여 4시간만 이수

10) 민방위시범훈련 참여대원 등 민방위교육이수 인정

○ 대 상 : 민방위의 날 등 각종 시범훈련 참여대원

○ 주 관 : 시장·군수

○ 운 영

- 민방위훈련 등 각종 시범훈련에 참여 또는 동원된 경우 참가시간 교육이수 인정
- 시범훈련 실시현장에서 참석확인서 발부 교육이수 인정

아. 민방위교육운영의 효율성 제고

1) 민방위 교육운영상황 평가

ㅇ 개 요

- 대상지역 : 도 및 시·군
- 시 기 : 5월, 11월(2회)
- 점검방법
  - 각종 교육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현지확인 병행
  - 도 및 시·군 자체실정에 맞게 계획 수립 점검

ㅇ 평가항목

- 민방위강사 관리 운영 및 교육장 환경
- 교육기강 확립 등 교육의 진지성 및 실효성
- 교육 및 편의증진시책 추진상황 확인 등

ㅇ 평가결과

- 우수사례는 파급 확산, 훈련의 질적향상 도모

2) 교육기강 확립

ㅇ 출석관리의 엄정

- 교육참석표, 연명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개인별 출석점검
- 대리참석, 지참 및 중도퇴장사례 등 예방철저

ㅇ 질서와 절도있는 교육분위기 조성

- 음주소란 등 교육자세 불량자 퇴장조치
- 민방위복장, 모자 및 완장착용 권장
- 금품징수(성금 등 각종모금), 상품선전 판매행위 등 금지
- 교육시 핸드폰 및 호출기 등 사용금지
- 교육장 주변의 잡상인 근절

○ 무단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부과대상 : 2001년 민방위업무 추진지침 참조
- 부과주관 : 시장·군수
- 대리참석자 적발시 교육대상자의 과태료 중과

※ 과태료 부과후에는 과태료수납부에 의거 관리

○ 용역업체의 영업사례 확인시 고발 등 의법처리

3)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시 민방위교육 실시

○ 교육제외대상(41세이상)에 대한 예외적용 중지

○ 주민등록 재등록시점부터 교육연차 적용(단 45세까지)

○ 주민등록말소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 기록관리 철저

4)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개발 추진

○ 주　　관 : 도지사, 시장·군수

○ 시책분야 : 교육운영전반에 관하여 대원의 관심과 호응을 유발하고 교육효과를 높일수 있는 시책

○ 시책추진 : 시범운영방법으로 추진하고 효과 분석 측정

○ 평가활용 : 우수시책은 파급 확산하고 2001년 역점시책평가에 반영

5) 민방위의식 정착을 위한 국민교육 및 홍보실시

○ 청소년 생활민방위 교육운영

- 대　　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 주　　관 : 도, 시·군
- 교육회수 : 연 4회(상·하반기 각 2회)

· 학교실정에 따라 필요시 반기 1회로 통합실시

○ 청소년 민방위학교 운영

- 1일 민방위학교 운영 : 중·고생 1,200명(전 시·군)
- 교육내용 : 화재, 풍수해, 교통사고 등 생활민방위교육

○ 민방위교재를 활용한 국민교육 실시

- 주　　관 : 도, 시·군
- 활용교재 : 민방위대원 교육용 VTR교재(행정자치부, 시·도 제작분)
- 실시방법

· VTR교재를 민방위대원 교육후 공공기관, 민원실, 학교, 직장 각종사회단체,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제공(대여)

- 소속직장, 단체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교육·홍보 실시 권장

Ⅳ. 민방위훈련의 적극적 운영

1. 매월 15일『민방위의 날』훈련 실시

가. 2001년 훈련계획개요

구 분	세 분 류	실시월	훈 련 내 용
민방공 훈 련	대피훈련 -정기대피훈련 -불시대피훈련	연4회 실시 (3. 6. 11월) (8월)	·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 훈련 · 전시국민행동요령 교육 · 습득 · 불시민방공대피훈련 - 날짜 지정, 시간 미지정
	사태수습훈련	(3. 6. 11월)	· 주민 · 차량통제훈련 ·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훈련 · 화재 · 단전·단수·통신두절대비훈련 · 화생방방호및기타 피폭시 대비훈련
방 재 훈 련	전국단위 시범훈련	(4. 6. 10월)	· 16개 시도 윤번제 실시 - 2001년 광주, 전북, 울산실시 · 시도단위 사태수습 및 방재훈련
	광역방재훈련 (시·군단위훈련)	(4.5.9.10월)	· 도내 인접한 2~3개 시군이 연합하여 실시 · 1개 시군 훈련주관, 인접 시군 훈련지원 · 광역방재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시군단위 훈련 실시
	지역 · 마을단위 훈련	연3회 이상 자율실시	· 지역 · 마을단위별 취약재난 선정 · 체험식 · 실습식 반복훈련실시(3회) · 주민 자체적인 방재능력 배양
	직장 · 단체훈련	연1회 이상 자율실시	· 직장 · 단체별 위해요소 선정 · 연1회 이상 자체방호훈련 실시
비상소집훈련		연 1회 (2. 3월)	· 민방위대원 응소능력 점검 · 제대편성 및 임무고지 · 교육 ※ 민방위소집교육대상자는 제외

2. 실효성 있는 민방위훈련

가. 민방공훈련

1) 민방공 대피훈련

가) 훈련개요

o 훈련시기 : 연 4회(3, 6, 8, 11월)

- 정기 민방공 대피훈련 : 3회(3, 6, 11월)
- 불시 민방공 대피훈련 : 1회(8월 을지연습기간 중)

o 훈련지역 : 전국 일원

- 읍이상 도시지역(면단위는 주요직장, 교통요충지, 항만등 포함)

o 훈련시간 : 20분〔공습(15분)⇒경계(5분)⇒해제〕

- 정기훈련 : 날짜·시간 지정(15일, 오후2시)
- 불시훈련 : 날짜 지정, 시간 미지정

o 훈련대상

- 주민(기관, 직장, 단체, 업소 등 포함)
- 교통통제 : 차량, 선박, 항공기, 열차 등

※ 긴급사태로 출동중인 군작전, 경찰, 소방, 구급·긴급 복구차량 등은 제외

o 훈련내용 : 경보전파 및 대피소산, 대공감시, 직장방호 등

o 훈련경보

- 경보발령 :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령
- 경보단계 : 공습경보(3분) ⇒ 경계경보(1분) ⇒ 해제
- 경보취명 및 전파체계

·경보단말전파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 지방경보단말 ⇒ 경보전파

·방송전파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 라디오방송사 (KBS, MBC, SBS, CBS 4개 방송사) ⇒ 경보방송전파

※ 경보취약지역은 사이렌, 종 등 경보대체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파

나) 민방공 대피훈련의 내실화

ㅇ 민방공훈련 대피유도 '구역책임제' 운영

- 경찰과 합동으로 대피유도팀을 구성, 팀별로 책임구역 지정

·팀장 : 경찰, 공무원 등

·조원 : 민방위대원·자원봉사대 등 대피유도요원 3~5명

ㅇ 대피유도요원의 정비 및 사전교육

- 유도요원을 젊고 활동성이 있는 대원으로 교체
- 대피유도활동 등 집합교육실시 및 근무기강 확립
- 민방위복, 완장, 호각, 메가폰 등 장비지참후 현장 투입

ㅇ 다중집합장소·교통혼잡지역에 대한 대피유도 강화

- 근무실태에 대한 상급자(상급기관)의 지도·감독강화, 유도요원의 증강 배치 및 대피통제 강화

ㅇ 직장·단체의 대피훈련 적극 참여 유도

- 실제 대피와 대피중 안보·안전관련 교육 및 장비 실습 실시

ㅇ 직장·단체에 대한 협조공문발송 및 현지 지도·확인 실시

2) 사태수습훈련

ㅇ 훈련시기 : 연 3회(3, 6, 11월)

ㅇ 훈련시간 : 대피훈련 종료후 30~60분정도

ㅇ 훈련주관 : 시·군

ㅇ 훈련장소 : 시·군별 직장·지역 1개소 이상 지정 실시

- 가급적 직장을 지정하여 훈련효과 거양

ㅇ 훈련대상

- 전시기능유지가 필수적인 주요직장(보안시설, 방산업체 등)
-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산업체(공장, 제조업체 등)
- 위해업소(유독가스·도시가스·화공약품 취급업체 등)
- 다중집합장소(역, 터미널, 백화점, 대형상가지역 등)
- 대공취약지 등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훈련내용 : 실제상황대비 종합훈련

-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훈련
- 건물붕괴, 화재·단전·단수·통신두절 대비훈련
- 화생방 방호훈련, 기타 피폭시 사태수습훈련

○ 훈련방법

- 지역 및 직장단위로 지역주민과 유관기관·단체 참여실시
- 실제상황에 부합되도록 다양하고 종합적인 훈련실시

나. 방재훈련

1) 광역방재훈련(시·군단위 훈련)

○ 훈련시기 : 연 4회(4, 5, 9, 10월)

- 민방위의 날 훈련시 30~60분정도 실시
- 지역별·계절별 실정에 맞는 훈련 종목 선택

○ 훈련주관 : 시·군

- 훈련지역의 해당 시·군이 연합(2~3개)하여 훈련추진
- 광역방재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기존의 시·군단위 훈련 실시

○ 훈련참여

- 민방위대원·주민·경찰·소방·군부대 등
- 한전·적십자사·보건소·유관기관·단체 등 공동 시연

○ 훈련운영

- 광역방재를 가상하여 2~3개 시·군이 연합하여 실시
- 윤번제로 1개 시·군이 훈련을 주관하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인력과 장비를 지원
- 훈련참여 인원 및 참관인원은 연합 시·군 균등 참여
- 연합 시·군은 훈련종목을 달리하여 광역훈련 계속실시

2)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가) 훈련개요

○ 훈련주관 : 시·군(읍·면·동)

- 시·군(읍·면·동) 주관하에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

○ 훈련회수 : 개소당 연 3회이상

○ 훈련일자 : 사태수습·방재훈련시 30~60분 정도

- 농번기, 지역행사 등을 감안, 훈련일자 주민자율결정 가능

○ 훈련지역 : 시·군별 2개소(464개소)

○ 참여인원 : 민방위대원·주민 등 개소당 30~50명 정도

○ 훈련운영

- 지역별로 사전에 선정된 취약분야에 대한 실습식 훈련

- 동일종목에 대한 훈련을 연 3회이상 반복실시

- 훈련참가자별로 부여된 역할에 대한 체험식·실습식 훈련

○ 훈련지역에 인센티브 부여

- 훈련지역 1개소당 민방위장비 등 구입을 위해 교부세 지원

- 훈련참여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 면제

나) 지역·마을단위훈련의 실효성 제고

○ 훈련일자를 주민자율로 결정

○ 행정기관 보유장비 사용에 필요한 보조인력 지원

○ 사전준비회의와 예행연습 실시

○ 장비는 지역내(마을회관 등)에 비치

○ 훈련책임자에 대한 교육 실시

3) 전국단위시범훈련

○ 훈련시기 : 연 3회(4월-광주, 6월-전북, 10월-울산)

- 민방위의 날 훈련시 1시간정도 실시

○ 훈련주관 : 시·도(우리도 해당없음)

- 훈련지역의 해당 시·군과 공동 추진

ㅇ 훈련참여
- 민방위대원·주민·경찰·소방·군부대 등
- 한전·적십자사·보건소·유관기관·단체 등 공동 시연
ㅇ 훈련운영 : 16개 시·도 윤번제 실시
- 훈련시기별 취약재난과 관련 있는 훈련종목 선정
- 전국훈련에 걸맞는 훈련규모 및 참관범위 확대
- 새로운 훈련기법 개발 및 파급의 기회로 활용
ㅇ 훈련지역에 인센티브 부여
- 국고보조금 5배 차등지원, 기타 재정지원 등

4) 직장·단체훈련

가) 추진방침

ㅇ 민방위의 날 훈련(사태수습·방재훈련)시 동시 실시
- 직장대별 연 1회 이상 훈련 실시, 자체행사나 교육과 연계
ㅇ 실정에 맞는 특성훈련 실시로 관심과 활력 제고
- 취약한 분야를 훈련종목으로 선정, 실정에 맞게 운영
- 대규모 직장대는 독자적 운영, 중·소규모대는 합동 운영
ㅇ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관기관·단체간 지원 강화

나) 훈련운영

ㅇ 민방위대원이 300명 이상인 단체·직장에서는 연 1회 이상 훈련 실시 유도
ㅇ 가장 취약한 분야를 훈련종목으로 선정
- 안보분야 : 공습에 따른 직장 방호, 화생방 방호 등
- 안전분야 : 화재·유독가스·화공약품 누출대비 등
ㅇ 예방적 차원의 방호력과 사태발생시 수습능력 제고
- 직장 전부서의 직원이 총참여, 실제적인 훈련 실시
- 안전대피를 위한 경보전파 및 직원통제훈련 실시
- 자체방호시설 및 장비활용, 사태예방 및 수습능력 제고
- 사태발생시 인명구조, 응급조치, 후송 등 수습복구

○ 지역별로 특정시기에 집중 실시되지 않도록 분산 운영
- 취약요인과 지역·직장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 시군별 연간계획 수립
- 직장·단체의 자체훈련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 수렴
○ 지역단위 소방·경찰·군부대 등의 인력·장비를 적절히 지원 배치
- 특정 직장대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사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인력장비의 배분과 역할기능을 명확히 구분 조치
○ 각급 기관장 참관 격려, 관계공무원의 훈련상황 지도지원
- 지역단위 기관·단체장이 훈련직장대에 고루 참관, 임직원 위로 격려

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

○ 훈련시기 : 연 1회(2~3월중)
○ 주　　관 : 시장·군수
○ 대　　상 : 전 민방위대원(교육대상자 제외)
○ 소집방법 : 예고훈련, 필요시 불시훈련 가능

○ 훈련시간 운영
- 발령시간 : 오전 7시 전후(기관장이 실정에 맞게 운영)
- 응소시간 : 지역-발령후 30분, 직장-발령후 1시간 이내
○ 소집 및 훈련장소
- 지역민방위대 : 회관, 학교운동장, 대피소 등
- 직장민방위대 : 직장내 회의실, 강당, 대피소 등
○ 소집통보 방법
- 지역민방위대 : 통지서 발부, 공공게시판, 마을앰프방송 등
- 직장민방위대 : 구내게시판, 방송, 공문 등

라. 학교훈련

1) 학교실정에 맞는 대피훈련 운영

○ 경보발령과 동시에 전 교직원·학생 대피를 원칙으로 함

○ 대피시설 수용규모 감안 학년별, 반별 윤번제로 실제 대피

○ 대피시설이 없는 학교는 강당·체육관 등 대체 활용

○ 대피전담교사를 지정하여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피유도

2) 민방위훈련 시범학교 운영 내실화

○ 사태수습훈련이나 방재훈련시 가급적 시범학교를 훈련장소로 활용하고 현장중계 등 홍보강화

○ 훈련운영관리를 카드화하여 읍면동 또는 시·군에 비치 관리, 전담교사가 훈련운영상황 기록 관리

○ 우수시범학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 교육기자재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3. 민방위훈련 홍보강화

가. 훈련방송 구분운영 : 전국단위방송과 지역단위방송

○ 전국단위방송 : 행정자치부 주관

- 민방공훈련시 안내·실황·평가방송 등 총체적 운영
- 방재훈련시 안내·평가방송

○ 지역단위방송 : 도 및 시·군이 협의하여 교대로 주관

- 방재훈련시 현지실황방송

나. 훈련방송 실시

○ 훈련안내방송 : 전국단위방송(행정자치부)

- 대상방송 : TV·라디오(KBS, MBC 등 각 5개 방송사)
- 방송일시 : 훈련 하루전 방송사별로 방송(3~5분 정도)
- 제작방법

· 라디오 녹음 : KBS 라디오 전담

· TV녹화 : TV 3사(KBS, MBC, SBS) 순번 녹화

- 방송내용 : 훈련시간·경보전파·훈련종목·행동요령 등

○ 훈련실황방송

〈민방공훈련〉 : 전국단위방송(행정자치부, 관계전문가)

- 대상방송 : 전 라디오 생방송(8개 방송사, 20분간)
- 방송내용 : 주요 훈련내용·행동요령·조치사항 등
- 방송방법 : KBS-R실황, 여타방송국 KBS-R수신방송

〈방재훈련〉 : 지역단위방송(주관 방송국별 도 및 시·군계관 등)

- 방송국과 도 및 시·군이 협의하여 운영

○ 훈련평가방송

- 대상방송 : KBS 등 5개 라디오 방송사
- 방송일시 : 훈련후 방송사별로 방송(4~5분 정도)
- 방송내용 : 훈련결과 잘된점, 개선사항, 수범사례 등

다. 다양한 홍보대책 강구

○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 홍보매체 : 라디오, TV, 신문, 유선방송, 마을앰프, 반상회보, 각종 게시판 등 활용
- 계도사항 : 훈련일시 및 훈련내용, 훈련시간중 주민·가정·직장에서 해야할 일 등

○ 훈련참여 분위기 제고 : 민방위 표상 등 적극활용

- 지역순회 가두방송과 아파트 구내방송 실시
- 전직장 입간판 설치 : 『오늘은 민방위의 날』
- 민방위 가로기 게양 : 도심지 주요 가로변과 훈련장 인근지역(가급적 훈련전날 오후에 게양)

○ 백화점, 터미널, 극장, 공원, 운동장 등에서의 사전방송 및 대피시간에 라디오 방송 중계

○ 대중교통은 훈련시간대에 라디오 방송 청취

Ⅴ.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 및 효율적 운영

1. 대피시설

가. 의 의

○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 독립대피호, 건축물 지하층, 지하상가, 지하차(보)도,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구조물 및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부대시설(자가발전기, 방송통신시설, 급수시설, 공기여과기, 제독시설 및 소화기 등)

나. 현 황

○ 확보현황

소요량(평)	확보량(평)	확보율(%)	비 고
250,925	262,327	105	

※ 소요기준 : 읍이상 도시지역 거주인구 4인당 1평

○ 소요주체별 현황

계	정부지원시설	자치단체시설	공공용 지정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1,010개소	3	41	94	872
262,327평	517	6,410	15,888	239,512

다. 신규시설 확충

1) 정부시설

○ 설치지역 : 인구밀집지역 및 대공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되, 점진적으로 확대

○ 시설수준 : 민간시설에 대한 시범시설로서, 현대전에 대비한도, 시·군단위 지휘용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생방 방호시설 설치

○ 시설규모 : 개소당 200평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 설치, 점진적으로 확대

2) 민간시설

○ 설치대상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인구밀집지역 및 대공취약지의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가 330㎡(수도권지역 200㎡)이상인 건축물

○ 확충추진(건축허가부서와 공조체제 확립, 추진)

-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가급적 지하층 신축을 유도

·대형건축물(지하층 100평 이상)은 화생방 방호시설 설치 권장

·평시활동을 확대하되 비상시 활용가능하도록 설계 권장

- 신축건물로써 대피시설 용도로 활용 가능한 시설은 지정 확대 (노후 및 협소시설은 지정해제)

○ 일시다중집합 장소 지하대피시설 추가지정(역, 터미널, 시장등)

- 유시시 혼잡지역 민·관 유도요원 집중배치 대피유도
- 대피소 지정 및 안내·유도표지판 확대 부착
- 인근거주 민방위 대원을 대피유도요인으로 선발 대피유도

라. 기존시설 정비

○ 사업개요

- 사업량 : 총 1,010개소
- 사업비 : 시·군별 적의 선정 및 보수
- 사업내용 : 공기환기통, 전기시설, 방수, 출입문정비, 옹벽, 대피 및 유도표지판설치, 도색 등

마. 민방위준비명령에 의거한 시설 확보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대피시설로 사용가능하도록 명령

○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주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공공단체 및 개인소유의 대피시설을 공공용 대피시설로 지정 활용

- 60㎡ 이상의 대피시설을 대상
- 유사시 활용이 용이하며, 방호력이 우수한 시설을 우선 지정

※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시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출입구와 여러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

바. 효율적 운용

1) 유지관리

○ 유지관리 책임자 지정

- 정 : 시·군 민방위담당과장, 부 : 시설장비담당자

○ 정기점검 실시

- 담당공무원 : 시설의 내외부 상태를 월2회이상 점검후 일지에 기록
- 관리책임자 : 월 1회이상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

○ 대피시설 현황도 작성 관리

- 시설의 위치, 규모, 수용능력, 방호등급 등을 기재
-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민방위업무담당과에 비치

2) 대피시설 안내 강화

○ 안내·유도 표지판 미부착시설에 대한 표지판 부착 확행

○ 비상시 신속하고 질서있게 대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시·군별로 대피시설 위치, 규모, 대피루트 등을 인터넷,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 안내

※ 대피유도요원에게 유도요령, 대피루트 등에 대한 교육 강화

3) 평시활동

○ 유사시 신속한 주민대피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평시활용 (예 : 휴게실, 노인정, 전시장, 독서실 등)

- 고정시설물의 설치, 이동이 곤란한 물건 적치 지양

4) 평시 개방 지도

○ 폐쇄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비상시 주민들이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평시개방 유도

5) 용도폐지

○ 대상시설

- 협소(10평미만)하거나 누수, 균열, 환풍불량 등으로 활용 불가능한 시설
- 시설입지가 부적정하여 사실상 대피할 수 없는 시설 등

6) 공공용 지정해제

○ 대상시설

- 소요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지정된 경우 저등급 시설
- 주변 여건 변화와 도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고유기능 미비시설 또는 노후 등에 따라 방호력이 미흡한 시설

※ 용도폐지하거나 공공용 지정시설의 지정해제로 인하여 감소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대체할 시설을 확보하여 추진하거나 민간시설을 공공용으로 추가지정하는 등 보완조치 시행

2. 비상급수시설

가. 의　　의

○ 수원지의 파괴,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의 정상적인 급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주민의 음용수,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시설로서 지하관정 및 저수조, 자가발전기, 정수기 등 부대시설 일체를 포함

나. 현　　황

○ 확보현황

소요량(톤/일)	확보량(톤/일)	확보율(%)	비　　고
25,219	27,710	110	

※ 소요량 : 읍이상 도시지역 거주인구 대상, 1인/1일 25ℓ기준

○ 소요주체별 현황

계	정부지원시설	자치단체시설	공공용 지정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125개소	58	10	33	24
27,710톤 /일	14,518	1,990	5,747	5,455

다. 신규시설 확충

1) 정부시설

○ 2001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 14개 시·도 : 35개소

(총사업비 1,750백만원, 국고보조 525백만원, 지방비 1,225백만원

- 우리도 : 3개소(총사업비150백만원,국고보조45,지방비105)

○ 설치지역

- 급수소요 및 공급능력을 고려하여 식수난이 우려되는 지역에 우선 설치
- 주민편익 및 활용성 고려하되, 교통이 편리하고 수질이 양호한 지역에 설치

○ 시설수준

- 지하수맥이 오염되지 않고 수질유지가 가능하도록 지하암반수(심도 100m이상)를 개발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 규정된 "먹는물"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질 유지

○ 시설규모

- 개소당 일일생산능력 100톤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

○ 설치장소 선정

- 권역별 급수능력과 수량 및 수질을 고려하여 선정
- 비상시의 급수대책을 근본으로 하되, 평상시에는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지하수 제공 등 평시의 활용성과 연계
-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선정

2) 민간시설

○ 비상급수시설 설치의무화 건축물의 지속적 파악, 확보

-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지하저수조 또는 지하양수시설 설치

-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

· 지하양수시설 설치(지하양수시설 불가능할 경우 지하저수조 설치)

○ 민간자율 확보 유도

- 대상지역 : 해안, 오지, 고지대 등 지역여건상 지하수맥 부족지역
- 설치유형

· 지역단위 대형 저수탱크

· 가정단위 옥내·외 간이저수조

· 농공업용수

라. 민방위명령에 의거한 시설 확보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양수시설 또는 급수탱크, 간이여과조, 비상발전기 등 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를 명령

○ 공공용시설 지정

- 시장·군수는 필요시 국가·공공단체 및 개인소유의 일일생산능력 100톤 이상의 비상급수시설을 공공용으로 지정활용(단, 100톤 이상의 시설에 대해 지정 완료한 후에도 확보량이 소요량에 미달하는 지역의 경우 상급단체의 사전 승인 하에 지정기준을 탄력적으로 하향 조정)
- 공공용 지정 시에는 시설주와 사전 협의
- 공공용 지정시설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자(자치단체장)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2조에 의거 수질검사 실시

마. 효율적 운용

1) 유지관리

○ 유지관리 책임자 지정

- 정 : 시·군 민방위담당, 부 : 담당공무원

o 정기점검 실시

- 담당공무원 : 월 2회이상, 관리책임자 : 월 1회이상
- 점검사항 : 시설물 관리상태, 정기적 물 퍼내기, 발전기 가동상태, 시설주변 청결상태

o 안내판 설치

- 규정된 규격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최근의 수질검사 결과 및 식음료 적합여부를 기재하여 비상급수시설의 신뢰성 제고

o 비상급수시설 현황도 작성 관리

- 시설의 위치, 규모, 수질 등을 기재
-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민방위담당과에 비치

2) 평시활동

o 정부시설은 시설별 수질을 판단하여 식수, 생활용수 등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개방 활용

- 음용가능 시설은 급수대, 의자, 차양막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3) 용도폐지

o 오염 및 수원고갈 등으로 평시는 물론 유사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은 용도폐지

- 용도폐지되는 시설이 공공용 지정시설일 경우 용도폐지와 동시에 당해 시설의 지정해제조치 시행

o 폐기된 비상급수시설은 지하수맥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정을 콘크리트 등으로 완전 밀폐

3. 민방위장비

가. 의　　의

○ 적의 침공, 풍수해, 화재, 화생방 등 자연적·인위적 재난의 발생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보호 및 복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장비

- 사용목적에 따라 응급복구와 사태예방에 필요한 장비, 구난장비, 인명구조장비, 구급장비 등으로 분류

나. 확보 현황

○ 총 49,434점

- 주요장비(지휘용앰프, 구명보트 등) : 32종 45,441점
- 기타 : 3,993점

○ 정부지원장비

- 지휘용 및 인명구조용 장비

· 지휘용앰프 : 2,338대('76~'94)
· 전자메가폰 : 2,791대('76~'93)
· 구명보트　 :　 58정('94~'95)
· 로 프 총　 :　 263정('95)

다. 장비구분

○ 필수장비 :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편적 재해·재난에 대비한 기초적 장비(메가폰, 환자용 들 것, 교통신호봉, 구명환 등)

○ 권장장비 : 보편적 재해·재난에 대비한 장비이나, 기본장비에 비해 보다 전문적이고 고가인 장비(이동식발전기, 동력절단기 등)

○ 특정재해장비 :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특정 재해·재난에 대비한 장비(구명보트, 불갈퀴, 가스탐지기 등)

라. 장비확보 기준

○ 기본장비 : 각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확보

○ 권장장비 : 재정여건 등을 감안, 각 자치단체별로 확보여부 자율 판단

○ 특정재해장비 : 재해발생빈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 각 자치단체별로 확보여부 자율 판단

※ 각 장비별 확보장비 수량은 대원수, 면적, 지역특성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 후, 별도 지침으로 시달

마. 민방위준비명령에 의거한 장비확보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물자·시설·장비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의무를 부과하여 장비 확보

- 소방 및 방공장비의 비치와 정비
-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와 시설 및 장비의 비축, 설치, 정비
- 화생방, 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시설 또는 장비의 비축, 설치, 정비
- 기타 위장시설물자, 대피용 물자, 소독 및 방독물자의 비축

바. 효율적인 운용 관리

○ 기본장비는 읍·면·동별로 보관하고, 권장장비 및 특정재해장비는 시·군에서 통합관리

-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 품질 손상 방지
- 재해상습지역의 경우 마을회관, 공공창고 등에 보관하여 재해발생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관리

○ 보유장비 중 일반 민방위대원들이 활용할 수 없는 전문적인 장비는 전문 유관기관에 임대하거나 위탁관리, 관리전환 등을 통하여 정비

- 유사시 필요장비의 신속한 동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장비사용 협조체제 구축·유지

Ⅵ. 민방위 경보운영 및 현대화 추진

1. 민방위경보발령 및 전달체계

가. 경보운영체계(민방위경보발령·전달요강 제6조, 제7조)

1) 민방공경보 발령 및 전파

○ 경보종류 :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 발령요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공격이 예상될때나 공격이 실시되고 있을 때

○ 발령권자 : 행정자치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출장소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다만, 일부지역에 국한하여 도지사, 시장·군수·출장소장 또는 도 및 시·군지역 군부대장이 일정지역을 정하여 화생방경보 발령

○ 경보의 전파 (공군구성군사령관이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① 전구항공통제본부 선임작전통제장교(SODO)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상황실장

② 중앙경보통제소 상황실장

→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중앙방송사, 주요기관 등

③ 도경보통제소

→ 시·군 경보단말, 도 민방위부서 및 재해대책부서, 지방경찰청과 관할 해양경찰서, 관내 각 지방방송사 및 유관기관

④ 시·군 분배단말

→ 수신단말과 시·군·소 민방위부서 및 재해대책본부, 관내 각 지방방송사(국)에 경보전달

⑤ 시·군·소 민방위부서 및 재해대책본부

→ 관할 경찰서(해양경찰서 포함), 읍·면·동사무소 및 소방관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

2) 재해경보 발령 및 전파

o 경보종류 : 재해주의경보, 재해경계경보, 재해경보해제

o 발령요건 : 홍수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자연재해(또는 대형 재난 등) 상황 발생시 또는 상황 우려시

o 발령권자 : 시장, 군수, 출장소장(시·군 재해대책본부장)

※ 다만, 2개 시·군이상인 경우 도지사가, 홍수에 따른 재해경보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도 발령가능

o 경보의 전파 (시장, 군수, 출장소장이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① 시장, 군수, 출장소장

→ 시·군·소 민방위부서장, 시·군·소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장, 관할 경찰서, 읍·면·동사무소, 소방관서 및 군부대 등 유관기관

② 시·군·소 민방위부서장, 시·군·소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장

→ 경보사이렌 담당자

나. 경보전달체계

○ 민방공경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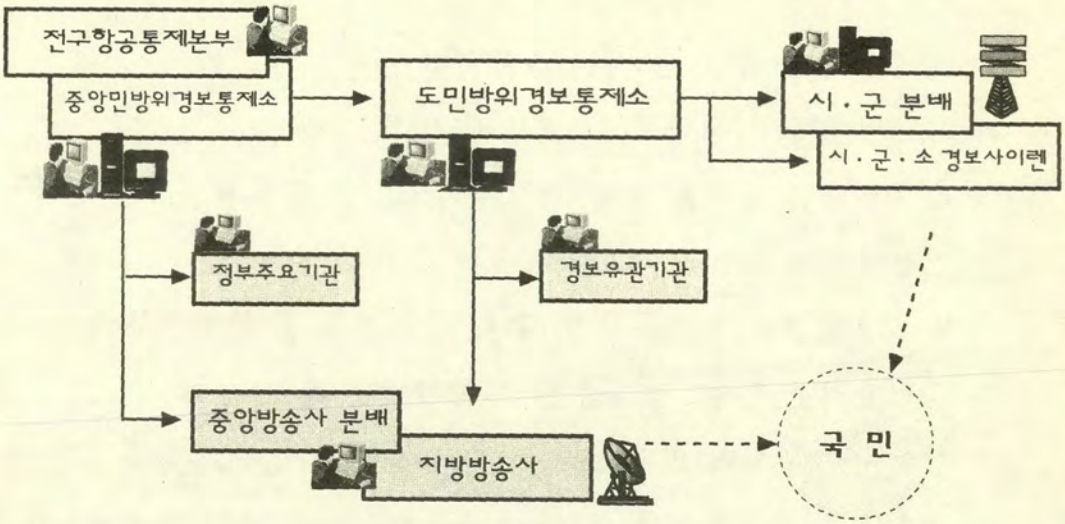

○ 재해경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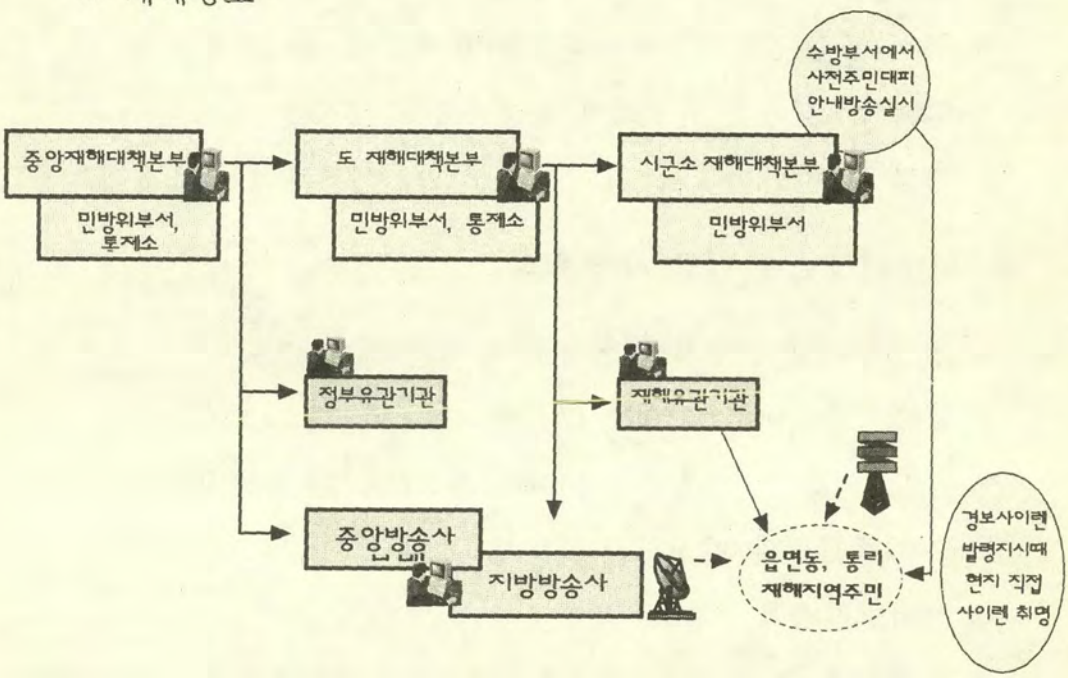

※ 재해경보 발령권자는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하여 민방위경보 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발령 가능

2. 민방위경보망 운영 및 유지관리

가. 경보상황의 유지관리

○ 상황유지반 편성, 24시간 상황유지

- 도 2명 3개반, 시·군분배 1명 3개반으로 구성

○ 업무집중력 강화를 위한 최적의 상황근무체계 유지

- 기본체계 : 24시간 3교대로 운영

※ 시·군별로 기관사정에 따라 적의 조정 운영가능

○ 장비관리반 편성, 정기점검 및 고장발생 대비 조치

- 상황유지반 이외 인원으로 주간근무(필요시 긴급근무)

○ 방송사 및 주요기관 등 경보전파 유관기관간 비상연락망 상시유지

- 월 2회이상 주요기관별 비상연락망 일제 점검

○ 유선/무선(UHF), 위성경보장비 이상시 장비운영

- 일제지령장치를 이용하여 육성으로 경보전달

- 행정 및 일반전화 등 기타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경보전달

나. 민방위경보망 일일 시험점검

○ 일 6회이상 경보시험 실시로 완벽한 경보망 유지

- 중앙 : 02:00, 06:00, 10:00, 14:00, 18:00, 22:00

- 지방 : 03:00, 07:00, 11:00, 15:00, 19:00, 23:00

※ 기존장비와 현대화장비 병행 시험 실시

○ 시험발령방법

- 도 통제소 및 시·군분배소에서 시험모드로 경보해제 또는 화생방경보 발령으로 유선/무선(UHF), 위성경보시스템에 대한 종합시험

다. 민방위경보시설 정기점검

○ 도통제소 및 시·군분배소 경보요원은 월 2회이상 시설 이상유무 등 현지 점검실시

- 통제소 및 분배소 장비, 방송사 및 주요기관 장비, 사이렌시설 등

○ 도통제소에서는 전일 16:01부터 당일 16:00까지의 장비고장, 선로이상 등 경보운용결과를 중앙통제소에 일일 종합보고

○ 도 경보통제소장은 분기별 경보장비 운용실태 및 선로상태 등을 분석하여 고장 예방대책 및 취명율 향상대책 등을 수립하여 운영개선

라. 장비고장시 조치

○ 자체적으로 응급조치가능한 사항은 상황근무자가 응급 조치

○ 자체적으로 응급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비점검반에게 연락 고장장비 수리 조치

- 장비 고장상황 내부보고 및 도 통제소에 보고

※ 시·군별로 예비품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고장발생시 상호 대여 활용방안 강구

○ 점검반에서도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전문업체로 하여금 수리토록 조치

○ 경보시설에 대해 유지보수능력이 있는 보안등록 업체를 선정하여 장비고장 발생시 신속한 고장수리체계 확립

○ 도 경보통제소에서는 시·군·소에 대한 예비품 확보 상황을 년 2회(6월, 12월)조사하여 현황관리

○ 예비품은 필요시 도 통제소에서 총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 예비품 확보기준 >

△ 주제어용 경보장비 및 경보방송장치 등 주요경보전달장비는 주요구성품 1식 확보

△ 그외 경보장비는 주요구성품을 전체시설수의 20% 확보
※ 축전지는 내용연한 초과분 교체

마. 전용회선 관리

o 주·야 전용회선 고장에 대비하여 관할지역 한국통신측과 협조체계 유지, 유사시 긴급 조치

o 전용회선의 중요한 고장과 장시간의 시험점검시 케이블공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타 회선으로 교체후 실시하되 이에 대한 사항을 도 경보통제소 및 관할 시·군분배소에 통보

o 도 경보통제소장은 전용회선 분기별 고장통계를 분석하고 고장이 잦은 구간은 관할전화국에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문서 통보 조치

o 주·야 민방위경보 전용회선의 고장에 대비하여 한국통신측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바. 경보사이렌시설 유지관리

o 경보시설 유지관리 책임제 운영

- 시·군·소, 읍·면·동별 관리담당자를 지정, 주 1회 책임점검

o 운영관리사항

- 경보시설 점검일지, 경보시설 보안관리부 비치 및 기록사항
- 주변환경 정리정돈, 수동취명 등 비상시 대응태세 능력
- 보관함, 피뢰시설, 사다리, 건물 안전상태 등

○ 현대화 경보장비

- DSU, MCU, DET 등 유선/위성수신기 동작상태
- 위성안테나 방향점검, 장비팬 작동 상태
- 사이렌앰프, 환경감시 및 전원제어기능 등 상태점검
- 상황관리, 인터폰 기능 및 전송로 감시 등 기능점검 등

○ 기존 경보장비

- RMC, RSC, 모뎀 등 유선수신기 동작상태
- 사이렌의 제어부, 증폭부, 배전반부 및 취명부 등 상태점검
- 축전지 충전상태, 충전기 충전범위 및 작동상태, 외부 연결전선 등의 연결상태 (느슨한 부분 조임 철저) 등

3. 경보상황발생시 행동요령

가. 민방공경보상황 발생시

1) 중 앙 (중앙경보통제소)

○ TACC와의 긴밀한 상황유지체계 확립 및 비상대기 조치

· 비디오폰 장치의 작동상황 확인 및 녹화·녹음

· 방송사 및 시·도 경보근무자 정위치 대기 조치

○ 근무자 정위치, 발령키 지급 및 경보내용전달

○ 경보전달장비에 의한 경보사이렌 자동취명 및 경보방송 실시

· 자동취명불가시 기타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통보

· 통제소에서 경보방송이 불가능한 때에는 방송사에 통보하여 직접 방송토록 조치

○ 상황보고 및 전파, 통제소직원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 경보전달장비 운영상 우선순위 〉

△ 현대화경보장비(경보발령전용장치, 유선경보장비 포함) 및 경보방송통제장비로 경보발령

※ 현대화장비는 유선 및 위성통신망을 이용 동시발령

△ 경보발령과 병행하여 일제지령장치로 육성전달

△ 예비경보망인 무선장비로 경보전달

- 중앙통제소 → 도통제소 : 육성(SSB)
- 도통제소 → 경보사이렌 : DATA 또는 육성(UHF)

△ 행정 및 일반전화로 육성전달

2) 도 경보통제소 및 시·군 분배단말

o 경보전달기관(중앙경보통제소, 군부대, 재해대책본부 등)과 긴밀한 상황유지

o 상황실 요원 정위치 근무 및 임무 재확인 점검

o 해당지역에 대한 경보사이렌과 경보방송 상태를 확인하고 경보 미취명시 자체 경보취명 등 필요한 조치 강구

o 상황보고 및 전파, 통제소직원 전원 비상소집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조치

나. 민방위의날 민방공대피훈련 등 연습상황시

o 훈련일시 : 훈련계획지침 참조

o 취명주관

- 사이렌 경보

· 중앙단위훈련 : 행정자치부 (중앙경보통제소)

· 지역단위훈련 : 도 (도 경보통제소)

- 경보방송

· 중앙단위훈련 : 행정자치부 (중앙경보통제소)

· 지역단위훈련 : 도 (도 경보통제소)

○ 취명방법(사이렌)

- 중앙 및 도 통제소에서 유선/무선(UHF), 위성 자동취명 원칙

- 자동경보 미취명시 시·군·소에서는 현지 수동취명

○ 경보사이렌 시설전체에 대해 현지 순회점검 결과 통보

- 훈련실시 5일전까지 전 경보시설 점검 완료

○ 경보사이렌 취명결과 서면보고(시·군분배소→도통제소→중앙통제소)

- 훈련당일 16시까지(취명현황, 미취명지역 및 원인 등)

다. 재해상황 발생시 (도, 시·군)

○ 도 및 시·군 재해대책본부 및 민방위부서와 긴밀한 상황유지

○ 경보상황실 요원 및 경보사이렌 담당자 정위치 근무 및 임무재확인 점검

○ 상황보고 및 전파, 관내 경보사이렌 담당자 비상소집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조치

라. 경보오보 및 오취명 발생시

1) 경보오보시 조치

○ 경보를 발령한 기관(중앙·도통제소 및 시·군분배소, 군부대 및 재해대책본부 등)에 경보발령 오보 여부 확인

○ 해명방송문안에 따라 해명방송 실시후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2) 경보사이렌 오취명시 조치

○ 경보 상황근무자는 오취명 발생부저가 울린 경우 즉시 해당 사이렌에 대해 경보해제 조치를 한후 해당기관에 후속조치토록 통보

○ 경보사이렌 담당자는 오작동으로 사이렌이 계속 취명되고 있을 때 이를 차단한 후 해명방송 실시

○ 오취명 발생보고

· 일시, 장소, 취명종류, 가청인구, 원인, 조치사항 등을 즉시 직보 (현지 → 도통제소 → 중앙통제소)

○ 오취명 발생원인 분석 등

· 오취명이 발생한 도, 시·군·소의 장은 오취명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4. 민방위경보시설 방호 및 보안관리

가. 민방위경보시설 방호

〈 기본방향 〉

△ 적의 폭격 등 피습에 견딜 수 있도록 경보통제소 지하화

△ 적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화생방 방호장비 확충

△ 경보통제장비의 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장비·물품 확보

○ 경보통제시설의 지하화

· 지상공간에 설치된 경보통제소 적정 지하공간으로 이전

- 확보가 곤란한 경우 건물신축시 반드시 지하화

· 지하공간의 근무환경 개선

- 경보통제장비의 정상적 운영에 적정한 온·습도 유지

○ 경보통제시설의 출입자 등 주변 감시장비 보강

· 경보통제소 주변에 CCTV 설치 · 운영

○ 경보요원에 대한 화생방방호 개인장비의 상태점검 및 확보

· 특수용 방독면, 보호의, 해독제 및 피부제독제 등

나. 경보시설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 전 경보시설 시설관리책임자(정, 부)지정 운영

○ 경보통제소 및 분배경보단말은 보호구역으로 설정

○ 무인경보단말은 상시 시건상태로 운영 유지

○ 모든 경보시설은 출입자 통제 및 보안 정기점검 기록유지

5.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가. 사업계획 (개요)

○ 사업목표 : 민방위경보시설을 현대적인 System으로 개선하여 보다 신속·정확하고 안정된 경보운영

○ 사업기간 : '97 ~ 2001(5개년)

○ 사 업 비 : 523억원(국비180, 지방비343)

○ 사업내용

△ 1단계 : 용역사업('97. 10 ~ '98. 7)

· 사 업 비 : 6억원

· 사업내용 : 기존시설 진단, 새로운 경보시스템 방향설정

△ 2단계 : 시범사업('98. 12 ~ '99. 10)

· 대상기관 : 중앙 및 울산, 경기, 경남

· 사 업 비 : 61억원

· 사업내용 : 기존장비 연계운영체계 구축, 시스템 검증

△ 3단계 : 전국확대사업 ('99 ~ 2001)

· 대상기관 : 16개 시·도

· 사 업 비 : 456억원

· 사업내용 : 기존시설 전면교체, 새로운 경보망 구성

나. '99 전국확장사업 완료

○ 기　　간 : '99. 12 ~ 2000. 11

○ 주　　관 : 중앙 및 7개시도(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경남)

○ 사업물량 : 133식

○ 사 업 비 : 122억원(국비 54, 지방비 79)

○ 사업내용

· 노후 경보시설 교체

·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운영 체계 구축

다. 2000 전국확장사업 추진 및 마무리

○ 기　　간 : 2000. 10 ~ 2001. 8

○ 주　　관 : 15개 시·도(광주광역시 제외)

○ 사업물량 : 417식

○ 사 업 비 : 149억원(국비 39, 지방비 110)

○ 사업내용

- 노후 경보시설 교체 및 확장
-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운영 체계 구축

○ 추진일정

- 장비납품　　: 2001. 2 ~ 2001. 3
- 장비 설치공사 : 2001. 3 ~ 2001. 6
- 시운전 및 준공 : 2001. 5 ~ 2001. 7

라. 2001 전국확장사업 추진

○ 기　　간 : 2001. 3 ~ 2001. 12

○ 주　　관 : 11개 시·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사업물량 : 508식

○ 사 업 비 : 173억원(국비 52억, 지방비 121)

○ 사업내용

- 노후 경보시설 교체 및 전면적인 확장
-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마무리

○ 추진일정

- 확장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물자구매 : 2000. 12 ~ 2001. 2
- 설치공사 및 사업마무리 : 2001. 3 ~ 2001. 12

〈경보·안전관리시스템 연계관련 〉

○ 경보통제소의 운영 및 시스템 구성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상황실통합등을 감안, 중복투자를 최소화하여 구축

○ 안전관리부서(재해·재난·민방위·소방 등)가 동일청사내에 위치하나 별도 상황실 운영기관은 지하화, 방호 및 시설·인원 보안대책 등을 수립하여 통합가능토록 추진

※ 우리도의 현대화사업 추진

○ 1차사업(2000년)

- 공사기간 : 2000. 10 ~ 2001. 8
- 대　　상 : 도, 부여, 청양, 홍성
- 사 업 비 : 923백만원

○ 2차사업(2001년)

- 기　　간 : 2001. 3 ~ 2001. 12
- 대　　상 : 천안시 등 14개 시·군·소 48개소(신설9, 교체39)
- 사 업 비 : 1,622백만원(국비487, 지방비1,135)

○ 시·군 조치사항

- 2001년 사업대상 시군은 사업비 확보 만전

< 참 고 >

2001년 경보현대화사업 시군별 사업내용

시·군	장비함사업물량(개소)					사업비(천원)		
	계	신설	교 체			계	국 비	지방비
			소계	미교체	교체			
계	48	9	39	20	19	1,622,000	486,600	1,135,400
천안시	8	0	8	8	0	232,000	69,600	162,400
공주시	4	0	4	1	3	131,000	39,300	91,700
보령시	4	1	3	3	0	131,000	39,300	91,700
아산시	4	1	3	2	1	136,000	40,800	95,200
서산시	3	0	3	3	0	87,000	26,100	60,900
논산시	5	1	4	1	3	175,000	52,500	122,500
계룡출	2	1	1	1	0	73,000	21,900	51,100
금산군	1	0	1	0	1	34,000	10,200	23,800
연기군	2	1	1	0	1	78,000	23,400	54,600
서천군	3	0	3	0	3	102,000	30,600	71,400
홍성군	4	2	2	0	2	156,000	46,800	109,200
예산군	4	2	2	0	2	156,000	46,800	109,200
태안군	2	0	2	1	1	63,000	18,900	44,100
당진군	2	0	2	0	2	68,000	20,400	47,600

<새로운 경보현대화시스템 구성 >

△ 경보운영체계

현 행		개 선
○ 경보취명과 경보방송 분리운영	→	분리 또는 통합운영 가능
○ 라디오에 의한 경보방송	→	라디오, TV문자방송 동시 실시
○ 원격 사이렌만 취명	→	원격 사이렌 취명, 재해방송 가능

△ 경보통신망 구성

현 행		개 선
○ 유선 및 SSB, UHF 등 무선	→	유선, 위성, UHF무선

※ 기존 UHF 무선통신망은 지역경보망으로 활용

△ 경보통제시스템의 구성

현 행		개 선
○ 중앙 주장비위주 경보처리	→	중앙, 도 주장비 분산처리

※ 위성, 유선망 등 망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 8개도 25개소 분배소 → 7개소로 축소

※ 경보발령은 유선·UHF망을 이용하고 위성은 중앙과 도 통제소를 우회 경유하여 경보전달

〈參考〉

경보시설현대화사업 연차별, 재원별 사업비

(단위 : 식, 백만원)

구 분		계			중앙	시·도		
		계	국 비	지방비	국 비	계	국 비	지방비
總 計		52,328	17,957	34,371	3,226	48,910	14,539	34,731
용역사업 ('97~'98)		640	640	-	640	-	-	-
시범사업 ('98~'99)	소 계	6,106	2,800	3,306	1,384	4,722	1,416	3,306
	중앙통제장비	1,384	1,384	-	1,384	-	-	-
	시·도 통제장비	2,684	805	1,879	-	2,684	805	1,879
	분 배 장 비	390	117	273	-	390	117	273
	단 말 장 비	1,648	494	1,154	-	1,648	494	1,154
전국(1차) 확장사업 ('99~2000)	소 계	12,158	4,319	7,839	959	11,199	3,360	7,839
	중앙통제장비	959	959	-	959	-	-	-
	시·도 통제장비	3,843	1,153	2,690	-	3,843	1,153	2,690
	분 배 장 비	931	279	652	-	931	279	652
	단 말 장 비	6,425	1,928	4,497	-	6,425	1,928	4,497
전국(2차) 확장사업 (2000~2001)	소 계	16,129	5,005	11,124	-	237	15,892	11,124
	중앙통제장비	237	237	-	237	-	-	-
	시·도 통제장비	6,478	1,944	4,534	-	6,478	1,944	4,534
	분 배 장 비	1,101	330	771	-	1,101	330	771
	단 말 장 비	8,313	2,494	5,819	-	8,313	2,494	5,819
전국(3차) 확장사업 (2001)	소 계	17,295	5,188	12,107		17,295	5,188	12,107
	단 말 장 비	17,295	5,188	12,107		17,295	5,188	12,107

※ 전국(3차)확장사업 위성통신 전용회선료 192백만원 제외

2. 화 생 방 방 호 계 획

[소 방 안 전 본 부]

- ㅇ 화생방 방호조직의 강화
- ㅇ 화생방장비 · 물자보급 및 관리
- ㅇ 민방위비상대피시설의 화생방방호기능 보강
- ㅇ 화생방교육 · 훈련 및 홍보강화
- ㅇ 화생방 재난 취약지역 주민보호대책 강화

目　　標

○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호역량 제고

○ 원전 방사능, 유독가스 누출사고 대비 태세 강화

⇒ 화생방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보호

方　　針

○ 방호조직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적정 편성하여 방호체제 강화

○ 화생방 방호장비의 보급확대로 유사시 대처능력 제고

○ 민방위 대피시설의 화생방 방호력을 보강하여 화생방전하에서도 지속적인 기능 유지

○ 화생방 교육훈련 및홍보를 통한 사태수습능력및자위 방호역량 제고

○ 화학공단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방호대책을 강화하여 주변 지역주민 안전보호

推進計劃

Ⅰ. 화생방 방호조직의 강화

1. 민방위대 화생방 분대조직 보강

가. 민방위대의 규모와 화생방재난 취약정도를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화생방분대를 편성

○ 비행장 주변지역·화학공단 소재지역 등 취약지역은 편성기준보다 보강하여 편성하고 농어촌·산간지역은 감소 편성

○ 편성기준(지역실정을 감안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편성)

- 기술지원대 : 시군단위로 1개분대이상 편성
- 지역민방위대 : 동단위로 20개통당 1개분대 이상 편성
- 직장민방위대 : 대원수의 10%를 화생방분대로 편성

○ 화생방분대원은 관련 기술·기능 소지자와 군 화학병과 출신자 등 유경험자를 발굴 편성하여 정예화

○ 가급적 1~4년차로 편성, 소집교육을 받도록 하여 능력 제고

나. 화생방기동분대 편성·운영

○ 화학공단지역은 화생방기동분대를 편성

○ 사태수습용 장비를 보강하여 운영체계 확립

- 화학공단 : 방독면, 보호의, 공기호흡기, 가스탐지기

※ 방독면은 한국형(K-1) 또는 화재대피겸용 방독면 보급

○ 상시 출동가능한 요원으로 편성하여 유사시 사고현장에 긴급 출동 주민 안전대피유도 임무수행

2. 행정기관의 화생방 방호기능 보강

가. 화생방 전담공무원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 도 및 화학공단소재지 시군에는 화생방 전담조직·인력을 확보하여 화생방 재난방재대책을 강화

○ 화생방 전문조직·인력이 없는 시군은 화생방 관련분야 유경력자를 배치하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민방위교육과)등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전문성 제고

나. 화생방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

- ○ 화생방업무 연찬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 발표 및 관계전문가 초빙교육을 통해 전문성 제고
- ○ 화학공단지역 화생방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무토론회 개최
- ○ 화학공단 소재지역 화생방담당공무원을 화생방 방재관련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 전문성 제고

3. 화생방업무 기능분담 및 협조체제 확립

가. 관련부처별 업무분담

- ○ 행정자치부 : 주민보호대책
- ○ 과학기술부 : 방사능 방호대책
- ○ 보건복지부 : 생물학전 방호대책
- ○ 국방부, 경찰청 : 사태수습지원

나. 지방자치단체

- ○ 관련 유관기관·부서와의 지원·협조체제 구축
- ○ 민방위부서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주민보호대책을 중점추진하고 위해시설 안전관리는 개별법에 의거 관련부서에서 책임추진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원자력법
- 재난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Ⅱ. 화생방 장비·물자 보급 및 관리

1. 방독면 보급 10개년계획 추진

가. 기본방향

○ 취약정도를 고려, 우선순위에 의한 단계별 보급

○ 도·시군별 지역실정 감안 화재대피겸용 방독면 보급

○ 유사시 피해가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공단지역은 예산 지원을 통한 우선 보급

〈 보급 우선순위 〉

① 화학공단지역 민방위대원/주민 ② 일반지역 민방위대원
③ 일반지역 주민

나. 추진기간 : '98~2007년

다. 보급계획 : 총 208,175개(민방위대원 172,402, 일반국민 35,773)

라. 보급방법

○ 정부지원 보급 : 169,544개(지역민방위대 167,349, 화학공단지역주민 2,195)

○ 자율보급 : 38,631개(직장민방위대 5,0536, 일반주민 33,578)

마. 재 원

○ 예산사업 : 정부지원 보급(국·도비 및 시·군비 부담)

○ 비예산사업 : 자율 보급(기관·직장별 부담)

2. 2001년 화생방장비 보급계획

가. 방독면 보급

○ 보급계획량 : 21,076개

○ 재　　원 : 3억원

○ 보급대상

- 지역 민방위대원 : 20,547개(국·지방비 지원)
- 화학공단주민 : 119개(국·지방비 지원)
- 직장민방위대원 및 주민 자율확보
  · 직장민방위대원 : 410개(직장부담)
  · 일반지역주민 : 자율확보(자비부담)

나. 분대장비 보급

○ 보급기준

- 화생방 분대당 1조기준 보급

※ 1조 내역(1개분대 12명 기준시) : 5종 34점

- 보호의 12, 탐지지 1, 해독제 9, 제독제 6, 오염표지판 6 등

○ 보급계획

- 분대당 1조를 기준하여 미보급된 물량 보급
- 기보급된 장비중 노후, 파손된 물량에 대한 교체
- 기술지원대, 화생방 기동대 등에는 재독기와 제독용액을 추가하여 보급

3. 독가스테러 취약시설의 화생방 방호장비 보급

○ 지하철,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독면 및 해독제, 제독제 등 필요한 방호장비를 기준에 의거 자체확보

4. 국민홍보 · 계도 활성화

○ 국민들에게 자율확보토록 지속적인 홍보계도 강화

- 「화생방 대비요령」 VTR 활용, 다중집합장소에서 지속적 방영
- 반상회보, 시 · 군정지 등 홍보물 이용 홍보

○ 시군단위로 "방독면 판매소"를 확대설치 구입편의 도모

- 시 · 군단위 1개소이상 설치

○ 시군청, 읍면동 민원실에 방독면 홍보물 게첨 및 구입안내

- 민원실 근무직원에 방독면 구입안내 교육을 실시 안내

○ 응급대체장비 사용요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 비닐포대, 마스크, 고무장갑 등

○ 공공기관 · 일반기업체 등에서 각종 포상시 방독면을 시상품으로 수여토록 적극 권장

5. 화생방 장비 · 물자 관리

가. 보관관리

○ 평시 화생방재난 우려가 많은 유독가스 취급시설 주변지역은 방독면을 사용자 가까이 보관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

○ 장기 비축용으로 보관중인 방독면은 수명연장을 위하여 보급 당시의 포장상태로 보관하되 직장은 사무실 단위로, 지역은 마을단위 통합보관을 원칙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책임관리

○ 습기, 먼지, 직사광선, 침수, 결빙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나. 점검 및 정비

- ○ 매분기 1회 장비점검표에 의거 관리기관 자체 점검·정비를 실시
- ○ 권역별 도주관으로 생산업체와 협의 순회정비를 실시하여 장비의 정상 가용상태 유지
- ○ 보관중인 장비·물자중 표본을 수집하여 성능검사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

다. 사용시기

- ○ 화생방 재난발생시
- ○ 각종 산업활동에 유독물질 취급시
- ○ 민방위 교육·훈련시에는 교육훈련용 장비 사용

Ⅲ.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의 화생방 방호기능 보강

1. 화생방 방호가능 대피시설 확충

- ○ 신축 공공대피시설은 화생방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 설치
- ○ 일정규모이상 건물신축시는 화생방 방호기능을 갖춘 대피시설로 설치토록 행정지도 강화
- ○ 기존대피시설, 소규모건물 및 주택은 유사시 화생방 방호가능 시설로 응급활용하는 방법을 각종 교육을 통하여 홍보
- ○ 기존 설치된 민방위 2등급시설을 임시 화생방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보완

2. 완벽한 시공 및 관리

○ 화생방대피시설 표준설계 및 감리감독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

○ 가스여과기 등 화생방 방호시설·장비는 정상기능을 발휘하고 설치 후 지속적인 정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된 규격품을 장착

○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년 1회이상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정비

- 점검결과 결함사항에 대해 개선대책을 강구 조치
- 항시 가동시킬 수 있도록 시설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리 및 조작 요령 교육

Ⅳ. 화생방 교육·훈련 및 홍보강화

1. 화생방 전문교육

○ 화생방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민방위교육과)과 방재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 전문인력으로 양성

○ 각급기관 직장교육, 학교기관 교육 등에 화생방 교육을 실시하여 방호행동요령에 대한 능력 향상

○ 각급기관 직장교육, 학교기관 교육 등에 화생방 교육을 실시하여 방호행동요령에 대한 능력 향상

○ 도, 시·군 주관으로 화생방분대원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하여 사태수습 능력배양

2. 실효성있는 교육·훈련

○ 화생방분대원은 가급적 소집교육 대상자로 편성하고 화생방 분대원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임무수행능력 향상

○ 화생방교육은 대원의 임무와 지역재난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을 중점 교육

○ 지역군부대 화생방 훈련장을 활용 오염지역 제독요령 등 실기 실습교육 강화

○ 화생방 방호훈련은 재난취약지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실시

- 훈련내용은 경보전파, 주민대피·소산, 방독면 등 보호장비 착용, 탐지·제독사태수습 등 실제상황에 맞게 실시

3. 대국민 화생방 방호행동요령 홍보

○ 화생방 사태발생시 방호행동요령, 방독면착용법 등 응급대처요령에 대한 홍보 강화

○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TV, 라디오와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

○ 역·터미널 등 다중운집장소에서 화생방 VTR을 방영 주민홍보 강화

○ 마을단위, 학교, 직장 등을 순회하며 화생방 방호요령에 대한 국민교육 강화

Ⅴ. 화생방재난 취약지역 주민보호대책 강화

1. 위해시설 주변지역 주민보호

- ○ 유독가스 취급시설 주변지역 등은 화생방 재난취약지역으로 중점 관리
- ○ 재난취약지역 주민보호용 방독면은 위해시설 사업주 부담으로 년차계획으로 보급
- ○ 위해시설 주변지역 주민 긴급대피를 위한 경보방송망 보강
- ○ 주민용 방호장비·물자를 보급하고 사태발생시 방호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2.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

- ○ 위험요소가 많은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
  - 관련부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
- ○ 중점관리대상 시설별로 안전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안전예방활동 실시
- ○ 사고발생시 주변지역 주민피해 예측상황을 분석관리
- ○ 역, 터미널, 공항, 백화점, 극장 등에서의 독가스테러 대비, 시설근무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긴급보호조치 및 대피유도를 위한 안내방송문 사전 준비
  - 시설별로 방독면, 응급치료장비를 보급 기준에 의거 확보

3. 유관기관 합동방재체제 구축

- ○ 행정기관, 유관기관, 관련업소 방재계획을 상호 연계성있게 보완하고 사고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주민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실효성을 제고
- ○ 재난유형별 가상 시나리오 작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재훈련을 실시
- ○ 유관기관과의 지원협조사항을 사전 임무고지하고 업소, 유관기관 등의 가용장비를 사전파악하여 유사시 즉각 동원될 수 있도록 관리

방독면 보급 10개년계획('98~2007)

구분		보급계획량	년차별 계획량									
			1단계			2단계						3단계
			계	'98	'99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이후
계		208,175개	7,512	4,493	3,019	105,380	21,076	21,076	21,076	21,076	21,076	95,283
정부지원	소계	169,544	5,573	3,237	2,336	103,330	20,666	20,666	20,666	20,666	20,666	60,641
	지역민방위대원용	167,349	3,973	2,982	991	102,735	20,547	20,547	20,547	20,547	20,547	60,641
	접적지역주민용	-	-	-	-	-	-	-	-	-	-	-
	화학공단지역주민용	2,195	1,600	255	1,345	595	119	119	119	119	119	-
자율확보	소계	38,631	1,939	1,256	683	2,050	410	410	410	410	410	34,642
	직장민방위대원용	5,053	1,764	1,081	683	2,050	410	410	410	410	410	1,239
	원전주변지역주민용	-	-	-	-	-	-	-	-	-	-	-
	수도권지역주민용	-	-	-	-	-	-	-	-	-	-	-
	일반지역주민용	33,578	175	175	-	-	-	-	-	-	-	33,403

2001년 방독면 보급계획

시군별	보 급 계 획 량 (개)								
	총 계	정 부 지 원 보 급				자 율 확 보 권 장			
		소 계	지 역 민방위대	접적지역 주 민	화학공단 주 민	소 계	직 장 민방위대	원전지역 주 민	일반주민
계	21,076	20,666	20,547	-	119	410	410	-	-
천안시	5,405	5,556	5,556	-	-	(+)151	(+)151	-	-
공주시	1,147	1,240	1,240	-	-	(+)93	(+)93	-	-
보령시	1,274	1,175	1,175	-	-	99	99	-	-
아산시	2,765	2,406	2,406	-	-	359	359	-	-
서산시	1,526	1,333	1,214	-	119	193	193	-	-
논산시	1,168	1,204	1,204	-	-	(+)36	(+)36	-	-
계룡출	214	200	200	-	-	14	14	-	-
금산군	672	612	612	-	-	60	60	-	-
연기군	859	841	841	-	-	18	18	-	-
부여군	922	954	954	-	-	(+)32	(+)32	-	-
서천군	805	726	726	-	-	79	79	-	-
청양군	384	374	374	-	-	10	10	-	-
홍성군	987	1,023	1,023	-	-	(+)36	(+)36	-	-
예산군	1,140	1,186	1,186	-	-	(+)46	(+)46	-	-
태안군	568	595	595	-	-	(+)27	(+)27	-	-
당진군	1,240	1,241	1,241	-	-	(+)1	(+)	-	-

3. 자 연 재 해 대 책

[건 설 교 통 국]

- ○ 방재체계 확립
- ○ 풍수해 대책
- ○ 설해대책
- ○ 가뭄대책
- ○ 지진대책
- ○ 재해예방사업 추진

目　　標

○ 국민의 안전욕구 증대에 따른 예방위주의 방재체제 구축
○ 21C 시대에 걸맞는 방재 전산화·과학화 추진
○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재해관리

方　　針

○ 재해예방사업에의 지속적인 투자확대
○ 완벽한 복구사업 추진으로 피해재발 방지
○ 지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국제협력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로 국가위상정립
○ 국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범국민 안전실천운동 전개

推進計劃

Ⅰ. 방재체계확립

1. 재해대책위원회

가. 임 무

○ 방재기본계획 심의
○ 각급방재계획 조정
○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분과위원회로서의 업무수행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심의

나. 구 성(25인 이내)

○ 위 원 장 : 행정자치부장관

○ 부위원장 : 행정자치부차관

○ 위원(23인 이내)

- 재정경제부·국방부·교육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차관
-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 간사 및 서기

- 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 1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서기는 행정자치부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2. 중앙재해대책본부

가. 임 무

○ 재해대책에 관한 각부처 및 지방재해대책본부 총괄조정

○ 재해예방, 상황관리 및 응급조치

○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작성

나.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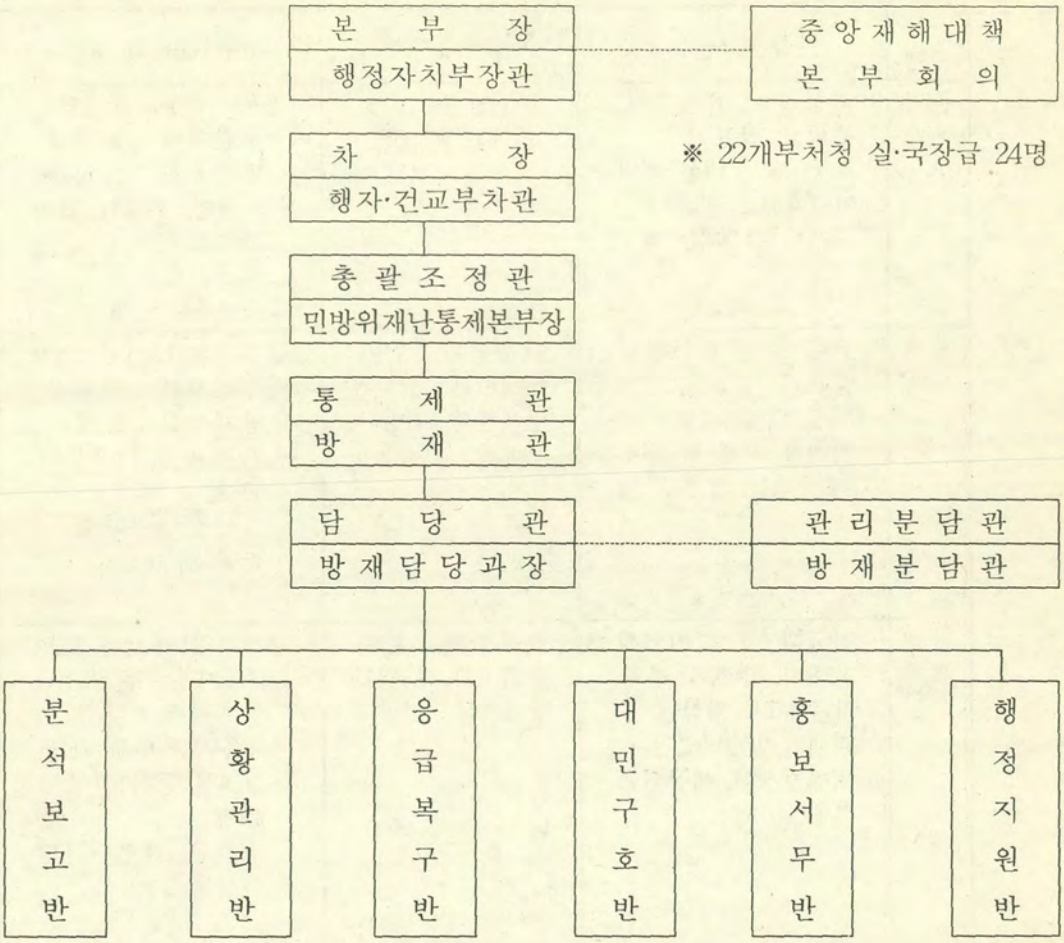

다. 근무체제

1) 평시근무체제

○ 평시 : 방재관실소속 직원으로 24시간 연중 무휴 당직근무

○ 우기(매년 6.15~10.15) : 행정자치부, 기상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소속직원으로 합동 당직근무

2) 비상근무체제(3단계)

근무체제	기상(피해)상황	비재해기간	재해기간(6.15~10.15)
준비체제	- 기상정보, 예비특보, 주의보 발표시 - 폭풍, 해일, 대설, 기타 자연재해로 피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근무인원 : 5명 · 방재관실 : 5명	- 근무 : 4개기관 16명 · 총괄지휘 : 담당관 · 방재관실 : 12명 · 기상청, 수자원, 한전 각 1명
경계체제	- 호우 또는 태풍경보 발표시 - 해일, 대설등으로 막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근무인원 : 7명 ·총괄지휘 : 담당관 ·방재관실 : 6명	- 근무 : 15개기관 34명 · 총괄지휘 : 통제관 · 방재관실 : 19명 · 건교부 등 11개부처 11명 · 기상청 , 수자원, 한전 각 1명
비상체제	- 전국대부분의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지역적으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근무인원 : 13명 ·총괄지휘 : 담당관 ·방재관실 : 12명	- 근무 : 21개기관 52명 · 총괄지휘 : 총괄조정관 · 방재관실 : 28명 · 교육부 등 6개부처 6명 · 건교부 등 11개부처 13명 · 수자원, 한전 각1명 · 기상청 2명

※ 비상근무체제의 개시와 해제 결정 및 실무반 편성운영은 재해상황 등을 감안 통제관이 조정.

- ㅇ 지방재해대책본부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준하여 편성·운영
- ㅇ 기상청 및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소속직원은 우기중 상시 파견근무 하되, 기타 유관기관 및 행정자치부내 재해대책 관련부서는 요청에 따라 파견근무
- ㅇ 전국일원에 피해가 발생하는 비상체제의 경우 중앙 및 지방재해 대책본부에 소방관서에서 연락관 파견

3. 지방재해대책본부

가. 도 재해대책본부(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1) 조 직

- ㅇ 본부장 : 도지사
- ㅇ 차 장 : 행정부지사
- ㅇ 통제관 : 건설교통국
- ㅇ 담당관 : 치수방재과장
- ㅇ 분담관 : 방재담당

2) 기 능

- ㅇ 재해예방, 재해상황조사 및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 ㅇ 관할구역내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 ㅇ 재해발생시의 응급조치

나. 시·군 재해대책본부

1) 조 직

- ㅇ 본부장 : 시장·군수
- ㅇ 차 장 : 부시장, 부군수
- ㅇ 통제관 : 부기관장 겸임(국이 설치된 기관은 재해대책 업무 담당국장)
- ㅇ 담당관 : 재해대책업무 담당과장
- ㅇ 분담관 : 방재담당

2) 기 능

- ㅇ 재해예방, 재해상황조사 및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 ㅇ 관할구역내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 ㅇ 재해발생시의 응급조치

4. 수방단의 임무 및 조직

가. 임 무

○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참여 및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등

나. 조 직

○ 설치 :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의 통·리로 설치

○ 조직

- 대상 :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리민방위대원

※ 수방단장은 통리 민방위대장이 됨

- 수방단편제 :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19조에 의해 편성된 민방위대 편제를 준용(민방위대는 수방단으로 본다)

Ⅱ. 풍수해 대책

1. 재해예방

가. 방재물자 비축 및 장비 지정·관리

1) 수방자재의 비축관리

○ 수방자재 및 제설용 모래, 염화칼슘의 비축량은 시·군별로 최근 10년간 평균 사용량을 기준하여 계획하되 지역실정 및 재해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비축관리

○ 보관자재는 매년 5월말까지 내구연한을 감안 그 상태를 점검하여 폐기처분등 조치를 하고 비축 계획량을 확보

- 내구연한 : 가마니·새끼 2년, 말목 3년, PP포대·묶음줄 5년

○ 비탈면 보호 자재등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수방자재를 확보

○ 포리에칠렌 천, 비닐류 등

○ 창고의 부족으로 옥외에 보관시에는 풍우에 부식되지 않도록 받침대 및 보호막(커버) 시설 설치

2) 응급복구용 장비의 사전지정 및 관리

○ 관용장비를 비롯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보유장비를 관리자와 협의, 사전에 지정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체제를 확립하고 인접 시·군간에 응원체제를 활성화하여 장비 활용을 광역화

○ 최근 10년간중 최대피해를 감안 소요량을 산정하여 지정

○ 사전단가계약 체결 및 동의서 징구후 지정

○ 여름철 재해기간(6.15~10.15)중 장비 이동상황 매월 파악

○ 지정장비의 동원 우선순위체계 확립

- 시·군 재해대책본부 관내 동원순위

· 1단계 : 시·군 보유장비

· 2단계 : 유관기관 장비

· 3단계 : 군지원 장비

· 4단계 : 민간장비 활용

- 인접 시·군간에 응원 협약

· 관내 장비 부족시 대책으로 인접 시·군 및 군부대 등과 장비지원 협약 또는 약정 체결 운영

- 도재해대책본부는 장비부족 시·군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관내 장비동원계획 수립 실시

나. 구호·방역물자 비축 및 수용시설 지정

1) 구호물자의 비축

○ 양곡류는 장기보관에 따른 변질우려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확보하여 필요시 즉시 구입사용

○ 의류, 취사도구 등 보관기간이 짧고 필요시 신속 구입이 가능한 품목은 현금으로 확보

○ 시·군별 최근 5년간 사용실적 최고치를 기준하여 책정, 비축

2) 방역물자 확보

○ 종류 : 살균제, 살충제, 우물소독약, 예방주사약 등

○ 비축기준 : 재해대책 방역약품 비축기준(보건복지부)에 의거 우기전까지 전량확보 비축

○ 일반 방역약품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정기적으로 보관상태 점검

○ 지난해 보관분은 금년도 일반 방역약품으로 사용하고, 금년도 방역약품은 새로 구입 확보토록하여 변질방지

3) 이재민 수용시설의 지정

o 학교, 교회, 마을회관, 창고 등 수용가능한 건물을 사전 지정

o 건물소유자(관리자)와의 사전협의로 유사시 신속히 대처

다. 침수지역 분뇨 및 쓰레기 처리대책

1) 분뇨 처리대책

o 침수피해 발생시 인접지역의 분뇨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지원협약 체결

2) 쓰레기 처리대책

o 상습침수지역에는 피해발생 즉시 사용이 가능한 위치에 임시 쓰레기적환장 지정확보(읍면동당 1개소 이상)

o 수해지역 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 없이 매립장 등에 반입,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쓰레기 조기 처리대책 강구

라. 방재교육·훈련

1) 방재교육

가) 중앙교육

o 지방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관에서 실시

o 방재관리자 과정 : 1기

- 교육대상 : 도 과장, 담당 및 시·군 국장, 과장
- 교육기간 : 3월중
- 교육내용 : 방재행정 주요시책 등 8과목

o 방재실무자 과정 : 2기

- 교육대상 : 도, 시·군 6급이하 방재담당공무원
- 교육기간 : 3~4월중 2기로 구분실시

- 교육내용 : 재해대책 일반, 법령해설, 방재전산, 재해사전대비, 재해 대비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의식

나) 도 자체교육 : 도 본청에서 실시제고방안, 재해응급대책 및 복구계획 수립등

○ 교육대상 : 도 재해대책부서, 시·군 방재담당과장·담당, 유관부서 직원 등

○ 교육기간 : 4월중 1일선정 실시

○ 교육내용 : 재해대책일반, 방재전산, 재해사전대비, 재해응급대책 및 복구계획 수립, 재해대비국민행동요령 및 행락지야영객 안전수칙 등

다) 전파교육 : 시·군 본청 및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

○ 교육대상 : 시·군, 읍·면·동, 유관기관 실무자, 수방단, 인명구조대, 민방위대 등

○ 교육기간 : 4월중 1일선정 실시

○ 교육방법 : 교재강의 및 VTR 상영 등

○ 교육내용 : 재해대책 일반, 재해사전대비, 재해응급대책, 인명구조, 응급복구, 재해대비국민행동요령 및 행락지야영객 안전수칙 등

2) 방재훈련

가) 도상훈련

○ 훈련기간(예정) : 5월중순(1일)

○ 훈련방법 : 사건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토론방식

○ 훈련기관 : 도와 시·군에서 실시

○ 참가기관 : 지방경찰청, 기상대, 홍수통제소, 군부대 등 유관기관

○ 훈련내용

- 신속한 상황대처, 사전조치 및 피해보고체제 구축
- 시가지 침수에 따른 분뇨, 쓰레기 처리능력 제고
- 재해대책 유관기관의 사건처리 및 협조체제 강화
- 재해발생시 민·관·군 재해수습역할 분담 및 임무수행
- 수난구조, 응급구호 및 응급복구 등 사태수습처리 능력 함양
- 야영객 안전대피 유도

나) 전산훈련

○ 훈련일시(예정) : 5월중순(도상훈련과 병행)

○ 훈련대상 : 중앙, 도 및 시·군

○ 훈련방법

- 중 앙 : 훈련메시지 작성부여, 훈련상황 지도 및 자료분석
- 도 : 입력내용 조회, 출력 및 자료분석
- 시·군 : 훈련메시지 입력, 조회, 수정 및 자료분석

다) 실제훈련

〈종합시범훈련〉

○ 훈련일시(예정) : 5. 25

○ 훈련장소 : 아산시 곡교천

○ 훈련주관 : 아산시 재해대책본부장

○ 훈련방법 : 일시, 장소, 내용 등 사전에 준비한 시나리오에 의거 실시

○ 훈련내용

- 유관기관 공조체제하의 인명구조활동 전개
- 이재민 수용시설물 지정관리 및 구호방역활동
- 인력·자재·장비 등을 동원한 응급복구 실시

※ 도 재해대책본부장외 시·군 및 관계재해대책기관 참석

〈지역특성훈련〉

- ○ 훈련대상 : 전 시·군
- ○ 훈련일시 : 5월중(훈련장소는 자체 결정)
- ○ 훈련주관 : 해당 시·군 재해대책본부장
- ○ 훈련방법 : 일시, 장소, 내용 등 사전에 준비한 시나리오에 의거 실시
- ○ 훈련내용 : 지역특성에 맞게 야영객 대피유도, 인명구조, 응급구호, 응급복구중에서 1건씩 선정 실시

마.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 ○ 도 재해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을시 지방행정기관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 및 협조
- ○ 도(시·군)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응급조치를 위하여 인력, 물자, 장비의 상호 지원체제 구축
- ○ 각급 재해대책본부는 관할 방재유관기관, 민간사회단체를 총동원한 통합 방재체제 구축(지역재해대책협의회 운영)
- ○ 대 상 : 대한적십자사,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약사협회, 상공회의소, 건설협회,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 금융기관, 방송사, 도교육청 등 지정행정기관의 산하지방관서, 지역대표(의회의원) 등

바. 주민대피계획 수립추진

1) 사전 조치사항(우기전 까지)

- ○ 선박, 구명복, 구조망, 차량, 로프, 무전기등 → 시군단위 지정 확보
- ○ 대피로 지정 및 수용시설 사전 지정 세대별 통보
- ○ 침수지 및 고립예상 지역은 헬기 착륙장소 사전지정(헬기좌표 정리)관리
- ○ 인명구조 필요시에 대비 → 가까운 군부대, 경찰청, 인명구조대 사전협조체제 유지

○ 야간 대피시를 가정 횃불, 손전등 등을 사전준비
○ 고립예상, 하천변, 해안 저지대주민 → 사전대피훈련 실시
○ 침수·고립예상지역에 이동통신(카폰)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 배치
○ 전령(책임연락자) 보고제 도입 운영 등
○ 인명구조대 편성 운영

사. 경계구역 설정 운용

1) 설정목적

○ 산간계곡, 하천변 유원지 등 재해위험지구에서 빈발하는 인명피해예방
○ 태풍·집중호우 예상시 행락객 및 주민들을 대피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2) 경계구역 설정대상

○ 산간·계곡 야영지 : 최근 5년간 태풍·호우시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 피서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지역
○ 하천변 유원지 : 최근 5년간 태풍·호우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하여 피서객, 행락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지역
○ 재해위험지구로서 주민대피가 필요한 지역 : 태풍·호우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3) 경계구역 지정

○ 현 황 : 공주시 2개소('97. 6. 15부터)
- 산간계곡 야영지 : 1개소 - 하천변 유원지 : 1개소
○ 조치사항
- 기상특보 발표시 감시공무원 배치
- 재해발생이 우려될 때 우선적으로 인명대피 조치
- 퇴거, 금지, 제한명령에 불응자 과태료 부과(100만원이하)

아.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추진

1) 지구 지정관리

- ㅇ 1등급 : 관리카드 피해연혁 피해발생횟수 4회이상 또는 붕괴 등으로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피해 발행우려
- ㅇ 2등급 : 관리카드 피해연혁 피해발생횟수 2~3회 또는 붕괴·침수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 발생우려
- ㅇ 3등급 : 관리카드 피해연혁 피해발생횟수 1회까지
- ㅇ 시장·군수에게 재해위험지구 점검·정비조치 명령권 부여
- ㅇ 재해위험지구의 등급, 기상특보의 종류와 발표기준에 따라 지역별, 시간대별 주민·재산 등의 계획적 대피계획 수립 관리
- ㅇ 우기 중(6~10월)재해위험지구 관리

2) 정비사업추진

- ㅇ 방재책임자는 매년 다음연도의 정비계획을 12월말까지 수립
- ㅇ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
- ㅇ 대규모 정비사업 지구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되, 도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추가 집중투자하여 마무리하고 중앙지원 확대방안 강구
- ㅇ 소규모 정비사업지구는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자. 재해위험지구별 피해가상 메뉴엘 작성활용

- ㅇ 대상지역
- 침수·붕괴위험·고립예상 등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재해위험지구를 중심으로 지정
- ㅇ 작성방법
- 재해위험지역별로 그간의 대규모 피해사례를 모델로 상황관리 시작단계부터 응급복구 완료시 까지의 수습체계 메뉴엘 작성 비치

○ 활용계획

- 피해발생 즉시 지역별로 단계별 메뉴얼에 따라 수습 추진으로 피해 최소화

차. 방재시설물 정비

1) 방재시설물 개·보수 대상

○ 옹벽·축대, 도로·교량, 저수지·소류지, 방조제, 하수도 등

2) 시설별 주요 수방대책

○ 축대·옹벽 : 도괴위험지구 보수, 강우침투방지 비닐보호막 설치 및 버팀목 설치

○ 도로·교량 : 낙석 사전제거, 배수로보강, 기초세굴부위 보강

○ 하　　천 : 붕괴예상 제방 개·보수,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 저 수 지 : 여수토·방수로등 구조물 균열 점검보수, 제방누수부분 보강

○ 양·배수장 : 기계 시험가동, 송·배전시설 점검

○ 하 수 도 : 단면부족구간 개·보수 및 퇴적물 제거

○ 지하차도 : 배수펌프시설 시험가동, 배전시설 점검

3) 정비추진

○ 시설물 관리청별로 우기전까지 정비완료

○ 예비비, 재해대책기금 등 가용재원 활용실시

○ 정비가 어려운 시설물은 응급조치 완료후 특별관리

4) 추진일정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일제조사 : 2월중 실시

○ 시설물 보수정비 실시 : 3~5월

○ 정비사항 확인 : 5월말까지

카. 대규모 건설공사장 특별관리

1) 대규모 건설공사장

- ㅇ 신도시건설, 골프장조성, 고속도로, 댐건설, 택지조성, 기타 5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장
- ㅇ 소단위 아파트, 연립주택 공사장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일반 공사장

2) 중점조치사항

- ㅇ 가배수로 설치 등 배수처리 기능 확보
- ㅇ 하류지역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침사지 설치
- ㅇ 골프장 관리규정 준수 이행
- ㅇ 절개지의 비탈면에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 ㅇ 피해우려 예상지역 주민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
- ㅇ 기타 수방자재 및 장비 사전확보 조치

3) 행정조치 사항

- ㅇ 관리주체별(행정기관, 사업시행자, 시공자, 관계주민 등) 업무분담 실시
- ㅇ 공사장별 관리대장 작성 및 도·시·군 간부공무원 복수지정 특별관리
- ㅇ 재해기간중 주 2회이상 예찰활동 강화 및 강력한 행정규제 병행
- ㅇ 사전조치 사항에 대한 우기전 점검 및 보완조치

4) 추진일정

- ㅇ 우기전 일제 정밀조사 및 현황파악 : 3. 10
- ㅇ 재해취약요인의 분석 및 대책수립 : 3월중
- ㅇ 사업장별로 재해취약요인 보완조치 : 5. 20완료
- ㅇ 보완조치사항 확인 : 5월말까지

타. 방재과학기술 및 제도연구

1) 재해대책 평가관리의 내실화 및 『재해실명제』 확행

○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해대책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수범사례와 획기적인 재해예방대책 사례를 발굴, 확대 시행하여

○ 재해위험시설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피해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여 기관경고 및 관계관을 엄중문책하는 『기관책임제』 확행

2) 재해방송을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

○ 긴급 경보방송시스템 도입

- 사태발생시 수신자가 긴급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추진

3) 재해기록의 보존 및 활용

○ 피해우심 시·군은 당해 연도 재해극복사를 익년도에 발행 보존하여 재해업무의 과학화 도모

○ 각종 수문자료(강수량, 수위, 홍수흔적 등)의 통계 유지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강우량, 수위별 침수예상구역도 작성 활용

○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재업무의 과학화 도모

○ 반복피해시설물(지구)의 데이터베이스화

○ 2000년 재해연보의 발간

4) 재해영향평가제도 운영

〈현 행〉

○ 대상사업 및 규모 : 3개분야 3개사업

- 산업단지(1개) : 서산지방산업단지

- 체육시설(1개) : 천안종합체육시설

- 관광단지(1개) : 천안온천 관광지조성

파. 폭풍 예방대책

1) 조업중 어선 침몰로 인한 인명피해 경감대책

o 폭풍주의보·경보발효시 어선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15톤미만 어선 폭풍주의보 발효전에도 높은 파고가 예상될시 원양어업 억제 및 계도

o 범국가적 구조체제 확립

- 민·관·군·업체간 구난협력체제 유지
- 선박상호간 구조협조 ⇒ 인명구조 선박에 대한 정부차원 지원
- 외국 해난구조기관과 공조체제 구축(태안해양경찰서 등)

o 효율적 구조활동 전개

- 선박피해 다발지역 및 취약항로에 경비함정, 어업지도선 적정배치
- 기상 악화시 당직함정, 헬기 긴급출동태세 및 구조장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유지
- 경비함정 피항시 구조신호접수 즉시 대응 가능한 지역으로 피항

o 구난·구조장비의 교체·보강 및 현대화

- 현재 어업지도 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보유 어업지도선에 대하여 구난장비를 보강, 유사시 구난활동 대처

o 어선피해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계몽실시

- 선주, 어업종사자에 대하여 인명피해방지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 각 어선에 대하여 "기상뉴스 청취생활화" 및 "악기상시 행동요령"부착 의무화

2) 수산증·양식시설 피해경감 대책

○ 지역별 취약요인 분석 및 피해방지대책 수립

○ 어장별 담당공무원제 지정·운영 확행

○ 대국민 홍보 및 지도·계몽 강화

하. 백중사리 예방대책

○ 백중사리 사전대비 점검기간 설정운영 : 2001. 8. 24~9. 2

- 음력 7. 15일(양력 9. 3일) 이전 10일간

○ 사전 조치사항

- 해안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붕괴우려 해안시설물에 대한 사전 조치 강화
- 소규모 방조제, 방파제 등 해안시설물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 항구대책사항

- 해수범람지역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해수범람 피해 흔적 조사실시
- 위험방조제 개·보수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2. 재해응급(상황) 대책

가. 기상특보상황별 조치사항 및 주민행동 요령수립

○ 호우주의보·경보, 태풍주의보·경보, 폭풍주의보·경보,홍수예·경보 등 상황별 방재기관 조치사항 및 국민 행동요령 수립, 시행

기상상황	발 령 기 준
호우주의보	24시간 강우량이 80㎜ 이상일 때
호우경보	24시간 강우량이 150㎜ 이상일 때
태풍주의보	태풍의 영향으로 평균 최대풍속이 14m/s이상의 풍속 또는 호우, 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
태풍경보	태풍의 영향으로 평균 최대풍속이 20m/s 이상의 폭풍 또는 호우, 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
폭풍주의보	평균 최대풍속이 14m/s 이상이고 이러한 상태가 3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순간 최대 풍속이 20m/s 이상 예상될 때
폭풍경보	평균 최대풍속이 20m/s 이상이고 이러한 상태가 3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또는 순간 최대풍속이 26m/s이상 예상될 때
홍수주의보	홍수예보 발령지점의 수위가 경계홍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된 경우
홍수경보	홍수예보 발령지점의 수위가 위험홍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된 경우

나. 『재해사전계획 대피제』 지속 추진

재해우려지역의 행락객 및 주민들을 사전대피토록 하는 『재해사전계획 대피제』

1) 사전점검사항

○ 계절별, 피해발생 원인별 재해위험지구별 대피계획 수립사항
- 여름철 → 태풍, 호우, 폭풍
- 겨울철 → 대설, 폭풍설
- 재해위험지구별 대피유도 공무원 투입준비

○ 기상특보에 따른 권역별, 단계별, 계획적 대피준비
- 태풍영향권에 따라 행락객·야영객 및 조업어선 사전대피

○ 관련기관간 협조체제 구축사항
- 인명피해 발생에 대비 유관기관 인명구조 지원체계 사전점검
- 기 구축된 현지 수방단, 인명구조대원 등에 대한 소재파악 대기조치
- 피해발생시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비상연락망 재확인

2) 사태발생시

○ 긴박한 상황시 민방위 경보시설을 이용 재해경보를 발령하여 주민대피

○ 지역실정을 잘아는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즉시 파견 대피주민 안전지도

○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난·구조장비 동원등 즉시 지원체제로 돌입

○ 대피시는 지정된 대피로를 따라 이동하되 멀리 우회하여 높고 안전한 도로 이용

○ 주민대피지역에 대한 방범활동 전개
- 주민대피지역 상가·주택·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순찰강화 및 검문검색 철저

다. 수위관측 및 댐운영

1) 수위관측보고

○ 법적근거

- 홍수위의 보고(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1조 '96. 6.21)

○ 보고기준

- 금강 수계의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을 경우 홍수예보 및 홍수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에서 수위를 관측하는 자는 즉시 중앙재해대책본부장, 건설교통부장관등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관할시장·군수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보고 또는 통보받은 홍수위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동일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도지사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통보받은 예보 및 홍수위를 관계 주민등에게 신속히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2) 홍수조절을 위한 댐운영

(하천법시행령 제15조, 하천법시행규칙 제8조,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 수위저하

- 홍수기에 댐관리자는 강우에 의한 댐의 예상유입량을 고려하여 홍수조절을 개시하기 전에 댐의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사전방류를 검토하여야함

· 기　　간 : 매년 6.21~9.20(3개월)

· 댐운영(제한)수위

구 분	홍수기 가변 제한수위
6.21~7.20	EL. 72m (홍수 조절용 522백만㎥)
7.21~8.31	EL. 74m (홍수 조절용 407백만㎥)
9 .1~9.20	EL. 76.5m(홍수 조절용 250백만㎥)

○ 예비방류

- 건설교통부장관은 홍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댐 관리자에게 예비방류를 승인
- 예비방류는 상·하류의 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에 규정된 한계를 초과하지 못함

수 계 별	댐 명	홍수기유지수위 (EL·m)	상시만수위 (EL·m)	예비방류한계 (㎥/sec)
금 강	대 청 댐	72.0	76.5	1,000

○ 댐조작 상황보고

- 각 댐의 관리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댐조작 상황보고
- 보고내용 : 저수지 수위, 유입량, 방류량 및 수문개폐 현황
- 보고요령

· 개시보고 : 홍수기 댐조작 개시시

· 정기보고 : 댐조작 개시 후 방류 증감시마다

○ 홍수기 댐 수문조작 통제 및 방류량 승인

- 홍수조절을 위한 댐 수문조작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의 승인을 얻어 방류개시 3시간전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댐하류부 지역주민에게 방류신호 실시

라.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설치근거 : 재난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

○ 현장지휘소 조직

- 통제관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재난관리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긴급구조본부의 통제관인 소방서장이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총괄 지휘

- 구조·구난활동팀 구성 : 119구조대원, 119구급대원, 군, 경, 자원봉사자로 혼합 편성

· 인력·장비부족시 긴급구조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지원 요청 활용

※ 중앙 및 지방재해대책본부에 구조·구난분야 연락관 1명 파견

○ 임 무

- 고립자 구조
-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 접근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통제관은 긴급구조사항을 시·군 재해대책본부장에게 수시 보고

마. 이동진료소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 이동진료소

- 설치지역 : 이재민 공동수용시설 및 현장지휘소
- 구　　성 : 관할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의사 및 간호사로 편성
- 지휘통제 : 관할보건소장

- 임　　무

· 사상자의 응급처치

· 수용이재민 환자 치료

○ 집단급식소

- 설치지역 : 이재민 공동수용시설

- 구　　성 : 대한적십자사 및 자원봉사자 혼합 편성

- 지휘통제 : 대한적십자사 관할지사

- 임　　무

· 수용이재민에 대한 집단급식

바. 비상급수

○ 대상지역

- 송·배수관 파손으로 단수된 지역

- 상수도시설의 침수·유실로 단수된 지역

- 이재민 공동수용시설 등

○ 공급계획

- 이재민 공동수용시설 : 응급 급수조 설치 운용

- 수도법 제26조(긴급급수지원)의 규정에 따라 조치

- 민방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개인정보, 비상급수시설, 담수된 배수지 활용

- 인근정수장 또는 지역으로부터 운반급수

- 생수생산업체로부터 지원 공급

사. 생필품공급

○ 생필품 중 필수품목만을 포장 피해발생 즉시 이재민에게 공급

아. 청소 및 방역

1) 청 소

○ 쓰레기 처리

- 시장·군수는 침수피해 등으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임시 지정된 적환장에 적치
- 매립장 관리기관 및 인접시·군과 협의 신속 매립조치
- 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차량 등 장비 확보

○ 분뇨처리

- 분뇨처리를 위한 장비확보
- 인접시·군과 응원체제를 구축 피해발생시 신속조치

2) 방 역

○ 시장·군수는 침수지역 및 공동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하여 방역활동 실시

○ 물자 및 장비의 부족에 대비 인접 시·군간 응원체제구축 운영

자. 시설물 응급복구

1) 응급복구를 위한 노동력 확보

○ 수해지역의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는 전문인력과 기타인력을 구분하여

- 기술이 필요한 전문인력은 노동부에
- 기타인력은 국방부(인근부대)에 지원요청

2) 피해주택에 대한 응급조치

○ 시장·군수는 피해주택 이재민을 수용할 임시주택 건설예정지 및 시설자재를 사전에 확보 관리

- 건설규모 및 소요예산 등 판단
- 입주자 선정과 공사 시행방법 등 강구

○ 주택이 반파되었을 경우 건물의 안전성 등을 검토, 수선이 가능한 주택은 응급수리 사용토록 하되,

- 주택수리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우선지원

○ 가설건물 또는 반파주택 수리용 자재는 생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필요 즉시 반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3)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 상수도시설

-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 수도사업자별로 긴급복구반 편성·운영

· 복구에 필요한 건설장비, 수도관등 평시에 일정량을 확보하고 긴급조달체계 구축

· 수도사업자별로 복구동원업체 등을 지정 관리

· 복구 우선시설을 지정하여 피해발생시 우선순위에 의해 복구

· 수도시설의 도면관리 철저 및 분산보관으로 긴급복구시 대비

〈수로사업자간의 상호지원체계 수립〉

· 비상급수, 피해복구 등을 위한 기술자 공무원간의 상호파견제 운영

· 광역적 지원체제 구축

〈수도물 공급시스템 개선〉

· 조기복구가 용이하도록 공급시설 정비

· 시설정보의 다원관리 추진

· 비상연결관로 등에 의한 인근지역간 상호급수 지원

○ 하수도시설

- 하수도 관리책임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복구반을 편성 운영

- 양수기, 공기압축기, 수중펌프, 콘크리트 브레카 등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 비치

- 하수처리장의 피해유무를 파악하고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현장 비치
- 하수도 시설의 복구순서는 하수처리장, 펌프장, 관거 등 중요도에 따라 실시

○ 전기시설

- 재해발생시 전력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 긴급복구방안
  - 긴급복구는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
  - 긴급복구 대상시설은 자체 긴급복구계획을 수립하되 1차 사업소장은 예하사업소 관할시설까지 포함하여 수립시행

○ 가스시설

- 가스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본사 및 사업소 등에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 복구담당 기관에서는 응급복구에 필요한 각종 자재·장비 등의 확보는 물론, 수시로 점검·정비하고
  - 피해시설물의 복구는 제조소, 정압소, 고·중·저압관순으로 복구 실시

○ 통신시설

- 재해발생시 통신의 두절로 재해응급 활동을 저해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의 방지를 위하여 각 통신 책임자는 본사 또는 산하기관 등에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 통신시설을 담당하는 각 기관에서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용 이동전화국, 무선이동통신, 이동전원차 등의 장비 및 자재 확보
  - 피해발생지역에는 임시전화 접수처와 공중전화 등을 설치하고 전기 통신설비의 순회점검 실시
  - 통신시설의 복구는 전기통신사업별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호의 순으로 우선 실시

4) 토목공공시설 복구

o 도로·교량

- 각 도로 관리자는 소관 도로·교량의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우회도로를 선정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
- 각 시설의 복구담당기관은 복구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사전에 확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피해발생시에는 복구반을 즉시 현장에 파견 점검 및 복구 실시
- 도로·교량시설의 복구순서는 긴급도로를 최우선으로 개설하고 일반도로 및 지장물 반출로 등의 순서로 복구

o 하천 및 내수 배제시설

- 재해발생시 제방·호안 등의 하천시설이 파손·붕괴될 경우 피해시설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역수방단을 활용하여 공사장 또는 위험한 시설 순찰 강화
- 피해시설에 대하여는 기확보 자재와 장비를 동원, 즉시 응급조치

o 항만·어항시설

- 항만 및 어항의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계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응급조치
- 피해복구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지역별 분담제를 실시하여 피해발생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

o 공항시설

- 공항관리자는 공항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와 항공운항의 조기재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 공항내에 있는 인명과 화물에 대한 대피계획도 수립 추진

o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 특히, 공공의 안전확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시설은 우선 복구 실시

○ 철도시설

-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송수단의 확보를 위하여 철도청에서는 다음 사항의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
  - 여객·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자체조사·복구반 편성
  - 조사반 현지파견 피해상황 조사
- 도시기능의 신속한 회복과 각종의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수행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철도시설이므로 타시설에 우선하여 복구 실시

○ 사회공공시설

- 병원, 사회복지시설, 학교등 사회공공시설 관리자는 인명의 안전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아래의 조치계획을 수립시행
  - 환자, 장애자, 학생등을 안전히 유도하기 위한 대피유도반 편성운영
  - 단전, 단수, 통신두절 등에 대비한 자체조치계획 수립
- 피해시설물의 신속한 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복구업체를 사전에 지정 피해발생 즉시 현장투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3. 재해복구대책

가. 복구방침

○ 재해복구는 자주방재 정신에 입각한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에 대하여도 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복구책임자가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주택복구는 최단기간내에 완료하여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시설 복구도 완벽을 기하여 피해재발이 없도록 시공

○ 산사태지구등 반복 피해지구에 대해서는 피해재발이 없도록 근원적인 대책 강구

나. 민생관련부분 복구비 우선 지원제 추진

○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 사망 실종자 위로금, 이재민 장기구호, 생계지원

○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

- 주택 전·반파·침수, 세입자 보조, 농경지 복구, 대파대 및 농약대 등

○ 우선 지원 재원

- 재해구호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가용재원 활용

다. 중앙합동조사단 파견(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

○ 피해지역조사를 위하여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편성된 중앙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조사

- 파견인원은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조정
- 시도지사에게 피해조사권한 일부이양

· 사유시설 전체, 피해액 5천만원이하 공공시설

○ 재해 및 복구대장관리의 간소화·일원화

라. 복구계획 수립

○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지원

○ 이재민 구호 및 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자에 대한 위로 및 생계 보조
- 주택이나 주 생계수단(당해 총 가구수입의 50%이상에 달하는 생계 수단을 말함)이 재해를 입은 경우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 및 생계보조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지원
- 영농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상환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과 조합비, 국세, 지방세의 감면등 간접지원

o 재해복구사업
- 주택 및 농경지복구
- 농림시설 및 농작물의 복구
- 도로, 교량, 하천등 공공시설의 복구 등
o 재해복구비용은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에 의거 산정

마. 국고의 부담 및 지원(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규정 제3조 적용)

바. 지방예산편성 및 집행

o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 중앙 복구계획 확정통보 즉시 편성되도록 사전에 모든 절차 완결
o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예산편성 기준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복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o 복구사업계획 확정시달 즉시 사업별 세부집행계획(시설별로 예산 편성에서 준공까지)을 수립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

사. 항구복구사업 추진 및 지도·감독

1) 방 침
o 복구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이재민의 생계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행·재정 절차 간소화 및 지원확대
o 모든 시설복구는 연내 완공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복구는 11월말까지 입주토록 해야하며 대규모 복구사업일 경우라도 익년 우기전까지는 완공
o 복구지침에 따라 피해지구의 피해원인을 정밀분석, 방지대책도 아울러 실시하고 사업장별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현황사진을 촬영, 기록 유지

2) 복구사업의 설계 및 감독

- ○ 피해시설별로 근원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 ○ 조사측량 및 설계를 위한 기술지원단 편성 운영
  - 수해가 발생하지 않은 인접 시군에서 차출 활용
- ○ 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공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재발 방지
- ○ 대규모 공사와 주요구조물의 복구공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 확대하고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므로서 부실공사 방지
- ○ 하천복구사업은 현행의 치수중심의 복구에서 하천 환경기능을 고려하여 추진하므로써 하천경관의 유지 및 생태계 보호 등 자연환경보전
- ○ 부진사업에 대한 특별대책 강구 집중관리
- ○ 복구사업의 지도·감독은 소관부처 및 도가 담당하되 총괄적인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은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관장

3) 복구사업 집행

- ○ 복구사업 조기집행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만 집행계획 사전협의
- ○ 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개량복구도 병행추진하며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방재책임자의 부담으로 복구
- ○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규모가 큰 사업은 도가 직접 시행방안 강구
- ○ 복구사업의 특성에 따라 계약방법의 효율적 운영

4) 재해대장 관리 및 보고

○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재해대장의 뒷면에 복구 추진상황을 기록 관리

- 재해 13907-19('94.7.4)로 시달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참조

○ 도로, 교량, 하천시설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조물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

○ 복구 추진상황은 매월 25일까지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도재해대책본부에 정기 보고

Ⅲ. 설해대책

1. 재해예방

가. 도로별 제설 및 교통대책

1)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 제설작업은 차량 운행상태하에서 실시
(단, 적설량 50㎝ 이상시 고속도로순찰대장과 협의후 통제 실시)

○ 고속도로는 각 지사별로 관리구간에 대한 제설작업 책임실시

○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자재 사전확보 및 현장 비축

○ 제설장비 사전 점검·정비

○ 적설량 등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교통통제계획 설정 운영

- 1단계(적설량 2㎝미만, 시거장애 100m 미만)

·교통제한 : 평상시 운행속도의 20% 감속 운행

- 2단계(적설량 2㎝이상 강설·안개 등으로 시거장애 20m 미만)

·교통제한 : 평상시 운행속도의 50% 감속운행

- 3단계(적설량 10㎝이상 강설·안개 등으로 시거장애 10m 미만 폭설·노면결빙 등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 할 때)
·교통제한 : 교통체한 및 통행금지

2) 일반국도 등 기타도로(건교부 및 도, 시·군)

○ 도로등급별 제설담당기관
- 일반국도 : 건교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지 방 도 : 도(도로관리사업소), 단, 시관내(洞 구간)는 해당 시
- 시·군도 : 시·군
○ 제설작업은 차량 운행상태하에서 실시
(단, 적설량 50㎝ 이상시 경찰서와 협의후 통제 실시)
○ 강설시 교통두절 예상구간 지정 및 중점관리
- 교통두절 예상구간 지정 : 3지구
·국도 40호선 공주시 우금티고개, 지방도 604호선 공주시 구계고개, 지방도 606호선 보령시 우마치고개
- 우회도로 지정 및 교통통제시 안내간판 설치
- 제설장비 및 인력 사전배치
○ 기타 강설시 취약구간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장비 및 인력 사전배치
※ 일반국도상 취약구간 3개소 지정관리(공주 2, 보령 1)
○ 상황별 교통통제 실시 : 고속도로 통제기준에 준하여 실시
○ 시·군 및 유관기관간 제설 공조체제 구축
- 시·군, 도로관리사업소,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군부대 등

나. 산악·고립지역 및 등반객 안전대책

1) 산악·고립지역 안전대책

○ 산악지역 : 등산로 통제구간 지정·관리
- 통제소 설치 : 7개소

· 근무인원 : 27명

· 구조장비 : 80점(무전기 26, 메가폰 31, 로프 3, 기타 20)

- 사전대책

· 2~3일전 예보분석후 악기상 예상시 사전통제 안내방송 실시

· 등산로 입구에 겨울철등반자 숙지사항 안내판 설치

· 구조대책 합동상황실 운영

·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헬기 동원체제 수립

· 조난에 대비한 사전대책 홍보강화

2) 등반객 조난사고 예방대책

o 빙벽훈련장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 빙벽훈련장 부근 안전지대에 영구대피소 설치검토

- 훈련자는 미리 훈련계획을 해당산하 관리사무소(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사전신고 후 실시

o 겨울철 등반객 통제강화

- 강설확율 50%이상, 예상적설량 20㎝이상 예보시 입산금지 및 입산자 하산계도, 안전대피 조치

- 개인입산은 절대 금지하고 단체입산은 허용하되 전문산악인 안내하에 입산조치

다. 비닐하우스시설 피해경감 대책

1) 단기대책

o 폭설시 비닐하우스시설위의 눈쓸어 내리기 등 사전대비 철저

o 농림부 발생 표준규격시설이 아닌 경우는 지원복구 대상에서 제외

o 비닐하우스 설치기준 및 행정지도 강화

2) 장기대책

- ○ 비닐하우스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점차 배제
- ○ 비닐하우스시설 설치기준 강화
- ○ 첨단기술농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라. 인삼재배시설 피해경감대책

- ○ 지역별 기후특성에 적합한 다향한 표준 인삼재배시설 모델을 개발하여 「표준인삼경작방법」에 수록고시
- ○ 인삼재배시 표준 인삼재배시설 모델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재해 발행시 표준모델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방안 강구

마. 홍보계획

- ○ 홍보기간 : 2000. 11월~2001. 2월까지
- ○ 홍보내용
  - 설해발행시 대국민 행동요령
  - 설해상황 및 교통통제 등 교통정보사항
- ○ 홍보매체 : TV, 방송, 신문, 반상회 회보, 깃발, 스티커, 광고전광판, 아파트 구내방송, 공문서 하단에 표어 게제

2. 재해응급(상황)대책

가. 신속한 상황관리

구 분	지역별	기 상 상 황	비 상 근 무
1단계 (준비체제)	대 도 시 기타지역	신적설이 3㎝내외가 예상 신적설이 10㎝미만이 예상	중앙·지방재해대책본부 및 설해대책기관
2단계 (경계체제)	대 도 시 기타지역	신적설이 5㎝이상 예상 신적설이 10㎝이상 예상	1단계 근무기관 및 지방 행정기관
3단계 (비상체제)	대 도 시 기타지역	신적설이 10㎝이상 예상 신적설이 30㎝이상 예상	설해대책기관 전공무원 비상근무

1) 근무체제 : 년중무휴 24시간 상황관리체제 구축

○ 평상시 : 24시간 재해상황실 운영(1명)

○ 강설시 : 적설량에 따라 1, 2, 3단계로 구분 비상근무 실시

2) 보고체제

○ 피해발생 및 강설상황 보고 : 즉시(중요사항은 시·군에서 즉보)

- 대설주의보·경보시는 매시간 지역별 적설량 보고

○ 일일피해상황 종합보고(도지사가 총괄보고) : 1일 2회

- 기준시간 : 당일 9시기준 11시까지, 19시기준 21시까지 보고

나. 기상특보상황별 조치사항 및 주민행동요령 수립

○ 대설주의보 및 대설경보 상황별 행정기관 방재기관 조치사항 및 국민행동요령

기상상황	발령기준
-대설주의보 · 대도시(특별·광역시)지역 · 일반지역 · 울릉도지방	-신적설 5~20cm 이상 예상될 때 · 5cm 이상 예상될 때 · 10cm 이상 예상될 때 · 20cm 이상 예상될 때
-대설경보 · 대도시(특별·광역시)지역 · 일반지역 · 울릉도지방	- 신적설 10~50cm 이상 예상될 때 · 5cm 이상 예상될 때 · 10cm 이상 예상될 때 · 20cm 이상 예상될 때

3. 재해복구대책

가. 중앙합동조사단 파견(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

○ 피해지역 조사를 위하여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편성된 중앙합동조사단을 현지 파견 조사

○ 사유시설 및 일부공공시설 도지사에 위임 조사

나. 복구계획 수립

○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지원

○ 이재민 구호 및 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자에 대한 위로 및 생계 보조
- 주택이나 주 생계수단(당해 총 가구수입의 50%이상에 달하는 생계수단을 말함)이 재해를 입은 경우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 및 생계보조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지원
- 영농자금, 생활안전자금 등의 상한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과조합비, 국세, 지방세의 감면등 간접지원

○ 재해복구사업

- 주택 및 농경지복구, 농림시설 및 농작물의 복구

○ 재해복구비용의 산정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 규정 제7조

다.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 적용

Ⅳ. 가뭄대책

1. 재해예방

가 .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 지역실정에 따라 1단계(10% 감량공급)~6단계(취수원고갈)로 구분 단계별 추진대책 수립 실시

구 분	기 준	내 용
Ⅰ단계	10% 감량 공급시	○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역 운반급수 ○ 방송·캠페인 등을 통한 절수 홍보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Ⅱ단계	10~30% 감량 공급시	○ 시·단위별로 『비상급수대책상황실』 운영 ○ 물다량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자발적 유도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 공공건물, 대형빌딩 절수 확대 ○ 공업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확대 ○ 각 가정 절수 적극 유도 ○ 격일제 또는 3일제 제한급수 실시 ○ 수영장, 세차장 등 영업시간단축 또는 임시휴업
Ⅲ단계	30~50% 감량 공급시	○ 목욕탕, 사우나 등 격일제 영업 ○ 농업, 공업용수원을 상수원으로 전환 ○ 수돗물 다량사용 공장 조업 단축
Ⅳ단계	50~60% 감량 공급시	○ 실정에 따라 3~5일제 급수 ○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 개인관정, 전용상수도 공동이용 확대
Ⅴ단계	60% 이상 감량 공급시	○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 수돗물 다량사용공장 조업중단
Ⅵ단계	취수원 고갈기	○ 인근 지자체에서 운반급수 ○ 최소한의 식수배급제 실시

나. 가뭄 발생예상지역의 한해장비 점검·정비

○ 시장·군수는 자체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월1회이상 점검·정비실시
○ 도지사는 양수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될 경우 즉시 확보보충

다. 가뭄발생지역 긴급 용수원개발 추진

○ 주요사업내용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발, 소형관정 개발, 집수정 개발 등
- 간이용수원 개발 : 하천굴착, 포강, 이동식양수시설 등
- 양수급수 : 양수장비를 동원한 용수공급 및 다단양수

○ 사업비 재원 : 국고 또는 지방비

라. 지하수개발 및 사후관리

○ 지하수법 개정등 관련법령의 정비 착수

○ 지하수 기초조사 확충 및 D/B 구축 추진

○ 전국적인 지하수 감시망 구축을 위한 관측소 설치

○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중장기 대책수립 추진

○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체계의 확대 검토

마. 도서지역 및 농어촌지역의 가뭄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방 상수도시설 지속적 확충

○ 도서지역의 물문제 해소를 위한 식수 전용저수지 및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

○ 농어촌 및 중소도시지역의 지방상수도시설 지속적 확충

- 면단위 농어촌지역 7개소의 58억원(국고 29억원) 투자
- 읍단위이상 중소도시 2개소에 78억원(국고 40억원) 투자

2. 재해응급(상황)대책

가. 상황관리

○ 상황실 설치

- 가뭄 발생시 행정자치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에 가뭄상황실 설치 운영

○ 상황실 운영

- 가뭄상황실 운영은 각 유관부처별로 특성에 따라 설치 운영하되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총괄기능 수행

나. 긴급식수원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

○ 유휴우물 또는 농업용관정등 기존시설 최대 활용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인근 정수장,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등 활용

○ 농업·공업·발전용수등 다른 수리시설 일시 전용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 확보(군, 소방서 등)

○ 먹는 샘물업체의 협조를 받아 먹는 샘물 공급

다. 범국민적 절수운동전개 등 대국민 홍보

○ 방송매체를 통한 절수운동 전개

- TV 3사를 통한 자막방송 및 특집프로 제작 홍보

○ CATV, 공공채널(K-TV)를 통한 홍보

- 프로그램 제작·방영실시

3. 재해복구대책

가.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

1) 중앙지원

○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군당 50ha이상 피해시 지원

2) 자치단체 지원

○ 중앙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시군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대파대(종자대 및 비료대)
  ⇒ 농약대(농약살포 소요액)

나. 한해장비 구입비 등의 지원

1) 유류대 및 전기료

○ 한해 예방용 용수확보를 위하여 사용한 유류 및 전기료의 50% 지원

2) 장비구입비

○ 한해대책용 양수기 및 양수용 발동기 구입비의 50% 지원

3) 시설비 지원

○ 양수용 펌프 및 관정설치비의 50% 지원

다. 한해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한 지원

1) 지원대상

○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주)에 정한 대상자

2) 지원항목

○ 이재민구호, 중·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정부양곡 지급 등

V. 지진대책

1. 재해예방

가. 내진설계기준 강화

1)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 법정 대상시설물

-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시설물

○ 현재 20종의 법정시설물중 14종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제정 완료
- 나머지 6종 시설물은 관계부처 주관으로 금년과 2001. 6월까지 제정 추진
- 법정시설물외 내진대상 추가확대 6종시설물은 2001년까지 제정 추진

2)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 조사계획
- 소관부처 주관하에 7개년('99~2005)에 걸쳐 실시
  · 1단계('99) : 소관부처 주관하에 국책·민간·대학연구기관 및 국립방재연구소·지진공학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 각시설별 실태조사표 작성 등 조사계획수립
  · 2단계(2000. 1~2004) :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 산하기관에서 조사표에 따라 소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3단계(2005) : 국내지진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조사결과 평가 및 필요시 현지 표본조사 등 실시

○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추진(2001년 이후 시행)
- 기존시설물에 대한 보강기준은 관계부처 주관하에 2001~2002년까지 마련 추진

○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5년에 『우리나라 내진실태 조사보고서』 작성 발간

3) 내진설계기준 적용실태 지도·감독 강화

○ 대상시설물
- 자연재해대책법상 20개 법정시설물을 대상으로 개별법에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법 제34조)
  · 현재 기준이 설정된 시설물 : 원자력·화학발전소, 농업용 저수지, 석유·가스저장소, 다목적댐·일반댐, 건축물, 철도, 고속철도, 도로·교량·터널, 항만·어항

- 미설정된 시설물(6) : 공항, 도시철도, 화학류저장소, 수도, 수문·배수펌프장, 배수갑문

  ※ 법정시설물외에 내진대상 추가확대 6개시설물(5층이하 단순조적조 건축물,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15만㎡ 이상 폐기물매립지, 공단폐수종말처리장)도 포함

○ 추진계획

- 예산확보등 문제점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 등에 적극 지원 촉구
- 교육기관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 반상회, 정기간행물 등을 이용한 주민홍보 강화

※ 내진설계 기준 의무화 및 위반시 벌칙과 행정처별 강화

나. 도시공간 확보 및 기능분산

1) 지진다발지역에 대한 도시공간 확보

○ 지진다발지역내에 공원, 녹지 등 Open Space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시내 쾌적한 공간조정은 물론

○ 지진발생시 대피자의 피난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시 반영 추진

2)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분산 배치

○ 지진발생으로 도로·철도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동시에 파괴될 경우 중앙 및 인접지역과의 응급수송기동력에 대한 응원이 차단되게 되므로 앞으로 신설하는 도시등에는 사전에 도시기반 분산 배치

○ 도시기능이 한곳에 집중될 경우 지진발생시 대규모 재앙이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시기능 분산

○ 도시계획 등 각종 시설계획수립시 경제성은 물론 안정성 등을 고려 설치

다. 위험시설물의 점검·정비

1)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각종 시설물의 관계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실시(5층미만 아파트 포함 : '99년 개정)

- 아파트, 백화점, 극장, 지하상가,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관림집회시설, 자동차여객터미널 등

2) 공공시설

○ 도로, 철도, 댐, 하천 등 대규모 재해 유발요인이 있는 시설물은 특별법 또는 각종 시설물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실시

라. 화재예상시설물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

1) 화재예상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실시

○ 석유, 화약류, 화학약품 등의 보관시설, 가스보관, 독극물 취급, 방사선 사용 시설등 화재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조치

○ 도시가스시설 누출방지대책

- 가스누출에 대비 수시 및 정기점검 실시
- 가스누출시에 대비 자동차단장치 설치 확대 등

○ 인화·발화·폭발성 또는 독성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사업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방지대책 추진

2) 화재방지대책 강화

○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활동체제 정비

○ 소방활동로 지정, 소방활동 곤란지역 해소계획 등을 수립 추진

○ 정보·통신체제의 정비

○ 새로운 화재진압장비 확보(공중, 해수)

○ 2차 피해확산 방지시설 설치

마. 방재교육 및 훈련실시

1) 지진방재교육

○ 민방위대 실무교육강사 및 각급 기관의 지진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중앙 집체교육 및 전파교육 실시

○ 각급 기관별 기능별로 지진대비 교육실시

2) 지진대비 도상 및 실제훈련

○ 도상훈련은 시군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하고, 실제훈련은 전 시군에서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지진취약(지진구역1)은 년 2회 그외 지역은 년1회, 지역특성에 맞게 훈련 실시

- 기초자치단체의 1/2씩 실시하되,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실시

○ 지역 및 직장단위의 민방위훈련과 병행하여 규모(M) 6.0의 지진피해가 발생한 것을 가정한 훈련 실시

○ 지진취약지역은 민방위 훈련시 지진훈련 중점실시

바. 대국민 홍보 실시

○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 전문가 TV 대담 및 캠페인 방송
- 지진대비 국민 행동요령에 관한 책자발간 배포

○ 각급 기관별 교육시 홍보

- 자치단체 지진담당공무원, 군·학교(유치원 포함) 교육시 홍보

○ 「민방위의 날」 지진대비 도상 및 실제훈련시 홍보

○ 국민행동요령 소책자 제작 홍보

2. 재해응급(상황) 대책

가. 피해수습체계

〈중앙 및 지방의 활동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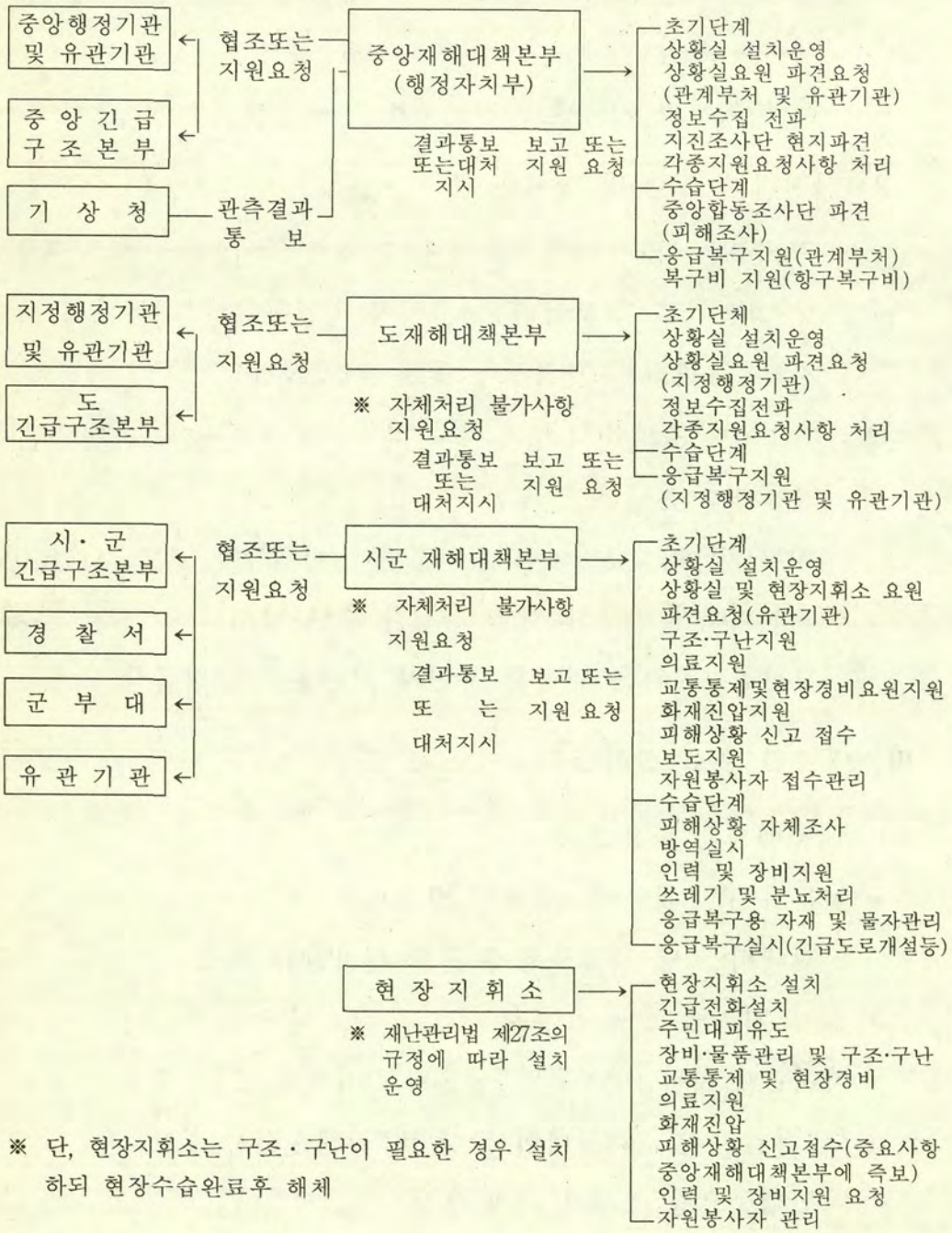

※ 단, 현장지휘소는 구조·구난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되 현장수습완료후 해체

나. 기상특보 상황별 조치사항 및 주민행동요령

○ 해일주의보 및 해일경보 상황별 행정기관(방재기관)조치 사항 및 주민행동 요령 수립, 시행

기상상황	발령기준
해일주의보	· 해저지진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안지대 침수가 예상될 때
해일경보	· 해저지진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안지대에 상당한 침수가 예상될 때

다. 정보의 수집· 전파

1) 통신연락 체계

○ 통신망(전화FAX 등)의 우선 이용

○ 비상무선통신의 이용

○ 위성통신네트워크, 행정무선, 행정전화외에 경찰, 군, 해양수산부 등과 핫라인 설치

○ 헬리콥터, TV영상전송시스템과 고정감시카메라, 영상전송시스템의 도입 등 다중적 정보통신시스템 확보

2) 재해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홍보

○ 사회적 혼란방지를 위하여 재해 예·경보 발령사항, 재해발생, 응급조치, 복구상황을

- TV자막 방송 및 24시간 현지 생방송 실시
- 수집된 각종 피해정보를 퍼스콤 통신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신속 전파

3) 실종자 확인

○ 시·군 재해대책본부와 현장지휘소에 사상자 및 구조자 정보의 전달 시스템 구축 운영

○ 실종자 확인을 위한 임시전화 확대 설치

4) 피해상황 등의 조사보고

○ 피해상황보고

- 주요피해상황 : 읍·면·동→시·군 재해대책본부→도재해대책본부 →중앙재해대책본부(관련부처 전파)

- 피해상황집계 : 읍·면·동→시·군 재해대책본부(전산입력) → ┌ 중앙재해대책본부(관련부처전파) └ 도 재해대책본부

- 대규모피해(즉보) : 주민→읍·면·동→시·군 재해대책본부 →중앙재해대책본부(관련부처 전파)

○ 항공사진 등을 이용한 피해상황 확인시스템 도입

5) 유관기관간의 상호협력

○ 대규모 재해발생으로 자체물자 및 장비만으로는 수습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 인접 시·군간 상호협력 지원체제 구축

○ 기타 지정행정기관·지방공공단체·군·경은 물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민간단체등과도 비상연락망 정비등 상호 지원·협력체제 구축

라. 재해구호대책

1) 구호활동체계

○ 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효율적인 구호와 복구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재해구호활동본부를 시·군에 재해구호활동반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이재민 구호에 대처

2) 종사명령 및 물자 등의 확보

○ 인력의 종사명령(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신속한 구조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의료, 전기, 가스, 통신, 소방 또는 건축물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자 확보

·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원, 토목·건축기술자, 목공 등 특수분야

○ 시설·물자의 사용(재해대책법 제47조)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자 확보

· 응급조치에 필요한 토지, 가옥, 물자 등의 수용·사용, 보관·명령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지정

3)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운용

○ 도지사는 재해구호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 기금 적립

○ 재해구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구호에 필요한 경비로서 구체적인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재해로 인한 이재민구호 및 피해복구비('98년도 이재민 구호비 지원 기준에 의함)

※ 중앙지원대상인 경우 기금으로 우선 지원후 정산

-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설치, 의류, 침구, 취사·난방도구, 연료, 의약품 등 기초 생활필수품 구입

- 구호업무 협력소요비 및 위탁비용(재해구호법 제9조, 제12조)

- 비축물자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비 등

마. 소방 · 위험물대책

1) 지진소방 활동

○ 규모(M)5이상의 지진발생시에는 화재에 대비하여 관할소방서 화재 진압반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고

○ 대규모 화재에 대비 인근소방서와 상호응원협력체제 구축 운영

2) 위험물·유해물 취급시설 등의 응급대책

○ 석유등 위험물 보관시설은 위험물의 폭발·유출 등에 대비, 시설의 응급 점검 및 수송정지

○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보관시설 관리자는 대규모 지진에 대비 방재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신속·정확히 통보

바. 경비 및 교통대책

1) 경비 · 방범 체계

○ 경비계획

- 대규모 지진발생에 대비 경비본부 설치 운영

〈경비본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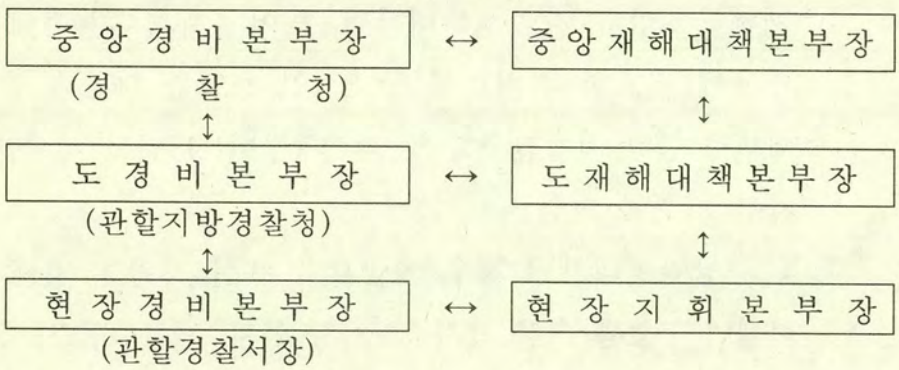

- 피해지역 관할경찰서장은 관내에 규모(M) 5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현장상황반, 5분대기조등 초동조치부대 현장출동 임무수행

- 관할 경찰서장은 가용인원을 최대한 동원 현장에 투입하여 피해실태 파악, 대피유도, 구조·구난 등 실시
  · 재해발생 및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경찰통제선(Police line) 설치
  · 재해현장 출입 인원 통제 및 질서유지
  · 피해주민 대피 유도

○ 방범계획

- 지진피해지역의 아파트, 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 전개
  · 재해현장 주변상가, 주택가 아파트단지 등에 대한 순찰 강화 및 검문 검색 철저
  · 인접 경찰서, 방범순찰대, 기동대 등 병력집중지원으로 안전활동 및 방범활동 강화
- 미아 및 고아에 대한 전산수배 및 연고지 수배로 신속한 보호자 확인·인계

2) 교통규제계획

○ 교통규제

- 관할 경찰서에서는 1·2단계로 구분 교통규제지역 설정 운영
  · 1단계 : 지진발생과 동시에 통제선을 설치 규제
  · 2단계 : 피해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산하여 통제선을 설치 규제

○ 교통규제요령

- 대규모 지진발생 즉시 통행중인 차량을 도로의 우측에 정차시키고 중앙부분은 긴급수송차량 통행도로 사용
- 통제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외에는 통행을 규제하고 일반 차량은 우회통행 조치
- 구급차량과 긴급수송차량이 경합하게 될 경우 구급차량이 우선함

사. 대피계획

1) 주민대피 유도

○ 시장·군수는 관할구역내에서 지진이 발생하였거나 극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소방서장의 협조를 얻어 대피 권고

○ 시·군 교육장도 학교장 책임하에 각 담당교사 중심으로 학생을 대피장소까지 안전히 유도

○ 장애자와 거동 불편 고령자에 대한 수용계획 수립 추진

2) 대피장소 및 대피로 확보 등

○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 지정·관리

- 시장·군수는 대피예상인원을 판단하여 대규모 지진발생시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장소의 학교·체육관등 공공시설을 대피장소로 지정관리
- 대피주민의 상황파악 관리
-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피소별·개인별 매뉴얼을 작성 활용

○ 대피유도용 통신장비 확보

-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은 지진발생시 기존의 통신장비인 소형무전기 등을 주민대피 유도용으로 전환 사용하되, 부족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확보 관리

아. 구조·구급계획

1) 구호·구급체제의 정비

○ 구조체제 정비

- 시장·군수 또는 통제관은 지진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 환자수송 등을 위하여 지진발생지역에 현장지휘본부(소) 설치운영

○ 인명구조를 위한 기자재 확보

- 경찰, 군용자재의 확보(전동카타쇼엘카, 백호우, 파이브스코프 등)

○ 구조구급대 정비 및 보강

- 응급조치가 완료된 중·경상자의 병원후송을 위하여 지역119 구급대와 경찰·군·산림청헥기 긴급지원
- 대한적십자사 주관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129응급환자 정보센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2) 자원봉사자 대책

○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훈련·파견을 위한 센타의 설립 추진

○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위치 배경

○ 재해자원봉사자의 모집·훈련, 파견 등의 제도화(종류 : 의료, 건축, 소방 등)

3) 피해자 신상 관리

○ 지진에 의한 정신적인 상처나 피난소에서의 장기화 등에 의한 정신적 피로에 대한 치유계획 수립

자. 의료·구호계획

1) 의료·구호대책

○ 초동의료체제

- 재해시 일차적인 의료구호는 시장·군수가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군 단위로 의료반을 편성 운영

〈재해시 의료구호체계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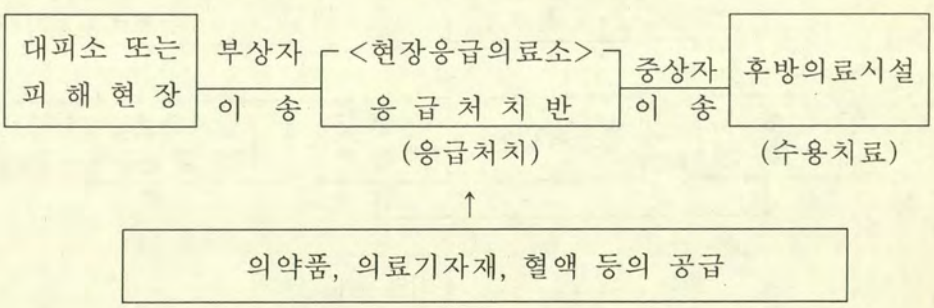

○ 현장의료소의 설치

- 의료구호반은 시장·군수가 설치한 대피장소 또는 재해현장 등에 구호소를 설치

○ 의약품·의료기자재의 비축

- 도 및 시·군에서는 현장의료구호반에서 5일간 사용할 의약품, 의료기자재, 혈액제 등을 산하 의료기관에 보관

○ 후방의료기관의 지정 관리

- 도지사는 현장의료구호소등에서 후송되어 오는 중상자의 진료를 위하여 대규모 지진발생시에도 상·하수도, 전기, 가스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시설에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지역에 2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후방의료기관으로 지정관리
- 광역후방의료 요청은 현장지휘본부→중앙재해구호본부(보건복지부)의 경로를 통하여 요청

2) 중상자 후송 대책

○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이 119구급대 또는 의료기관구급차 등에 요청, 후방의료시설까지 운송 조치

○ 통신망의 단절로 피해지역 의료기관의 상황파악이 곤란할 경우에 대비 원활한 수송 등을 위한 정보수집

〈사상자처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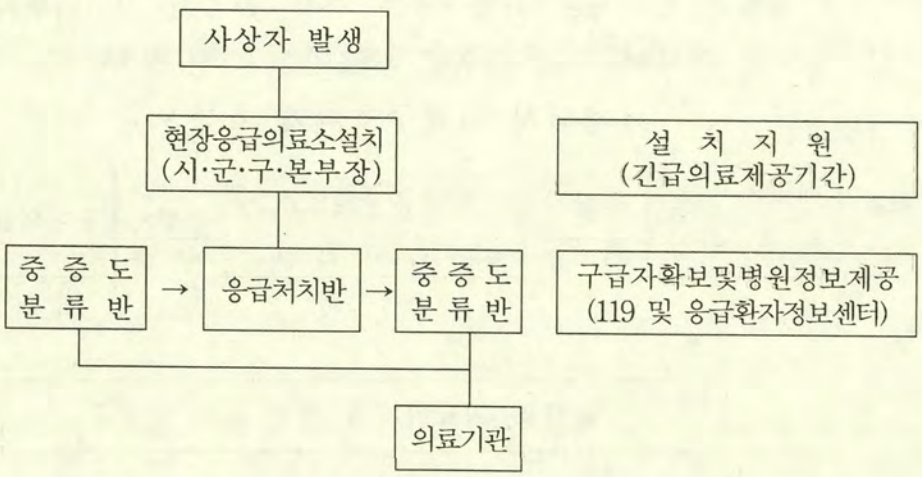

3) 의료시설에 대한 Life-line 대책

○ 단수, 정전등으로 인하여 의료활동을 할 수 없는 의료시설에 대한 라이프라인 대책 수립 추진

차. 음료수·음료·생필품 등의 공급계획

1) 음료수의 공급계획

○ 지진발생시 시장·군수는 대피소부터 2㎞이내의 지역에 응급급수조 또는 정수조를 설치하고 응급급수활동 실시

○ 송·배수관의 파손 등으로 일시적 단수에 대비 통상 식용으로 사용하는 우물에 대한 수질관리 철저

○ 대피소 또는 주변지역에 응급급수용 수조를 설치하여 관로 파손으로 인한 일시 단수에 대비

〈비상급수대책〉

○ 민방위기본법제14 및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지하양수시설 등 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토록 조치

○ 건축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등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비상급수시설 확보

구 분	일 반 건 축 물	공 동 주 택
설치대상	연면적 5,000㎡ 이상	20세대 이상
설치기준	- 지정시설 : 1일100톤/개소 - 비지정시설 : 10㎡마다 1일 양수량 0.4톤이상 20톤미만	- 지정시설 : 1일100톤/개소 - 비지정시설 : 1일 양수량 세대당 0.2톤이상

○ 수도법 제26조(긴급급수지원)의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기타의 비상시에 도지사가 수도업자에게, 수도업자가 도지사인 경우는 환경부장관이 다른 수도 사업자에게 비상급수토록 지시

〈급수목표량 기준〉

○ 지진발생에서 3일까지 1인1일 4ℓ(음료수)

○ 10일까지 : 1인1일 20ℓ(생활용수포함)

○ 20일까지 : 1인1일 100ℓ(문화적 최소수준 용수공급)

○ 28일까지 : 1인 1일 250ℓ(정상적 급수)

○ 단기대책

- 개인정호, 비상급수시설, 담수된 배수지 등을 활용
- 인근정수장 및 지역으로부터의 운반 급수
- 수영장을 저수탱크로 전환 사용
- 지하수개발, 관로의 응급복구
- 간이상수도의 정비 및 개량(7,198개소)
-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비상급수시설의 관리 철저
- 수도사업자별로 생수업체를 파악하여 지진시 식수공급 명령

○ 장기대책

- 현행 평균 3시간분의 배수지 용량을 8~12시간분으로 확충 및 복수화 등 추진

2) 식료 및 생필품 공급계획

○ 식료비축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는 수송로가 개설되어 식료·생필품의 수송가능시까지 피해자에게 3일이상 공급할 식료·생필품 비축

○ 식료 등 긴급물자의 수송시스템의 확립

카. 긴급수송계획

1) 긴급수송로 및 운송루트 확보

○ 긴급수송로의 지정(정부합동 특별수송대책 운영 규정)

- 물자 등의 생산 및 보관지에서 피해예상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를 긴급 수송로로 지정

○ 긴급운송루트의 확보(철도, 도로, 해로, 항로)

- 육·해·공으로 다중·교통 네트워크 수단 확보
- 교통방송 등을 통하여 긴급수송로 확보

2) 긴급도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 긴급도로 개설

- 장애물 제거 등에 의한 긴급도로 개설 계획수립 조치

○ 수송차량 등의 확보

- 공공기관 수속차량은 1차동원 차량으로 지정하고
- 부족할 경우에 대비 민간소유차량으로 추가 지정 확보하되
- 정부합동 특별수송대책본부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조치

타. 청소, 방역, 사망자 처리

1) 청소대책

○ 쓰레기 처리

- 시장·군수는 지진발생시 건물의 도괴, 화재 등으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
- 대규모 피해발생에 대비 인접 시·군·구와 응원협조체제 구축

○ 분뇨처리

- 이재민 수용소등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분뇨처리는 가설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처리

○ 지장물의 제거

- 건물과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의 파괴로 발생한 장애물의 정리는 시장·군수 주관으로 우선 처리하고 국가에서 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

2) 방역대책

○ 시장·군수는 지진발생지역 및 집단수용소등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방역반을 편성 운영

○ 물자 및 장비의 부족에 대비 인접 시·군간 응원체제 구축

3) 실종자 수색·처리

○ 실종자의 수색은 119구조대 주관으로 실시하되 실종자를 사망처리 할 경우에는 행방불명상태에 있는 자로서 여러사정 등을 감안할 때 거의 사망한 것으로 추정 되는 자

○ 사체 운구시, 운구한 사체는 피해지역 인근의 병원에 안치하고 관계기관의 검안 절차를 거쳐 유족에 인계하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 매장

파. 교육 및 금융대책

1) 지진대비 교육

○ 각 학교장은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행하여야 할 대피훈련 재해시의 사전·사후조치 및 보호자의 연락방법 등 교육 실시

○ 근무시간 이외에 소속직원들에 대한 비상연락망 및 소집방법 등 작성 관리

○ 시·군 교육장 책임하에 피해지역 학생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시행

- 1단계 휴교조치, 2단계 임시교육장소 설치 교육실시 등

2) 금융지원

○ 지진피해지역에 대한 통화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정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 금융기관이 현금 보유상황을 파악하고 부족할 경우 대책 수립 조치
- 예금통장 등의 분실로 인출이 어려운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 수립 조치

하. 시설물 복구계획

1) 구호를 위한 노동력의 확보

○ 지진발생지역의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시장·군수는 전문인력과 기타인력을 구분하여 건축·토목기술자 등 전문인력은 노동부에 기타 인력지원은 국방부에 지원 요청

2) 피해주택에 대한 응급조치

○ 시장·군수는 피해주택 이재민을 수용할 임시주택 건설예정지 및 시설자재를 사전에 확보 관리

- 건설규모 및 소요예산 등 판단
- 입주자 선정과 공사 시행방법등 강구

○ 주택이 반파되었을 경우 건물의 안전성 등을 검토, 수선이 가능한 주택은 응급수리 사용토록 하되,

- 주택수리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우선지원

○ 가설건물 또는 반파주택 수리용 자재는 생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필요 즉시 반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3)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 상수도시설

-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 수도사업자별로 긴급복구반 편성·운영

┌ 광역상수도 → 한국수자원공사, 시·군
└ 지방상수도 → 각 시·군

· 복구에 필요한 건설장비, 수도관등 평시에 일정량을 확보하고 긴급조달체계 구축

〈도수사업자간의 상호지원체계 수립〉

· 비상급수, 피해복구 등을 위한 기술자 공무원간의 상호 파견제 운영

· 광역적 지원체제 구축

〈수도물 공급시스템 개선〉

· 조기복구가 용이하도록 공급시설 정비

· 시설정보의 다원관리 추진

· 비상연결관로 등에 의한 인근지역간 상호급수 지원

○ 하수도시설

- 하수도 관리책임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복구반을 편성 운영

- 양수기, 공기압축기, 수중펌프, 콘크리트 브레카등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 비치

- 하수처리장의 피해유무를 파악하고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현장 비치

- 하수도 시설의 복구순서는 하수처리장, 펌프장, 관거등 중요도에 따라 실시

○ 전기시설

- 재해발생시 전력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시행

- 긴급복구방안

· 긴급복구는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

· 긴급복구 대상시설은 자체 긴급복구계획을 수립하되 1차 사업소장은 예하사업소 관할시설까지 포함하여 수립시행

· 대책기구 운영

긴급복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비상발령과 동시 본사 및 사업소에 긴급대책 본부 설치

- 복구용 비축자재는 조달 관리

○ 가스시설

- 가스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본사 및 사업소 등에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 복구담당 기관에서는 응급복구에 필요한 각종 자재·장비 등의 확보는 물론, 수시로 점검·정비하고

· 피해시설물의 복구는 제조소, 정압소, 고·중·저압관순으로 복구 실시

○ 통신시설

- 통신 책임자는 본사 또는 산하기관 등에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 통신시설을 담당하는 각 기관에서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용 이동전화국, 무선이동통신, 이동전원차 등의 장비 및 자재 확보

· 피해발생지역에는 임시전화 접수처와 공중전화 등을 설치하고 전기 통신설비의 순회점검 실시

· 통신시설의 복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호의 순으로 우선 실시

4) 토목공공시설 복구

○ 도로·교량

- 각 도로 관리자는 교통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우회도로를 선정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

- 각 시설의 복구담당기관은 즉시 현장에 파견 점검 및 복구 실시

- 긴급도로를 최우선으로 개설하고 일반도로 및 지장물 반출로 등의 순서로 복구

○ 하천 및 내수 배제시설

- 지역수방단을 활용하여 공사장 또는 위험한 시설 순찰 강화

- 피해시설에 대하여는 기확보 자재와 장비를 동원, 즉시 응급조치

○ 항만·어항시설

- 항만 및 어항의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계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응급조치
- 피해복구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지역별 분담제를 실시하여 피해발생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

○ 공항시설

- 공항관리자는 공항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와 항공운항의 조기재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 공항내에 있는 인명과 화물에 대한 대피계획도 수립 추진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

- 시설관리책임자는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 공공의 안전확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시설은 우선 복구실시

○ 철도시설

- 철도청에서는 다음 사항의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
  - 여객·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자체조사·복구반 편성
  - 조사반 현지파견 피해상황 조사
- 철도시설을 타시설에 우선하여 복구 실시

○ 사회공공시설

- 병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사회공공시설 관리자는 인명의 안전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아래의 조치계획을 수립시행

  환자, 장애자, 학생등을 안전히 유도하기 위한 대피유도반 편성운영

  단전, 단수, 통신두절 등에 대비한 자체조치계획 수립
- 피해시설물의 신속한 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복구업체를 사전에 지정 피해발생 즉시 현장투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3. 재해복구대책

가. 피해지역 조사계획

○ 중앙합동 피해조사단 파견(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

- 지진피해지역조사를 위하여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편성된 중앙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조사

· 파견인원은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조정

- 일부시설 시·도지사 위임조사

· 사유시설 전체, 피해액 5천만원이하 공공시설

나. 지진실태조사단 구성·운영(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

○ 피해발생 즉시 현장에 파견할 지진조사단을 사전에 구성·운영

○ 피해규모에 따라 학계·관계전문가 등 19명 이상으로 편성

○ 지진조사단의 직무범위

- 지진피해시설에 대한 안정성의 확인과 여건 등에 대비한 응급조치 계획수립
-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 기타 중앙본부장이 의뢰한 지진관련 기술검토와 자문
- 지진방재대책의 조사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 등

다. 복구계획 수립

○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지원

○ 이재민 구호 및 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자에 대한 위로 및 생계 보조
-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 및 생계보조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지원
- 영농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상한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과 조합비, 국세, 지방세의 감면등 간접지원

○ 재해복구사업
- 주택 및 농경지복구
- 농림시설 및 농작물의 복구
○ 재해복구비용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산정

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규정 제3조 적용)

○ 재해복구비용 등의 국고부담 및 지원은 동일한 재해기간(기상특보 및 그 여파로 인한 기간은 포함)에 대한 재해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피해 제외)이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
- 특별시의 구 : 20억원이상
-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 : 11억원이상(천안시)
- 인구 30만미만의 시 또는 구 : 7억원이상(천안시제외 전시·군)

Ⅵ. 재해예방사업 추진

1. 추진방향

○ 관계기관에서는 '87대홍수와 '95대규모 재해를 거울삼아 타사업에 우선하여 재해예방사업분야 투자확대
○ 기 확보된 재해예방사업도 타사업에 우선하여 착공 우기전 완공, 목표로 추진하되 장기계속공사는 공정별 수방대책 강구 추진
○ 국가사업계획과 연계된 지방비 부담액은 적기에 확보, 재해예방사업 투자효과 증진
○ 2000년도 예방사업비 확보실적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다음연도 재해예방사업 계획에 반영 추진
○ 본 계획에 수립된 예방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최선의 노력 증대

2. 부처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 】

○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이 있는 48개지구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총투자2,230억원 투자 정비

○ 소하천정비 사업

- 재해예방과 치수·이수 및 환경친화적 기능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다목적 정비를 위해 1,157억원 투자.
  · 소하천 350개소 290㎞에 1,172억원, 샛강살리기 19개소에 식생호안, 미나리꽝 등 50억원 투자

○ 노후교량 및 터널정비

- 전국의 지방도·군도 및 농어촌도로상의 노후교량 639개소에 대하여 3,408억원을 투자 정비

○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에 71억원 투입 추진

【 농 림 부 】

○ 가뭄재해대책사업

- 수리시설이 미비된 가뭄상습지역의 농업용수공급을 위해 대중규모 용수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에 6,120억원을 투자, 68천ha 사업시행하여 5천ha 개발
-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면지역 자연마을에 816억원을 투자, 480개소의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525억원을 투자, 366개소 사업 시행하여 수리시설 114개소 개보수

·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2000~2009까지 31,413억원 (연평균 3,200억원 수준) 투자

- 수리시설 안전진단을 위해 27억원 투자, 90개소 안전진단 실시

·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2000~2009년까지 477억원(연평균 50억원 수준) 투자; 매년 150개소 수준을 300개소 수준으로 확대 실시

-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680억원을 투자, 방조제 개보수 300개소 사업시행하여 97개소 개보수

· 안전성 재검토를 위해 2000~2009년까지 수리시설 안전진단에 포함 검토

·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를 위해 2000~2009년까지 2,971억원 투자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를 위해 2000~2003년까지 2,229억원 투자

○ 농경지 배수개선

- 상습침수농경지 배수개선을 위해 2,226억원 투자, 농경지 10,581ha에 배수문 정비, 배수로 개선, 배수펌프장 등 설치

· 2000~2009년까지 24,173억원 투자, 매년 10,000ha이상 신규착수

【 산업자원부 】

○ 전력시설 개·보수

- 취약지역 송전철탑 1,200개소 보강공사에 236억원을 투자, 광역정전사태 사전예방과 취약배전시설 200개소에 270억원을 투자 점검 및 개·보수로 국민불편 해소

○ 광산폐석 유실방지

- 광산 개발시 오염원 확산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폐광지반 침하방지 및 광산폐석 유실방지시설 설치 88개소에 66억원 투자정비

○ 가스설비, 집단에너지 및 석유설비 보수

- 노후·불량 가스시설, 열원공급설비 및 석유공급설비 보수 56개소에 454억원 투자 정비

【 정보통신부 】

○ 재해취약 통신시설 개·보수 사업에 300억원을 투입, 정비하여 신속한 재해대응체제 구축

- 가공케이블 지하화, 200㎞에 49억원
- 취약선로(가공, 지하) 루트변경, 370㎞에 109억원
- 주요 통신선로 이원화, 195㎞에 27억원
- 교량첨가케이블 이원화, 26개소에 5억원
- 하수암거시설 이전, 358개소에 79억원
- 통신접지 보강 등 3,587개소에 31억원

【 환 경 부 】

○ 상습가뭄지역에 3,543억원을 투자, 원활한 용수공급 추진

- 도서지역의 식수원개발 34개지역에 407억원
-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신설·확장 35개지역에 2,066억원
- 농어촌 지역의 지방상수도 개발 52개지역에 1,070억원

【 건설교통부 】

○ 하천개수사업

국가하천·지방1급·지방2급하천 등에 6,976억원을 투자, 478㎞의 하천개수를 실시하여 재해사전예방

- 일반하천개수(특수하천개수 포함)에 총 1,133억원 투자 일반하천개수 28㎞에 863억원 투자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 보완 및 종합치수계획, 배수위 영향구간 치수대책 등 연구용역에 270억원을 투자
- 수계치수사업(5대강수계 및 기타수계 포함)에 4,343억원 투자 한강 등 8개강에서 만경강 등 5개강을 추가, 13개강으로 수계치수를 확대하기 위해 2000~2007년까지 2,504㎞에 총 2조7,706억원 투자, (임진강유역은 2000~2001년까지 완료, 하천개수 205㎞)

  ※ 2001년에 230㎞ 4,343억원을 투자(임진강유역 95㎞에 1,727억원, 하도준설 및 정비에 400억원 투자 포함)
-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1,500억원 투자

· 지방1·2급하천에 대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을 위해 '99~2004년까지 총 2조4,775억원(국비 16,517, 지방비 8,258) 투자, 2004년부터 4단계 사업 추진

○ 댐 개발사업

- 6개댐 건설에 3,238억원을 투자, 홍수조절 능력 제고

○ 위험도로·교량 개보수

- 전국의 위험도로 및 노후교량 등에 7,126억원을 투자 개·보수 실시

· 포장도보수 10,500㎞에 5,768억원을 투자

· 노후교량 개보수 등 370개소에 1,180억원을 투자

· 임진강유역 통일로 숭상을 위해 '99.11~2001년까지 총280억원을 투자

※ 2001년에 178억원을 투자

○ 홍수예·경보시설 개선 및 홍수범람위험지도 제작
- 주요지천에 홍수예경보 시스템 확충을 위해 2000~2001년까지 65억원 투자
- 한강유역에 대한 홍수범람위험지도 시범제작
·2000~2003년까지 250억원 투자 추진
※ 2001년에 하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7억원 투자
⇒ 이를 토대로 향후 해당 지자체의 홍수범람위험지도 작성

【 해양수산부 】

○ 태풍, 폭풍, 지진해일 등으로부터 해안시설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무역·연안항 방파제 3,699m 갑문 등에 1,418억원을 투자, 항만시설 정비
- 서귀포항 등 15개항의 방파제 2,448m에 767억원
- 울릉(사동)항 등 연안항 17개항의 방파제 1,251m에 400억원
- 갑문 및 표지시설 개보수 등에 251억원

○ 어항의 방파제 신설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684억원을 투자 정비
- 1~3종어항 방파제 축조 및 보강 2개항에 1,229억원
- 2종어항 방파제 축조 및 보강 3개항에 455억원

○ 노후어선 대체를 위하여 54억원을 투자 600톤 정비

○ 해수에 의한 연안침수 방지를 위하여 184억원 투자
- 연안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분석 및 조위관측소 28개소 증설을 위해 2000~2009년까지 총 70억원 투자
·2001년에 조위관측소 2개소 증설을 위해 5억원 투자
- 연안상습침수지역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목포·군산 등 해수침수지역 정비사업을 위해 2000~2009년까지 총 1,292억원 투자
·2001년에 11억원 투자, 정비기본계획 용역실시 및 해수침수 방지사업 추진

【 국무조정실 】

○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국책연구사업 추진

- 시설안전계측 기술개발과제에 25억원을 투자, 건설구조물 및 산업설비의 상태감시, 정밀진단 및 수명평가를 위한 계측, 시험, 검사기술의 개발, 신뢰성 제고, 표준화 및 관련 DB 구축

【 과학기술부 】

○ 방재기술개발사업에 38억원을 투자 재해대응기술의 선진화 추진

- 지질재해 관측 및 방지기술
  · 해수침투 평가, 예측 및 방지기술 개발, 산사태 예측 및 방지기술 연구, 주요수계 하상퇴적물에 의한 홍수재해 예측기법, 환경지화학도 작성
- 산불피해복구기술개발
  · 산불예측 및 감시기술, 2차 산림피해방지기술, 산불지역의 토양미생물 생태계 복원기술, 산불로 인한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기술 개발
- 건설구조물 및 산업시설물의 안전진단연구, 국가기반시설물 상시감시, 공공건물 화재안전 및 해난사고 대응연구 등 5개분야 연구 수행
  · 교량 구조물의 결함 및 노화도 평가기술 개발, 강구조물 결함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지능형 위상배열 등
  · 상시 계측에 의한 교량안전 감시시스템 개발 등
  · 대형산업시설물(가스,유류)의 안전진단기술 개발 및 대형저장탱크의 부식측정기술 등 개발
  · 건물 연기제어 시스템기술 개발, 성능기준 화재안전설계의 적용기술 개발
  · 해난사고 대응기술 개발

【 산 림 청 】

○ 산사태 위험지 등에 사방사업 실시하여 재해사전예방
- 사업량 : 예방사방 67ha, 야계사방 55㎞, 사방댐 110개소
- 사업비 : 305억원

○ 홍수량 감소 및 수원함양을 위하여 5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조림사업 추진
- 사업량 : 경제수조림 12천ha, 큰나무조림 3천ha
- 사업비 : 676억원

○ 기존 임도의 안정성 검토 및 보강
- 임도 2,714㎞에 91억원 투자

【 철 도 청 】

○ 재해위험이 있는 철도시설 102개소에 143억원을 투자하여 위험요인 제거 및 임진강유역 철도숭상에 105억원 투자
- 노후교량 확·보강 46개소, 93억원
- 피암터널 및 낙석방지 9개소, 20억원
- 옹벽설치 37개소, 26억원
- 호우시 피해가 예상되는 배수로 10개소에 4억원을 투자, 정비
- 임진강유역 경의선 철도숭상을 위해 2000~2003년까지 총 500억원 투자

·문산천~문산역구간(0.9㎞) 숭상에 20억원 투자(2000)

·봉암~문산천구간(2.6㎞) 숭상에 480억원 투자(2000~2003)

※ 2001년에 105억원 투자, 경의선 철도 숭상

【 기 상 청 】

- ㅇ 선진국형 수치예보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0~2009년까지 866억원 투자, 2001년에 슈퍼컴 활용 예보모델 개발에 83억원 투자
- ㅇ 기상정보체제의 고도화를 위한 종합유선통신망 구축에 5억원 투자
- ㅇ 기상관측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 ㅇ 기상관측망 확충을 위해 41억원 투자
- ㅇ 장마(악기상) 집중감시시스템 구축에 10억원 투자 집중호우 현상의 예측능력 향상
- ㅇ 악 기상현상의 조기 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해양기상관측망 확충을 위해 2000~2009년까지 727억원 투자 계획이며
  - 이중 해양기상관측 부이 설치를 위해서는 2000~2004년까지 50억원 투자, 2001년에는 관측장비(부이) 설치 3억원, 해양기상관측선 운영 7억원 투자

主要事業別 投資計劃

1. 2001년도 예방사업 총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	총 투자계획('97~2001)		2001 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합 계	계	22개사업	31,388,508	22	5,506,999
치산치수 사 업	소 계	8개사업	9,607,038	8	1,896,107
	댐개발	6개 댐	2,499,140	6	323,784
	하천개수	3,109㎞	2,700,960	478	697,600
	소하천정비	1,200㎞	470,600	290	115,700
	수리시설개보수	1,204개소	1,688,313	114	255,200
	방조제개보수	711개소	393,100	97	68,000
	사방	사방 560ha 조림 94천ha	469,971	1식	107,140
	방파제(어항)	127개항	890,986	5	168,398
	방파제(항만)	13,797m	493,968	3,699	160,285
재해예방 대 책	소 계	11개사업	21,566,083	11	3,580,658
	재해위험도로교량보수	1식	4,081,591	1	712,570
	노후교량및터널보수	4,427개소	2,500,829	639	340,800
	농경지배수개선	29천ha	872,100	10	222,600
	철도방재	383개소	52,451	103	24,763
	전력및광산설비개보수	8,869개소	384,795	1,544	102,565
	통신시설개보수	1식	199,370	1	29,950
	가뭄대책(농림)	용수개발 131천ha	5,944,700	5	693,689
	가뭄취약지역해소(환경)	상수도개발 198개소	1,079,667	121	354,260
	재해예방시설개보수(시도)	1식(8개사업)	6,334,248	1	1,084,811
	노후어선대체	11천톤	13,959	1	5,400
	홍수예경보시설개선	1식	102,373	1	6,660
기술개발	소 계	3개사업	215,387	3	30,234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1식	47,063	1	6,260
	기상장비 현대화	1식	76,495	1	16,867
	국가안전관리시스템구축	1식	91,829	1	7,107

2. 사업별 투자계획

가. 댐개발사업(건설교통부)

(단위 : 백만원)

유역명	하천명	댐 명	총투자계획 ('97~2001)	2001년계획	비 고
계			2,499,140	323,784	
한 강	남한강	영 월 댐	-	500	
한 강	섬 강	횡 성 댐	38,577	6,608	
낙동강	남 강	남강댐보강	37,005	9,683	
낙동강	단장천	밀 양 댐	77,444	16,320	
금 강	금 강	용 담 댐	226,491	150,809	
기 타	탐진강	탐 진 댐	169,101	122,823	
기 타	기 타	영천도수로	161,842	-	
기 타	기 타	댐조사비등	1,788,680	17,041	댐조사및유지관리

나. 하천개수사업(건설교통부)

(단위 : km, 백만원)

유 역 명	총투자계획 ('97~2001)		2001년 계 획		비 고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3,109	2,700,960	478	697,600	
하 천 개 수	630	547,030	28	113,300	일반,특수지역하천 개수 포함
수 계 치 수	2,479	2,123,930	230	434,300	5대강,기타수계 치수포함
수해상습지개선	-	-	220	150,000	

다. 수리시설·방조제 개보수 및 농경지 배수개선사업(농림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계획 ('97~2001)		2001년 계 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2,953,513		545,800	
수리시설개보수	1,204개소	1,688,313	114	255,200	
방조제개보수	711개소	393,100	97	68,000	
농경지배수개선	29천ha	872,100	10	222,600	

라. 사방사업(산림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계획 ('97~2001)		2001년 계 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42,604		39,579	
예방사방	560ha	30,023	67	5,389	
사방댐	456개소	76,425	110	18,118	
야계사방	262㎞	36,156	55	7,004	
임도	-㎞	-	2,714	9,068	

마. 조림사업(산림청)

(단위 : ha, 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계획 ('97~2001)		2001년 계 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94,489	327,367	15,088	67,561	
경제수조림	78,399	204,239	12,377	34,374	
큰나무조림	9,377	81,632	2,711	33,187	
유실수조림	4,200	12,706	-	-	
기 타조림	2,513	28,790	-	-	

바. 어항분야 방파제 사업(해양수산부)

(단위 : ㎞, 백만원)

시 도 명	총투자계획 ('97~2001)		2001년 계 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27	890,986	5	168,398	
1, 3종 어항	19	701,786	2	122,898	
2 종 어 항	108	189,200	3	45,500	

사. 항만분야 방파제 및 노후어선피해사업(해양수산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계획 ('97~2001)		2001년 계 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596,341		165,685	
○ 방 파 제					
- 무역항	9,439m	347,785	2,448	76,730	
- 연안항	4,358m	146,183	1,251	39,993	
○ 노후어선대체	11,435톤	102,373	600	5,400	
○ 갑문시설보수	-	-	1	3,229	
○ 표지시설보수	-개소	-	61	21,100	
○ 가두리양식	-개소	-	4	800	
○ 연안침수방지	-	-	1	18,433	

아. 재해위험 도로·교량 보수사업(건설교통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계획 ('97~2001)		2001년 계 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4,081,591		712,570	
도 로	57,400㎞	3,517,791	10,500㎞	576,770	
교 량	1,7285개소	563,800	370개소	118,000	
통일로숭상	-	-	1식	17,800	

자. 철도시설 개·보수 사업(철도청)

(단위 : 개소, 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계획 ('97~2001)		2001년 계 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83	52,451	103	24,763	
옹 벽 설 치	149	11,214	37	2,599	
교 량 확 장	9	7,940	1	2,200	
교 량 보 강	105	8,948	45	7,093	
배수로정비	54	2,061	10	387	
피 암 터 널	17	16,063	6	1,555	
낙석방지책	19	1,538	3	418	
방 토 설 비	30	4,807	-	-	
철 도 숭 상	-	-	1	10,511	임진강유역경의선

차. 전력 및 광산설비 개·보수 사업(산업자원부)

(단위 : 개소, 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계획 ('97~2001)		2001년 계 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8,869	384,795	1,544	102,565	
송 전 철 탑 보 강	6,905	152,434	1,200	23,600	
취약지배전선로이설	1,151	96,080	200	26,951	
광산폐석유실방지	270	23,081	88	6,637	
가 스 설 비	543	113,200	10	30,815	
집 단 에 너 지	-	-	11	11,542	
석 유 시 설	-	-	35	3,020	

카. 통신시설 개·보수 사업(정보통신부 : 한국통신공사)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계획 ('97~2001)		2001년 계 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99,370		29,950	
가공케이블지하화	2,169㎞	79,378	200	4,894	
취약선로(가공,지하) 루 트 변 경	1,783㎞	49,462	370	10,903	
주요통신선로이원화	638.2㎞	9,396	195	2,723	
교량첨가케이블이원화	728개소	11,068	26	454	
하수암거시설이전	1,388개소	25,251	358	7,861	
통 신 접 지 보 강	26,384개소	12,081	3,558	1,308	
이동용발전기확보	262대	2,661	15	146	
저지대국사이전·보강	12대	4,833	1	221	
가반형교환기확보	1대	1,800	1	730	
긴급복구용이동MW장비	12대	1,840	-	-	
이동용광단국장치	1식	1,600	12	710	

타. 가뭄대책(농림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계획 ('97~2001)		2001년 계 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5,944,700		693,689	
농업용수개발	131천ha	5,501,700	5	612,089	
생활용수개발	2,200개소	443,000	480	81,600	

파. 가뭄취약지역 해소(환경부)

(단위 : 개소, 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계획 ('97~2001)		2001년 계 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98	1,079,667	121	354,260	
도서식수원개발	67	150,703	34	40,671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44	557.723	35	206,609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	87	371,241	52	106,980	

하. 홍수예·경보시설 개선 및 홍수범람위험지도 제작(건설교통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계획 ('97~2001)		2001년 계 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3,959		9,250	
○ 홍수예경보시설개선	305개소	8,144	-	-	
- 수위-유량곡선식 개발 및 보완	305개소	8,144	-	-	
- 중소하천 홍수 예경보시스템 설치	6개하천	5,815	-	-	
- 주요지천 홍수 예경보시스템 설치	-식	-	1	6,550	
○ 홍수범람지도제작	-식	-	1	2,700	

거. 자연재해경감기술 개발

1) 시설안전계측연구센터 운영(국무조정실)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계획 ('97~2001)		2001년 계 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시설안전계측연구센터 운영(표준연구원)	1식	13,886	1	2,500	

2) 방재기술연구개발(과학기술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계획 ('97~2001)		2001년 계 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3,177		3,760	
자 연 재 해	1식	20,376	1	2,000	
인 위 재 해	1식	12,801	1	1,760	

너. 재해위험교량·터널 보수(행정자치부)

(단위 : 개소, 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계획 ('97~2001)		2001년 계 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4,427	2,500,829	639	340,800	
노 후 교 량	4,425	2,449,690	639	340,800	
터 널	2	51,139	-	-	

더. 기상장비 현대화(기상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계획 ('97~2001)		2001년 계 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6,495		16,867	
수치예보기법개발	1식	25,141	1	8,258	
기상정보통신고도화	1식	8,471	1	455	
관측장비현대화	1식	38,092	1	2,040	
기상관측망 확충	-소	-	4	4,108	
장마집중감시시스템구축	1식	1,436	1	1,000	
해양관측	1식	3,355	1	1,006	

러. 소하천 정비사업(행정자치부)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계획 ('97~2001)		2001년 계 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소하천정비사업	1,200	470,600	290	115,700	

머.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행정자치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계획 ('97~2001)	2001년 계 획	비 고
계	91,829	7,107	
주전산기및상황시스템설치	32,787	4,750	
소 프 트 웨 어 구 입	14,762	-	
통 신 망 구 축	11,599	-	
측정장비 및 단말기설치	13,261	-	
응용S/W개발및DB구축	17,124	2,357	

버. 지방자치단체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계획 ('97~2001)		2001년 계 획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6,334,248		1,084,811
하 천 개 보 수	7,967㎞	1,389,491	283	231,890
배 수 장 시 설	576개소	311,627	122	137,285
하 수 도 시 설	11,704㎞	3,288,892	1,936	512,068
산 사 태 방 지	940ha	65,859	74	6,897
수리시설개보수	4,744개소	542,687	638	30,171
배 수 문 교 체	836개소	38,746	1,041	16,389
위험시설물개보수	1,263개소	503,752	1,004	40,270
기 타 (재해위험지구포함)	3,397개소	193,194	812	109,841

有關機關別 協助 · 支援事項

【 국무조정실 】

○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국책연구사업 추진
(시설안전계측연구센터 운영사업 추진)

【 재정경제부 】

○ 피해주민 ·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세제(국세) 및 금융지원

【 통 일 부 】

○ 북한의 재해방지

- 중앙조직

· 북한의 재해관련 중앙조직은 내각의 특별조직으로 『중앙풍수해대책위원회』(위원장 : 김윤혁)와 『조선큰물피해대책위원회』로 구성

○ 지방조직

- 일상적 재해방지 업무는 각 시 · 도 행정위원회 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주로 "금요노동"시간을 통해 예방조치

· 재해예방(태풍, 홍수 등)을 위한 취약지구 파악, 구간별 할당 부여 및 주부 · 직장인 · 학생 등을 동원하여 업무담당

○ 재해복구

- 재해복구의 경우 재해지역을 구간별로 나누어 "인민반"(한국의 통 · 반 조직에 해당) 단위로 할당하여 복구작업 실시
- 산불발생시는 주로 군부대를 동원하며 일반적인 경우에도 필요시 재해지역의 군부대를 동원

○ 재해예방 주요대책

- 북한은 '95·'96년 홍수피해, '97년 가뭄 및 해일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효율적·체계적인 국토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한 결과 여러차례의 기구개편과 당 주도의 국토관리운동을 전개하여 왔음.

· 주요 국토관리운동

· 제방공사용 채석기지 조성, 잔디 입히기 투쟁, 나무 심기, 도로와 강하천 정리 등

〈 '90년대 이후 북한의 국토관리사업 관련내용 〉

○ '91. 4. 4 : "모범산림군"(시·구역) 칭호 제정

○ '93. 2. : 정무원산하 비상설기구 "국가환경보호위원회" 신설

○ '96. 9.20 :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부문일군회의" 개최 ⇒ 최초로 개최

○ '96.10.24 : "모범산림군" 칭호를 "국토환경보호모범군" (시·구역)으로 변경 ⇒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 '96.11.27 : "국토환경보호절(10.23)" 제정⇒중앙인민위원회 정령

○ '97. 2. 1 :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부문일군회의" 개최

○ '97.10. :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 사회주의 경쟁요강" 발표 ⇒ 청년학생들을 국토관리사업에 총동원

○ '98. 2. 2 :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부문일군회의" 개최

○ '98. : "식수월간"(4~5월, 10~11월)을 "국토환경보호월간으로 변경

○ '98. 9. 5 :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 신설 ⇒ 사회주의 헌법 개정에 의거

○ '99. 1.17 :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부문일군회의" 개최

○ '99. 3. 2 : "식수절 변경(4.6⇒3.2)

○ '99. 3. 3 :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을 "도시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으로 분리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2000. 1.29 :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부문일군회의" 개최

【 외교통상부 】

○ 선진방재정책 연구

- 태풍위원회, 재해구호사무국 등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 활동참여 및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협력 증진
  · 태풍위원회(TC), 세계기상기구(WMO) 참여로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태풍위원회 사무국에 아국 수문전문가 1인 파견
  · 세계기상기구에 아국 기상전문가 1인 파견
- 재해경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 국제자연재해경감 10개년 계획(IDNDR)사업의 효율적 추진
  · 방재분야 국제협력사업에 적극 동참
  · 재해 및 이재민 구호에 대한 국제협력 적극 참여
  · 대규모 피해지구에 대한 적십자사의 의료·구호활동 지원
  · 외국의 자연재해 경감기술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 외국의 대형재해에 대한 현지조사 및 지원방안 적극 협조

【 행정자치부 】

○ 수해방지종합대책 추진

○ 유역별 종합치수대책 수립

○ 민방위대 운영 및 동원

○ 농어촌도로 수방대책 추진

○ 소규모 어항시설 대책
○ 수해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 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 청사관리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간의 수방협조체제 구축방안 강구

【 국 방 부 】

○ 방재조직 운영
○ 재해예방대책
○ 피해복구대책
○ 군부대 대민지원
○ 기 타

【 교 육 부 】

○ 재해예방대책
○ 응급조치
○ 복 구
○ 행정사항

【 문화관광부 】

○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예방대책
○ 재해사전점검
○ "시기별 재해방지 관리주체 자체 대책" 강구 행정지도
○ 재해복구

【 농 림 부 】

○ 풍수해 및 설해대책
○ 가뭄대책
○ 해일대책

【 산업자원부 】

○ 풍수해 대책분야
○ 지진재해대책 분야
○ 자연재해 저감방안

【 정보통신부 】

○ 재해예방대책
○ 재해발생시 복구지휘소 구성체계
○ 재해대비 통신복구 및 지원 대책

【 환 경 부 】

○ 국립공원 안전관리대책 추진
○ 자연재해 발생시 쓰레기 수거 및 처리계획
○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시 긴급 식수원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
○ 상수도 시설 확충
○ 상수도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마련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복구대책

【 보건복지부 】

○ 사전조치 및 대책 수립
○ 재해구호체계 확립
○ 재해구호대책
○ 행정사항

【 노 동 부 】

○ 재해취약분야 집중관리
○ 재해대비대책
○ 재해수습 대책
○ 복구대책
○ 재해사업장 및 근로자 지원대책

【 건설교통부 】

○ 수해방지종합대책 추진
○ 시설별 및 유형별 추진사항
○ 기관별 추진사항

【 해양수산부 】

○ 해양수산시설 재해예방대책 강구
○ 재해발생시 신속 대응태세 확립
○ 재해대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재해유형별 방재계획
○ 분야별 재해예방대책
○ 어 선
○ 어 구

【 과학기술부 】

○ 자연재해방재기술개발사업 추진
○ 인위재해방재기술개발사업 추진

【 국정홍보처 】

○ 재해대비 홍보
○ 재해수습 홍보

【 기획예산처 】

○ 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 국고 지원분 예산의 신속한 지원
○ 재해예방 사업비 지원 확대

【 경 찰 청 】

○ 재해예방 대책
○ 재해발생시 조치사항

【 기 상 청 】

○ 국지 기상예보 향상을 위한 장비확보
○ 지진 발생시 정보 수집·전파 및 통신 수단의 확보
○ 선진국형 예보종합시스템 구축

【 산 림 청 】

○ 예방대책
○ 복구대책

【 철 도 청 】

ㅇ 재해대비체제
ㅇ 재해위험개소의 지정 및 관리
ㅇ 선로 경계근무 기준
ㅇ 재해 응급조치 및 보고계통

【 해양경찰청 】

ㅇ 해상재해 예방대책
ㅇ 해상재해대책
ㅇ 해상재해 구조체계

【 문화재청 】

ㅇ 재해대상 문화재 및 시설
ㅇ 재해대책상황실 구성·운영
ㅇ 풍수해대비 사전점검
ㅇ 지진대비 화재예방대책
ㅇ 피해복구 대책

【 방송위원회 】

ㅇ 방송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 재난방송체제의 적극 활용

4. 재 난 관 리 대 책

[소 방 안 전 본 부]

- ㅇ 재난예방대책의 추진
- ㅇ 재난대비대책의 추진
- ㅇ 재난의 수습(대응)대책
- ㅇ 재난의 복구대책추진

目　　標

○ 재난예방 및 긴급구조·사고수습 복구 등 재난대응태세 확립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지역사고대책본부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고수습체제 확립

○ 현장지휘소와 현장 상황유지로 신속한 초동조치 및 대처능력 강화

⇒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方　　針

○ 도 소관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 재난관리계획 포함 종합계획 수립

○ 재난예방 및 수습·복구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계획 수립

- 현장상황반 운영 및 역외 재난수습지원반 운영
- 재난유형별 사고수습체계 구축 등

○ 인력·장비·물자 등 자원 동원내용 포함 작성

- 공공기관 보유장비 등 제외, 동원가능 자원 파악

○ 재난발생시 현장지휘체제 및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계획 반영

○ 충청남도 안전대책위원회 심의·확정

○ 2000년 재난관리계획 보완·발전

推進計劃

Ⅰ. 재난예방대책의 추진

1.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가. 재난예방을 위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ㅇ 시　　기 : 연 1회 (하반기 9~11월)

ㅇ 대　　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상시설 전수
- 기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시설지역 등

ㅇ 방　　법

- 재난관리책임기관인 도 및 시군에서 직접 실시
- 점검반은 지자체별 기술직공무원과 전기·가스안전공사 및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구성

ㅇ 점검결과 :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분류 관리

- 재난위험요인이 많은 시설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
- 보수·보강 등으로 위험요인 해소·경감시설은 해제 또는 등급 조정 조치 등

ㅇ 주　　관 : 시설물 관리주체

ㅇ 대　　상 : 재난발생위험이 있는 모든 시설

ㅇ 안전조치요건 : 안전점검결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될 때

ㅇ 안전조치종류 : 정밀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기타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 안전조치 불이행 등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 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금지 및 시설안전관리 의무자에 갈음하여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안전조치

나.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해소

○ 주관 : 도, 시·군
○ 관리카드 작성 이력관리
- 소유자, 유지관리주체, 위험요소, 과거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등
-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내용 등을 실시자가 반드시 명기
○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 재난위험시설 지정과 동시에 국과계장을 책임자로 지정 관리
- 월1회 정기점검 및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
- 위험요소진행 등 상황파악, 관계기관 통보 및 안전조치방안 강구 등
○ 재난위험시설 해소 장·단기계획수립 추진
- 계획기간 : 2001. 1. 1 ~ 2005. 12. 31
- 장·단기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 재난위험시설 등의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 연도별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위험시설의 지역별 세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2.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대책 추진

가. 사고대응 수습체계 구축

○ 사고유형별 대응 및 수습체계 구축
○ 업체간, 선박간, 유관기관 지원협조체계 구축
○ 사고대책본부 설치계획 수립

나.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검사 (2001. 3월까지)

○ 안전교육 : 사업자·선원·종사자 매년 8시간 이상 이수

○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제한

○ 인명구조요원의 확보

○ 인명구조장비의 비치 및 출·입항 기록관리

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

○ 유·도선 담당공무원 교육

- 주관·일정 : 국립수산진흥원, 2001. 1/4분기내
- 교육대상 : 시·도, 시·군·구 실무자
- 교육내용 : 유·도선의 선박구조·설비와 안전검사(점검)요령, 유·도선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사고수습 요령 등

○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교육

- 주관·일정 : 시·도 유·도선 담당공무원 교육 직후(8시간)
- 교육대상 : 사업자, 선원 등 종사자 전원

라. 유·도선 일제점검

○ 유·도선장 및 선박 점검 실시

- 주관·일정 : 시·군, 성수기전(2001. 4월)
- 내용 : 선착장 안전시설 정비실태, 구명장비 확보 및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보완·정비는 4월말까지 마무리

○ 유·도선 안전운항 점검

- 주관·일정 : 도 및 시·군, 행락철 및 성수기(2001. 7~8월)
- 중점점검 : 정원초과 운항 여부, 승선신고 및 출입항 기록관리 등

마.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근무체계 강화

○ 상황근무가 아닌 재난예방 근무체계로 전환
- 관광·해수면 등 주요 유·도선장
○ 주말·공휴일·연휴기간중 상주근무
- 설날·추석절 및 연말연시 근무 강화
○ 과승·과적 등 안전수칙 준수 확인
○ 무면허·미신고 선박 등 불법행위자 단속

3. 2001 재난대비 연습(실제·도상)실시

가. 기본방침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총체적 연습 실시
○ 재난예방·수습·복구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 대형 재난발생에 대비, 자치단체간 광역응원·협조체제 구축

나. 연습계획

○ 연습기간 및 장소 : 2001. 5~10월중 도 및 시·군 재난상황실 및 현장
○ 연습주관 : 도지사, 시장, 군수
○ 연습방법 : 합동통제부와 연습실시단간 메시지에 의한 도상 및 실제연습실시
- 도 주관하에 1개이상의 시·군을 선정, 실제연습실시
· 2000재난업무평가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군 등
· 타 시·도, 시·군·구에서 실제훈련 참관유도
- 도와 시·군간 연계연습은 3개시·군 이상 실시
- 기타 시·군에서는 자체연습계획수립, 메시지 작성 등 초기단계부터 해당실과 및 유관기관 참여 도상연습실시

- 5개유형의 재난상황을 부여하여 수습·복구 연습실시
  · 붕괴사고, 폭발사고, 유도선사고, 화재사고, 대형교통사고, 기타 사고 등
- 재난발생시 수습에 필요한 유관기관은 의무적으로 참여유도

다. 연습일정

- ○ 재난대비 연습(실제·도상) 계획수립(도) : 2001. 3. 30
- ○ 재난대비 연습실시 계획서 제출 : 2001. 4. 20까지 (도→행자부)
- ○ 재난대비 연습실시 대 국민 홍보 : 2001. 5 ~ 10월 (지방자치단체)
- ○ 재난대비 연습실시 및 지도 : 2001. 5 ~ 10월(지방자치단체)
- ○ 연습결과 보고서 제출 : 2001. 10. 31(도→행자부)

4. 2001재난대비 자원조사 및 관리

가. 기본방침

- ○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된 2001년 지역재난관리계획을 기본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원파악
- ○ 지방자치단체별 발생우려가 있는 재난의 수습·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물자·시설 등을 조사·관리
- ○ 부족한 자원에 대해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상호응원체제 강구

나. 기본원칙

- ○ 2000. 12월말을 기준으로 필요한 인력·장비 등 자원 조사
- ○ 재난발생시 신속한 물자 동원이 가능하고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자원 동원계획 수립
- ○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자원동원물자 파악·관리

다. 자원조사방법

○ 인력은 동원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자원으로 파악·관리

○ 장비는 업체별로 장비보유현황 파악하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비는 제외

○ 구호물자는 행정기관과 유관기관·단체의 보유분을 대상으로 조사

○ 수용시설은 실제로 수용 가능한 시설만 파악하되, 기타시설은 별도작성 등

라. 자원조사 및 동원 계획 수립일정

○ 재난대비 자원 일제조사 : 2001. 3월(지방자치단체)

○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 수립 : 2001. 4월(지방자치단체)

○ 자원동원계획 보고 : 2001. 5. 10(도→행정자치부)

마. 재난대비 자원관리

○ 재난자원관리 : 년중

- 분기별 변동사항 정리 및 관리 등

5. 월별 중점안전점검 실시

가. 기본목표

○ 중복점검을 피하기 위하여 해빙기에 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 연중 시의성을 고려하여 월별로 재난발생의 우려가 큰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안전점검 관리체계 구축

나. 월별 중점점검대상시설물

월별	중 점 점 검 대 상
1 월	·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시장, 터미널 등)
2 월	·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교량, 축대, 옹벽, 중단된 공사장 등)
3 월	· 유원시설 안전점검
4 월	· 행락철 대비 유·도선 안전관리 실태점검
5 월	· 지하철 및 지자체 소관 공공건축물 안전점검
6 월	·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7 월	·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관광숙박시설 등)
8 월	· 휴가철 유·도선 안전관리상태 점검
9 월	· 추석절 다중이용시설(백화점, 시장, 터미널 등)
10 월	· 재난관리 대상시설 관리실태 점검
11 월	· 동절기대비 위험물질취급시설 (가스·유독물 등)
12 월	·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스키장·리프트 등)

6. 기타 재난관리시책 추진

가. 지역재난관리업무 평가 실시

o 평가시기 : 2001. 11월중
o 평가대상기관 : 15개 시·군
o 평가대상기간 : 2000. 12 - 2001. 11 (1년간)
o 평가대상업무 : 지역재난관리체제 확립,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우수·특수시책 발굴, 일반업무 추진실태 등
o 방 법 : 서면 및 현지확인평가 실시
o 평가결과 조치
- 평가 후 인센티브제와 연계 기관표창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제도관련 사항은 년차계획에 반영

나.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

- ○ 자치단체별로 법정액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조치
- ○ 기금을 법정용도에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강화
- ○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실적을 2001년 재난관리 업무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선정,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다.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정예화

- ○ 전문기술능력을 갖춘 안전관리인력 확보
  - 퇴직전문가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안전관리·점검요원으로 활용
- ○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 ○ 자체 및 유관기관 기술인력 활용 강화

라. 재난피해 배상·보상대책으로서 보험제도화 방안 추진

- ○ 보험부처(재정경제부 등) 및 관계기관(보험감독원 등)과 협의 (2001년중)
- ○ 보험제도화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법제화 추진(2000~2002)

7. 안전문화운동 추진

가. 안전문화운동의 안정적 구축

- ○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추진체계 정비 강화
- ○ 지방의 경우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단체 협조체제 구축

나. 시민안전봉사대 발굴 육성

○ 안전연대 회원 등 전문성 및 참여의식이 강한 자 선발, 안전문화운동 추진주체로 활용

- 안전계도, 위험요인 예찰·신고, 긴급구조 등 봉사활동

다. 생활안전신고센터 운영 내실화

○ 참여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안전봉사자로 일제정비, 정예화

○ 365일 24시간 공백없는 신고접수체계 구축

○ 자원봉사자 E-mail 갖기 운동 전개

○ 우수 신고자 포상 등 인센티브제 도입 추진 : 공중전화카드 등

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활성화

○ 가정, 학교, 공공, 산업안전 등 각 분야별 체계적 안전점검 실시

- 가정안전 : 여성단체 활용 계도·홍보, 아파트 세대별 안전점검, 불우가정 및 사회시설 생활안전점검 정례화 등
- 학교안전 : 학생 안전교육 (VTR, 실기실습(응급조치) 등), 현장 탐방(어린이교통공원, 소방서 등)
- 공공안전 : DE급 시설물 및 대형공사장, 유원시설, 유도선, 위험물저장시설, 다중이용시설 적의 선정 점검
- 교통안전 : 등·하교 횡단보도 교통정리, 자동차 무료안전점검 등
- 산업안전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율 안전점검(점검표활용 등) 직원안전교육 실시 (사내방송, VTR, 홈페이지) 및 홍보

마. 「국민 안전의 날」 제정·운영

○ 국민 안전의 날을 제정, 국민 동참분위기 확산

- 기념식, 문화행사 등 추진 : **「안전문화대상」** 검토

바. 안전문화 체험공간 확보

- ○ 안전체험공간을 마련, 국민 안전의식 생활화에 기여
- ○ 안전체험 교육과정 확대 및 대기업 운영 「**안전체험관**」 견학 활용
- ○ 중앙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체험관」 설치 추진

사. 대 국민 교육·홍보활동 강화

- ○ 민방위 교육 등 각종 교육시 안전교육 강화
- ○ 언론매체 활용, 연중 홍보활동 전개 : 기획물시리즈, 공익광고 등
- ○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효과적 홍보 추진 : 슬로건, 심볼 제정, 인터넷 활용 등
- ○ **"안전 EXPO"**등 안전문화행사 및 세미나, 연찬회, 전시회 등 개최

8. 교통사고 예방활동 추진(경찰청 협조)

가. 교통사고요인 단속 강화

- ○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과속난폭 운전 등 교통사고 요인행위 중점 단속
- ○ 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식·이동식) 확대 설치 및 적극 활용
- ○ 계절별 교통사고방지대책 수립 시행

나.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개선

- ○ 관계기관과 협조, 교통사고 잦은 지점 적극 개선
- ○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강
- ○ 중앙분리시설, 보·차도 분리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확대설치
- ○ 도로붕괴·유실 상습지역 사전점검 보완

다. 교통안전 홍보활동 강화

- ㅇ TV·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교통안전 홍보활동 강화
- ㅇ 교통공원 개방 등 어린이·유아 조기교통안전교육 체제 확립
- ㅇ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 ㅇ 대형교통사고현장 사진전시회 등 대국민 교통안전홍보활동 강화

라. 교통사고원인의 과학적 분석

- ㅇ 교통사고 분석센터에서 얻은 교통사고원인 분석자료를 교통안전 정책자료로 활용
- ㅇ 대형교통발생시 사고원인 심층분석 등 사후보완 통제체제 구축

Ⅱ. 재난대비대책의 추진

1. 24시간 공백 없는 종합상황관리

○ 재난「종합상황실」운영만전

- 상황전담요원 및 시설·장비 보강

○ 누수 없는 재난정보관리 철저

- 재난접수상황, 언론 및 TV, 각종재난 정보매체 등

○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일지 및 상황접수·관리기록 유지

- 재난상황접수처리부, 근무일지, 주요재난상황정리 등

2. 대규모 재난의 신속한 대응체제확립

○ 행정자치부↔도↔시군 연계 재난상황관리보고·전파체계 확립

- 보고·전파체계 수시확인, 비상시 신속한 가동체제 확보

○ 대규모 재난단계별·유형별 신속한 대응 및 비상근무체제 구축

○ 재난관련기관·단체간 유기적인 지원·협조공조체제 구축

○ 재난종합 상황관리의 전문성·책임성 확보 등

3. 재난단계별 상황근무체제 운영

○ 상황근무는 평시 및 비상시로 구분 실시

○ 평시는 중앙방재종합상황실에서 재난상황 종합관리

○ 비상시는 재난규모(1, 2급)에 따라 별도 상황근무반 편성 합동 종합상황실 운영

〈비상근무 대상 재난의 구분〉

○ 중앙사고대책본부설치(1급 재난)
-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어야 할 정도의 대형재난
- 중앙부처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재난

○ 지역사고대책본부설치(2급 재난)
-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수습·복구해야 할 재난
-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협조가 필요한 재난

4. 대형재난발생시는 「합동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 합동종합상황실은 행정자치부 방재종합상황실에 설치

○ 관련부처(청) 합동근무 실시

< 재난상황관리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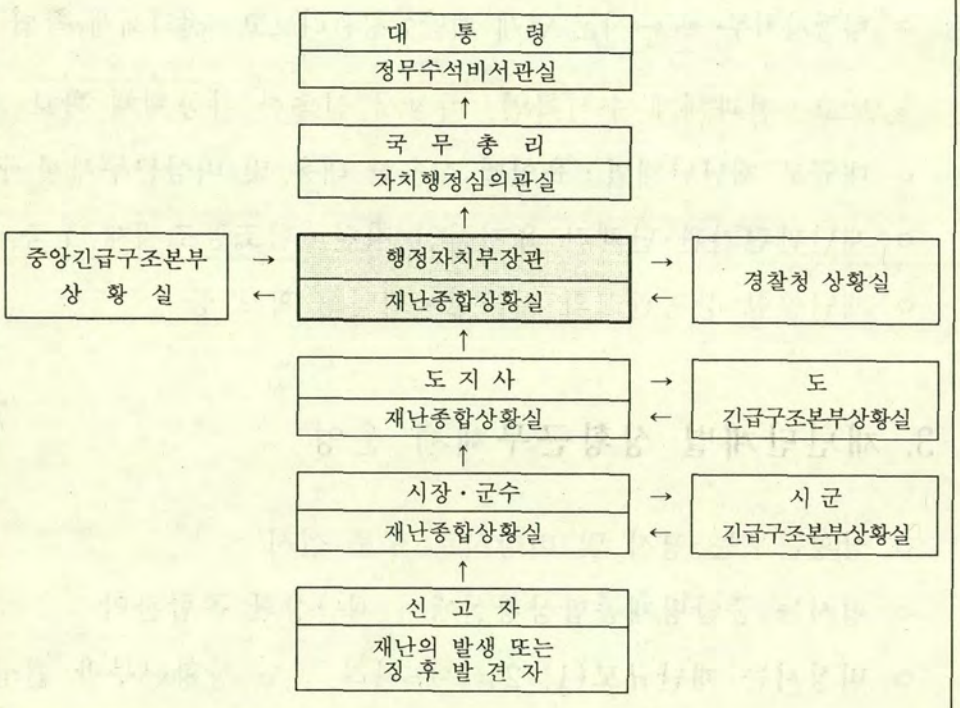

5. 재난대비 공무원·민간인 교육 실시

가. 재난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 ○ 대　　상 : 도·시·군 재난업무담당공무원
- ○ 시　　기 : 2001. 5월경
- ○ 장　　소 : 전년도 재난관리업무평가 최우수 광역자치단체
- ○ 내　　용 : 전문가 초빙 특강 및 전년도 재난관리업무 추진성과 발표, 재난관리 우수시책 소개 및 재난대응사례 발표

나. 민방위 교육시 재난대비 교육

- ○ 대　　상 : 민방위 편입후 1~5년차 대원
- ○ 시　　간 : 연간 8시간(소양 4, 실시 4)
- ○ 주요내용 : 가스안전관리, 교통사고예방 및 대처, 산불예방과 진화, 유독물질 안전관리 등

다. 재난실무자과정 교육

- ○ 대　　상 : 도, 시·군 재난관리담당 공무원(6급이하)
- ○ 장소·기간 : 민방위교육관(천안), 1주 비합숙(2001. 3)
- ○ 주요내용 : 시설물·건축물 안전관리 지도요령, 안전점검 장비 사용 실습,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요령 등

라. 재난관리자과정 교육

- ○ 대　　상 : 도, 시·군 5급이상 재난관리담당·과장
- ○ 장소·기간 : 민방위교육관(천안), 1주(2001. 6월)
- ○ 주요내용 : 시설물·건축물 안전관리, 안전관리정보시스템, 위험물 안전관리 등

Ⅲ. 재난 수습(대응)대책

1. 상황보고 · 전파 단계

○ 보고 : 신고자 → 시 · 군 → 도 → 행정자치부
→ 총리실 · 청와대

○ 전파 : 도 및 시군 재난상황실 → 관련 기관·단체

2. 긴급 구조 · 구난 단계

가.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 설치 · 운영

○ 긴급구조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지휘, 통제

○ 긴급구조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공조체계유지 조치

○ 지역긴급구조본부 지휘, 통제

나. 현장지휘소 설치 · 운영

○ 중앙구조대원 긴급투입 및 타 지역 구조대원 지원조치

○ 재난발생의 내용을 본부장에게 보고

○ 현장응급 의료소를 설치하여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환자이송

3. 수습복구 단계

가. 사고수습 · 복구체제 구축

○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

○ 중앙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

나. 사고수습 지원·협조

- ○ 중앙 및 지역사고대책본부가 요청하는 지원사항 협조
- ○ 사고현장, 중앙 및 지역사고대책본부에 필요인력 파견 등 협조
- ○ 지방교부세 지원, 지방세 감면조치 등 검토

다. 재난관리법 관리 주무부로서 수습·복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제도개선 추진

4. 지역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가. 목 적

- ○ 재난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사고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임무 등을 설정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며
- ○ 사고대책본부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유형별 수습방법과 각자 임무를 평소에 숙지케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하고도 일사불란한 수습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나. 설치대상

- ○ 내수면에서 발생한 유·도선사고
- ○ 화재사고 - 소방서에서 전담(도 소방안전본부장)
- ○ 기타 사고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 설치기준

- ○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재난발생시
- ○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그 수습을 위하여 지역사고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발생시

라. 구　　성

○ 본부장 : 도지사(시장·군수)
○ 차　장 : 행정부지사(부시장·부군수)
○ 구성원 : 재난관리법 제9조 및 충청남도 안전대책위원회운영 규정에 근거 참조

마. 권　　한(본부장)

○ 재난의 수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장이 행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기타 필요한 업무협조 요청
○ 재난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요청
○ 당해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지역본부장을 지휘

바. 임　　무

○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피해보상 대책 수립
○ 피해액 산정기준
○ 재난수습 및 복구비용의 부담
○ 유사재난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 기타 재난의 수습·복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앙사고 대책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예시)
-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 검토
- 재난상황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반 편성운영
- 이재민 구호대책 및 복구대책 추진 등

사. 운　　영

○ 회의소집 : 지역사고대책본부장
○ 회의주재 : 지역사고대책본부장
○ 의　　결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아. 설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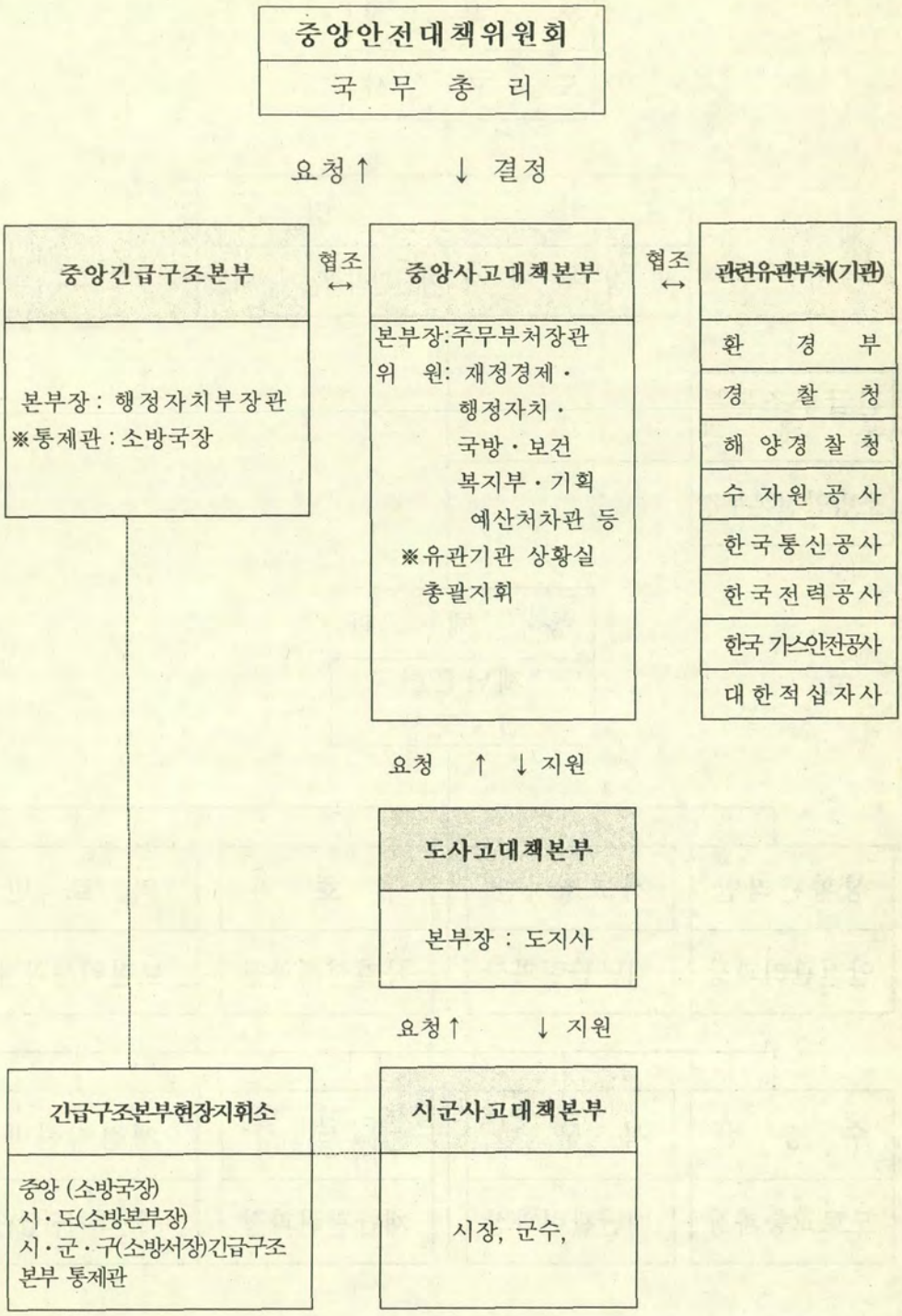
중앙안전대책위원회
국 무 총 리
요청↑ ↓ 결정
중앙긴급구조본부
본부장 : 행정자치부장관
※통제관 : 소방국장
협조
↔
중앙사고대책본부
본부장:주무부처장관
위 원: 재정경제·
행정자치·
국방·보건
복지부·기획
예산처차관 등
※유관기관 상황실
총괄지휘
협조
↔
관련유관부처(기관)
환 경 부
경 찰 청
해 양경 찰 청
수 자원 공 사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요청 ↑ ↓ 지원
도사고대책본부
본부장 : 도지사
요청↑ ↓ 지원
긴급구조본부현장지휘소
중앙 (소방국장)
시·도(소방본부장)
시·군·구(소방서장)긴급구조
본부 통제관
시군사고대책본부
시장, 군수,

자. 도 사고대책본부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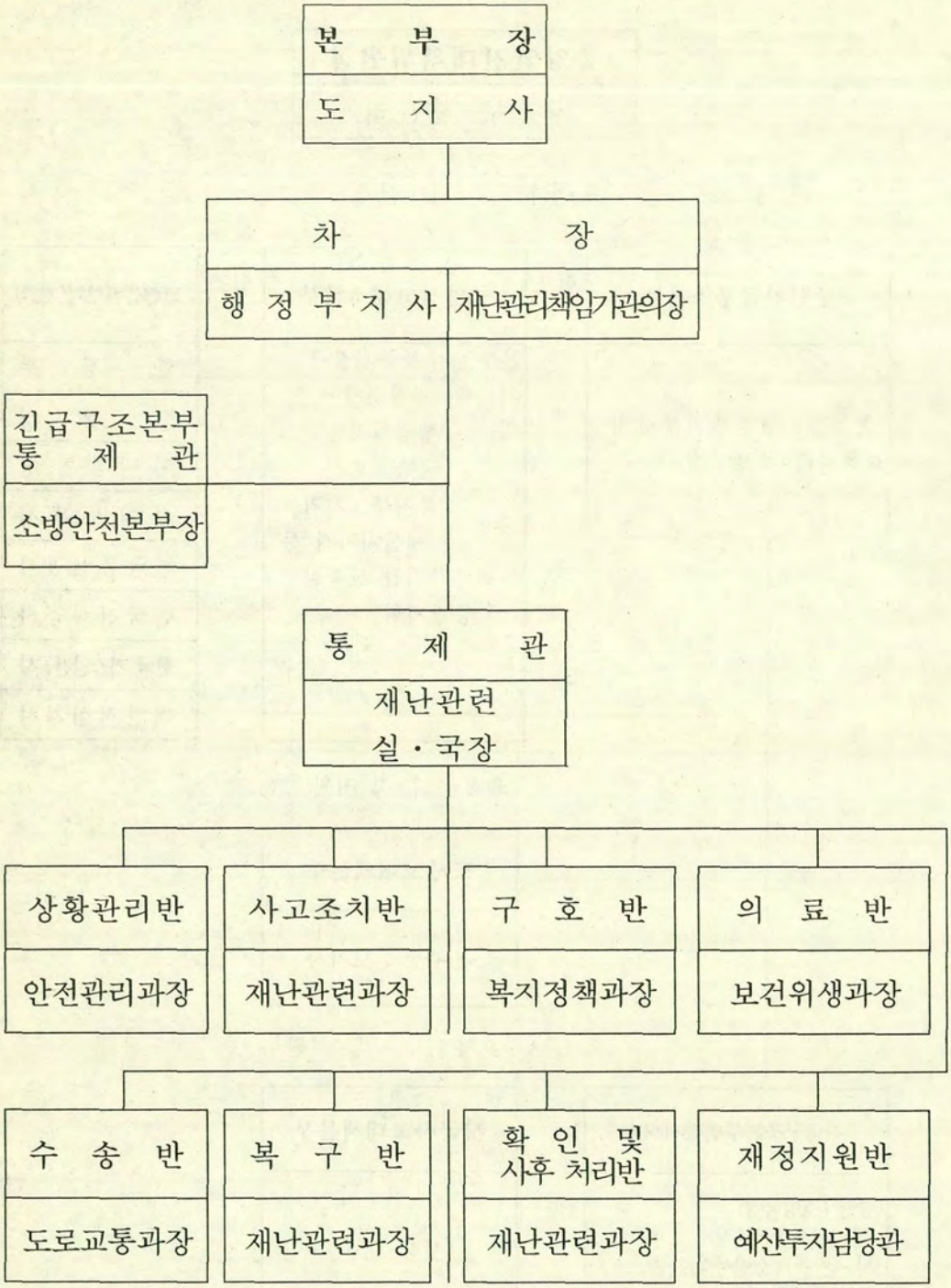
본부장
도지사
차장
행정부지사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
긴급구조본부
통제관
소방안전본부장
통제관
재난관련
실·국장
상황관리반
안전관리과장
사고조치반
재난관련과장
구호반
복지정책과장
의료반
보건위생과장
수송반
도로교통과장
복구반
재난관련과장
확인 및
사후 처리반
재난관련과장
재정지원반
예산투자담당관

차. 실무반 주요임무

반 명	담당(지원)부서	주 요 임 무	비 고 (운영책임관)
계	9 개반		
상황관리반	안 전 관 리 과 총 무 과 공 보 관 실	· 상황관리 · 전파 · 대책본부체제유지 · 보도지원 · 기록	소방안전본부장
사고조치반	해당재난실 · 과 (재 난 관 련 기 관 · 단 체)	· 피해조사 보고 및 수습대책 · 응급조치 · 민방위 및 자원동원	해당재난관련실국장
재정지원반	예산투자담당관실 세 정 과	· 재난관리 예산조치 · 세제지원	정책기획정보실장
구 호 반	복 지 정 책 과	· 사망자 처리 · 이재민 구호 및 수용 · 자원봉사자관리	복지환경국장
의 료 반	보 건 위 생 과	· 부상자처치 및 병원관리 · 방역 및 예방접종	
수 송 반	도 로 교 통 과 총 무 과	· 교통 및 우회소통대책 강구 · 장비 · 물자 등 수송	건 설 교 통 국 장
확 인 및 사후처리반	해당 재난실 · 과 (재난관리책임기관)	· 사고원인 조사 · 보상 및 유족대책	해당재난관리실국장 (재난관리책임기관장)
복 구 반	해당재난 실 · 과 (재난관련기관당체)	· 현장복구 및 항구복구대책 · 업체동원 및 자재수급	〃
구조구난반 (현 장 지 휘 소)	안 전 관 리 과	· 긴급구조대책 총괄 · 인명구조등 사상자 응급조치 · 현장 접근통제, 주변교통 및 질서 유지	소방안전본부장

Ⅳ. 재난의 복구대책 추진

1. 재난원인 등 조사·분석

○ 재난발생원인 조사분석
○ 피해상황 조사(인명피해, 재난피해, 이재민 현황 등)
○ 책임소재 분석(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
○ 배상(보상) 등 능력 유무 판단

2. 지역사고대책본부 재난피해 배상(보상)대책 추진 지원

가. 배상(보상) 기준 설정

○ 배상(보상) 대상자 파악(인적·물적대상)
○ 배상(보상) 내용 결정(장례비·요양비·유족배상 등)
○ 배상(보상)액 산출

나. 배상(보상)협의

○ 배상(보상) 기준 설정
- 대상자 파악, 배상(보상)내용 결정, 배상(보상)액 산출
○ 배상(보상) 협의 추진
- 지방자치단체 고문변호사 및 보험전문가의 자문하에 추진
○ 배상(보상) 협의 당사자 선정(피해자협의회 구성 및 대표자 선정)
○ 배상(보상)협의(범위·금액·방법 등)

다. 배상(보상)금 지급·정산

○ 배상(보상)협의결과에 따라 배상(보상)금 지급
○ 배상(보상)금 확정후 정산지급
※ 책임자를 규명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3. 피해시설에 대한 항구복구대책 추진

○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소관시설·업무에서 재난발생시 피해원인 등을 조사·분석하여 유사사고 방지·예방대책과 소관시설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시행

- 지역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된 때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합동작업
-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는 대규모 재난의 경우 예방대책 및 복구계획은 중앙사고대책본부와 협의

·중앙사고대책본부 미설치시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

○ 공공시설의 경우 사고관련 주무부서 중심, 유관부서 합동추진

- 예산확보대책 강구(국비·지방비 등)

○ 민간시설의 경우 소유자 복구능력에 따라 다각적인 복구대책 강구

- 중앙·지역안전대책위원회 개최, 복구대책 협의

5. 소 방 안 전 대 책

[소 방 안 전 본 부]

- ○ 소방력 확충
- ○ 안전의식확산등 예방대책추진
- ○ 화재진압능력 향상
- ○ 구조·구급현장 대응능력보장
- ○ 소방장비의 과학화·선진화

目　標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봉사소방자세 확립

○ 소방조직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확보

○ 소방장비·통신의 과학화 선진화

方　針

○ 화재예방 활동의 강화 및 진압태세의 확립

○ 인명구조·구급등 재난대비대책 강화

○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력의 점진적 확충

推進計劃

Ⅰ. 소방력 확충

1. 소방관서 증설

○ 신도시·공단 등 소방사각지역에 대한 우선증설 추진

○ 농·공 화학단지, 주택밀집지역 등 화재 취약지역에 우선 배치

※ 최근 5년간 소방관서 증설 현황

구 분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 8.
계	12	10	3	6	4
항공대				1	
소방서		1			
파출소	4	1			
구급대	8	8	3	5	4

2. 우수 소방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

○ 우수소방인력 확보

- 소방간부후보생(제11기) 일선소방관서 배치 : 2001. 2월
- 구조·구급 전문요원 특별채용 : 군 특수병과 출신, 간호사 등

○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 교육기능 분담

- 중앙소방학교 : 소방간부후보생, 간부 기본·전문교육
- 충청소방학교 : 신규채용자, 비간부 기본·전문교육

○ 컴퓨터·외국어 등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확대

○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정신·시책교육

3. 소방장비 보강

○ 신설관서, 위험물시설 집중 지역 등에 장비 우선 배치

○ 소방대원 보호장비 및 구조구급장비 중점 보강

- 안전장비 5종, 구조·구급장비 22종

○ 노후장비 교체

- 11년이상 노후 및 성능저하 장비 교체

※ 최근 5년간 소방차량 보강 현황

구 분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계	35	59	33	53	37
펌프차	15	13	8	27	15
물탱크차	4	3	2	3	3
화학차	1	1	1	1	1
고가차		1	1		
굴절차	1		1	25	
구조차		5			
구급차	8	29	16	11	15
기 타	6	7	4	6	3

Ⅱ. 안전의식 확산 등 예방대책 추진

1. 내실있는 소방시설 점검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 대형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 소방검사 실시

○ 자율소방안전관리체제 확립과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등에 대한 소방시설 작동요령 및 피난방법 등 소방안전 교육 실시

○ 체험훈련 및 실기실습을 통한 소방교육의 효과성 증대

2. 대국민 소방안전 홍보강화

○ 소방홍보기법의 선진화

- 선진화된 광고기법을 소방홍보에 도입
- 소방동요경연대회 등 119이벤트 활성화
- 119소년단·대한민국소방 캐릭터를 통한 소방홍보 실시

○ 다양한 홍보자료 개발 보급

- 시청각 자료개발 : 표어·포스터, 책자, 비디오테입 등
- 홍보 전시회 및 사진전 개최
- 소방관서 인터넷 홍보 등 선진시책 추진

○ 소방관련 홍보지원조직 적극 육성

- 의용소방대, 119소년단
- 하계 119 체험캠프, 소방안전교실 등 체험적 프로그램 강화

○ 한가정·한업소·한차량에 1소화기 비치운동 강화

-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 홍보 및 구입·관리 방법 교육
- 소화기 작동 시뮬레이터 등을 통한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

3. 화재예방·진압 및 인재 추방운동 적극 추진

○ 월동기 및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 취약대상 소방안전점검 및 시설보완
-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감상실 등 다중이용업소
- 시장, 백화점, 병원 등 대형화재 위험시설
- 위험물 저장시설, 대형가스 저장시설, 석유화학단지 등

Ⅲ. 화재진압능력 향상

1. 광역 소방출동체제 구축

○ 지역특성과 보유장비 등을 고려한 소방응원협정체결을 통하여 효과적 재난대응체제 구축
- 소방응원협정 체결 현황 : 208 기관, 19,121명
○ 응원출동체제의 적기가동으로 각종 재난피해의 최소화
○ 지역별 화재취약대상 파악 및 소방응원 협정 체결
○ 체결기관간 실제 응원출동 훈련실시로 출동능력 제고(연 1회 이상)
- 주 관 : 도지사, 소방서장
- 훈련중점 : 통신망 사용, 소요시간, 통합 지휘방법 등

2. 직장자위소방대 역량 강화

○ 직장자위소방조직의 정비보강
- 자체 방위조직 통합편제 강화
· 민방위, 예비군, 자위소방조직 등 통합
- 취약대상 규모와 특수성을 고려한 편제 구성
· 부서별 과단위 편제
- 훈련지도시 편제운영의 적정성, 실효성 확인

ㅇ 초기 화재진압활동 지도를 통한 능력 향상
- 119신고, 인명대피,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등 초등조치 훈련
- 화재진압장비 및 개인 장구의 보강
- 초기진화를 위한 산업체별 상호지원체제 구축
ㅇ 자위소방대 합동훈련 강화
-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사전 계획수립 활동상황 평가회 개최
- 민방위훈련시 합동훈련 실시 (소방서별 1개 이상)

3. 소방용수시설의 확충

ㅇ 화재진압용수의 원활한 확보 및 공급
- 교통난으로 물탱크차 이용 및 운반방법의 한계 노출
ㅇ 소방여건의 변화에 따른 풍부한 수리대응책 강구
ㅇ 2001년도 보강계획
- 268개소
·소화전 250개소, 저수조 7개소, 급수탑 11개소
ㅇ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소방용수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연 1회 이상)
- 관련부서(도시계획,건설,수도 등)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소방용수시설 관리실명제 실시 등 운영체제 정비

4. 소방훈련의 내실화

ㅇ 화재진압 기본훈련의 체계적 실시
- 자체훈련계획 수립 실시
- 민·관합동 119종합시범훈련실시 (소방관서별 년2회)
ㅇ 소방기술 시범·경연행사 추진
- 소방기술의 시범·경연을 통한 선진기술 보급 및 진압기법 습득
- 자체훈련 강화(격년시범행사, 가상화재 등)
·화재현장 중요성을 감안한 단체종목 중심 개선
·새로운 화재방어 및 인명구조기술의 개발 보급

Ⅳ. 구조·구급 현장대응능력 보강

1. 긴급구조·구급체계 보강

○ 『119구조대』 보강 지원 : 화학장비 1개소

- 설치기준 : 화학공장 밀집지역 관할 소방서 1대이상

○ 『119구급대』 보강 지원 : 구급차 6대

- 설치기준 : 소방파출소 및 소방차 배치 읍·면당 1개대이상

※ 2001년 국비 1.6억 확보 (사업비의 50% 국비지원)

2. 구조·구급대 점진적 보강 추진

○ 구조대 1개대 11~15명, 구급대 1개대 6명 확보 지속 추진

- 구조 6개대 66명, 구급 90개대 540명

○ 구급전문인력 부족해소 지속추진

- 구급 90대, 간호사 8명, 응급구조사 16명, 간호조무사 6명
- 응급구조사 자체양성교육 등 40명
- 구급전문교육(2주) :30명

Ⅴ. 소방장비의 과학화·선진화

1. 소방차량 품질향상 추진

○ 품질향상된 장비제작·보급을 위한 소방차량 표준서 개선

○ 소방차량 공정·납품검사 전문기관 위탁

2. 소방통신망 보강

○ 소방수요증가에 따른 유·무선통신망 체제정비

○ 무선난청해소로 소방서비스 향상

- 현장활동용, 휴대용 무선장비 보강(진압요원 1인 1대)

3. 긴급구조정보시스템 전산화

○ 긴급구조정보시스템 안정화 고도화 추진

○ 국가안전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영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교부세 등 재원확보

有關機關의 協助·支援事項

【 각 부처 공통 】

○ 자율화재 예방대책 추진
- 화재예방교육 (직장교육 일환)
- 자체 소방·방화시설 점검 정비

○ 직장교육 등 자체추진 및 산하기관·단체 지도

○ 표창시 부상·기념품으로 소화기 선정 권장

【 교 육 부 】

○ 자율방화대책 추진 및 화재 예방 교육
- 소방차량 진입지장시설·소화시설 점검
- VTR 상영, 홍보책자 등 활용 화재 경각심 고취

【 문화관광부 】

○ 관광호텔, 청소년수련시설 등 방화대책 추진
- 종사원에 대한 교육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등)
- 비상구 등 소방·방화시설 자체 점검

【 산업자원부 】

○ 공장, 시장, 백화점, 등의 소방안전 관리

○ 전열기구 등 광고시 화재예방 홍보

○ 가스·유류·전기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 보건복지부 】

○ 의료기관, 사회복지·노유자시설 자체 방화대책 추진

○ 유흥업소 등 종사원 방화교육 및 피난통로 점검 등

【 건설교통부 】

○ 철도·지하철역 및 버스·여객선 터미널에서 화재예방 홍보

○ 항만·공항 등 다중집합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6. 시 설 물 안 전 관 리 대 책

[건설교통국/소방안전본부]

- ㅇ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ㅇ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 철저
- ㅇ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 ㅇ 안전관리의식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유도

目　標

○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와 준공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方　針

○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부실공사방지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 철저

○ 안전점검·진단 신뢰성 제고

○ 건설관계자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推進計劃

Ⅰ.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책임하에 지속적인 안전점검·진단

가. 시특법 대상시설물은 반기별 1회이상 정기점검 및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 실시(단, 건축물은 3년에 1회이상, 항만시설중 썰물시 바닷물에 잠긴부분 4년에 1회이상)

나.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은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실시

다. 시설물 상태등급이 불량하거나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

1) 서특법 대상시설물중 D, E급 시설물

2) 건교부소관 재난위험시설물 등

2. 민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정착

가. 다중이용시설물등 민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지자체장이 확인토록 독려

나. 공동주택 정기점검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계도 실시

3. 민간관리주체에 대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독려

4. 시설물 현황관리, 이력관리, 설계도서 관리, 사고사례 관리, 유지관리기술정보등 5개 분야로 구성된 종합정보체계 구축

Ⅱ.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 철저

1. 부실공사 방지대책 지속 추진

가. 사고발생시 마다 단편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부실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수립 시행

1) 부실공사방지 종합개선대책연구

※ 부실방지대책 종합평가 및 개선방향연구(98)
건설공사 품질·안전 종합관리 시스템개발(2000년)

나.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시공실태점검 강화

1) 건교부 산하기관 시행공사
2)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등 건설공사
3)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시행 건설공사

다. 부실벌점 측정제도를 건설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발주청의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의무화

Ⅲ.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1. 부실진단에 대한 처벌 강화

가. 민원발생, 저가입찰등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는 진단보고서를 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하여금 검증토록하고 부실진단 적발시 의법조치

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진단 경중에 따라 벌칙을 차등 적용

2. 안전진단 기술의 선진화

가. 안전진단기법 및 유지관리의 과학적 관리기법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의 연구·개발

3. 진단 기술자 전문화

가. 진단기관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전문교육 실시

Ⅳ. 안전관리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유도

1. 건설기술자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유도

가. 견실시공 의식 확산과 부실방지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나. 건설회사 담당임원 및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교육 실시

有關機關 協助 · 支援事項

○ 재난발생시 역할분담(중앙사고대책본부 구성시)

기 관 명	협조 · 지원사항
재정경제부	예비비 예산지원, 금융 · 세제 지원 등
행정자치부	구조 · 구난활동, 신원확인, 현장질서 유지, 재난관리법 운용 등
법 무 부	사고원인조사 및 관계자 처벌 등
국 방 부	인력 및 장비지원 등
산업자원부	전력, 가스시설 복구지원 등
보건복지부	의료지원, 의연금등 생활보호비 지원 등
노 동 부	산재보험 처리 등

〈첨 부〉

1. 2000 주요 재난발생상황 및 분석

가. 대구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

○ 사고개요

- 일 시 : 2000. 1. 22(토) 06:10경
- 장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신남네거리

○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사망 3명

○ 사고원인

- 토사붕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한 버팀철재와 이를 지탱하는 어스앵커가 흙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

○ 특성과 문제점

- 지질조사 및 토류벽 설치의 부적정

2. 재난발생 추이

ㅇ 공사현장의 부실방지와 완공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등 각종 건설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한 결과

- 부실공사 및 대형안전사고는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

ㅇ 건설현장은 점차 고층화, 대형화되어 재난위험요인은 날로 증가하고 완공된 시설물 또한 60년대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양적수요에 의한 공사비절감, 공기단축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으나

- 아직도 부실공사 근절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현장에 체계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 최근 IMF 영향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및 경비절감 등으로 안전관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부실공사 방지 및 시설물 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 특히, 안전은 관련 기술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계도 실시

7. 대형교통사고방지대책

[건설교통국]

- ○ 대형교통사고방지대칙
- ○ 항공교통안전대책
- ○ 철도교통안전대책

目 標

○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
○ 항공기 안전성확보 및 항행 안전시설 현대화로 항공기 사고예방 및 공항안전대책 강구
○ 각종재해·재난대처능력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수단을 제공

方 針

○ 도로상의 대형교통사고 요인이 가장 큰 교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노후·위험교량으로 판명시 즉시 개·보수
○ 항공기사고 예방 및 공항안전대책강구
○ 사고긴급보고체계 확립

推進計劃

Ⅰ. 대형교통사고방지대책

1. 교량안전점검

가. 안전점검 기준

○ 정기점검 : 2회/년
○ 정밀점검 : 1회/2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실시

나. 2000안전점검 결과

○ 지방도 및 시군도이하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개·보수가 필요한 279개교

〈개·보수계획〉

구 분	계	개축대상	보수대상
계	279	82	197
지방도	63	14	49
시군도이하	213	68	145

2. 교량 개·보수사업 추진

가. 보수대상(70개교) : 2000년도 완공

나. 개축대상(82개교) : 2000년도 43개교 착공, 2003년까지 완공계획

※ 안전점검 결과 개축 및 보수대상 교량은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3. 통행제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차량통행의 안전이 우려되는 교량에 대하여 통행제한 조치

4. 사고발생시 수습대책

가. 우리도와 시군의 자체인원과 수송장비로 환자 긴급 후송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 응급복구

나. 사고규모에 따라 인근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도보 및 언론사를 통한 우회도로 안내

2001 主要事業別 投資計劃

○ 2001 교량 개·보수사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 축		보 수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21	24,810	81	3,547	
지방도	3	3,440	25	2,338	
시군도이하	18	21,370	56	1,209	

※ 매년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차년도 교량 개·보수사업을 시행하므로 변경될 수 있음

有關機關 協助·支援事項

기 관 명	협 조 · 지 원 사 항
경 찰 청	도로교통통제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소 방 서	환자수송 등 구호활동 관련 사항
방송·언론기관	도로상황 홍보 및 우회도로 안내에 관한 사항
군 부 대	도로시설 긴급복구 지원 및 협조
지방자치단체	도로시설 긴급복구 지원 및 협조

Ⅱ. 항공교통안전대책

1. 항공기 사고예방 및 공항 안전대책 강구

가. 항공기 안전성 및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1) 항공기 정시점검, 비행전후 점검, 중간지 점검 실시에 대한 지도 감독강화

2) 항공기 감항검사, 수리·개조 검사, 예비품증명검사 등의 철저 시행으로 항공기 안전성 확보

3) 항공기 엔진성능 감시에 의한 항공기 성능상태 최적 유지

4) 항공종사원 규정준수 교육 강화

- 비행장 접근, 항공관제 등 9개 과정 교육실시(매년 66명)

나. 항공사 안전지도 감독 강화

1) 항공안전감독관을 적극 활용하여 항공운송사업 현장에 대한 사전 지도감독 대폭 강화

2) 특별 및 정기점검 강화로 안전 저해요인 사전 제거

- 정기항공사 안전점검 및 계절별 점검 년 4회 실시(동기전, 우기전, 추석절, 해빙기)
- 사고발생 항공사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다. 항공기 사고 조사체제 강화

1) 정기운송용 항공기 블랙박스 정기 해독 및 분석으로 안전 저해요인 사전 색출하여 항공안전 확보

2) 헬기 도입·운영으로 항공사고등 재난에 긴급대응 및 수색·구조 활동 강화

라. 공항건설 및 항공보안시설 현대화

1) 김포, 제주공항 기상자동관측시설 개량

2) 김해, 여수, 대구, 예천, 포항공항 확장 및 양양, 울진, 호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3) 김해, 사천, 포항, 강릉공항등에 항공보안시설 개량 및 신설

4) 항공교통관제시스템 현대화 및 5개소 항공용 레이다 신설

2. 사고 긴급보고 체계 확립

가. 근무시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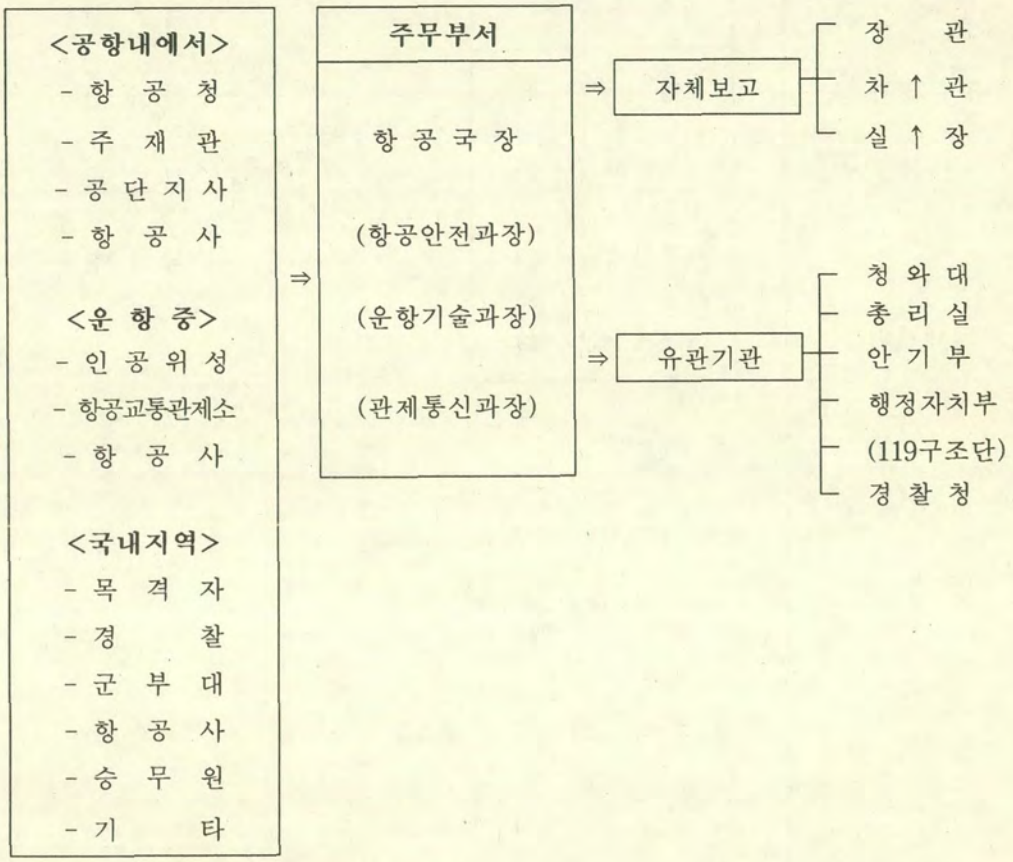

나. 근무시간외 ····· 〈당직실 보고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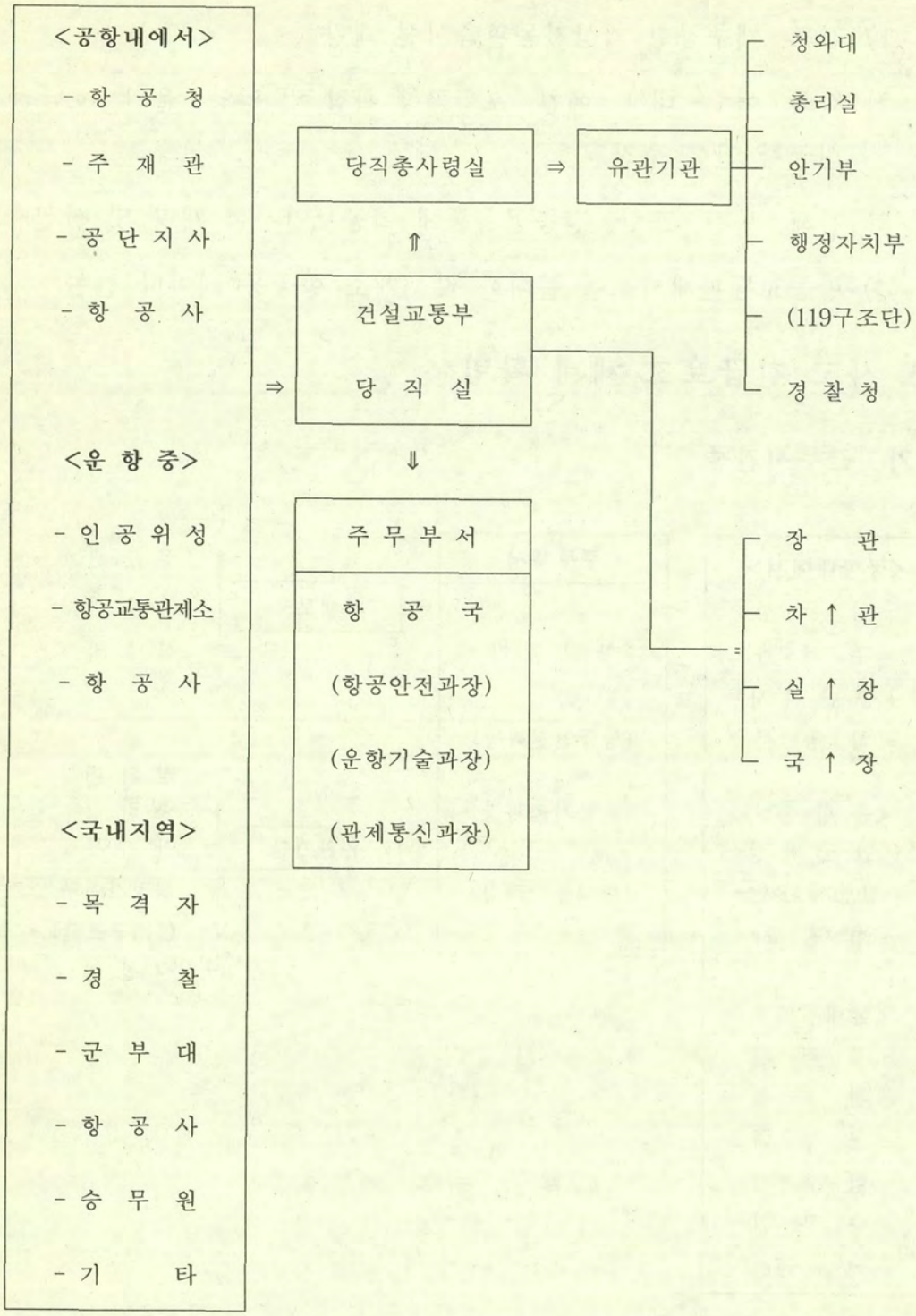

3. 『중앙사고대책본부』 설치 운영

본 부 장 : 건설교통부장관(대형사고) 또는 건설교통부 차관(중형사고)

보 좌 : 항공국장

상 황 반 : 운항기술과장,

- 사고에 관련된 현황 파악
  - 항공기, 탑승자, 화물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태 등
- 인명구조에 대한 현지상황 파악
- 항공기 운항관리
- 대정부기관 업무 협조
- 대책본부의 간사업무
- 대책본부조직의 유지관리
- 사고처리 복구과정 현황 파악

관 리 반 : 항공정책과장

- 대내외 발송문서 관리
- 피해자 및 동 가족 방문 위로 업무
- 부상자 입원등 의료기관에 관한 내용확인등
- 피해자 보사, 보험금 지급에 관한 내용확인등
- 사망자에 대한 장의계획 집행지도
- 대외 방문자에 대한 안내
- 대책본부 사무실 기타용품의 조달지원
- 보도자료의 수집 및 활동
- 피해자 및 국민에게 사과문 보도
- 대책본부 사무실 기타용품의 조달지원

조 사 반 : 항공안전과장

- 사고관련 보고
- 항공기 사고조사반 구성 및 사고조사 실시
- 국내외 사고조사반 협조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사고발생 통보
- 등록국, 체약국등 사고조사 참여여부 통보
-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보고
- 사고원인에 따른 행정조치등

국 제 반 : 국제항공과장

- 관련국제항공법의 해석 및 자문
- 외국인 사상자의 관계국과 협조등
- 외국인 유족에 조의 전달
- 외국인 사상자 유족에 대한 입출국 협의 도모
- 사상자 해당 주재공관에 대한 장관의 사고공한 발송
- 탑승자 통과여객의 편의 조치
  - 여권분실자에 대한 입출국 조치, 숙식제공, 호텔방문위로 불편사항 접수처리(의류,신발,일상용품등) 출국 조치
- 기타 사고와 관련된 국제적인 업무 처리

지 원 반 : 공항시설과장

- 피해시설 복구지원
- 사고처리 기술지원
- 사고처리 인원, 장비동원 지원 및 동원현황 기록유지

2001年 主要事業別 投資計劃

(단위:백만원)

구 분	총 계 획		'2001년 계획	
	사 업 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 공항 확장 및 건설	○ 김해공항확장 외 10개소	1,664,627	10개소	216,800
○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현대화	○ 김포공항 활공각시설신설외17건	575,700	18건	36,759

※ 2001년도 계획은 예산청 심의액 중심 작성

有關機關 協助 支援事項

기 관 명	협조 · 지원사항
외교통상부	○ 국외사고시 관련국과의 업무 협조 ○ 사고 조사관의 출 · 입국 협조
법무부(검찰청)	○ 사고현장 보존 및 조사, 출입통제 ○ 사고조사관의 출입협조
행정자치부(경찰청)	○ 사고조사관의 출입협조
보건복지부	○ 사상자 응급 구호 조치
국 방 부	○ 군기지 사고시 구조작업 협조
예 산 청	○ 사고관련 예산 확보

1) 2000 주요 재난발생 상황 및 분석

2000 상반기 항공분야 재난발생 상황 없음

2). 재난발생 추이

구분 \ 연도	'95	'96	'97	'98	'99	'00	계
항공기 사고건수	-	2	4	2	3	-	11

3). 2000 주요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사 업 명	2000 추진계획	2000상반기 실 적	진도 (%)	2000하반기 계 획
○ 공항확장 및 건설 - 김해공항 확장외 9개소	2,924	939	44	1,985
○ 항행안전 및 항로관제시설 건설	313	91	29	222

Ⅲ. 철도교통안전대책

공통추진사항

1. 철도안전에 대한 대국민 계몽 및 홍보활동 강화

가. 교통 안전의 달 행사실시 : 년 2회(4월,9월)

나. 모의건널목 실연 방영

2. 철도종사원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강화

가. 철도공무원교육원 안전관리자 과정 개설

나. 사이버 교육을 위한 전용싸이트 개설

다. 철도종사원의 안전의식 제고

3. 안전관련 제안 및 신고제 확대시행

가. 인트라넷 홈페이지 "안전방" 개설 활용

나. 안전엽서 신고제 병행시행

4. 시설·장비의 점검,보수 및 관리엄정

가. 주기별 책임점검제 시행

나. "안전의 날" 및 "안전회의" 운영 강화

1) 소속별 합동안전점검 및 안전회의 개최(월1회)

2) 지역책임관 단위 안전실무협의회 개최 (월1회)

5. 사고복구·수습 및 고객안내 철저

가. 신속한 상황보고 및 긴급출동태세 확립

1) 지역사무소에 종합사령실 운영 (24시간)

2) 복구요원 및 장비 긴급출동태세 확립

- 주요지구에 사고복구용 기중기 상시대기(대전,천안,김천)

나. 사고복구 및 수습체제 확립

1)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상시 구축

다. 사고복구 모의훈련

1) 가상 사고메시지 부여 불시훈련 : 기중기 배치소속 수시 시행

라. 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운영

1) 본청의 경우에 준하여 지역사무소 별도 설치

마. 사고·재해 발생시 고객불편 최소화

1) 열차지연 정보전달 및 통보체제 정착

2) 열차지연 도착에 따른 대체 수송수단 사전확보

6. 철도교통의 안전관리체제 구축

가. 철도용품 품질향상 및 안전도 확보

나. 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시설의 확충 및 개량

다. 각종 점검장비의 과학화

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등 안전관리 강화

마.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한 안전대책 강구

7. 기타 안전활동 강화

가. 선로 무단통행 빈발지역 관리강화

나. 공중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계도활동의 강화

1) 안전계도표지 확대설치

2) 대중매체와 간행물을 통한 계도활동 적극전개

3) 역구내 및 차내시설을 이용한 대국민 계도

다. 유류 및 가스취급소 안전관리 강화

1) 유류저장탱크의 노후시설 개량 및 안전점검 시행

8. 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 운영

가. 수습대책본부 설치

1)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사고를 적절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역장이 지역사무소장에게 건의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를 결정하며 장소는 관리역 또는 수습대책본부장이 지정한 곳으로 한다. 다만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 사고는 주관사무소장이 결정하여 건의한다
2) 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 이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시 사령실에서 임시대책본부의 기능을 대행하며, 지역단위 사고수습대책본부및 임시대책본부를 설치할 경우 관리역장은 지역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별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 사고 발생역 및 인접역장은 사고수습 또는 여객안내를 위한 인력이 부족한 경우 즉시 관리역장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한다.

나. 부서별 임무

1) 사고수습대책본부장
각 지원반을 지휘하여 섭외, 사고수습, 사고복구 및 원인조사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2) 복구반
사고복구지휘를 총괄하고 각 분야별 복구담당자와 협의하여 복구예정시간을 결정, 지역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각 반장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가) 차량반장
차량복구작업을 지휘하고 복구자재의 지원과 복구예정시간을 판단한다
나) 시설담당
시설복구작업을 지휘하고 시설복구자재 및 복구요원을 지휘한다

다) 전기반장

전력,통신,신호분야의 복구작업을 지휘하고 전기시설 복구자재를 지원한다.

라) 물자담당

복구자재의 지원 및 물자수급업무를 지휘한다.

3) 수송반

열차운용조정, 복구자재 수송 및 임시열차운행등 수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긴급한 여객, 화물의 수송에 관하여 운전사령과 수송대책을 강구한다

4) 수습 홍보반

대외, 언론, 법률지원등 섭외업무, 지원구호 여객안내를 총괄 지휘하며, 대외기관에 대한 섭외업무와 방송 보도기관의 보도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수습대책본부 장소의 제공과 집기등을 준비하고 사상자 관리 및 구호업무를 담당한다.

5) 조사처리반

사고원인조사 및 안전관리업무를 지휘한다.

6) 경비반장

경비 및 질서유지 업무를 관장한다

사고수습대책본부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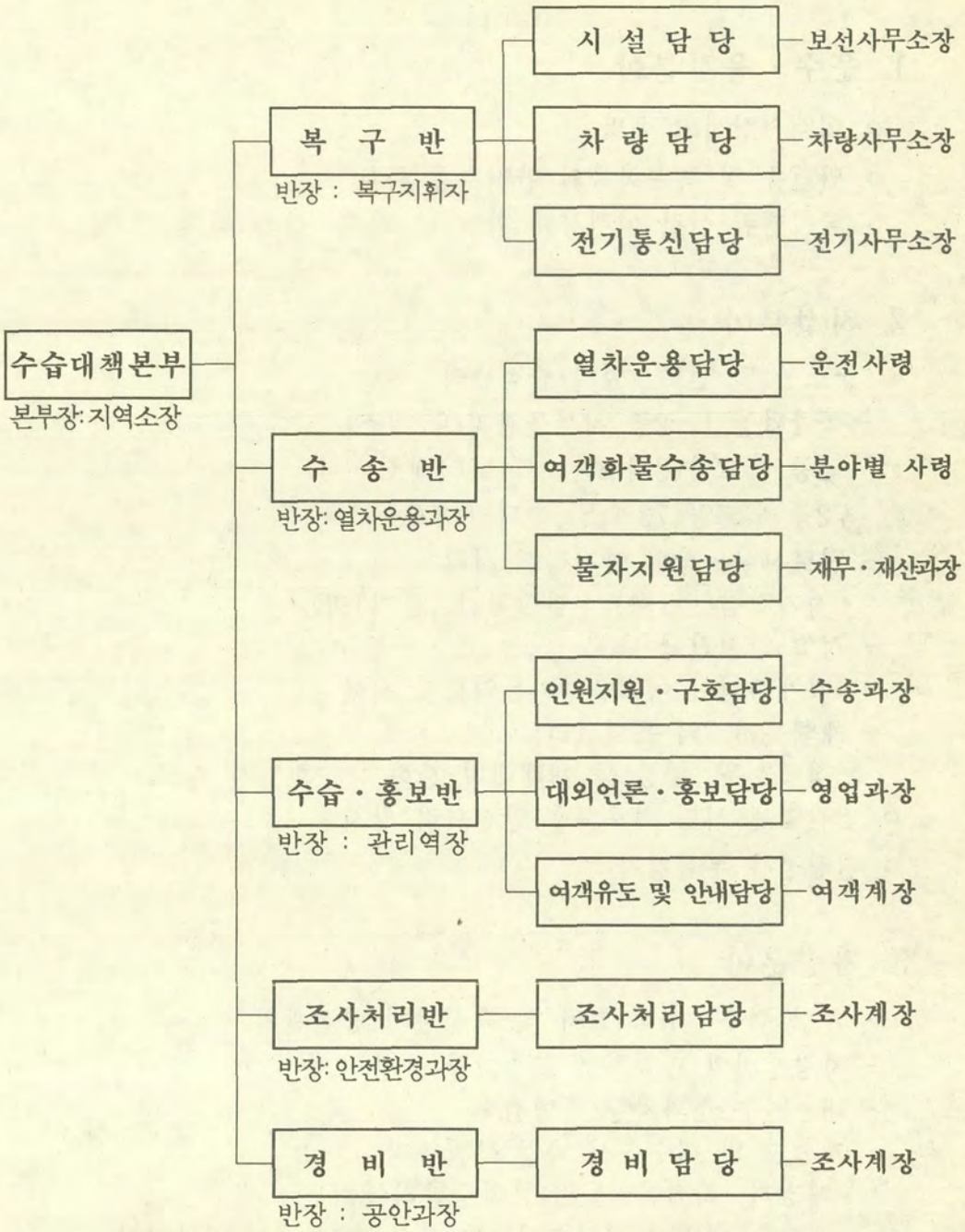

※ 기사 : 각 분야별 반장은 업무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내용에 따라 산하 각과장 및 계장을 적의 지정 업무수행토록 함

분야별 추진사항

1. 운수·운전분야

○ 여객사상사고 예방

○ 위험품 및 특수화물의 안전수송 확보

○ 금지행위 선정 이행상태 확인 및 지도·감독 철저

2. 시설분야

○ 구조물 및 선로시설의 중점관리

- 특별법상 1·2종 시설물관리(91개소)
  - 1종 : 교량(6개소), 터널(4개소)
  - 2종 : 교량(73개소), 터널(8개소)
- 선로시설·장비 안전점검 시행
  - 정기점검(년1회), 일상점검 (분기1회)
- 정밀 안전진단
  - 자체점검이 어려울 때 용역으로 시행
- 재해우려지역 특별관리
  -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대비 강화 : 순회점검 강화

○ 민간업체 시행 선로보수 안전관리 철저

○ 건설공사 부실방지

3. 차량분야

○ 차량 검수·정비 철저 및 핵심장치 중점관리

- 차량정비의 과학화로 도중고장 예방
- 내용년수 경과차량 특별검수
- 계절별 및 대수송시 차량 특별관리
  -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차량관리(3회)
  - 대수송 대비 특별검수기동반 운용(설날,추석,연말연시)

○ 차량화재 및 동결 예방검수 강화

4. 전기분야

○ 전기·통신·신호시설의 중점관리

- 고압배전선로 관리
  - 변전설비 두회로 모선 및 단자 접속상태 확인점검
- 신호보안설비 관리
  - 신호검측차 운행 및 연동장치 연동검사(각역)
  - 노후 ATS 지상장치 교체
  - 낙뢰시 궤도회로 기기 소손방지책 강구
- 통신설비 관리
  - 열차무선설비 1년 검수
  - 광케이블 특별관리(분소장 월2회 점검)

8. 전 염 병 방 역 대 책

[복 지 환 경 국]

- ㅇ 전염병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 ㅇ 지역주민에 대한 예방접종 강화
- ㅇ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전개
- ㅇ 대국민 홍보 및 계도 등

目 標

○ 전염병 발생 유행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로 도민건강증진

方 針

○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 지역주민에 대한 예방접종 강화

○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전개

推進計劃

Ⅰ. 전염병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1.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 편성 : 도 1, 시·군 16

○ 임무

-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규명
-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조치
-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
- 보건 홍보·계몽

○ 구성인원 및 조직책임

구 분	중 앙	도	시·군
구성인원	역학조사전문가 2명 보건연구관 2명 행정요원 2명 계 6명	역학조사전문가 (역학조사관포함) 3명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장 1명 질병관리담당 1명 행정요원 1명 계 6명	의사 1명 간호사 1명 세균검사요원1명 소독수 1명 행정요원 1명 운전원 1명 계 6명
조직책임	1반 방역과장 2반 역학조사과장	보건과장	보건소장

2. 비상근무기간 및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 비상방역근무

- 5. 1~7. 31 20:00까지(토요일 16:00까지)
- 8. 1~9. 30 20:00까지(토요일 16:00까지

※ 일요일, 휴무일 (09:00~16:00까지)

○ 방역요원의 순회점검 및 상주

- 전염병 집단이 우려되는 초상집, 집단생활시설, 항·포구 등 방역요원 순회 점검 단, 환자발생 등 필요시에는 기간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토, 일, 휴무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그 기관의 당직자가 환자발생 등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3. 환자 조기발견 사업

가. 병·의원 등 질병모니터망 운영

○ 기간 : 연중

○ 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및 운영

- 중 앙 : 전국 시·도의 기관별 모니터망 연계 및 전염병 발생 확인
- 도 : 관내 시·군별 모니터망 연계 및 전염병 발생 확인

○ 임 무

-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계몽
- 전염병(의사) 환자 발견 및 신고

나. 보균자 찾기사업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 종사자에 대해 6월마다 장티푸스균 검사 실시

다. 환자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확립

○ 질병정보모니터망,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 운영 전염병 발생에 대비

○ 신고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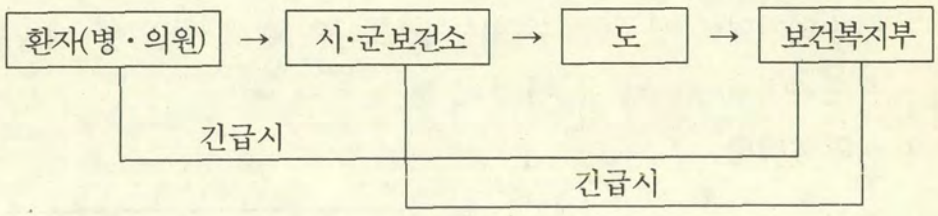

○ 질병정보모니터망 및 주민자율방역단 구성

- 기관별 지정수 : 보건소 15개이상, 보건지소 10개이상

○ 전염병 격리·치료시설 확보

- 52개 병·의원, 910병상

라. 오염지역 추적조사

○ 조사대상 : 오염지역 또는 유행지역에서 입국한 승객·승무원 전원

○ 실시기관 : 도, 국립검역소

○ 조사방법

- 여행자의 귀국 후 이상유무를 해당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 채변검사는 필요시에만 실시
- 이상환자 발견시 즉시 방역기동반(보건소) 출동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건복지부에 보고
- 해당 검역소는 오염지역 또는 유행지역에서 7일 이내에 내항한 승객 또는 승무원 전원에 대하여 시진·문진을 하고 필요시 채변검사를 실시
- 환자발견시 격리치료

Ⅱ. 지역주민에 대한 예방접종 강화

○ 수용시설 환자 및 집단환자 발생대비 예방접종 강화

○ 의료지원반 편성 운영

- 수해지역에 상주할 수 있는 의료진을 편성, 전염병 예방활동 및 환자치료 가능토록 편성 운영
- 편성기준

계	의 사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방역요원
4명	1	1	1	1

○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 수용시설 부족시 병·의원 병상활용

Ⅲ.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전개

1. 취약지 방역활동

○ 청소, 소독 등 위생해충 구제

- 기간 : 4~6월 2주 1회, 7~9월 주 1회 이상
- 방법 :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숲이 많은 민간주변 등은 연막 소독을 선택적으로 실시
- 대상 : 도시지역 하수구, 쓰레기처리장, 항·포구, 관광 유원지, 집단수용시설 등

○ 취약지역 중점 활동

- 질병정보모니터제 실시 및 환자치료
- 예방접종 및 보균검사 실시
- 지역주민 계몽
- 재해지역
  - 방역기동반 순회 활동
  - 식수관리강화 : 유리잔류염소량 0.2mg/ℓ이상유지 (단, 오염 우려 시 0.4mg/ℓ)
  - 변소, 하수구, 쓰레기장 등 방역소독 강화
- 집단수용시설
  - 수용전 건강진단 실시
  - 급식관리 철저

2. 소독장비 및 약품관리

○ 장비보관시에는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보관

○ 방역약품은 건조한 곳에 보관 사용

Ⅳ. 대주민 홍보 및 계도 등

1. 홍보예방

○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대주민 홍보실시

○ 개인위생 4대수칙 및 설사환자 발생시 즉각 실시

○ 설사환자 발생 즉각 홍보실시 준수 계도

2. 관계부서 협력

○ 방역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와의 협조체제 강화

· 집단환자 발생 및 예방을 위한 분야별 협조사항 등 협의 및 활동전개

2001 사업 및 투자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1,673,254	
예방접종	장티푸스 등 4종	349,000명	1,481,350	
방역소독약품	분무용소독약 등 3종	34,500 ℓ	112,500	
보균검사	채변검사 등	50,500명	70,328	
격리인원 진료		20명	9,076	

9. 산 업 재 해 대 책

[경 제 통 상 국]

Ⅰ. 유류관련 시설 피해대책

Ⅱ. 가스 시설 피해대책

Ⅲ. 전력시설 안전대책

目 標

자연재해 및 풍수해 등에 의한 재난발생시 철저한 예방대책과 신속한 복구로 주민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

方 針

- ○ 자율안전보건 경영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시스템적으로 재난 관리체계 확립
- ○ 재난사고 예방활동의 강화를 통한 재난의 사전예방.
- ○ 재난발생시 완벽한 긴급복구체계 구축.
- ○ 취약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으로 시설물 안전성 향상.

推進計劃

Ⅰ. 유류관련시설 피해대책

1. 재난예방대책의 추진

- ○ 안전보건경영체제에 의한 자율 안전관리
  -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관리를 경영의 대상으로 관리하는 안 전보건경영체제(KOSHA 2000 Program)도입

○ 재해유형별 방재대책 수립 및 각종 안전관리규정 규정운용

○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실시

- 비축기지 정기안전점검(1회/년 이상) 및 자체 일상, 주간, 월간 안전점검

○ 재난예방을 위한 법정점검 실시

○ 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실시(월 1회 이상)

2. 재난의 수습 및 복구대책

○ 재난보고 및 초동대응태세 확립

- 비상사태 대비·대응 절차서 및 재난관리위험시설 관리지침에 의거 재난 발생시 사고조치 방안 수립

- 재해대책반 편성 및 운영, 사고조치대책 수립 및 숙지교육 실시

○ 상황전파 및 보고체제 확립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유관기관과의 합동소방훈련 실시(년1회)

-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 및 수시 점검

○ 재난피해 보상(배상) 계획 수립

- 재난발생원인, 피해상황, 책임소재 조사, 피해지역 현장촬영등 기록 및 대내·외 보도사항 총괄, 피해자 대표와 보상 협의 추진 및 보상금 지급·정산

3. 안전관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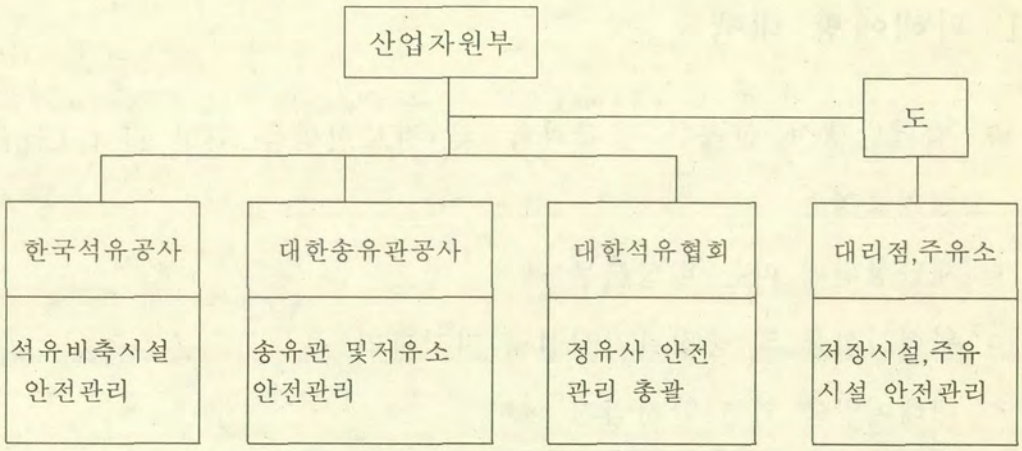

4. 주요시설별 안전관리 계획

석유분야	업 체	안 전 관 리 계 획
정유시설	SK, LG칼텍스 S-OiL, 현대, 인천정유	○특별안전점검 및 자체소방훈련 실시 ○현장근무자 및 신입사원 안전교육 실시 ○외부공사업체 작업자 안전관리교육 실시
송 유 관	대한송유관공사	○피해확산 예방을위한 소화기, 모래등 긴급 방화장비 비축 ○손상된 송유관시설 긴급복구
석유비축시설	한국석유공사	○사태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생산된 제품 분산정비 ○시설안전점검 및 자체소방기기 점검 ○비축기지 피폭시 산불예방 및 대책강구

Ⅱ. 가스시설 피해대책

1. 피해예방 대책

o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정보전달을 위한 Hot-Line 설치운영.

o 재난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체계운영.

o 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시설의 지정관리

o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 정기점검 : 시설 및 등급에서 규정한 기일내에 점검을 실시하되 법정검사와 병행실시 가능

· 수시점검 : 안전관리상 필요시에 실시하되 특별점검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과 병행 실시 가능

o 대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시책

- 매스컴을 통한 홍보

· TV/라디오, 신문, 잡지

- 대중광고물을 이용한 홍보

· 전광판, 극장, 철도역, 마을버스 등 외부광고

- 유인물 및 홍보용품 제작, 배포

· 홍보용 만화, 순회계몽 팜플렛 등

o 가스안전기기의 개발, 보급

o 위험시설물의 소산

【고압가스시설이전대상기준】

구 분	기 준
이전대상 시 설	○ 주거, 상업지역에 설치된 가스(염소, 암모니아, 포스겐, 산화에틸렌, V.C.M) 제조시설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설치된 유독성가스제조시설 이라도 도시 확장으로 동 제조시설의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공공의 안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설치된 제조시설(단 공업지역내의 시설중 비료제조시설 등 장치 산업의 시설은 제외함) ○기타 도지사가 위해도를 감안,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 (주거, 상업지역에 설취된 유독성가스 사용 및 가연성가스 제조, 저장시설 포함)
이전지역	○전용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등 도시팽창으로 주택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
시 설 의 보 완	○주거, 상업지역에 설취된 저장능력 10톤이상의 지상저장탱크(LPG) ○주거, 상업지역에 설치된 유독성가스 사용업소의 1톤이상의 저장시설은 지하화 및 중화장치 설치 ○고압가스 수송탱크로리(LPG)의 폭발장치 설치 또는 운반 책임자 동승 ○기타시설의 방호벽, 방호망, 방류둑 및 자동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

2. 피해복구 대책

○ 사고조사반 구성, 운영

○ 재난상황파악(보고) 및 초동대응태세 확립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업자 및 대상업소에서는 긴급출동반의 출동태세 확립

○ 유관기관과의 협조·지원체계 구축

- 가스관련 업계별 협조, 지원할 사항

가스관련업체	협조·지원할 사항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충남북부지사	○ 점검 및 복구인력 ○ 긴급복구에 필요한 차량 및 소요자재 (호스, 조정기 등의 지원) ○ 가스안전 사용요령 홍보 등
한 국 가 스 공 사	○ 수해지역 도시가스사의 응급복구장비 및 기술 지원 ○ 가스안전 사용요령 홍보 등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 연소기 A/S반 투입 ○ 소요 연소기 및 부품지원 등
(사)한국도시가스협회	○ 피해지역 도시가스사 지원을 위한 회원사 협조 및 인력지원 등
한국LP가스공업협회 충남지회	○ 피해지역 회원사 협조 및 인력지원 ○ 피해지역의 LPG용기 유실에 따른 충전용기 지원
충남가스판매업 협동조합	○ 회원사의 긴급복구에 필요한 인력 및 자재 운반차량 지원 협조 ○ 수재민 임시숙소 취사용 가스시설 설치 등
도시가스사, LP가스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	○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점검 및 긴급복구 등

○ 유사시를 대비한 자체훈련 실시

○ 긴급복구 순서는 가스제조소, 정압소 고압, 중압, 저압권 순으로 복구

○ 피해대상업소는 평시 민방위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피해발생시 신속히 자체복구

○ 가스관련시설은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일정기준의 필요장비 확보, 긴급출동반의 유사시 대비, 긴급조치요령 등 훈련실시

【 가스관련시설 . 장비 확보기준】

대상시설	확 보 장 비	비 고
○LPG 판매점 ○대중음식점 ○집단공급시설 ○용기충전소	○LPG용기캡슐 및 밸브 조치용캡슐 ○고무테이프 ○나무 및 납쇄기, 나무망치 ○LPG용기 응급조치용 캡슐	폭발성가스
○제조, 저장시설 ○사용시설 (정수장)	○제독장비 ○개인보호용장비 (양압식공기마스크, 방독면 등) ○기타 응급조치용 장비	유독성가스

Ⅲ. 전력시설 안전대책

1. 재난예방대책의 추진

- ○ 전기사업법에 의한 법정정기검사 및 점검실시(일반용, 자가용, 사업용)
- ○ 전기안전대책 상화실 운영 및 비상시 상황근무체제 강화
- ○ 재난관리대상시설물의 중점관리(백화점, 시장, 상가, 호텔 등)
- ○ 전기안전홍보강화 및 재해 취약시기 사고예방 활동
- ○ 변전소 수전계통을 환상망으로 구성 이중 전원을 확보하고, 정전범위 및 정전시간 단축을 위하여 송변전설비 지속 확충
- ○ 모의훈련 및 방재교육을 통하여 피해발생시 조치요령 숙달 및 위기 대처능력 위기

- ○ 전력피해발생시 상황반 운영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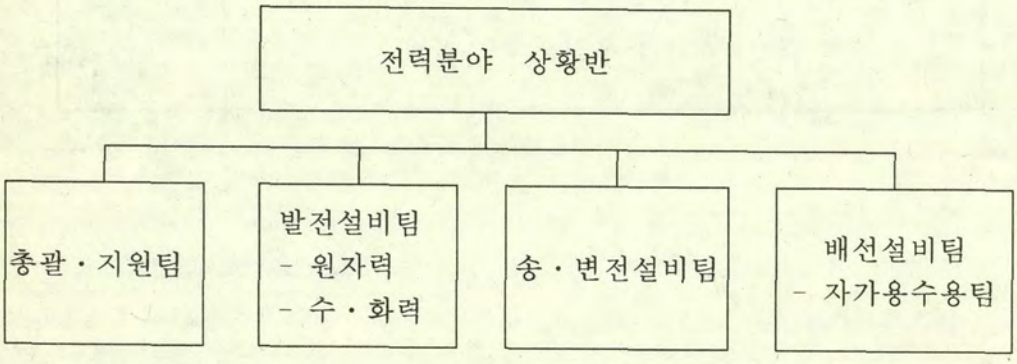

2. 재난의 수습 및 복구대책

○ 피해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초동출동태세 확립 및 사업소별, 변전소별 긴급복구센타 운영

○ 우선순위에 따라 피해복구지원 추진 및 효과적인 복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운영

(1순위 : 필수시설, 2순위 : 주요시설, 3순위 : 일반시설)

○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방호대를 편성·운영하며, 변전소 피해 규모 확대시 재해대책본부설치 및 전기공사업체 동원 긴급복구

○ 낙뢰 또는 설비사고로 인한 화재발생시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초기진화토록 하고 화재확대시는 소방서와 합동진화

○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제한송전이 불가피한 경우는 전력공급 우선 순위에 의거 순차적으로 부하를 차단하여 필수 주요시설에 우선 공급하고 전력수급 비상근무 체계로 돌입하여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시 이동 안내방송차 및 현장 가두방송을 통하여 정전상황과 주민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활동 재개

- 정전사태의 수습지연이 예상시는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안전계몽 및 주민불안 해소
- 주요고객 및 대동력 수용가는 자가발전기를 가동토록 개별전화 통보

3. 피해발생시 행동지침

피 해 발 생 시 행 동 지 침

단 계 별	유관기관	행 동 지 침	비 고
최초단계	관련업체	○ 자체전파 ○ 긴급복구반 출동 ○ 유관기관 통보	○자체방재
사태확대 단 계 (합동진화 단 계)	해당업체	○ 유관기관에 통보 ○ 자체응급조치 ○ 피해예상지역 확대시 지역경보 ○ 자체경보 및 통제활동 (예비군 및 민방위)	○ 행정관서 ○ 경찰서 ○ 재해대책 기관
	행정관서 (도,시·군)	○ 유관기관 전파 ○ 인명구조 ○ 피해지역의 인원대피유도 (민방위대원 통제) ○ 피해확대에 대비 행정조치	
	경찰관서	○ 피해·위험지역 주민소산 및 차량통제	○ 해당업소 협조
	소방관서	○ 화재진압 ○ 인명구조 ○ 피해확대에 대비한조치	
	민방위대원	○ 경보전파 및행정관서지원	
	인접유관기관	○ 긴급출동반 지원 ○ 소방관서 기술지원 (피해확대대비)	

2001年 主要 事業計劃

1. 한국석유공사

○ 석유비축시설 보수·보강 등 재난예방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
계	35건	3,020

○ 세부내역

구 분	사 업 내 용	투자비용(천원)	비 고
구리지사	○ 공기압축기 정밀점검	9,275	
	○ 특고압 인입선로 교체	33,043	
	○ 시설부 작업장 개축	34,488	
	○ 입출하대 콘크리트 포장	6,566	
	○ 통합 통제실 구축	99,825	
울산지사	○ 탱크 정기점검 및 보수	1,710,339	
	○ Jet Mixer 설치	216,262	
	○ Buoy Hose 정밀점검 및 교체	180,895	
	○ 탱크지역 포소화전용 배관교체	73,736	
	○ 초소창호 및 출입문 교체	10,481	
	○ 소방펌프 모터 Overhaul	12,978	
	○ 휀스 보수	4,742	
	○ 제3단위변전실 옥상방수	7,700	
거제지사	○ 브이호스 정밀점검 및 교체	102,862	
	○ 활성탄 교체	37,110	
	○ 산지초소진입 철계단 교체	11,782	
	○ Buoy Deck 밸브 교체	4,928	
	○ 정수장 활성탄 및 여과사 교체	6,277	
	○ 관측공보호박스 제작설치	2,773	
	○ 유입 변압기 외함 교체	3,993	
	○ 무정전 전원장치 정밀점검	15,790	

구 분	사 업 내 용	투자비용(천원)	비 고
평택지사	○ 부두파일 방식 보수	123,240	
	○ 부두박지 정밀 수심 측량	23,749	
	○ 안전밸브 정기점검 및 검사	16,082	
	○ 해상 입출하설비 유지보수	11,439	
	○ 공기압축기 정밀점검	7,547	
	○ 부탄출하펌프 정비보수공사	57,635	
	○ 사택 오수처리시설 보완	25,300	
	○ 소방펌프실 배관 교체	12,760	
	○ 프로판, 부탄 Shaft정문 경비 초소 교체	3,520	
	○ 방폭설비 보수	2,121	
용인지사	○ 휘발유탱크 사면 보강	110,333	
여수지사	○ 오폐수 처리시설 활성탄 및 Sand 교체	17,490	
	○ 수처리시설 화성탄 및 Sand 교체	9,735	
	○ 해상 입출하설비 유지보수	13,385	
계	총 35건	3,020,182천원	

2. 한국가스공사

가. 설비보수 및 보강

(단위 : 천원)

구 분	대 상 설 비	소 요 예 산
생산설비	저장탱크, 하역설비, 기화기 등	2,500,000
공급설비	밸브,정압기,히터,방폭설비 등	6,700,000
총 계	-	9,200,000

나.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단위 : 천원)

구 분	점검기관	소요예산	비고
자체점검	가스기공	5,500,000	
정기검사	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공단	52,000	법정검사
총 계		5,552,000	

다. 안전문화활동

(단위 : 천원)

구 분	점검기관	소요예산	비고
안전교육 및 훈련	연구개발원 및 사업소자체	350,000	전직원대상
	대한광업진흥공사, 산업안전공단등에 위탁	200,000	〃
홍보활동	멀티비젼, TV, 신문, 안전홍보 비디오제작	2,000,000	-
총 계		2,550,000	

3. 한국전력공사(충남지사)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총계획(98~2002)		2001년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전력설비보강	530	212,205	97	43,101
- 주변압기 증설	53	61,543	10	10,315
- 개폐장치 증설	118	76,763	19	19,209
- 변전소설비 보강	14	47,709	2	7,790
- 노후불량설비 대체	345	26,190	66	5,787

< 별첨 >

V. 2000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1. 석유비축시설

○ 사업추진현황 개요

사 업 명	2000추진계획	2000상반기 추 진 실 적	진도(%)	2000하반기 추 진 계 획
석유비축시설 보수·보강	2,524백만원 (12건)	787백만원 (6건)	32	1,737백만원 (6건)

○ 세부추진내역

구 분	보수내용	소요예산 (천원)	비 고
울산지사	○ 원유 저장탱크 내부 청소	645,007	완 료
	○ 원유 저장탱크 정기점검 및 보수	1,205,075	진행중
	○ Buoy Hose 정밀점검 및 교체	106,609	예 정
	○ 탱크지역 소화설비 보완	98,909	예 정
	○ 환경오염방지용 수문 보수	3,492	완 료
거제지사	○ Buoy Hose 정밀점검 및 교체	175,795	예 정
	○ 호안 피복석 복구공사	27,760	완료(추가)
평택지사	○ 프로판 Ball Tank 검사 및 보수	123,904	예 정
	○ LPG 저장시설중의 안전밸브에 대한 점검 및 보수	26,604	진행중
	○ 선박접안시설인 Jetty중 중요시설에 대하여 점검 및 보수	5,000	완 료
	○ 주변압기 보호장치 설치	3,000	완 료·
용인지사	○ 송유관로 이설공사	103,013	완료(추가)
계		2,524,168	

2. 가스시설

세부추진계획	세부추진실적	비 고
□ 재난관리체제의 확립		
○ 취약시기별 가스안전점검 실시	○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대상 5회 실시	
○ 가스사용자 자율점검 실시소	○매월 4일 자율점검 실시 ○매분기 마지막 달 집중계몽	
○ LPG 체적거래 실시	○16,000개소 체적거래시설 전환	
□ 대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 재난발생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 홍보물, 유선방송 등 홍보	
- 가스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 가스안전관리자, 주부, 학생대상으로 가스안전교육 실시	
- 가스안전 결의대회 개최	- 11.3 가스안전결의대회 개최(1회)	
□ 재난상황관리체제 구축		
○ 상황근무체계 구축		
- 24시간 상황실 운영	- 도시가스회사,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상황실 24시간 운영	

3. 전력시설(한전 충남지사)

(단위 목표량 : 개소, 사업비 : 백만원)

사 업 명	2000추진계획	2000상반기 추진실적	2000하반기 추진실적	진도(%)
주변압기 증설	9 Bank (6,435)	5 Bank (2,725)	4 BANK (3,612)	100
개폐장치 증설	8회선 (8,101)	1회선 (853)	7회선 (6,986)	100
변전소 설비보강	7개사업소 (3,471)	4개사업소 (1,411)	3개사업소 (2,060)	100
노후불량설비 대 체	78 (1,659)	26 (551)	53 (1,108)	100

10. 수 질(식수)오염대책

[복 지 환 경 국]

- ○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강화
- ○ 유해물질의 상수원 유입 및 방지대책 강구
- ○ 수질오염사고 조기발견 체제 구축
- ○ 사고발생시 신속대응체계 구축
- ○ 오염물질 방제능력 제고

目　標

- ㅇ 상수원 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운영
- ㅇ 취약지역 수질오염도 상시 측정 및 하천 책임감시제 실시
- ㅇ 유해물질 상수원 유입방지 및 취급업소 안전관리기능 강화
- ㅇ 사고대비 방제훈련 강화 및 방제장비 확충

方　針

- ㅇ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운영
- ㅇ 유해물질 취급업소의 안전관리 기능 및 지도점검 강화
- ㅇ 상수원 및 주요하천의 수질감시체제 확립
- ㅇ 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상수원 오염피해 최소화
- ㅇ 오염사고대비 방제장비 확충 및 방제훈련 강화

推進計劃

Ⅰ.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강화

1. 상수원 오염의 유형

- ㅇ 유류 등에 의한사고
- ㅇ 중금속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폭공수역 유출사고
- ㅇ 환경 기초시설에서의 오·폐수 유출사고
- ㅇ 폐기물·유해물질 유출사고
- ㅇ 기타 오염원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사고 등

2.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으로 오염원 입지제한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오염물질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

보호구역수	지정면적 (㎢)	취수능력 (천톤/일)	거주인구 (명)	미지정취수장 (개소)
27	36,712	273.4	3,876	7

○ 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지정 : 없음

3.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철저

○ 상수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의 확보 및 관리

○ 안내판 및 표주의 설치 및 관리

○ 보호구역안의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현황조사·관리

4. 상수원보호구역내 금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 유독물, 농약, 분뇨, 폐수 등 수질오염물질 유출·투기 행위

○ 수영, 목욕, 세탁, 뱃놀이, 행락, 야영 및 야외취사 행위

○ 어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가축방목 행위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 및 제거 행위

○ 벌채 행위, 굴축 성토 및 기타 토지 형질변경 행위 등

5. 식수관련 시설현황

구 분	총 계	중점관리 대상시설				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D급	E급
계	95	95	80	12	3	-	-
수질보전	48	48	40	5	3	-	-
상하수도	47	47	40	7	-	-	-

※ 시설별 등급기준

구 분	등급	상 태
중점관리 대상시설	A급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으며 정기점검 요하는 시설
	B급	경미한 손상이 있으나 양호한 상태로 간단한 보수 요
	C급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상태로 일부시설 대체 요
위험시설	D급	주요부재의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으로 긴급한 보수 요
	E급	안정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 요

Ⅱ. 유해물질의 상수원 유입방지대책 강구

1. 상수원 주변도로 사고예방 대책

○ 보령댐 상수원 주변도로 통행제한도로 및 우회도로 지정시행(2000. 10. 22)

- 유류, 유독물, 농약원재, 방사성물질 적재차량 통행금지

⇒ 수질환경보전법에 상수원 주변도로 통행금지 규정 명문화, 앞으로 통행제한도로 확대계획

2. 유해물질취급업소 안전점검 강화

ㅇ 유독물 제조·저장시설의 파손여부 등 안전점검강화
ㅇ 우천 등 기상 악조건시 주기적인 안전진단 강화

3. 유해물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강화

ㅇ 상수원 상류지역의 대형 유독물제조·사용업소 및 시설노후업소 등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지도점검 실시
- 유해물질의 불법배출이 없도록 업소관계자 교육 및 지도강화
- 유해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하여 약품·자재 등 방제장비의 충분한 확보와 강우 등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철저 지도

ㅇ 업체별 업종별로 사용품목, 폐액발생량, 처리실태 등을 정밀조사 하여 자료를 분석, 문제업소에 대한 중점관리 실시
- 상수원 수계별로 업체현황을 분석·정리하여 전산화관리

ㅇ 유해물질 유출 또는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시설(방류벽, 턱, 저류조 등), 포집시설, 살수시설(스프링쿨러 등) 설치

ㅇ 안전점검 정례화 및 관리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관리
- 유해물질 제조·취급·저장시설, 이송관, 유입·배출구에 대하여 월1회이상 이상유무 점검실시, 그 내용을 기록유지
-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자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감독

ㅇ 유해물질 운반사고 예방
- 유해물질 운반시 운반계획 작성운행
- 운반중 사고에 대비한 방제장비 및 방제요령카드 비치
- 운반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실시

Ⅲ. 수질오염사고 조기 발견체제 구축

1. 취약지역 수질오염 상시 측정

○ 주요하천 금강(금남교, 백제대교, 부여석성취수장)지점에 대하여 PH, COD, 수온, 냄새, 하천관찰 등 매일 수질조사 실시

- 수질분석결과 특이사항 발생시 관련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 오염원 조사, 지도·단속업무와 연계활용 등 신속 대응조치 수 확대

2. 상수원 수질 감시활동 강화

가. 「하천감시모니터요원」 및 「기관·단체 하천감시자」 지정·운영

○ 하천주변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상점·양식장·식당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환경보전 의식이 투철한 자를 「하천감시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하천관찰·감시업무 수행하천 감시기능 강화

○ 공공기관, 민간봉사단체, 기업체, 각급학교, 군부대 등 하천감시 업무수행 능력이 있거나 하천감시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책임자로 선정

나. 입체적 하천감시체계 구축

○ 취수장 등 수질감시초소 설치, 공익근무요원 배치로 육상감시 기능 강화

○ 수상감시반을 편성, 육상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선박을 이용한 수상감시체계 구축

○ 환경부에서 초경량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감시활동 전개

Ⅳ. 사고발생시 신속대응체계 구축

1. 관계기관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관내 물 관련기관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매반기 1회 이상 변동사항을 점검 보완

○ 물관련 기관 전화번호부 발간·배포(연 1회)

2. 재난발생보고

○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관리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 보고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수질오염사고의 경우 하류지역의 취·정수장과의 거리 및 영향여부를 필히 기재

○ 보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FAX 또는 전화로 신속히 보고

- 징후보고 : 사고발생의 징후가 보이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그 경위와 원인, 향후전망, 대책 등을 보고
- 발생보고 : 사고발생 즉시 사고상황, 수습상황 등을 보고
- 중간보고 : 상황진전에 따라 사고원인, 피해상황, 수습계획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사항, 지원요청사항 등을 보고
- 최종보고 : 사고를 완전히 수습한 후, 수습상황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사항 및 문제점·대책을 종합하여 보고

3. 재난관리 수습체계 구축

가. 중앙사고대책본부 구성

ㅇ 설치근거 : 재난관리법 제45조

ㅇ 설치시기

-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때
-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수습을 위하여 중앙사고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가 발생시

ㅇ 설치장소 : 환경부

ㅇ 구 성

- 본 부 장 : 환경부장관
- 위 원 :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국방부·보건복지부·차관 및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ㅇ 기 능

- 당해 환경오염사고의 수습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기타 필요한 업무 협조 요청
- 사고수습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지역사고대책본부장을 지휘
- 사고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사고대책본부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소집

·사고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나. 지역사고대책본부

ㅇ 설치근거 : 재난관리법 제43조

ㅇ 설치시기

- 도 또는 시·군 지역에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 지역의 예방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

※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

ㅇ 설치장소 : 도 또는 시·군

ㅇ 구 성

- 본부장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차장(2인)

·부단체장과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당해 사고와 직접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없는 경우 부단체장이 1인만 둠)

- 본부원

·지자체 소관 공무원중 지역본부장이 지명하는 자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

ㅇ 기 능

- 당해지역 환경오염사고 예방·수습 및 복구에 관한 업무총괄
- 당해 지방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기타 필요한 업무협조 요청
-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기능별 실무반 설치·운영 등

Ⅴ. 오염물질 방제능력 제고

1. 사고대비 가상 방제훈련 실시

ㅇ 훈련단위 : 도 주관, 시·군단위 실시(수계별로 훈련 가능)

ㅇ 실시횟수 : 반기별 1회 이상(2001년도 서천군, 홍성군 예정)

ㅇ 참가범위 :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군부대, 예비군, 민방위대원 등

ㅇ 훈련내용

- 관계기관 상호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
- 응급조치 및 방제장비·자재 사용요령 숙지

2. 방제장비 확보

ㅇ 응급(대체)장비 : 발생초기단계 이용

- 가마니, 마대, 볏짚, 톱밥, 비닐하우스 보온 덮개
- 농업용 비닐에 짚을 말아 간이 휀스 이용
- 개인휴대장비(우의, 고무장갑, 고무장갑 등)

ㅇ 처리단계 주요 방제장비·약품 등 확보- 전 기관이 사고 1건당 평균 방제장비 소요량을 파악, 일정기간이상 장비 확보

- 오일휀스, 유흡착포, 유흡착롤, 유처리제, 유독물흡착제, 유화제 등

ㅇ 방제장비 등 의무적 확보

- 수질오염사고의 방제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관장
-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방제장비 및 출동에 필요한 차량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조치

3. 관련 및 처리부서

〈 환경부 〉

○ 수질오염사고 : 수질보전국

○ 폐기물사고, 유해물질사고 : 폐기물자원국

○ 상하수도사고 : 상하수도국

〈 도 〉

○ 수질오염, 환경기초시설사고 : 수질관리과

○ 폐기물, 유해물질사고 : 환경관리과

○ 상하수도사고 : 치수방재과, 수질관리과(하수시설 관련)

〈 시·군·출장소 〉

○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관리(주관)부서를 지정·운영

4. 기능 및 운영체계

부서별	주요 기능	비 고
수질관리과	수질오염사고, 하수도사고방지 등 관련업무	
환경관리과	폐기물, 유독물방지 등	
치수방재과	상수도사고방지 등 관련업무	

有關機關 協助·支援事項

기관명	협조·지원사항
금강환경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사고시 인력 및 각종 장비 동원 협조 지원 -오일훼스, 유흡착포 등 오염방제장비 및 기자재 등 긴급동원 방제작업 실시지원 ○수질검사 실시 협조
지방자치단체 (시·군)	○방제작업 실시 및 인접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조, 상황전파 등 -수질오염사고시 신속한 보고 및 방제작업실시 -지천 사고시 수문을 폐쇄, 본류 유입을 최대한 방지 -오일훼스 설치, 유습착포 등 방제장비로 오염물질 제거 -야간 방제작업시 조명용 차량 등 지원 -오일훼스 및 바지선 등 방제장비지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상수원관리사무소	○상수원 오염에 대한 취수대책 강구 -취수구등에 이중으로 오일훼스 설치 -유흡착포, 유수분리장치, 활성탄등 방제장비·약품 비축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방제인력과 포크레인 및 구급차량 등 방제장비 긴급지원 ○야간 방제작업시 소방차(조명용)등 지원

11. 방 사 능 재 난 대 책

[소 방 안 전 본 부]

○ 방사능관리체계의 확립

○ 재난대비조치 철저

○ 국가방사능 감시 및 평가계획 수립

○ 비상단계별 조치철저

○ 교육·훈련 지속실시

〔부록〕 국가방사능 감시 및 평가계획

目 標

- ○ 방사성물질 누출사고시 환경 및 주민보호
- ○ 방재기관 비상대응능력 향상

方 針

- ○ 방사능 재난관리체계의 확립
- ○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 ○ 주민보호조치 대응능력의 배양
- ○ 방사능 방재시설·장비 및 물자 확충
- ○ 방사능 방재교육·훈련의 내실화

推進計劃

Ⅰ. 방사능재난관리체계의 확립

1. 적용대상시설

- ○ 재난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대상 주요시설이며 원자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방사선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원자력발전소 및 핵연료제조회사
  ※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의 경우 본 계획 준용

2. 재난관리조직

○ 재난관리에 관한 정부의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기구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지역별 재난관리의 경우 도 단위에 도 안전대책위원회, 시·군 단위에 시·군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

○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대규모인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재난 수습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정부차원의 방사능방재 대책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에 중앙통제상황실을 설치·운영

○ 방사능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난의 예방 또는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 단위하에 도 사고대책본부를, 시·군 사고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재난 발생시 긴급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긴급구조본부를, 도 및 시·군 단위에 지역긴급구조본부를 설치 운영

○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도 및 시·군)는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 보호

Ⅱ. 재난대비조치 철저

1. 중앙통제상황실 운영

○ 원전 등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고장 및 방사선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기상황 파악으로 사고에 기민하게 대처

- 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지원본부의 사고분석·평가자료의 실시간 수집으로 주민보호조치 등의 신속한 의사결정

○ 사고기간중 사고의 확대방지와 사고영향 완화 및 주민보호 조치·환경보전 등 중앙정부차원의 제반 방사능 방재 대책을 총괄 관리

- 대국민 메시지발표와 관계부처 합동의 지원대책 수립 및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분의 지원

○ 사고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정보유통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안전기술원의 CARE시스템과 연계
- 원전 호기별 사고정보 및 분석결과 제공

○ 종합 통신체제 구축

- 원전 비상대응 시설,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부부처 및 방재 관련기관간의 비상통신체제 구축

2. 비상계획구역(EPZ)의 설정

○ 방사선 비상시 방재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중심으로 반경 8~10km 지역을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

3. 비상통신망의 구축

ㅇ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방사선 비상시 원자력발전소와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부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신속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전용전화 및 모사전송 통신망을 구축

ㅇ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비상통신망을 원자력발전소의 비상대응시설과 연결

4. 비상경보용 방송망 설치·운영

ㅇ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발전소 주변 2km이내의 지역주민에 대한 비상경보용 방송망을 설치

ㅇ 비상 경보용 방송망은 도(시·군)에서 운용하되 원자력발전 사업자와 협의하여 운용하며,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반영 조치

ㅇ 비상경보용 방송망 이외에도 민방위 경보시설, 마을앰프, 가두방송, 지역방송, 방송시설 및 민방위 경보시설을 최대한 활용

5. 대피시설의 지정

ㅇ 도(시·군)는 비상계획구역내의 주민소개를 위하여 사전 대피시설 지정

·소개예상인원 및 소요시간을 고려, 대피시설규모 적정 판단

ㅇ 기상상태에 따라 피해지역이 달라짐을 감안, 적절 분산 지정

6. 발전소의 비상시설 확보

ㅇ 사업자는 방사선 비상에 대비, 비상대응시설을 확보하고 운용절차 수립 시행

·주제어실(MCR : Main Control Room)

· 비상대책실(EOF : Emergency Operation Facility)
· 비상운영지원실(OSC : Operation Support Center)
· 비상기술지원실(TSC : Technical Support Center)
· 안전정보표시장치(SPDS :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

7. 방사선 측정분석장비 확보

o 방사선비상시 효율적인 방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재기관별로 필요한 방사선 측정분석장비 최대한 확보
o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방사선비상시 관련기관의 방재업무 수행에 필요한 측정분석장비 지원

8. 개인방호장비 확보

o 방재기관별로 방재요원 개인방호장비(개인선량계, 방호복 등)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확보

9. 시설·장비구입 자금지원

o 도(시·군)의 방재시설, 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원

10. 긴급시 방사선 의료체제의 구축

o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의료기관, 의료요원 등을 사전에 지정하여 방사선 사고시 신속히 치료
- 원자력발전 사업자
· 원전소재지별로 인근병원과 사전협약을 체결 운영(2개이상)
· 전문적인 방사선영향평가 및 치료기술개발 등을 전문기관(방사선보건연구센터)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 : 공공병원 및 각급 보건지소의료진의 방사선피폭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능력 확보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
- 과학기술부
  ·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방사선피폭환자 진료·치료와 방사선 영향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자력병원에 "방사선비상진료센터" 설치·운영
  · 방사선 비상진료를 위한 "표준진료지침서" 개발·보급

11. 의료약품 및 구호물자 사전 비축

○ 도(시·군)는 방사성 옥소에 의한 갑상선 피폭을 예방하기 위한 옥소에 의한 갑상선 피폭을 예방하기 위한 옥소제를 비축하고 필요시 배포

○ 지역주민 구호식량, 생활용품, 의료 및 침구류 등을 사전 확보, 유사시 활용토록 함.

12. 주민홍보·계도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방사선 비상시 주민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계도 실시

13. 방재기관별 방사능 재난대책 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
  · 주민보호 및 환경보존

○ 원자력발전사업자
  · 사고의 확대방지, 수습 및 종사자 보호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방사능 방호 기술지원

○ 한국원자력연구소
  · 사고의 확대방지, 수습 및 종사자 보호

○ 과학기술부
  · 방재대책 총괄조정

Ⅲ. 국가방사능감시 및 평가계획 수립

- ㅇ 과학기술부장관은 국내·외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능 사고 조기 탐지 및 방사능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국가방사능감시 및 평가 계획 수립
- ㅇ 방사능감시계획은 방사능재난대책 부분계획으로 별도 운용 (부록 참조)
- ㅇ 방사능감시계획에 국방부 방사능감시망 연계 활용 방안 반영
- ㅇ 원전비상이외의 방사선 사고 사태등에 적용
- ㅇ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중앙 및 지방 방사능 측정소를 설치하고 전국토 및 원자력 시설주변의 방사능 감시
- ㅇ 사업자는 방사선 비상시 발전소 주변 방사능 감시·평가를 위한 대책 수립
- ㅇ 도(시·군)는 방사선 비상시 환경방사능 감시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Ⅳ. 비상단계별 조치 철저

1. 비상의 종류

가. 백색비상(Alert)

- ㅇ 실제 또는 가능성이 있는 발전소 안전성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되었거나 진행중인 사건·사고 또는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발전소 건물내 국한된 경우로서 원자력발전소내 비상대응 개시 및 소외 방재대책기관의 경계가 요구되는 비상사태

나. 청색비상(Site Area Emergency)

○ 발전소의 주요 안전기능의 손상이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진행중인 사고로서 발전소내 비상대응의 강화 및 소외 방재대책기관의 비상대응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비상사태

다. 적색비상(General Emergency)

○ 격납용기 건전성 상실에 대한 가능성 및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방사성 물질의 대량누출이 예상되는 사고로서 발전소외 비상대응활동의 개시 또는 발전소 부지 주변의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사태

2. 비상종류별 조치사항

가. 백색비상시

1) 보고 및 통보

○ 사업자는 비상발령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

○ 과학기술부장관과 사업자는 비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언론에 자료를 제공

2) 방재기관별 대응조치

방 재 기 관	대 응 조 치
지방자치단체	· 비상대책반 설치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소)	· 비상기술지원실 설치 · 사고확대방지, 원인조사, 피해복구 및 제염활동 · 발전소내부 환경방사능 감시
한국전력공사	· 비상대책상황실 설치 · 비상상황 파악 및 관계기관 보고 · 사고확대방지, 원인조사 및 발전소 지휘·감독
원자력안전기술원	· 방사능 방호기술지원본부 일부 설치 · 전문가단 현장파견 준비
과학기술부	· 비상대책반 설치 · 비상상황 파악 및 관계기관 보고(통보)

3) 백색비상시 방사능 방재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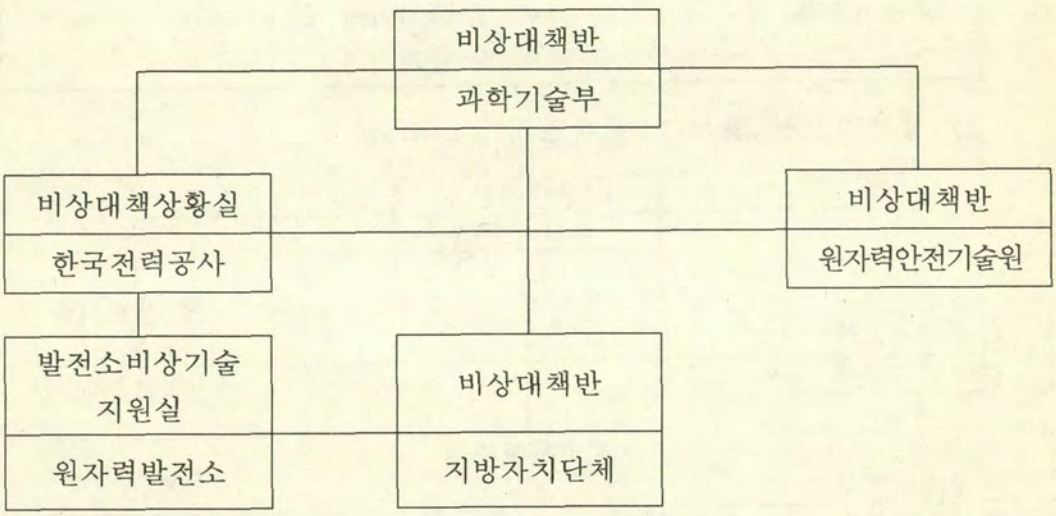

나. 청색비상시

1) 보고 및 통보

ㅇ백색비상시 조치와 동일

2) 방재기관별 대응조치

방 재 기 관	대 응 조 치
지방자치단체	· 지역사고대책본부 설치 · 중앙사고대책본부 및 관계기관 보고 · 환경방사능 감시 지원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소)	· 발전소 비상대책본부 설치 · 비상계획구역내 환경방사능 감시 강화 · 사고확대방지, 원인조사, 피해복구 및 제염활동
한국전력공사	· 한전비상대책본부 설치 · 사고상황 파악 및 관계기관 보고 · 국내·외 관계전문가 동원 · 사고확대방지, 원인조사 및 발전소 지휘·감독
원자력안전기술원	· 방사능방호 기술지원본부 설치 · 기술지원단 현장파견 및 사고조사, 기술지원 · 발전소외부 환경방사능 감시·평가
과학기술부	· 비상대책본부 설치 · 사고상황 파악 및 관계기관 보고·통보 · 비상상황 파악 및 관계기관 보고·통보

3) 청색비상시 방사능 방재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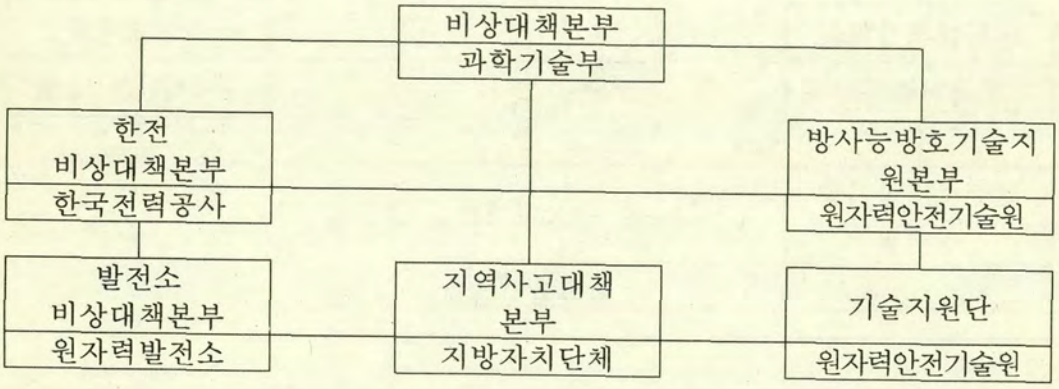

다.적색비상시

1) 보고 및 통보

ㅇ백색비상 및 청색비상시와 동일

2) 방재기관별 대응조치

방 재 기 관	대 응 조 치
지방자치단체	· 지역사고대책본부 설치 · 재난발생상황 및 대응조치결과 중앙사고대책 본부 및 관계기관에 보고 · 주민보호활동 전개(대피, 음식물제한, 비상 식수공급, 환경보호, 복구 등)
원자력발전소	· 발전소 비상대책본부 설치 · 비상계획구역내 환경방사능 감시 강화 · 사고확대방지, 원인조사, 피해복구 및 제염활동 · 지역사고대책본부에 주민보호조치 권고
한국전력공사	· 한전비상대책본부 설치 · 사고상황 파악 및 관계기관 보고 · 국내·외 관계전문가 동원 · 사고확대방지, 원인조사 및 발전소 지휘·감독
원자력안전기술원	· 방사능방호 기술지원본부 설치 · 기술지원단 현장파견 및 사고조사, 기술지원 · 발전소외부 환경방사능 감시·평가
과학기술부	· 중앙사고대책본부 설치 · 방사능 재난대책 총괄 조정 · 홍보활동 강화

〈주민대피 조치기준〉

예상피폭선량: mSV(rem)		조치기준
전신외부피폭	갑상선 피폭	
10-50 (1-5)	100-500 (10-0)	유아, 아동 및 임산부는 옥내에 대피하며 창문 등을 닫아 기밀성 유지
50-100 (5-10)	500-1000 (50-100)	유아, 아동 및 임산부는 콘크리트 건물내로 대피하고, 성인은 옥내에 대피하며 창문등을 닫아 기밀성 유지
100이상 (10이상)	100이상 (100이상)	모든 주민은 지시에 따란 콘크리트 건물내로 대피

※ 방재활동 보장, 주민보호, 치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 통제

3) 적색비상시 방사능 방재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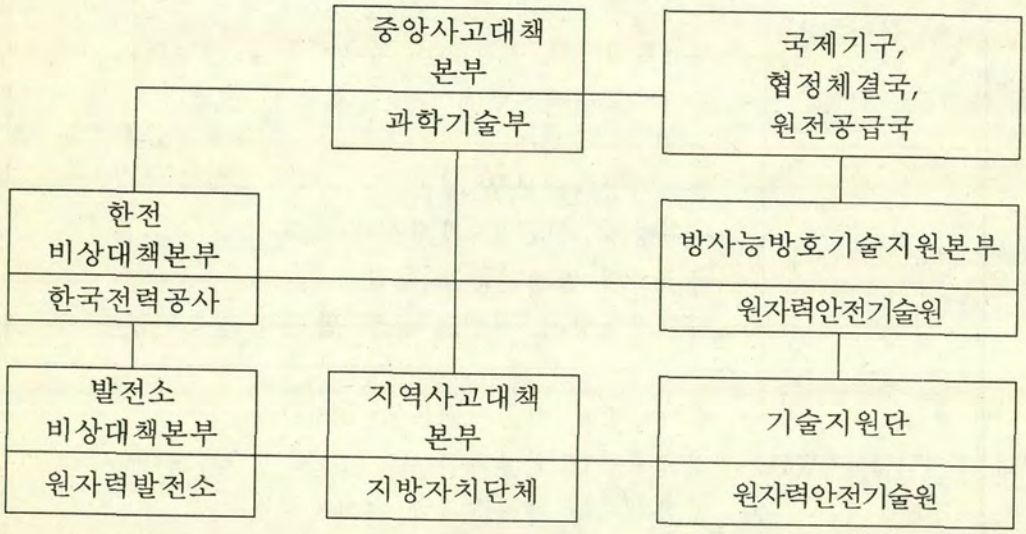

4) 피해복구

ㅇ 도(시·군) 및 사업자는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시설 및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복구계획을 수립 수행

Ⅴ. 교육·훈련 지속실시

1. 방사능 방재교육

o 방사능 방재업무 담당자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한국전력공사 원자력연수원에 방사능 방재교육과정 운영

o 도(시·군)는 방사능 방재업무 담당자를 위한 자체교육계획 수립 시행

2. 방사능 방재훈련

o 발전소의 자체훈련은 전체훈련과 부분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

- 부분훈련은 특정훈련종목을 선정, 발전소별로 매분기 자체 실시
- 전체훈련은 주민 보호조치가 가능한 사고상황을 가정하여 발전소별로 년 1회 실시하며,과학기술부는 평가 및 시정요구

o 지방자치단체의 훈련은 자체계획에 의거 발전소 자체훈련과 병행 실시하거나 「민방위의 날」 훈련에 실시

- 2001년도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은 울진 원전을 대상으로 실시
- 합동훈련은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소가 공동 주관으로 실시

2001事業 및 投資計劃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획		2001 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방재요원교육		10회	80	2	16
지방방사능 측정요원교육	정기실시	5회	18	1	3
	순회실시	135회	27	30	5
방재훈련	자체훈련	142회	70	31	80
	합동훈련	8회	200	1	20
방재시설	안전변수장치	4종	300	1	300
	화상회의 시설	5식	50	2	40
방재장비	측정평가분석장비		2,795	26종949대	3,370
	옥소제	1,200천정	120	230	23
방재기술개발	방재시스템구성등		3,000		452

有關機關 協助·支援事項

기 관 명	협조 · 지원사항
1. 기획예산처	○사고수습에 필요한 특별예산 지원
2. 행정자치부	○주민보호조치에 관한 행정조치 총괄 ○지방자치단체의 지휘·통제 ○지방행정기관의 방사능재해대책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지원
3. 국 방 부	○주민보호 및 제염을 위한 인력 및 장비지원 - 방사능환경오염발생시 자체 수행된 방사능 측정·분석결과 지원 협조 ○기술지원단 긴급파견 및 공중환경감시를 위한 헬기지원
4. 농 림 부	○농수산물·가축등에 대한 방호조치
5. 산업자원부	○원전사업자의 사고수습 및 시설복구에 대한 긴급물자 조달 지원
6. 건설교통부	○오염제거를 위한 중장비 지원 ○긴급물자 및 인력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
7. 보건복지부	○의료 및 구호지원, 방사능방호약품지원
8. 정보통신부	○국내·외 긴급 통신수단 지원
9. 국정홍보처 (국무총리실)	○각종 메스컴을 통한 국민홍보 및 재해발생 내용 발표
10. 기 상	○각종 기상정보 지원

<별표 1>

주민대피요령

ㅇ 방사선은 오감으로 감지가 불능하므로 자신의 판단하에 행동금지

ㅇ 라디오, TV, 민방위조직 등을 통한 정부지시를 전적으로 신뢰

ㅇ 외출금지 및 집안이나 콘크리트 건물내 안전한 장소로 대피

ㅇ 대피시 전기 및 가스를 끄고 수도꼭지를 잠금

ㅇ 담요, 의복, 구급약품 및 유아용품 등을 지참

ㅇ 유아, 아동, 임산부 및 노약자 우선 대피

ㅇ 음식물, 애완동물 지참 및 동반금지

ㅇ 가축사료는 밀폐된 장소에 수용 및 저장

ㅇ 출입문을 잠그고 흰수건이나 천 등을 출입문에 걸어 두어 대피완료를 표시

ㅇ 자녀가 학교에 있을 경우 학교에서 집단으로 대피하므로 학교에 일부러 찾아갈 필요없음

ㅇ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여도 오염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지역외 접근금지

ㅇ 환경감시 등 조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부 및 방재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

<별표 2>

방사능 낙진 강하시 행동요령

- ㅇ 가급적 가옥이나 건물내에서 생활
- ㅇ 외출시는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
- ㅇ 우물이나 장독 등은 뚜껑을 덮어 둠
- ㅇ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하거나 오염검사후 사용
- ㅇ 음식물은 실내로 옮겨 놓고, 옥외에서는 음식물 섭취 금지
- ㅇ 대용으로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후 허용된 음식물외 섭취금지
- ㅇ 가축은 축사로 이동하고,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음
- ㅇ 야채, 과일 등 채소류는 잘 씻어서 먹음
- ㅇ 집이나 사무실의 창문 등을 닫아 외부공기의 유입 최소화
- ㅇ 어린이들이 모래판 등에서 놀지 않도록 함.

<별표 3>

음식물 섭취제한 조치

○ 섭취제한 기준

대 상	I^{131} 방사능 농도
음 료 수	3,000 pCi/L 이상
채 소	200pCi/g 이상
우 유	6,000pCi/L 이상

○ 오염된 식품 및 음료수 폐기

· 허용치 이상으로 오염된 식수원 봉쇄 조치

○ 오염정도가 낮거나 반감기가 짧은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 감쇄 또는 처리후 사용

○ 오염된 음식물의 판매 가공처리 방지

○ 농·축산물 및 가축 사료

· 반감기가 짧은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 오염된 식품, 가축사료는 일시 저장후 사용

· 반감기가 긴 핵종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경우 영구 폐기

· 목초지가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경우 가축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고 오염되지 않은 사료 공급

<별표 4>

오염구역 설정 및 제염요령

〈 오염구역 설정통제 〉

- ㅇ 설정지역에 통제요원 파견 및 경고판 설치
- ㅇ 울타리 등 구조물을 이용한 경계 설정 및 홍보
- ㅇ 통제요원은 방사선 측정기, 개인방사선량계 지참
- ㅇ 교대계획을 수립하고 무선장비 확보

〈 방사능 제염 〉

- ㅇ 도로·건물·차량·장비는 물 또는 제염세제로 세척
- ㅇ 잔디, 토양표면은 긁어내어 폐기장소에 폐기 조치
- ㅇ 제염요원은 개인방호장비를 착용하거나 지참
- ㅇ 필요시 전문가를 동원하여 잔존 방사능 고착화
- ㅇ 모든 제염작업에 대한 기록관리·유지
  - · 방사능준위, 발생량, 종류 및 폐기장소 등

〈 옥소제 복용요령 〉

- ㅇ 대기중의 방사성 옥소(I-131)증가로 인하여 갑상선에 대한 방사선 피폭우려가 있을시, 피폭직전 및 직후(6시간이내)에 복용
- ㅇ 처음 24시간내에 KI 130mg 또는 KIO_3 170mg 복용
- ㅇ 24시간이후에는 KI 65mg 또는 KIO_3 85mg 복용
  - · 1세 미만의 유아는 매 24시간마다 KI 65mg, KIO_3 85mg 복용

[부 록]

국가 방사능감시 및 평가계획

ㅇ 본 계획은 민방위기본계획에 의거 수립된 국가방사능감시 및 평가계획으로 국내에서 방사능 비상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인접국가 등 외국에서 우리 영토에 방사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범국가적인 방사능 감시 및 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임.

ㅇ 동 계획의 목적은 방사능 비상시 요구되는 국가차원의 방사능 감시 및 평가체제의 확립과 평시에는 전국토에 대한 자연방사능의 준위를 측정하여 비상시를 대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음.

目 標

ㅇ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기능의 강화를 통한 방사능 오염의 조기 탐지능력의 확립

ㅇ 비상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사능감시 및 평가지원체제의 확립

方 針

ㅇ 국내·외 원자력 시설에서의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부터 방사능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방사능 사고에 대비, 종합적인 방사능감시 및 평가계획을 수립·추진

- 평상시 자연방사능 준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전국토 환경방사능의 분포 및 변동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비상시를 대비한 기초자료 확보
-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기능의 강화를 통해 방사능 측정자료의 신속한 제공 및 체계적인 방사능방호기술 지원체제 확립
- 유사시 화생방방호계획 및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감시체제와 연계하여 범국가적 방사능 감시체제의 확립
- 전문 인력·장비의 년차적 보강 및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환경방사능 감시역량을 제고
- 피해지역이 광범위하여 재해구역 선포등이 필요한 중대한 사고 발생시 방사능 방재대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

推進計劃

1. 방사능방호 기술지원본부의 구성

- 방사능 오염사태 발생시 사고현장의 방사능감시 및 평가와 전국 환경방사능의 측정·분석·영향평가 등 방사능방호에 관한 기술지원을 통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내에 방사능방호 기술지원본부(이하 "기술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
- 기술지원본부는 KINS원장이 운영하며, 세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KINS원장이 정함
- 기술지원본부는 전국 방사능측정소 운영관리와 방사능 측정자료의 종합분석 및 평가기능을 수행

2. 전국 환경방사능감시망의 구축

가. 중앙 및 지방측정소의 설치·운영

- ㅇ 평상시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를 위하여 방사능측정소를 설치·운영
- ㅇ 방사능측정소는 중앙측정소, 지방측정소 및 간이측정소로 구분하여 중앙측정소는 KINS내에, 그리고 지방측정소는 전국 각 지역에 적절히 설치하여 KINS원장의 감독하에 운영
- ㅇ KINS원장은 평상시에는 전문인력 및 측정장비 보강 등을 통해 자체분석 및 평가능력을 제고하고 감시망의 확충 및 전산화 등을 통하여 국토전역에 대한 감시체제 구축·운영
- ㅇ 과학기술부장관은 비상시 방사능측정소를 비상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기상청 산하의 기상대를 이용한 사료채집과 원전사업자, 군방사능 낙진 시료채집소 등을 활용한 종합적인 방사능 감시체제를 구축

나. 전국토 자동환경방사선 감시망 구축

- ㅇ 평상시 전국토 공간 감마선량률을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 ㅇ 자동감시망은 지방방사능측정소, 원전주변 KINS가 설치한 감시측정소(MP) 및 각원전 사업자가 설치한 MP 1개소로 구성되며 KINS원장의 관리하에 운영되며 인터넷에 실시간 단위로 방사선량률을 나타냄

다.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감시망과의 연계

- ㅇ 원자력사업자는 평시 및 방사능의 환경오염 사태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감시망을 활용, 환경방사능 감시업무를 수행하며, 방사능의 측정 및 분석 결과를 KINS원장에게 제공
- ㅇ 원자력사업자의 평시 환경방사능 감시업무는 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의거 수행

라. 군 방사능감시망과의 연계

○ 군 방사능감시망의 주관부대는 방사능 환경오염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자체 감시망에 의해 수행된 방사능 측정·분석결과를 KINS에 제공

3. 긴급시 방사능 감시 및 평가체제의 확립

○ 비상시의 긴급 방사능감시 및 평가를 위하여 범국가적인 방사능감시체제를 확립

○ 방사능감시체제는 KINS의 "기술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화생방방호대책에 의한 화생방분대와 군인력과의 합동 운영체계를 강구

○ KINS원장은 방사능 비상시를 대비 긴급 환경방사능 감시 및 측정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긴급시에는 군의 방사능 낙진 시료채집 및 분석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방사능 측정 및 분석을 수행

○ 긴급시 환경방사능 감시 및 측정소 운영계획에는 비상시의 환경방사능 감시조직, 측정지역, 측정대상 시료 및 방법, 보고체계, 기타 지방측정소에 대한 인력 및 장비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KINS원장은 긴급측정 및 분석기술을 개발하여 비상시 대처능력을 제고하며 인근국가간 비상시 지원·협조체제를 구축

4. 비상대응절차의 확립

가. 비상통지 및 방사능 감시활동 전개

- ㅇ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소집운영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방사능 오염사태를 판단하여 요구
- ㅇ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KINS원장에게 직접 방사능 비상통지 및 기술지원을 요청

나. 방사능 환경오염 사태의 조사 및 기술지원

- ㅇ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KINS원장은 관계부처의 요청에 의거 방사능방호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관계부처의 대책본부에 기술지원 요원을 파견하여 신속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수행
- ㅇ KINS원장은 오염사태의 신속한 상황파악과 오염조사를 위하여 오염지역에 방사능 탐측 및 기술지원 요원을 파견하여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 보호, 환경보전 등 현장 기술자문 업무 수행
- ㅇ 기상청장은 방사능의 환경오염 사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기상정보의 제공과 중앙측정소가 요구하는 환경시료의 수집·공급을 위한 지원·협조업무를 수행

다. 방사능 측정자료의 수집·분석 및 통보

- ㅇ KINS원장은 전국의 지방측정소 및 원전 현장, 군 방사능 감시망 등에서 제공한 방사능 측정자료를 종합 분석·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 ㅇ 과학기술부장관은 KINS원장이 통보해 온 측정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방사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국민보호 및 환경보전업무에 활용토록 함

라. 비상통신체제의 구축

- ㅇ 방사능 환경오염 사태발생시 신속한 정보교환이 가능 하도록 KINS는 전국의 지방측정소, 원자력발전소 현장 및 과학기술부간에 비상통신망을 구축
- ㅇ 각급 방재기관간의 비상통신망은 기존 상용전화를 최대한 활용

마. 기상이동 감시강화

- ㅇ 기상청장은 방사능의 환경오염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국 기상조직을 활용하열 방사능방호 기술지원본부가 지정하는 기류의 동향분석을 강화, 예상오염지역 판단을 위한 제반기상정보를 제공
- ㅇ 필요시 전국 방사능오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상대에서 방사능방호 기술지원본부가 지정하는 강수물 등의 환경시료를 수집, KINS원장의 환경방사능 측정 업무를 지원·협조

〔**별표 1**〕 방사능 감시 및 평가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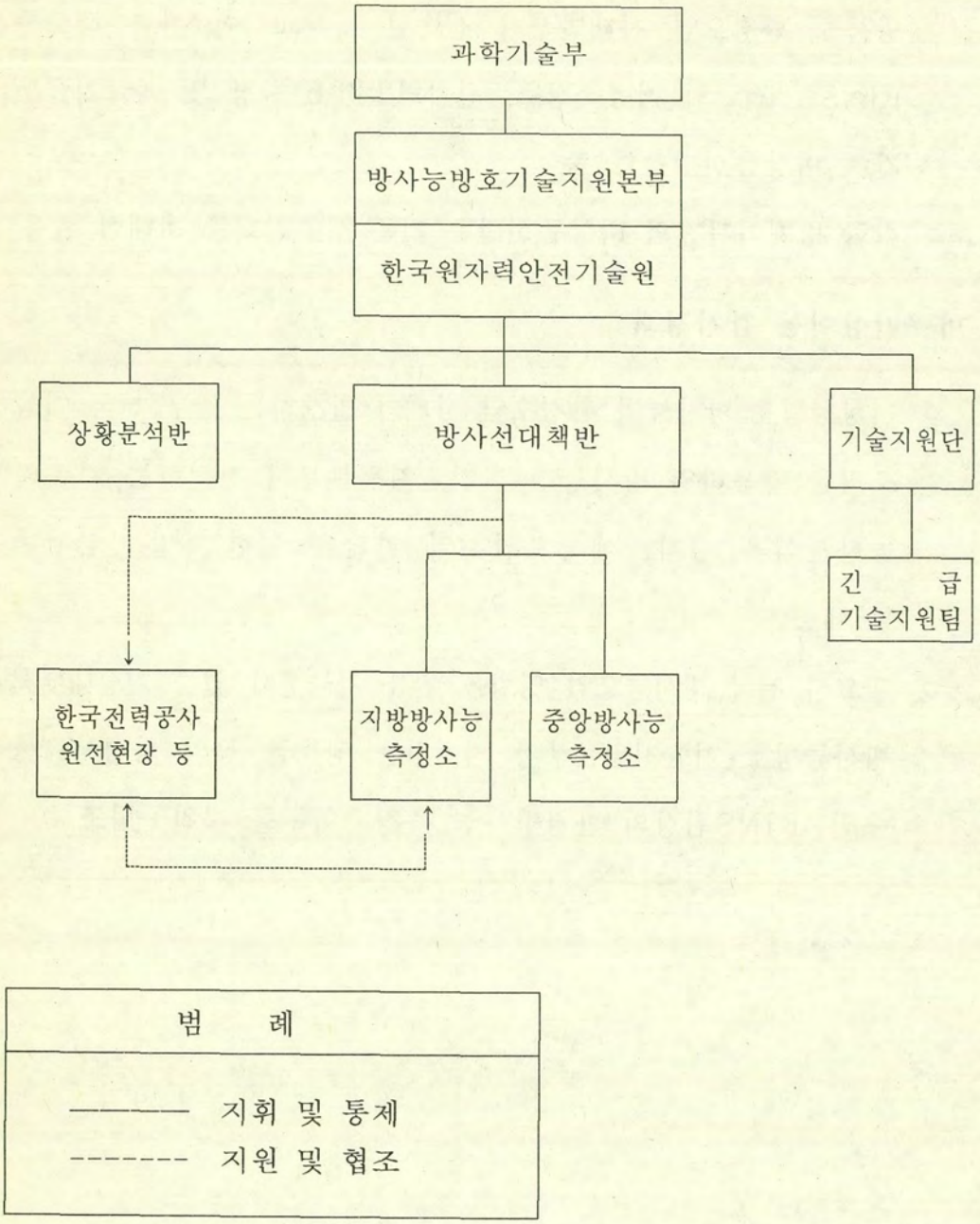

〔별표 2〕 전국 10개 지방측정소 및 간이측정소 설치현황

측 정 소	기 관	관할지역	인 원
서 울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서울, 경기	2명
춘 천	강원대학교 물리학과	강원(영서)	2명
대 전	충남대학교 물리학과	대전, 충남북	2명
군 산	군산대학교 물리학과	전북	2명
광 주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광주, 전남	2명
대 구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대구, 경북 남구	2명
부 산	부경대학교 전기공학과	부산, 경남	2명
제 주	제주대학교 농화학과	제주	2명
강 릉	강릉대학교 물리학과	강원(영동)	2명
안 동	안동대학교 물리학과	경북 북부	2명
울릉도 간이측정소	울릉기상대	동해	-
백령도 간이측정소	백령면사무소	서해	-

12. 산 림 재 해 대 책

[농 림 수 산 국]

○ 산불예방 · 진화대책

○ 산사태 예방 · 복구대책

目 標

- ○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불발생 최소화
- ○ 초동진화태세 확립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로 피해 최소화
- ○ 산불 초동진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선진국형 산불진화장비 조기확보
- ○ 산사태등 산림재해 사전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발생시는 신속한 조치로 피해 최소화 및 항구복구 실시

方 針

- ○ 산불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 강구
- ○ 전문진화대조직 운영으로 진화의 효율성 제고
- ○ 조직 및 인적기반 확충
- ○ 선진국형 시스템을 활용한 산불방지 Network 구축
- ○ 초동진화를 위한 헬기등 공중진화장비의 조기확충
- ○ 방화선·방화수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 산사태위험지를 일제조사후 확대 지정하여 특별관리
- ○ 산사태발생 예보제(주의보·경보) 철저 이행
- ○ 산사태등 피해발생시는 신속한 조치로 피해 최소화 및 항구복구 실시

推進 槪要

Ⅰ. 산불발생현황

1. 최근 5년간 산불현황

(면적 : ha)

구 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10월		비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충 남	43	78.5	46	92.9	36	48	20	26.4	79	269.4	
전 국	527	5,368	524	2,330	265	1,014	315	473	658	25,527	

○ 주요원인

- 충남 : 입산자 실화 38%, 논·밭두렁소각 46%, 기타 16%
- 전국 : 〃 41% 〃 26%, 〃 33%

2. 인명사고 : 2000년 사망 5명, '99년 사망 1명

3. 우리도 산불의 특성

○ 산림이 울창해지면서 산불의 대형화 추세 ⇒ 피해면적 증가

○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산불의 초동진화애로 ⇒ 헬기진화 증가

○ 입산자의 부주의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빈도 증가

Ⅱ. 산림현황

1. 총 임야면적 : 444,443ha

○ 소유별

- 국유림 23,442ha(5.3%), 공유림 21,563ha(4.8%), 사유림 399,438(89.9%)

○ 임상별

- 침엽수 221,045(49.7%), 활엽수 103,159(23.2%), 혼효림 99,796(22.5%), 기타(죽림, 무립목지) 20,443(4.6%)

2. 임목축적 : 21,837,826㎥(ha당49.14㎥)

〈산불발생으로 인한 피해영향〉

○ 임목피해로 국가적 재산소실 및 인명사고 발생
○ 생태계와 환경파괴로 자연식물의 천이(遷移)변화
○ 산림황폐화 및 수원함양기능 저하로 산사태, 홍수, 가뭄 등 재해발생
○ 야생동식물의 서식감소로 생태적 변화
○ 쾌적한 『숲』 소실로 건전한 보건휴양공감 감소

推進 計劃

Ⅰ. 산불예방·진화대책

1. 산불예방대책

가.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 기　　간 ┌ 봄　철 : 2. 1 ~ 5. 15(2개월 15일)
　　　　└ 가을철 : 10. 20 ~ 12. 20(2개월)
- 지역 및 기상여건에 따라 신축운영

○ 설치기관 : 도, 시·군, 읍·면·동 216개 기관

○ 근무시간 : 봄철 09:00~21:00, 가을철 09:00~20:00
- 근무시간 이후 당직실에서 상황 유지
- 야간 진화작업의 경우에는 진화완료시까지 근무

나. 산불요인 사전제거 대책 추진

○ 입산통제의 강화
- 입산통제지역 392개소 210천ha, 등산로 160개노선 422㎞
※ 위험단계별 통제 확립
- 취약지별 감시활동 철저
·산불감시원 확보(유급감시원 및 공공근로사업자)
·산림공익근무요원 등

○ 화기물 소지입산 금지 등 강화된 산불예방조치 조기정착
- 산불관련 벌칙 등 산림법 개정내용 정착화
※ 산림법시행령 제112조의2제1항 과태료 규정 준수

- 산불위험시기에 각종 홍보물, 안내판 등 집중설치 배포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금지 대상지역 공고 확대

○ 산불예방을 위한 특별계도 단속 지속 전개
- 화기물소지 입산금지 위반,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안에서 취사행위

○ 산채 및 약초채취자 집중관리

○ 정신질환자 방화 및 어린이 불장난 감시 철저

○ 무속행위자 계도단속 강화

○ 군작전 및 훈련에 따른 산불방지 특별대책 강구

○ 산림내 사업(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예방대책 추진

다.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허가제 이행

○ 기　　간 : 2000. 12월 ~ 2001. 2월말

○ 소각대상 : 취약지 논·밭두렁 5,500㎞, 2,700ha

○ 방　　법 : 산불관리 통합규정에 의한 마을별 공동소각
(읍·면별 취합 → 시장·군수 허가후)

라. 산불위험 예보제 실시

○ 기상상태별 산불예방 행동지침 적극 실천
- 산불주의·경계경보, 산불위험경보(산림청 홈페이지)

○ 산불발생 위험상태를 지수 및 예보도로 작성, TV 및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방영 및 보도

○ 위험지수에 따른 지역별 산불위험예보 발령

○ 산불 위험상황을 마을앰프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계도

마. 산불예방 분담활동 강화

○ 도 분 담 : 418명, 195개 읍면동
- 통제관 18명, 통제반장 53명, 반원 347명

○ 시군 분담 : 3,664명, 3,358개 마을
- 통제관 201명, 통제반장 594명, 반원 2,869명

바. 산불예방 분담활동 강화

○ 대중 홍보매체 적극 활용
- 산림의 공익기능 및 산림재해 방지의 중요성 등을 홍보
  ·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언론사와 협조 유지
- 주말, 공휴일 집중홍보
- 특집보도 등에 기관장 직접 출연

○ 산불방지 캠페인을 통한 홍보
- 주말, 공휴일 전국 주요 등산로에서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 가두방송, 마을앰프, 헬기에 의한 공중계도 집중전개
- 산불주의·경계경보, 산불위험경보

사.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 인명사고의 주요원인
- 가해자 사망사고 : 노령자로 연기 질식사
- 진화 참여자의 안전 미숙으로 추락 및 질식사

○ 행동요령
- 산불발생시 우선 신고로 사망사고 방지
- 노약자는 진화작업 참여를 금지함
- 진화작업시 방화복, 방연마스크 등 개인장구 휴대
- 야간진화시 진화조 편성 개인행동 금지 : 통신망 확립
- 불머리(火頭) 접급금지, 불길이 약한 측면부터 진화

2. 진화대책

가. 조기발견 및 조기신고체제 강화

○ 지상감시 및 신고체제
- 감시탑, 감시초소에 감시원을 배치 산불조기발견 감시기능 이행
- 마을단위신고망 재정비 : 리·통장 마을영농회장, 임업후계자 중심으로 신고체제 확충

·독립가옥, 통·반장집, 마을회관을 산불신고소로 활용

○ 공중감시 및 신고체제
- 취약시기 산림청헬기 기동배치로 공중계도 및 감시강화
- 민·경·군 항공기의 산불신고 협조의뢰 및 신고자 포상
- 관할구역 관제탑 및 항공기 통제소간 상호신고 연락망 비치

나. 진화조직보강 및 진화능력 배양

○ 진화동원 및 지휘체계 확립
- 동원근거 : 산림법 제102조, 소방법 제77조, 민방위기본법 제22조
- 산불진화지휘본부 설치 : 상황실과 연락체계 유지

○ 진화대 조직의 재정비 정예화
- 진화대 조직을 재정비 유사시 동원가능 인원으로 편성관리
- 산불진화훈련 등에 진화대 조직을 참가시켜 진화능력 배양
  - 지상진화대 : 산림공무원과 산림공익근무요원
  - 보조진화대 : 시·군 공무원, 기능영림단, 공익근무요원, 산불감시원, 읍·면 의용소방대

○ 산불진화 안전대책
- 진화대원 투입시 안전교육 실시(평시 : 민방위교육, 예비군교육, 반상회 등)
- 각종 산림사업 인부에 대한 산불안전교육 의무화
- 진화능력이 없는 노약자 진화작업 투입금지

다. 산불상황에 따른 진화활동 강화

○ 1 단계 — 초동진화
- 인력진화 : 등짐펌프, 칼퀴, 낫, 동력톱 등 이용

○ 2 단계 — 대형산불로 진화가 어려울 때
- 공중진화 : 산림청 및 충남소방, 군·경찰항공대 헬기동원
- 전직원 비상소집 및 민방위대 동원령 발령

라. 뒷불감시 및 가해자 조치

○ 뒷불감시조 운영 : 관할 읍·면·동장 책임하에 실시
○ 가해자 검거 및 처벌 :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홍보강화

3. 자원동원계획

○ 인력동원

- 진화대 : 426대 19,823명
  - 지상진화대 : 18대 601명
  - 보조진화대 : 408대 19,222명

○ 장비동원

- 헬기 : 35대(산림청 34대, 충남소방 1대, 기타 군용)
- 장비 : 소방차 404대, 진화차 33대, 진화장비 37,709점

4. 재정·투자계획

○ 산불방지사업비 : 844,240천원

- 경상적 지원 : 13종 446,240천원
- 자본적 지원 : 3종 398,000천원
  (감시탑 19동, 진화차 7대, 무인감시카메라 1개소)

〈참고자료〉

[1] 산불 취약지 현황

[2] 산불진화 지휘체계

1 산불 취약지 현황

구분 / 시군별	산 이 름	읍 · 면 · 동
계	34개산	53개 읍 · 면 · 동
천 안 시	태조산, 광덕산, 흑성산, 매봉산, 성거산	신안동, 광덕 · 목천 · 성거 · 병천면
공 주 시	천마산, 봉화산, 계룡산, 태화산, 무성산 천태산	오곡 · 옥룡동, 반포 · 계룡 · 사곡 · 우성 · 정안 · 의당면
보 령 시	성주산(오서산)	동대동, 성주 · 청소면
아 산 시	설화산, 황산, 영인산(광덕산)	장촌 · 좌부 · 기산 · 초사동, 영인 · 음봉 · 송악면
서 산 시	부춘산, 팔봉산, 도비산(가야산)	부춘동, 팔봉 · 부석 · 해미면
논 산 시	대둔산, 노성산	벌곡 · 노성면
금 산 군	진악산, 서대산(대둔산)	금산읍, 남이 · 진산 · 추부 · 군북면
연 기 군	운주산	전동 · 전의면
부 여 군	부소산, 만수산	부여읍, 외산면
서 천 군	장태봉, 만수산	판교 · 문산 · 시초면
청 양 군	칠갑산(오서산)	대치 · 정산 · 장평 · 화성면
홍 성 군	용봉산, 오서산(덕숭산)	광천 · 장곡 · 갈산 · 홍북면
예 산 군	덕숭산, 가야산(용봉산)	덕산면
태 안 군	백화산	태안읍
당 진 군	아미산	면천 · 순성면

2 산불 진화 지휘체계취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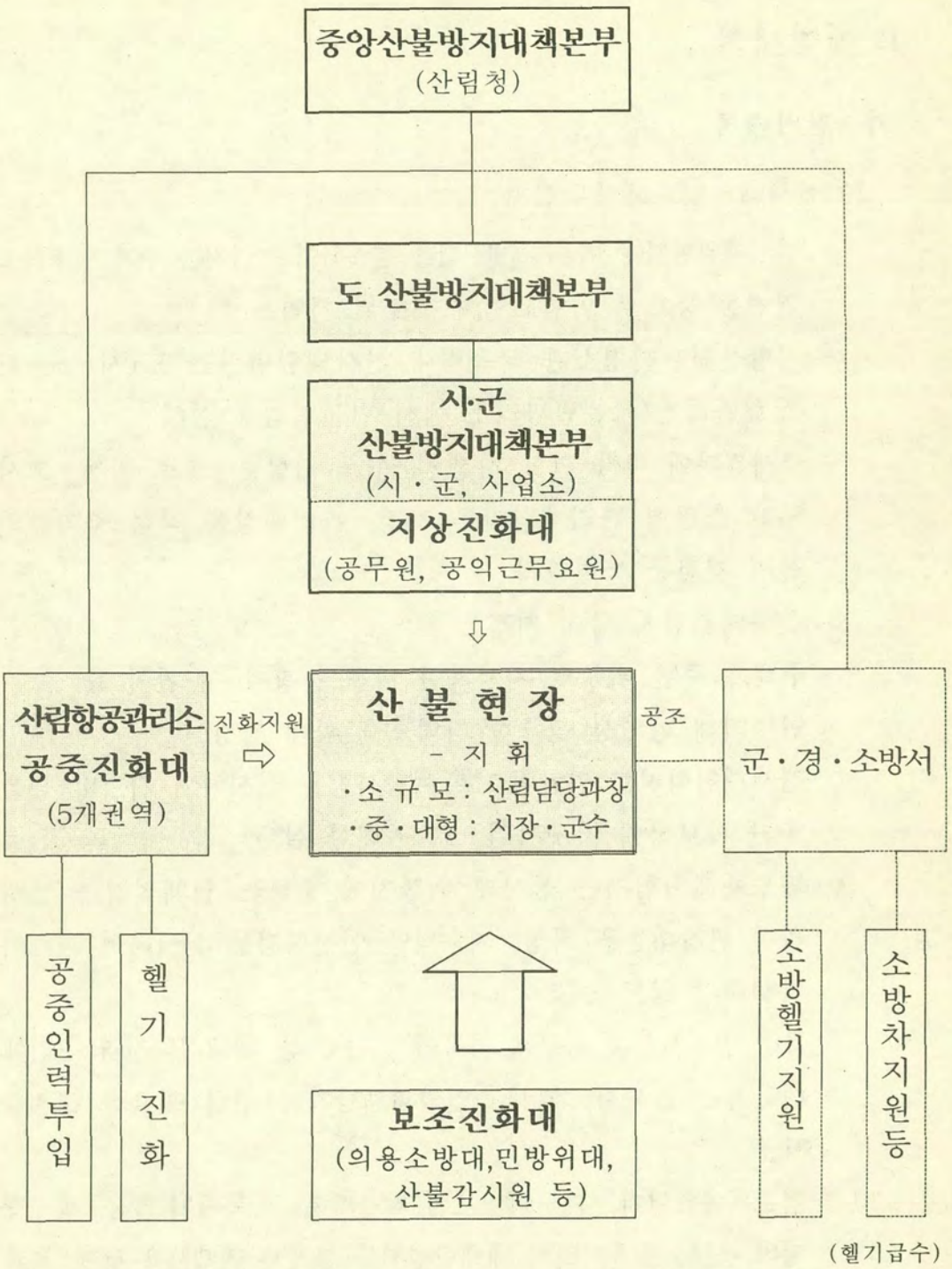

Ⅱ. 산사태 예방·복구대책

1. 예방대책

가. 단기대책

1) 산사태·임도재해위험지

○ 산사태위험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누락지는 추가 지정하고 건변동 등으로 위험요인이 해소된 지역은 해제

- 지방산림관리청소관 국유림내 산사태위험지는 도(시·군)와 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에서 합동점검을 실시
- 조사결과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가 위험등급별로 지정·고시하고 소관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 주기적인 안전 검검등 특별관리

○ 산사태위험지 확대 지정

- 주택가 주변 위주로 지정하던 것을 관광지·유원지 등 인명피해 방지상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 지정

○ 산사태위험지는 연차적으로 예방사방을 실시하되 지방비 등을 추가 확보하여 자체사업으로 최대한 실행

○ 임도재해위험지는 산사태 위험지에 준하는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특히 임도시설지 하부에 가옥이 있는곳 등 재해취약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유사시 대피등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임도재해위험지 사전 예방조치(비닐피복, 말목박기, 집·배수구 정비 등)를 소홀히하여 재해발생시는 관계자 귀책사유 규명 조치

· 공사현장사무실, 인부숙소 등 시설물은 산사태·계류수 범람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
· 절·성토면이 집중호우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비닐피복, 말목박기 등으로 예방조치
· 측구·배수관·박스교등이 메워져 있거나 유목(流木) 걸려 있는 곳은 정리·보수
· 공사 중 자연물길을 변경했거나 메운곳은 자연상태대로 정비

○ 산사태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은 우기이전에 비닐피복, 우회수로 등으로 보완 조치

○ 2000년 산사태피해지는 우기이전까지 복구 완료토록 하고 취약지역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보완조치 및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피해재발 방지 철저

○ 재해발생 대비 응급복구용 자재비축 및 동원장비 지정·관리

- 보관자재는 내구연한을 감안 그 상태를 점검하여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비축계획량을 확보·관리
- 지정장비의 동원 우선순위 : 자체보유장비→유관기관→군 부대→민간장비 활용

○ 대피장소지정 및 인근주민에 대한 대피요령·응급복구 조치 등에 관한 사전교육 실시

2) 산사태·임도재해위험지

○ 집중호우시 산사태·토사유출우려지는 장마기 이전인 6월중순까지 응급복구 완료하여 2차피해 방지

- 주택가뒷편 급경사지의 경우 집중호우시 산사태·무너짐 등 피해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하단부에 옹벽설치 또는 비닐덮기를 시행
- 임도의 경우 집중호우시 무너짐·갈라짐이 우려되는 성토부위에는 비닐덮기를 시행

- 피해면적에 대한 경제수 조림을 2001년부터 시행

○ 사방공법에 초류파종을 병행, 공사효과를 극대화

- 상류에는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석축·목책 등 시공
- 경사지에는 초류파종을 병행하여 토사·'재'유출차단 효과극대화

3) 산림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지

○ 골프장·스키장등 대규모 형질변경지의 절·성토사면이 집중호우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중간복구토록 조치

○ 공사 중 자연물길을 변경했거나 재해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토록 조치

○ 무리한 수직굴착으로 낙석·붕괴위험지구등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조치

○ 토석채취 허가취소지·채취 완료된 곳은 조속히 복구하도록 조치

4) 산림휴양시설

○ 집중호우시 휴양림시설의 피해가 없도록 우회수로 등을 설치하고, 휴양객에 대한 대피계획 등을 수립 시행

- 호우·태풍내습시는 휴양객 개별행동을 제한하고 지도를 받아 하산토록 조치
- 태풍등 바람이 강하게 불때에는 모든 시설물의 창문은 완전밀폐되도록 닫고 문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

○ 절·성토지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장마기이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휴양림내 명·암거는 최고의 홍수시 물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보수

5) 표고재배시설

- 표고재배장은 산사태·계류수 범람등으로 유실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지도
- 표고재배시설은 피해예방을 위하여 기 시달한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로 시설하도록 지도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시설 피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이프등 골조시설을 제외한 내부 시설은 개조하여 시설할 수 있음
- 이미 시설되어 있는 표고재배시설은 「표고재배시설표준모델」을 준용하여 보완토록 하되, 특히 지주간격은 60cm이내로 보완하도록 지도

6) 양묘장·조경수재배지

- 묘포지의 유실 또는 침수가 우려되는 개소는 사전에 배수로 등 정비
- 측구·제방·둑등 집중호우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비닐피복, 말목박기등으로 예방조치
- 임간 묘포장은 산사태, 계곡물범람등 위험이 없는 장소에 조성하고 무너질 우려가 있는 절개지등은 정비
- 온실·창고·막사등 부대시설물은 산사태, 계곡물범람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축대, 배수로등 정비

7) 벌 채 지

- 원목은 유실되지 않도록 계류를 피하여 집재하고 계류수 범람시 유실우려가 있는 원목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집재
- 저수지, 주요댐 상류의 각종 산림사업지에서 벌도목, 지조물 유실 방지를 위하여 입목·벌근을 이용 등고선 따라 집적하도록 지도

○ 벌채작업시 텐트·천막·이동막사 등 인부숙소 시설물 설치는 산사태·계류수범람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가급적 시설물 설치를 지양

나. 항구대책

○ 대면적 벌채에 의한 인공조림을 지양하고, 침엽수 위주 조림에서 활엽수 및 혼효림으로 유도

○ 산림형질변경지의 절개사면 안정각유지 및 녹화피복등 방재시설 철저

○ 산사태위험지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주(移住)등 특별대책 강구

2. 복구대책

가. 응급대책

○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곳과 피해확대우려지에 대한 응급복구 실시

- 비닐피복·산비탈바자얽기·흙마대쌓기·우회수로설치등
- 긴급한 장비는 산림조합계통조직 중장비를 동원 복구

○ 응급복구 물량에 따라 전문기술인력 기동배치

나. 항구대책

○ 피해지 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인명피해나 반복피해 우려지역 등은 특수공법을 적용한 개량복구계획에 반영

○ 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한 복구계획으로 견실한 복구사업 추진

○ 피해원인을 정밀분석, 피해 재발방지 대책도 병행 추진

○ 피해장소별로 담당공무원을 지명, 책임복구제를 실시하되 복구사업 경험자를 우선 배치

3. 단계별 행동요령

가. 시·군·국유림관리소, 도·지방산림관리청, 산림조합계통 조직 및 중앙 단위별로 비상연락망을 편성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 유지

나. 기상정보를 신속히 파악, 산사태발생 예보제를 철저히 이행

○ 발령권자 : 시장·군수

○ 행동요령

구 분	산사태주의보	산사태경보
행정기관(단체)에서 할일	○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에게 산사태주의보 전파 ○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 비상근무 체제 유지 ○ 기상정보 및 강우량 파악 ○ 위험지구 점검실시 및 주민대피 준비 ○ 응급복구 자재점검 및 기동력 확보	○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에게 산사태경보 전파 ○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 비상근무 체제 강화 ○ 기상정보 및 강우량 파악 ○ 위험지구 점검강화 및 주민대피 조치 ○ 피해발생대비 복구계획 점검
주민(임업인)이 할일	○ 산사태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산림부산물재배시설, 양묘 등 피해예방 조치 ○ 기상정보 및 강우상황등 청취(행정기관통보, TV·라디오 등)	○ 산사태위험지구 주민 대피 ○ 산림부산물재배시설,양묘장 등 피해예방조치 강화 ○ 기상정보 및 강우상황등 청취(행정기관통보,TV·라디오 등)

○ 예보의 종류

구 분	산사태주의보	산사태경보	비 고
연속강우량(mm)	100~200미만	200이상	
시 우 량(mm)	20~ 30〃	30〃	
일 강우량(mm)	80~150〃	150〃	

4. 피해발생시 조치요령

가. 인명구조 최우선 조치

○ 민방위대원·구조대원등을 동원, 인명을 구조하되 오지대로 육로후송이 어려울 때에는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조치

나. 피해상황을 당해 재해대책본부 등에 신속·정확하게 보고하고, 그 사항을 도 산림과에도 보고

○ 피해상황이 시·군 재해대책본부에 정확히 전산입력 되는지를 수시 확인하여 피해 지가 복구계획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다. 피해현지조사는 과장되거나 중복 보고가 되지 않도록 피해상황을 조사야장에 상세히 기록하여 재해대장작성 및 피해상황 전산입력시 기초자료로 활용

라. 피해지 전개소에 대한 근원경사진(3×5)을 촬영 재해대장에 부착하되,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계획 심의시 사진만으로 피해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사진등 현장감있게 촬영

마. 피해액 및 복구소요액은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정하는 당해연도 "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에 의함

바. 피해지 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인명피해나 반복피해 우려지역등은 특수공법을 적용한 개량복구계획에 반영 할수 있음

○ 이 경우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계획 심의시 참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설명자료를 작성 첨부

사. 사유시설(산림부산물재배시설등)도 피해보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관할 시장·군수의 "사유시설피해확인조서"를 첨부 복구지원 요구

아. 산림분야 피해중 "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에 없는 품목도 조사하여 복구비가 계상되도록 조치

- ㅇ 조경수, 양묘, 휴양시설, 산촌마을, 표고재배시설등
- ㅇ 재해구호 및 재해 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394호) 제2조 제1항제3호 라목 참조

자. 헬기에 의한 긴급인명구조

- ㅇ 산사태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시 헬기에 의한 인명구조, 부상자 수송 등이 필요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

구 분	긴 급 비 행 명 령 기 준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한 부상자등 인명구조	도지사 지원요구→산림청장 비행지시
조난자, 침수지역 등 인명구조	중앙재해대책본부지원요구→산림청장 비행지시

5. 산림재해대책 비상근무 실시

가. 산림청에서는 장마기가 도래하고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다음사항 처리

- ㅇ 기상상황에 따라 지시사항 시달
- ㅇ 기상상황(태풍동향·지역별 강우량·기상특보 등)파악 전파
- ㅇ 산림피해 상황 취합보고
- ㅇ 재해발생시 인명구조를 위한 헬기지원 및 응급복구 장비지원 등

나. 각 시·군 및 사업소는 기상상황에 따라 자체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피해최소화에 대처하고 상황전파에 차질없도록 조치

2001 주요사업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총 계 획		2001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243,293		35,395
예방사방	250ha	20,453	67ha	5,193
사 방 댐	690개소	117,514	90개소	15,020
야계사방	630km	80,505	55km	7,004
임도구조개량	13,464km	24,821	2,700km	8,178

유관기관 협조·지원사항

○ 해당없음

〈첨부자료〉

1. 2000년 주요재해 발생상황 및 분석

가. 사고 개요

1) 일시 : 7.14~7.15(1차), 7.22~7.24(2차)기간중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산사태 및 임도피해 등 발생(산사태로 인한 사망7명)

2) 피해지역 : 경기·전북·전남·경북·경남

나. 피해 상황

1) 물량 : 산사태 91ha, 임도 28km, 야계사방 4km, 표고자목 31천본 등

가) 복구비 : 8,172백만원(국고 4,355, 지방비 등 3,817)

2) 사고 원인

가) 1차 및 2차 피해기간중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남부지방 및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7명의 인명 피해와 8,172백만원의 재산피해 발생

2. 2000 주요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2000추진계획	2000상반기추진 실 적	진도 (%)	2000하반기 계 획
예방사방	120ha	115ha	96	5ha
사 방 댐	67개소	26개소	39	41개소
야계사방	51km	31km	61	20km
임도구조개량	2,650km	2,096km	79	554km

3. 재해발생 추이

o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현황

연 도 별	물량 (ha)	복 구 비(백만원)				인명피해 (사망)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2,081	120,258	70,047	47,060	3,151	130	
'96	257	9,699	6,621	3,061	17	2	
'97	33	2,114	1,042	832	240	6	
'98	1,281	71,537	39,083	30,317	2,137	92	
'99	419	28,736	18,946	9,218	572	23	
2000.8현재	91	8,172	4,355	3,632	185	7	

13. 해 양 오 염 대 책

[태안해양경찰서]

- ○ 해양오염 예방활동 대책
- ○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태세유지
- ○ 해양오염발생시 수습대책
- ○ 해양오염 방제교육·훈련계획

目 標

- ○ 해양오염 감시·단속활동 강화로 해양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
- ○ 대형오염사고 대비·대응태세를 유지
- ○ 해양오염 사고시 신속한 방제조치로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보전

方 針

- ○ 해양오염 관리체계 확립
- ○ 해양오염 예방대책
- ○ 방제 시설·장비 보강계획
- ○ 해양오염 발생시 수습대책
- ○ 해양오염 방지 교육·훈련계획

推進 計劃

Ⅰ. 해양오염 예방활동 대책

1. 해양오염방지 계몽·홍보활동 전개

- ○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활용, 해양오염방지 계몽·홍보(년6회)
- ○ 바다정화 활동 전개 및 해양오염사진 전시회 등으로 해양환경 보전의식 고취(년1회)

2.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및 단속활동 강화

가. 해양오염방지 설비의 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 출입검사

- 선박 : 년 360척, - 시설 : 년 60회

나. 불법 해양 배출행위 집중단속 실시(년2회)

3. 해양오염 감시·신고체제 확립

○ 해경서별 해양오염 감시신고망 운영(51개소)

○ 해상·육상·공중 등 입체적인 감시체제를 구축·운영

- 해상 : 취약해역 중심, 경비함정 해상순찰 활동 강화(수시)
- 육상 : 자체 및 민간해양오염감시원 활용, 오염 감시활용(수시)
- 공중 : 헬기활용, 주요항로 및 항만 주기적 항공 순찰

Ⅱ.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태세 유지

1. 해양오염사고 신속 대응태세 상시 유지

○ 상황실 24시간 운용, 해양오염 신고접수 및 적응태세 유지

○ 헬기 및 방제정·경비정등 상시 출동태세 확립

○ 보유 방제장비 관리·유지 철저, 상시 동원태세 유지

2. 대형 오염사고 대비, 단계별로 동원체제 구축·운용

○ 초동조치 단계

- 해양오염 신고접수 및 긴급 출동, 상황파악 및 보고·전파
- 유출구 봉쇄 및 적재유 이적등 응급조치

○ 초기 방제조치 단계

- 오염사고 규모 평가 및 방제 우선순위 결정
- 방제방법 선택 및 방제세력의 동원 규모 결정
- 사고발생 초기 해경서 중심의 방제세력을 동원, 방제조치

○ 방제조치 지원·확대단계

- 방제세력 추가 소요규모 판단
- 관계기관·유관업체의 방제세력 지원·확대

Ⅲ. 해양오염 발생시 수습대책

1. 방제대책본부 운영

○ 본부장 : 해양경찰청

○ 구 성 :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 파견 공무원

○ 기 능

- 대형 오염사고시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 방제작업계획 수립·집행 및 동원 방제세력의 지휘·통제

2.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운영

○ 위원장 : 해양수산부 차관(부위원장 : 해양경찰청장)

○ 구 성 : 중앙 행정기관 3급이상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 능

-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제도개선 및 지원사항 심의
-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긴급 방제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3. 지역 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운영

○ 위원장 : 태안 해양경찰서장

○ 개최시기

- 정기 : 년1회

- 필요시 : 대형오염사고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

○ 구 성 : 관계기관 공무원 및 유관 단체·업체 임직원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8개기관, 10개단체·업체 20인)

○ 기 능

-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조치 계획의 심의

- 방제조치에 필요한 인력·장비의 지원에 관한 업무조정

4.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단 운영

○ 구 성 : 한국해양연구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9개 기관·단체 28인의 전문가로 구성

○ 기 능 : 방제일반, 어업피해, 선체구조 및 구난, 해양오염물질, 해양환경 및 기상, 해양오염 관련 법률 및 보험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기술지원 및 자문

Ⅳ. 해양오염방제 교육·훈련 계획

1. 민·관합동 방제훈련 실시

○ 횟 수 : 년 1회

○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업체, 합동훈련 실시로 실제상황 대응 능력 향상

2. 태안해경 자체 방제훈련 실시

○ 횟 수 : 년 2회

○ 해경서별로 취약해역에서 실제상황 가상, 대응능력 향상

3. 방제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 국내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시설 활용, 위탁교육 실시

- 위탁교육기관 : 한국해양연구소 및 해양수산연수원 등
- 교 육 내 용 : 유출확산예측 기술 및 방제방법등

○ 외국 및 국제기구 주관 방제전문 방제훈련과정 참가

2001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
계		4,438
방 제 정	1 척	3,900
유회수기	3 대	288
오일펜스	1 ㎞	250

유관기관 협조·지원사항

-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

기 관 명	협 조·지 원 사 항
국 방 부	○ 방제인력 및 장비지원
	○ 사고선박 선체조사 지원
환 경 부	○ 야생동물 구호, 야생동물에 대한 영향 및 피해조사
	○ 폐유 및 폐기물 처리 지원
해양수산부	○ 외국 방제지원 선박의 항만이용 편의제공
	○ 해양환경의 영향 및 피해조사
	○ 방제 지원선박 및 방제기자재 동원
	○ 사고선 안전조치 기술지원
	○ 어장·양식장 보호대책 수립·시행
행정자치부	○ 방제인력 동원
재정경제부	○ 외국의 방제지원 장비에 대한 신속 통관
법 무 부	○ 외국의 방제지원 인력의 신속 입·출국
건설교통부	○ 외국의 방제항공기 운항절차 간소화
노 동 부	○ 방제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지침 제공
보건복지부	○ 외국의 방제지원시 신속 검역
정보통신부	○ 방제현장의 유·무선 통신설비 지원
산 림 청	○ 항공기 지원
경 찰 청	○ 방제인력 지원
	○ 항공기 지원
지방자치단체	○ 해안 부착유 제거작업 주관
	○ 방제작업 지원선박 및 지역주민 동원
	○ 어장·양식장 보호 및 피해조사
	○ 방제기자재 확보
	○ 방제현장 의료지원

[첨부자료]

1. 재난발생추이

o 연도별 오염사고 발생현황

- 5년간 평균 해양오염사고 발생건수 390건, 유출량 4,475kℓ
- 지속적인 특별단속 강화에 기인한 소량 오염사고 적발건수 증가 등으로 오염사고 발생건수는 증가한 반면 대형오염사고 감소로 유출량은 '95년 이후 감소 추세

o 최근 5년간 오염사고 발생현황

구 분	발 생 건 수			유출량 (kℓ)
	계	100kℓ 이상	100kℓ 미만	
계	1,948	18	1,930	22,374
'95년	299	7	292	15,776
'96년	337	4	333	1,720
'97년	379	5	374	3,441
'98년	470	2	468	1,050
'99년	463	-	463	387
연평균	390	4	386	4,475

2. 2000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2000 추진계획	2000상반기 실 적	진도 (%)	2000하반기 계 획
해양오염 방지홍보	○사진전시회 : 12회	12회	100	-
해양오염 감시단속	○일체단속 : 2회	1회		1회
	○출입검사			
	- 선박 : 4,500척	2,520척	56	2,250척
	- 시설 : 1,294회	1,055회	82	647회
국가방제 기본계획 수립	○국가방제기본계획 국무회의 상정	국무회의 보고·확정 (1.11)	100	-
지역방제 실행계획 수립	○인천·여수지역계획 연구용역 시행 ('99.7~'00.7)	중간평가회·보고회 (5회)	-	7월중 완료예정
방제기술 지원단 운영체제 보완	○방제기술지원단 운영규정 마련	해양오염방지법 개정(2.9) 및 훈령제정	100	-
	○방제기술지원단 재구성	재구성 운영 (3.25)	100	-
국제협력 체제 구축	○NOWPAP(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사업 추진	NOWPAP방제지역활동센터 설치·운영(3.22)	100	-
방제훈련	○민·관 합동훈련 : 12회	6회	50	6회
	○자체훈련 : 12회	6회	50	6회
	○위탁교육 : 2회	-	-	2회
방제장비 확 보	○방제정 건조 : 1척	진행중	-	2001완료
	○유회수기 : 5대	진행중	-	구매완료
	○오일펜스 : 300m	진행중	-	구매완료

14. 수 난 구 호 대 책

[태안해양경찰서]

○ 해상재해예방활동 강화

○ 지휘 및 협조체계도

目　標

○ 범국가적 수난구호 체제구축 및 효율적 운영
○ 해상 수난구호 역량 강화
○ 수난구호 협력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

方　針

○ 해상재해 예방 활동 강화
○ 수난구호 즉응 태세 확립
○ 태풍래습에 따른 재해예방 및 구호
○ 원활한 수난구호를 위한 교육 및 훈련
○ 선박 구난업체의 활성화로 구난역량 강화
○ 해양수색 구호지역에 대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細部推進計劃

I. 해상재해 예방 활동 강화

1. 계절별 지역실정에 맞는 재해예방 및 구조대책 수립

○ 농무기 및 행락철 : 4월~8월(5개월)
○ 태풍래습기 : 7월~9월(3개월)
○ 동 절 기 : 11월~다음해 3월(5개월)

2. 해난사고 방지를 위한 캠패인등 홍보강화

○ 지역방송 및 신문사 협조 해난방지 홍보
○ 홍보 전단 및 스티커 제작배포
○ 출입항 선박에 대한 수시 안전교육 실시

3. 해난취약 요소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전개

ㅇ 출·입항 선박 지도 감독강화

- 기상불량시 소형선박 출항통제
- 항해장비, 구명장비등 안전점검 확행
- 선박검사 미필등 출항 통제 대상선박 통제 철저

ㅇ 해난다발 선박 및 노후선박 특별관리

- 해난예방을 위한 지속적 지도 계몽
- 출입항시 안전점검 확행

ㅇ 해상기상 정보의 신속한 전파

- 구난무선국 및 어업무선국 이용 항행선박에 전파
- 기상악화시 항행선박 사전 안전지 대피유도(출동함정)

4. 선박운항자에 대한 홍보, 계도활동 전개

○ 출항선박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선박운항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국적선 및 일반선박 : 지방해양수산청
- 어선 및 소형선박 : 수협,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 현지기상 감안 홍보계도로 기상불량시 소형선박 출어 자제토록 유도

○ 출입항 임검시 구명장구 및 통신, 항해장비 작동상태 등 정비점검 유도

○ 통신기 미보유 소형선박은 통신기 보유선박과 선단편성 등 사전 사전연락체제 확보

○ 나침에 의존 항해선박은 농무로 인하여 시계 불량시 출어 자제토록 유도

○ 해난사고 다발선박 및 노후선박 특별관리 철저

○ 해난사고 발생시 정확한 신고체제 확립

- 조난시간→위치→선박제원→승선원→현지기상→사고개요

5. 해상기상 정보의 신속한 전파

○ 구난 무선국 및 어업무선국 이용 항해 선박에 전파
○ 출동함정 및 어업지도선은 항해선박 사전 안전지 대피유도

6. 민.관.군 협조체제 강화로 구조 즉응태세 유지

○ 취약해역 경비함정 적정배치 운용
○ 항공기 월3회 이상 또는 필요시 해상순찰 강화
○ 기상불량시 신속 대처를 위한 군·경 대형 구조장비 지원협조
- 인천해경서(구조조정본부) 대형함정 지원체제 유지
- 공군 대형헬기 및 수색용 항공기 지원 협조
- 해군 대형함정 기상 불량시 지원체제 유지

7. 특수 해난사고 대비 선박 구난업체간 협조지원 체제 유지

○ 선박 구난업체별 구조장비 현황 및 비상연락망 확보

8. 해난다발 해역 및 취약해역 구조세력 적정배치 운요

○ 연말연시 및 설날 전후 등 여객선 항로상 경비함정 증가배치 운요
○ 취약해역 및 해난다발해역 분석 경비함정 중점배치

9. 지역 수난구호대책 위원회 개최

○ 근 거 :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 운 영
- 구 성 : 5인이상 ~ 15인 이내(임기 2년)
- 위 원 장 : 태안해양경찰서
- 개최시기 : 필요시

Ⅱ. 지휘 및 협조 체계도

1. 지휘 및 협조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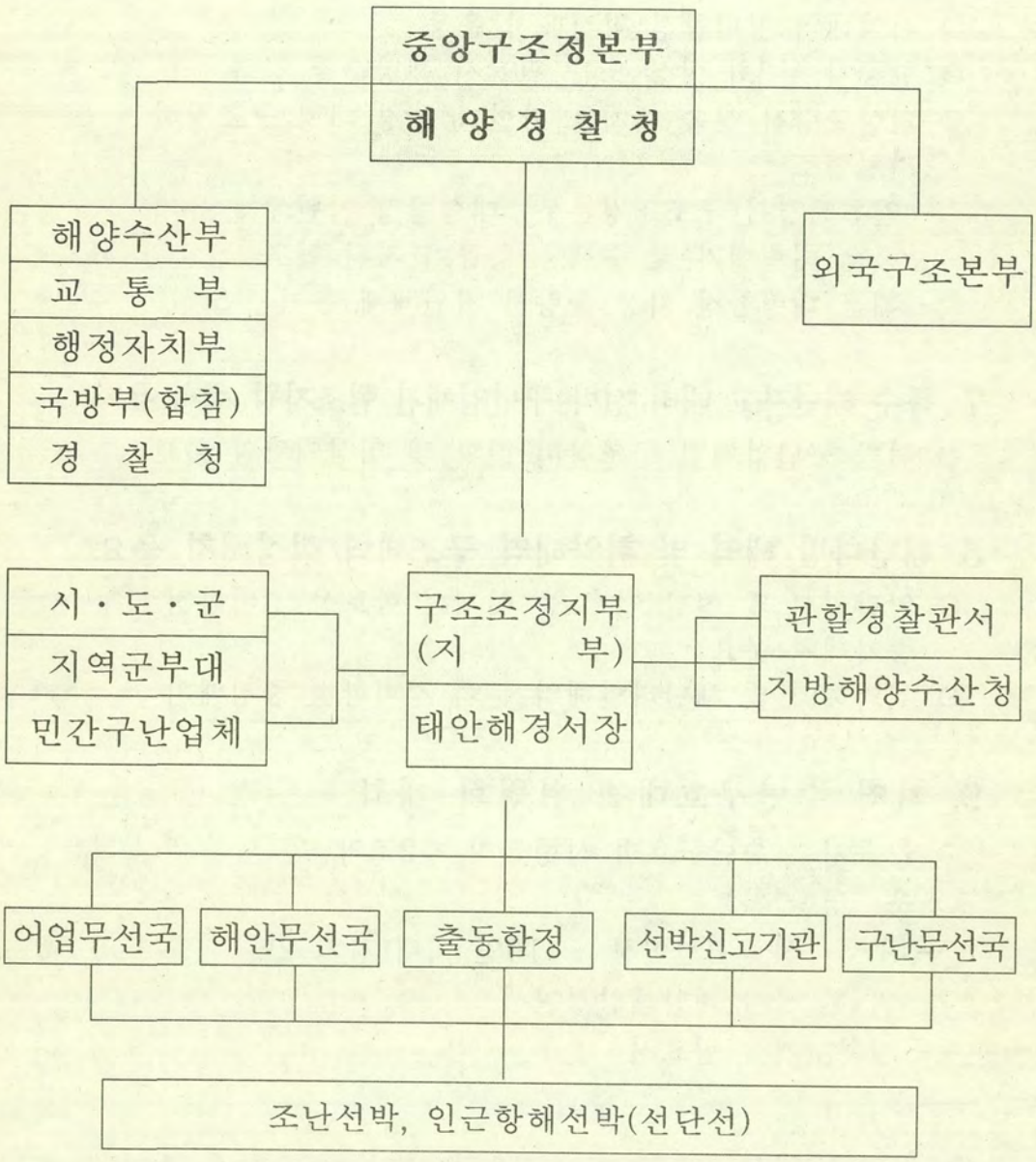

2. 기 능

○ 수난대비 계획 수립 시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 해상 수난구호 업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장비 및 시설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해상 수난구호에 필요한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 해상 수난구호 업무와 관련 필요사항

3.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활동 전개

○ 침몰, 좌초, 전복, 충돌, 화재선박 발생시
- 출동함정이나 당직 대기함정을 신속히 출동시켜 구조하고 사고 해점이 원거리로서 경비함정 도착 지연 예상시에는 우선 선단선이나 인근 항해선박에 구조토록 지시

○ 기관고장 및 기상악화(폭풍주의보이상 발효)로 인해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
-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예인 등 조난선박 방지조치 강구
  단, 현지기상이 양호하여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단선이나 구난업체로 하여금 예인토록 조치
- 단순 기관고장 선박이라도 선단선이나 인근에 항행 선박이 없는 해역이거나 구난업체를 동원시킬 수 없어 장시간 표류로 사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비함정이 출동 예인조치

○ 인근 항해선박에 대한 조치
- 조난현장 부근을 항해하는 선장에게 즉시 인명구조 요청

○ 민간 자율 구조대 운영
- 항포구 및 지역 어촌계 소속 선원, 잠수 동호인 등으로 구성 재해발생시 정박선 비상동원 신속한 구조활동 전개
- 항포구별 긴급 동원체제 확립
  • 지역 어촌계 : 신고기관별 어선구조대 지정운영
  • 유도선 업체 : 각 지역별 조합내 자체구조대 운영

4. 해상구조 절차

○ 기상양호시

- 1차 : 선단이나 인근 항해선박 구조조치
- 2차 : 인명이나 선박안전에 위험 판단될시 경비함정 출동
- 3차 : 전가용함정 사고해점 투입

○ 기상악화시

- 1차 : 인명이나 선박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될시 경비함정 출동조치
- 2차 : 인근선박 및 경비함정 구조조치
- 3차 : 인근해경서 대형함정 및 해군함정, 항공기 지원요청

○ 특구해난사고

- 1차 : 관내 민간구조 협력업체 지원
- 2차 : 항공기 이용 특수구조단 투입
- 3차 : 해군, 공군 지원

Ⅳ. 행 정 사 항

1.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민방위업무를 본 계획에 의해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의 적기확보 등 실효성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상호 긴밀히 협조 지원하여 유기적인 통합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출장소장은 본 계획에 의거 소관 민방위업무에 관한 시·군·출장소 계획을 작성하여 시·군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출장소장은 소관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계획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2002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보완시켜야 한다.

CHUNG CHEONG NAM – DO
AM014354